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605-14

결산담당자용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기획재정부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FIS 한국재정정보원

목 차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제1장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3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 15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제1장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 129

제2장 내부거래 ····· 195

제3장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 ····· 219

제4장 결산조정전표 등록 ····· 234

제5장 결산서 생성 ····· 261

제6장 결산서 발행 ····· 293

[INDEX] ····· 323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제1장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2024회계연도는 국회제출 14년차로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건수는 '11회계연도 이후 크게 감소('11년 133건 → '24년 81건) 하였다.

◈ 국가회계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순 회계처리 오류*는 전기 대비 감소('23년 58건 → '24년 54건)하였다.

*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수익, 비용 인식 등 오류,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등

◈ 업무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오류*는 전기 대비 감소('23년 34건 → '24년 27건)하였다.

* 자산 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계상 관련 오류,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 업무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오류 및 단순 회계처리 오류 모두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가 전체 지적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최근10개년 평균 90%이상)이다. 2024회계연도에는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가 64건으로 전체 지적건수(81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1.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오류사항 목록별 지적사례 통계	…	4
2.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5
3.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7

1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오류사항 목록별 지적사례 통계

▣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오류사항 목록별 지적사례

목록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30	24	24	9	17	16	10	19	19	23	191
자산 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34	21	16	19	23	17	25	10	12	8	185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계상 관련 오류	19	16	24	26	23	15	7	9	11	10	160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4	14	7	6	4	4	2	5	11	9	76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6	6	6	8	7	9	7	6	10	8	73
수익, 비용 인식 등 오류	13	14	22	15	13	19	13	27	29	23	188
기타*	1	1	1	4	3	2	-	-	-	-	12
합계	**117**	**96**	**100**	**87**	**90**	**82**	**64**	**76**	**92**	**81**	**885**

<출처: '15~'24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

*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중앙관서 지적사항), 주석 등, 폐지·신설관서 간 자산·부채 이관 관련 오류

2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유형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 처리 오류	20	10	12	13	9	5	5	12	13	4	103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6	6	5	4	2	2	3	5	4	2	39
비용의 자산 처리 오류	2	1	4	2	6	-	1	2	5	2	25
취득완료(용역계약종료)된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4	6	10	9	10	16	8	9	9	17	98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6	10	6	3	7	10	3	5	8	3	61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BTL 관련 회계처리 오류	5	1	2	6	5	2	1	1	3	3	29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3	2	2	2	4	2	-	7	7	2	31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0	16	6	8	10	9	7	6	6	87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10	13	8	9	16	6	18	4	3	3	90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	1	1	-	2	-	-	1	1	9
대손충당금(융자보조원가 충당금) 관련 오류	11	4	3	7	4	6	1	4	2	2	44
소송충당부채 설정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관련 오류	2	3	2	3	2	1	2	1	6	6	28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 관련 오류	1	2	1	1	-	-	1	-	-	-	6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인식 누락 등 부채 관련 오류	6	5	2	3	1	5	1	3	3	2	31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4	5	4	3	-	2	-	2	2	2	24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4	5	5	5	2	1	1	3	3	32

유형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프로그램총원가(수익), 비배분비용(수익) 등 분류 오류	2	2	4	2	1	-	-	2	2	1	16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3	1	3	-	1	2	2	3	1	2	18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3	2	5	-	3	3	4	1	5	3	29
기타 오류	14	9	5	8	6	6	4	7	9	17	85
합계	**117**	**96**	**100**	**87**	**90**	**82**	**64**	**76**	**92**	**81**	**885**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유형화

3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연도별 감사원 지적사례

중앙관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A)	유형별 지적(B)	비율 (B/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1	-	-	-	1	2	2	100%
경찰청	3	2	2	2	4	1	1	1	1	1	18	18	100%
고용노동부	2	3	3	2	4	6	2	3	1	2	28	26	93%
공정거래위원회	1	1	1	1	-	2	1	-	3	1	11	9	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3	1	1	2	2	2	5	1	17	14	82%
관세청	3	1	-	2	1	-	-	-	1	1	9	8	89%
교육부	4	3	2	4	5	3	3	3	3	2	32	29	91%
국가교육위원회	-	-	-	-	-	-	-	-	-	1	1	1	100%
국가보훈부	2	2	2	1	2	1	1	-	-	-	11	11	100%
국가인권위원회	2	1	1	-	-	-	-	-	1	-	5	5	1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	1	1	-	-	1	1	1	-	6	6	100%
국민권익위원회	-	-	1	1	-	-	-	-	2	2	6	5	83%
국민안전처	3	2	-	-	-	-	-	-	-	-	5	4	80%
국방부	12	8	9	8	5	5	4	6	6	3	66	54	82%
국세청	1	1	-	-	2	1	-	2	1	3	11	10	91%
국토교통부	9	9	8	7	8	7	5	5	7	6	71	68	96%
국회	-	1	2	1	-	-	-	1	-	-	5	5	100%
금융위원회	2	1	1	1	1	2	1	-	-	1	10	9	90%
기상청	3	3	-	1	1	2	1	1	1	-	13	11	85%
기획재정부	9	5	4	6	8	9	8	13	8	6	76	59	78%
농림축산식품부	5	5	3	3	2	2	1	2	6	3	32	29	91%
농촌진흥청	2	1	2	1	1	1	-	-	1	1	10	10	100%
대법원	2	1	1	1	-	-	-	1	2	-	8	7	88%
대통령경호처	-	-	-	-	1	-	-	1	-	-	2	2	100%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	-	-	-	1	1	-	2	2	100%
문화재청	3	1	2	1	2	2	2	1	1	-	15	15	100%
문화체육관광부	-	3	6	5	4	6	6	4	3	5	42	38	90%
미래창조과학부	1	3	-	-	-	-	-	-	-	-	4	3	7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1	1	1	-	-	-	-	-	3	3	100%
방송통신위원회	-	1	1	1	-	-	-	-	1	2	6	3	50%

중앙관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누적 (A)	유형별 지적(B)	비율 (B/A)
방위사업청	4	3	2	2	3	4	-	4	4	5	31	26	84%
법무부	-	2	2	1	1	1	3	1	2	1	14	14	100%
법제처	1	-	-	-	-	-	-	-	1	-	2	2	100%
병무청	2	1	1	1	-	1	-	-	1	-	7	7	100%
보건복지부	5	4	2	2	1	2	4	3	3	1	27	26	96%
산림청	4	3	4	3	4	2	1	3	4	1	29	29	100%
산업통상자원부	1	4	1	-	-	-	-	-	-	-	6	6	100%
새만금개발청	1	2	1	3	2	3	-	-	2	6	20	17	85%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	-	1	-	-	-	-	-	-	-	1	1	100%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	-	-	-	-	-	-	-	-	-	1	1	100%
소방청	-	-	1	-	1	-	1	1	1	-	5	4	80%
식품의약품안전처	2	1	3	1	-	-	-	-	-	-	7	7	100%
여성가족부	1	1	2	1	1	1	-	-	1	1	9	9	100%
외교부	2	3	2	2	1	2	1	1	1	1	16	15	94%
원자력안전위원회	1	-	-	-	-	-	-	-	1	-	2	2	100%
인사혁신처	-	-	-	-	-	-	-	1	-	-	1	1	100%
우주항공청	-	-	-	-	-	-	-	-	-	4	4	1	25%
재외동포청	-	-	-	-	-	-	-	-	2	1	3	3	100%
조달청	-	-	-	1	-	-	-	-	1	-	2	2	100%
중소기업청	3	1	-	-	-	-	-	-	-	-	4	4	100%
중소벤처기업부	-	-	2	3	1	1	2	-	-	-	9	9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1	-	-	-	-	-	-	1	1	100%
질병관리청	-	-	-	-	-	-	-	1	-	1	2	1	50%
통계청	1	1	-	-	-	1	-	-	-	1	4	3	75%
통일부	4	3	4	3	3	2	1	1	1	-	22	21	95%
특허청	3	1	1	1	-	-	-	-	-	2	8	8	100%
해양경찰청	-	-	2	2	4	2	1	1	1	1	14	13	93%
해양수산부	4	3	6	2	5	4	7	8	5	6	50	48	96%
행정안전부	-	-	1	2	2	-	1	1	1	1	9	8	89%
행정자치부	1	-	-	-	-	-	-	-	-	-	1	1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3	2	1	-	-	1	-	-	3	12	9	75%
헌법재판소	-	-	-	-	1	-	-	-	-	-	1	1	100%
환경부	4	2	4	3	7	3	2	2	4	3	34	34	100%
총합계	**117**	**96**	**100**	**87**	**90**	**82**	**64**	**76**	**92**	**81**	**885**	**800**	**90%**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감사원 오류사항 목록별 지적사례 누적 건수

중앙관서	감사원 오류사항 목록*							합계
	목록1	목록2	목록3	목록4	목록5	목록6	목록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	-	-	-	-	-	2
경찰청	3	6	5	-	1	3	-	18
고용노동부	2	12	-	7	3	3	1	28
공정거래위원회	1	3	1	3	2	1	-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	-	2	6	3	-	17
관세청	1	2	1	3	1	1	-	9
교육부	7	11	4	2	1	7	-	32
국가교육위원회	-	-	-	-	1	-	-	1
국가보훈부	2	3	2	1	3	-	-	11
국가인권위원회	3	-	1	1	-	-	-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1	3	-	-	-	-	6
국민권익위원회	3	-	-	2	1	-	-	6
국민안전처	1	-	3	-	-	1	-	5
국방부	15	13	6	8	1	18	5	66
국세청	3	2	1	4	-	1	-	11
국토교통부	31	12	11	6	2	9	-	71
국회	1	1	1	-	1	1	-	5
금융위원회	1	-	2	4	1	2	-	10
기상청	4	2	2	3	-	2	-	13
기획재정부	12	15	9	5	11	24	-	76
농림축산식품부	6	9	7	1	2	7	-	32
농촌진흥청	1	3	3	-	1	2	-	10
대법원	2	2	3	-	1	-	-	8
대통령경호처	-	1	-	-	-	1	-	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	-	-	-	2	-	2
문화재청	2	1	7	-	1	4	-	15
문화체육관광부	6	8	13	-	5	10	-	42
미래창조과학부	1	1	-	-	-	1	1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	2	-	-	-	-	3
방송통신위원회	-	1	-	1	1	3	-	6
방위사업청	9	4	2	4	1	8	3	31
법무부	4	2	3	2	-	3	-	14

중앙관서	감사원 오류사항 목록*							합계
	목록1	목록2	목록3	목록4	목록5	목록6	목록7	
법제처	1	-	-	-	-	1	-	2
병무청	1	1	2	2	-	1	-	7
보건복지부	9	5	6	1	1	5	-	27
산림청	7	8	7	1	-	6	-	29
산업통상자원부	3	1	-	-	-	2	-	6
새만금개발청	2	-	6	2	6	4	-	20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	-	-	-	1	-	-	1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1	-	-	-	-	-	-	1
소방청	-	1	3	-	-	1	-	5
식품의약품안전처	-	-	2	-	1	4	-	7
여성가족부	5	1	-	1	-	2	-	9
외교부	1	2	3	2	2	6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	1	-	-	1	-	-	2
인사혁신처	-	-	-	1	-	-	-	1
우주항공청	2	-	-	-	-	2	-	4
재외동포청	3	-	-	-	-	-	-	3
조달청	-	1	1	-	-	-	-	2
중소기업청	-	3	-	-	-	1	-	4
중소벤처기업부	-	2	2	-	3	2	-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	-	-	-	-	1
질병관리청	1	1	-	-	-	-	-	2
통계청	1	-	1	-	-	2	-	4
통일부	6	6	4	1	1	4	-	22
특허청	1	2	2	1	-	2	-	8
해양경찰청	2	3	6	1	1	1	-	14
해양수산부	6	9	12	2	6	15	-	50
행정안전부	5	-	2	1	-	-	1	9
행정자치부	1	-	-	-	-	-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8	-	-	-	2	1	12
헌법재판소	-	1	-	-	-	-	-	1
환경부	5	8	9	1	3	8	-	34
총합계	**191**	**185**	**160**	**76**	**73**	**188**	**12**	**885**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감사원 오류사항 목록별 세부내용

목록	세부내용
목록1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목록2	자산 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목록3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계상 관련 오류
목록4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목록5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목록6	수익, 비용 인식 등 오류
목록7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 2024회계연도 감사원 지적건수(81건)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64건)가 7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산 시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관련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 처리 오류	…	16
2.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	28
3. 비용의 자산 처리 오류	…	37
4. 취득완료(용역계약종료)된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	43
5.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	51
6.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BTL 관련 회계처리 오류	…	57
7.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66
8. 계정과목 선택 오류	…	69
9.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79
10.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	87
11. 대손충당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관련 오류	…	90
12. 소송충당부채 설정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관련 오류	…	94
13.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 관련 오류	…	98
14.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인식 누락 등 부채 관련 오류	…	102
15.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	107
1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	111
17. 프로그램총원가(수익), 비배분비용(수익) 등 분류 오류	…	114
18.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	118
19.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	122

1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 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 처리 오류	20	10	12	13	9	5	5	12	13	4	103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특별회계에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등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 소프트웨어로 계상하지 않고 지출된 개발용역비 전액을 일반연구개발용역비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연구개발용역비(관리운영비)가 231억 원 과대계상되었고,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무형자산상각비(관리운영비)가 각각 227억 1,500만 원, 3억 8,5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업무담당자는 조달 계약에 따라 업무처리 시 계약 성격에 따라 dBrain+ 상 적절한 계약 메뉴를 선택하여 업무처리 해야 한다. 또한, 각 계약에 따른 취득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자산명세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 Case Ⅰ: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 등)

업무담당자는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물품, 비용, [건중자산], 선박항공기, 무체재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용역비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 무체재산으로 등재해야 하나,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1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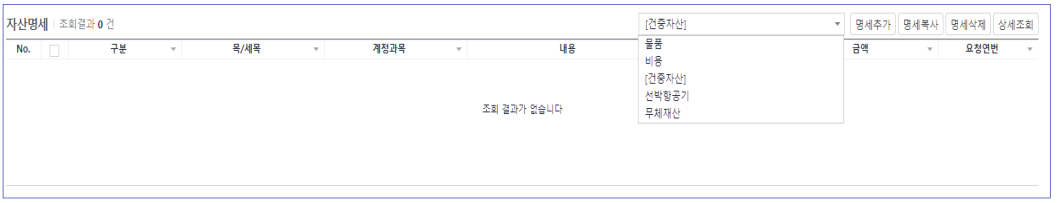

Case Ⅱ: 물품구매요청서 작성 시 품종 선택 오류(외부구입소프트웨어, 사무용기기 취득 등)

업무담당자는 '물품구매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명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물품명세(요청)관리' 화면에서 취득하려는 물품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 물품의 '분류번호', '식별번호' 선택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된 품종인 '외부소프트웨어'로 진행해야 하나, 별도로 품종을 '[대장X]소모품'으로 변경할 경우 자산인 외부구입 소프트웨어가 과소 계상, 비용인 소모품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2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물품계약>구매요청(물품)>물품구매요청서>물품명세(요청)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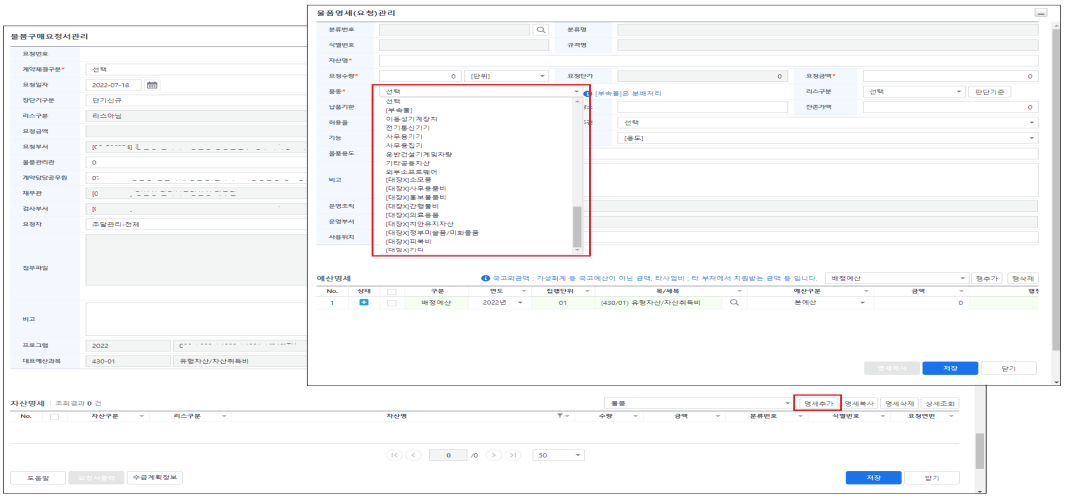

<TIP> 소프트웨어 분류 기준

1. '24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 지침
   - 내부개발 소프트웨어(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비용)를 무체재산으로 등재, 단 서버 등 물품 구매비용은 제외(물품으로 관리)
   - 외부구입 소프트웨어 중 패키지 S/W(예: 한글 2007, V3 등)는 무체재산이 아니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말 것

2. 계정과목해설서 X. 무형자산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외부구입소프트웨어 :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한다.
   - 범용소프트웨어(예: MS Office, 한글 등)와 전용소프트웨어(예: Oracle, DB,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내부개발소프트웨어가 아닌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Case Ⅲ: 시설공사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건물 신축 등)

업무담당자는 '시설공사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물품, 비용, [건중자산], 토지, 건물, 공작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 시 '건물' 또는 '[건중자산]'을 선택해야 하나,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참고로, '[건중자산]'을 선택 후 [명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기타명세(건중요청)관리' 화면에서 '재산종류'를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 계정과목이 잘못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3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공사계약>시설공사(본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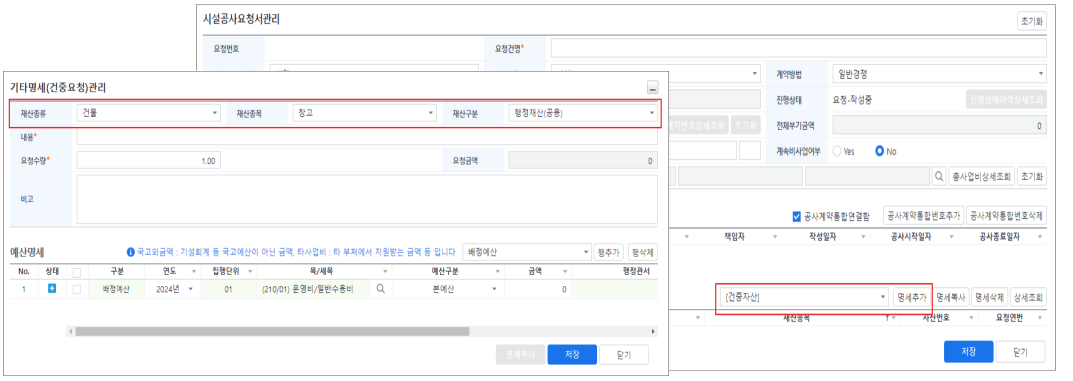

Case Ⅳ: 국유재산취득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취득 등)

국유재산 취득 시 물품계약의 '취득요청(국유)' 메뉴를 통해 업무처리하며 '국유재산취득요청서관리'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비용, [건중자산], 자산(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 취득 시 '선박항공기'를 선택하여야 하나, '비용'을 선택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4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물품계약>취득요청(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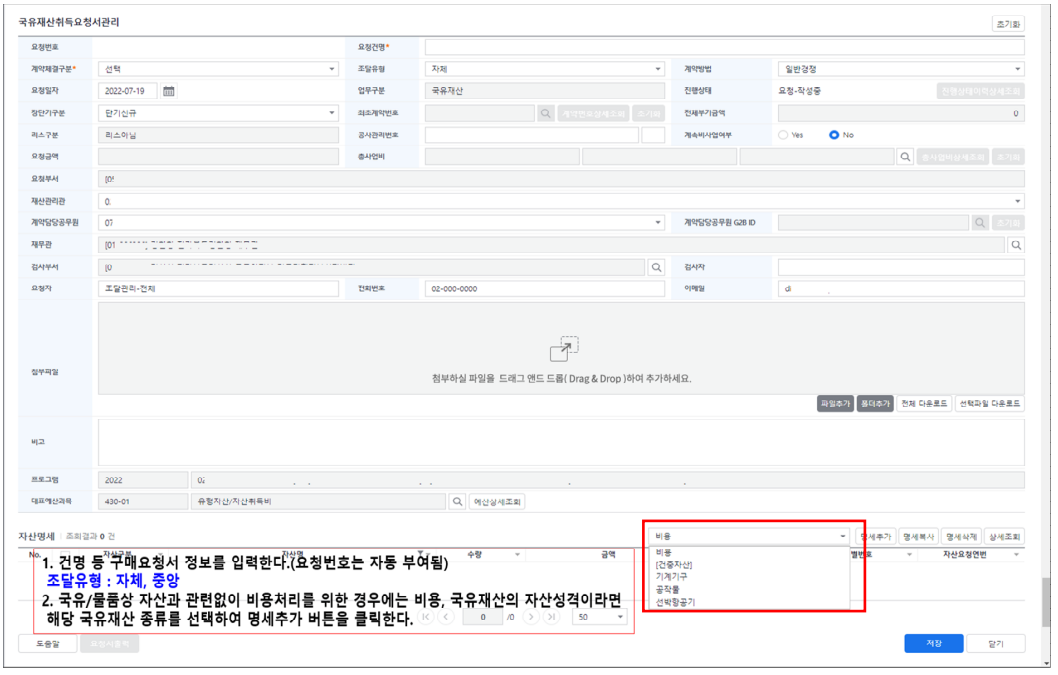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아래 방법 중 각 회계실체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비용항목 분개장 검토 및 추세 분석

○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에서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일반유형자산(건물,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으로 등록되어야 할 자산이 비용 처리된 오류가 많으므로, 해당 계정과목의 분개장을 금액순으로 정렬한 후 금액이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적요를 통해 지출항목의 성격을 검토한다.

○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가** 매년 많이 발생하는 부처의 경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해당 계정과목을 더블클릭하여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하는 추세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때 비경상적으로 금액이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② 자산과 비용항목 단위사업 비교

자산항목(소프트웨어 등)과 비용항목(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의 분개장 상 **'단위사업' 명을 비교하여 동일한 단위사업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단위사업명이 있는 경우 비용화된 내역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파악한 항목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내역이 없는지 **확인(계약서 검토 등)**을 요청한다. 만약 업무담당자가 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답변한 경우 근거를 업무담당자로부터 수령한다.

➤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용역계약, 공사계약의 자산명세 선택 오류 수정

○ 당기에 내부개발소프트웨어, 건물 등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마감 전까지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통해 **비용을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 중 취득이 완료된 자산은 **건중자산대체서를 생성**하여 자산등재 할 수 있다.

- **계정과목 정정**: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변경할 건을 조회한 후 '자산구분변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기타명세(건중자산)변경관리' 화면에서 무체재산, 건물 등 올바른 '재산종류'를 선택한다.

그림 1-5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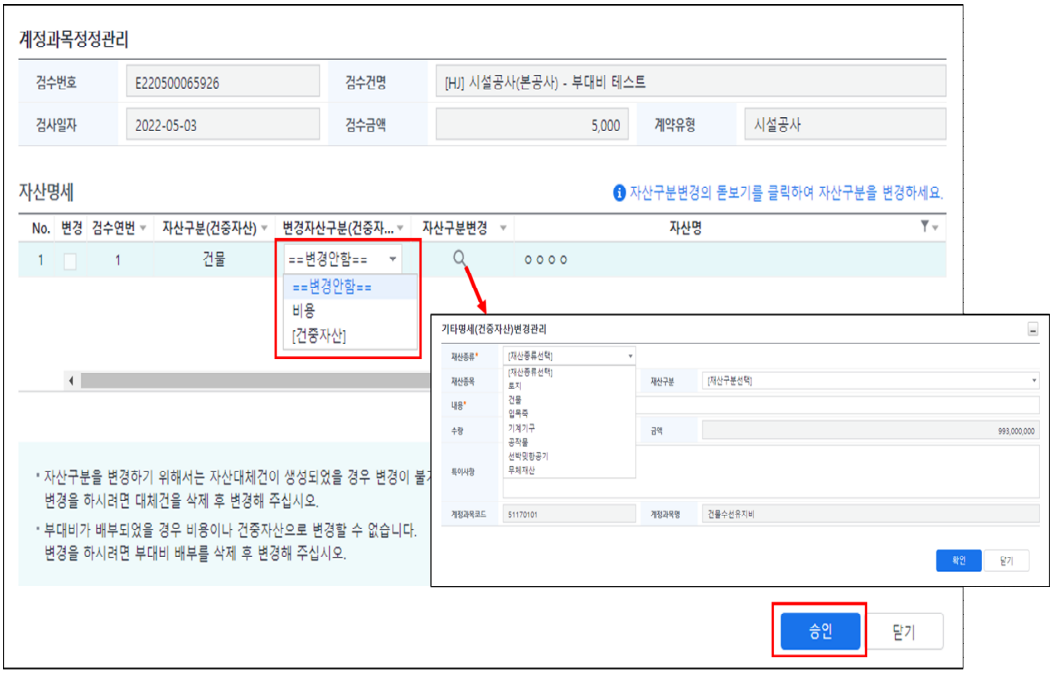

- **건중자산대체서생성**: 업무담당자는 '검수건명', '검수일자', '검수자'를 선택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내역추가] 버튼을 이용해 건설중인 자산을 추가한다. 추가 후 저장하면, [승인] 버튼이 활성화되고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대체서를 승인하면 선택한 자산구분으로 자산이 등재된다.

그림 1-6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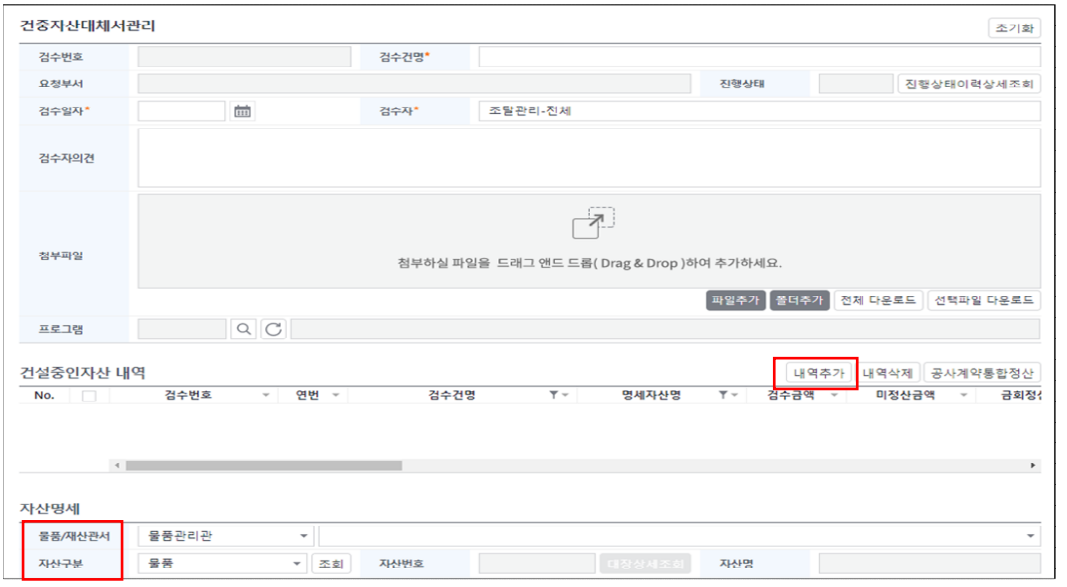

② 물품계약의 자산명세 선택 오류 수정

○ 외부구입소프트웨어, 항공기 등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품종을 변경해야 한다.

- **(검수 승인 전) 자산 검수 시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해서 진행한다.
- **(검수 승인 후) '명세변경서 등록'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물품계약(물품/국유재산)자산명세변경요청관리' 화면 상 '자산명세(변경후)'에서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른 품종으로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7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명세변경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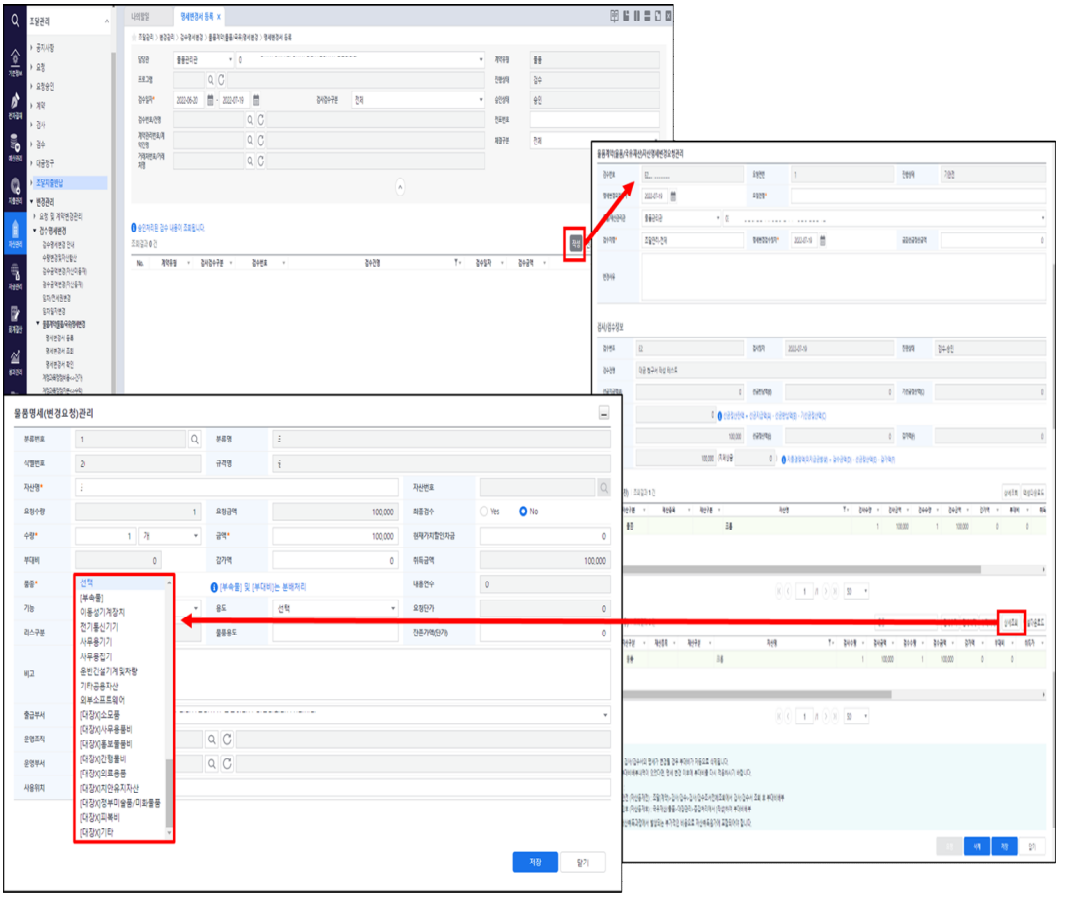

참고 **조달 관련 계약 종류 별 구분**

(1) 계약의 종류

dBrain+ 시스템 상 조달 관련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1-1 ▌조달 관련 주요 계약 종류

계약 종류		적 요
물품계약	구매요청(관급자재)	관급자재 구매 시 사용
	취득요청(국유)	국유재산(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취득 시 사용
	구매요청(물품)	물품 구입 시 사용
수리/폐기	수리요청(물품)	물품의 수리요청 시 사용
	유지보수요청(물품)	물품의 유지보수요청 시 사용
	수리요청(국유)	국유재산의 수리요청 시 사용
	폐기요청(물품)	물품의 폐기요청 시 사용
	폐기/철거요청(국유)	국유재산의 폐기/철거요청 시 사용
공사계약	시설공사(본공사)	국유재산의 신축
	공사용역(부대공사)	본공사에 포함되나 계약을 별도로 하는 공사
	공사수리(증축/개보수)	국유재산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용역계약	용역계약요청	용역계약 시 사용
기타계약	부동산 취득요청	국유재산인 부동산 매입
	용지보상 지출요청	용지 강제수용 후 보상비 지급
	무체재산 취득요청	국유재산인 무형자산 취득
	유가증권 취득요청	주식, 기타수익증권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취득
	임차/사용계약요청	임차,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과 관련 없는 건
	보험계약 요청	화재보험, 차량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계약 시 사용

각 계약종류 별로 나타나는 회계처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해당 계약과 성격이 다른 계약 종류를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같은 공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공사(본공사)와 공사용역(부대공사) 및 공사수리(증축/개보수)를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에 따라 나타나는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2) 물품계약

dBrain+ 시스템의 물품계약 메뉴는 관급자재, 관급자재 외 국유재산 및 물품 구입 시 사용하는 메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표 1-2 ▌물품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구매요청(관급자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또는 물품편입
취득요청(국유)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편입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국유재산대장]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구매요청(물품)	[대장X]소모품 [대장X]사무용품비 [대장X]홍보물품비 [대장X]간행물비 [대장X]의료용품 [대장X]치안유지자산 [대장X]정부미술품/미화물품 [대장X]피복비 [대장X]기타	[비용] 소모품, 사무용품비 등 품종의 선택에 따라 구분 [자산] 치안유지자산, 정부미술품/미화물품[1]
	이동성기계장치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타공용자산 외부소프트웨어 [부속물]	[자산] 품종의 선택에 따라 구분, 물품대장에 등재됨 [부속물] 검수시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부속물 대장에 등재됨 [리스자산구분]금융리스/운용리스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반드시 리스자산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함

물품계약 메뉴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하위 메뉴인 구매요청(관급자재) 또는 취득요청(국유)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요청(관급자재) 메뉴에서 [건중자산]을 선택할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며, 관련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반면, 취득요청(국유) 메뉴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고, 검수시점에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자산으로 처리된다.

[1] 치안유지자산, 정부미술품/미화물품은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지만 재무결산 상 자산으로 인식된다.

(3) 수리/폐기

수리/폐기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1-3 ▌수리/폐기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수리요청(물품)	자산증액(자본적지출)	[물품대장] 물품
	비용처리(수익적지출)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유지보수요청(물품)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수리요청(국유)	자산증액(자본적지출)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비용처리(수익적지출)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폐기요청(물품)	비용	[비용] 물품대장에서 폐기처리됨
폐기/철거요청(국유)	비용	[비용] 국유재산대장에서 폐기처리됨

(4) 공사계약

공사계약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1-4 ▌공사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시설공사 (본공사)	물품	[물품대장] 물품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토지, 건물, 공작물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공작물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공사수리 (증축/개보수)	증축	[국유재산대장] 자본적지출(대장금액 증가)
	개보수	[비용] 수익적지출 처리

공사계약은 시설공사, 공사용역 및 공사수리로 나뉘며, 시설공사는 본공사로서 선택한 자산명세의 대장에 등재되지만 공사용역은 부대공사로서 건설중인자산으로 관리되다가 공사 완료시점에 본공사 자산가액에 배부된다. 공사수리는 증축과 개보수로 구분되며 자산대장금액을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인 경우에는 증축을,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지출은 개보수를 선택한다.

(5) 용역계약

용역계약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1-5 ▌용역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용역계약요청	물품	[물품대장] 물품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선박・항공기	[국유재산대장] 선박・항공기
	무체재산	[국유재산대장] 무체재산

용역계약요청은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물품, 비용, [건중자산] 및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으로 구분되며,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재무계정과목이 달라지게 된다.

(6) 기타계약

기타계약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1-6 ▌기타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부동산 취득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용지보상 지출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토지	[국유재산대장] 토지
무체채산 취득요청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국유재산대장]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세권 등
유가증권 취득요청	주식, 기타수익증권 국채/공채/지방채/회사채	[국유재산대장] 주식, 국채, 공채 등
임차/사용 계약요청	임차(임차료),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물품과 관련이 없는 계약 건	비용 또는 자산 처리
보험계약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기타계약 구분 시 유의할 점은 전세권 등 국유재산의 취득은 '무체재산취득요청'에서 처리하고, 국유재산이 아닌 임차 계약 등은 '임차/사용계약요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 '임차/사용계약요청'이 아닌 '무체재산취득요청'을 선택해야 한다.

2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6	6	5	4	2	2	3	5	4	2	39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기금에서 임시사용승인(2024. 1. 11.)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설계와 관련된 부대비용 일부를 비용으로 잘못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19억 8,436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지출요청서 발생유형을 '0.일반지출'로 선택하는 오류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대비 관련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을 부대비인 지출(1~5번)로 선택**하여야 하나, **부대비가 아닌 지출(0번)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TIP> 발생유형 선택 유의사항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은 '0.일반지출'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대비 지출(1~5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바로 비용 처리되므로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Case Ⅱ: 수리요청서 작성 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오류

① 공사수리 시 '증축'이 아닌 '개보수'를 선택하는 오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사계약을 통해 증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에는 '공사수리(증축, 개보수)' 메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자본적 지출(증축)에 해당하는데도 '공사구분'을 '증축'이 아닌 '개보수'로 선택하는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가 비용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1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공사계약>공사수리(증축, 개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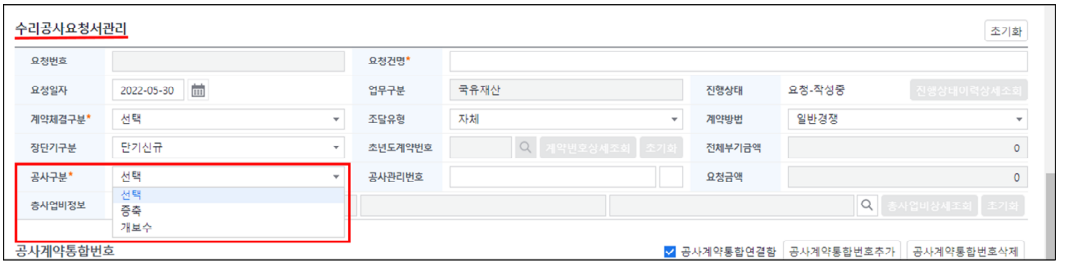

② 수리요청 시 '자산증액'이 아닌 '비용처리'를 선택하는 오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사계약을 통하지 않고 증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 '수리요청'에서 진행하는데,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구분'에서 '자산증액'이 아닌 '비용처리'를 선택하는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가 비용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2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수리폐기>수리요청(물품) 또는 수리요청(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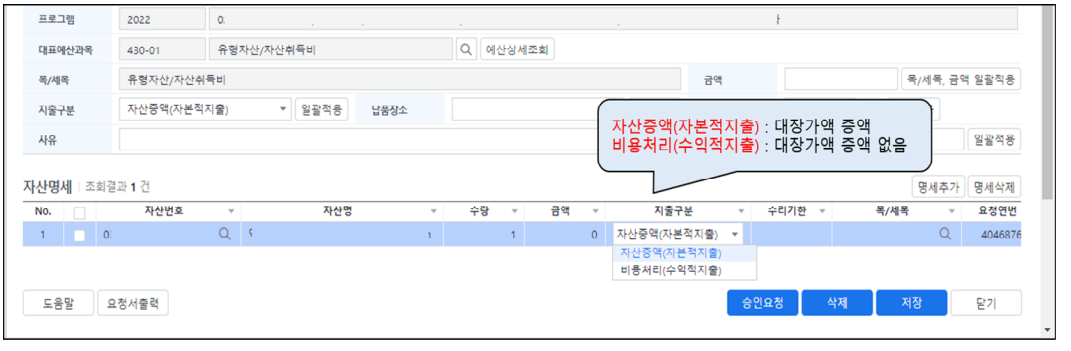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Case Ⅲ: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비용'을 선택하는 오류

사업담당자는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물품, 비용, [건중자산] 및 국유재산(선박항공기 및 무체재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설계비, 감리비와 같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를 [건중자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가 비용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3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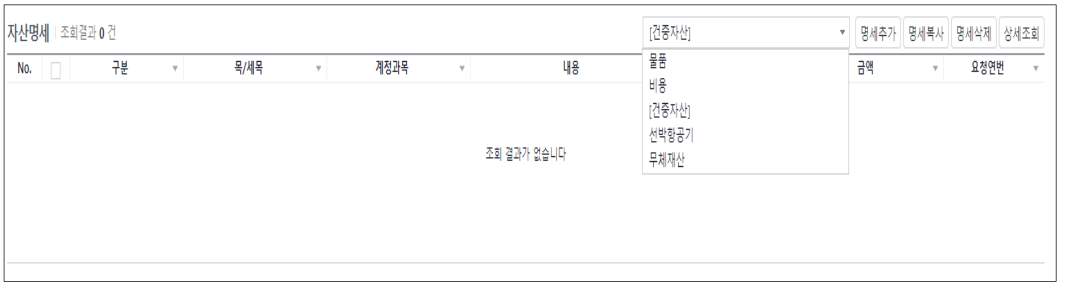

Case Ⅳ: 부대공사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비용'을 선택하는 오류

사업담당자는 '부대공사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비용, 물품, [건중자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대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건중자산]'을 선택해야 하나,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참고로, '[건중자산]'을 선택 후 [명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기타명세(건중요청)관리' 화면에서 '재산종류'를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자산 계정과목이 잘못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4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공사계약>공사용역(부대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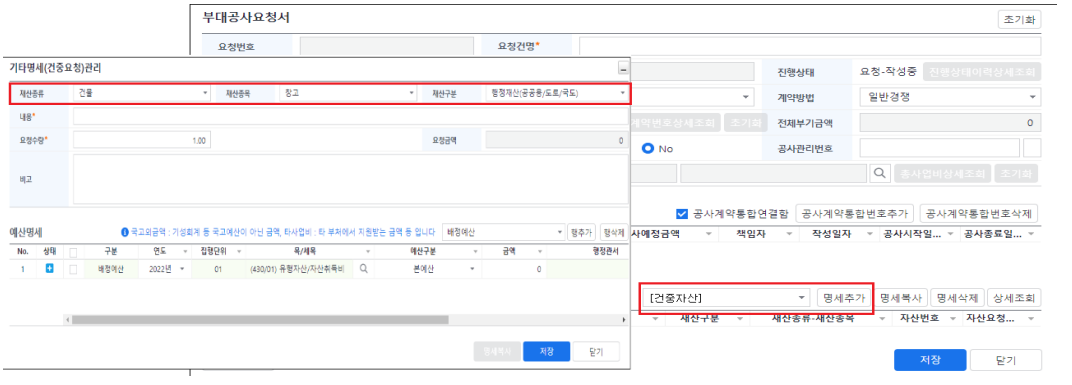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①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한 추세 분석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용역비,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에서 자산화되어야 할 금액이 비용 처리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해당 계정과목을 더블클릭하여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한다. 이때 비경상적으로 금액이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② 분개장 조회를 통해 비용 항목 적정성 검토

○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비용 계정과목의 분개장*을 조회해서 자본적 지출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적요 기재 내용** 및 예산상 **지출 목(세목)**을 통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분개장조회>분개장조회]

○ 그 결과 자본적 지출로 추정되는 건(적요에 부대비 관련 내용이 기재, 400번대 예산 목 지출 건)은 업무담당자를 통해 비용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집행해야 함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검토 및 조치

① 지출요청서의 발생유형 선택 오류 수정

업무담당자는 '**발생유형변경**'을 통해 **비용처리 된 부대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수정**한 후 **부대비 배부**를 통해 자산가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발생유형변경) '0.일반지출'을 선택하여 비용처리한 경우 '발생유형변경'을 통하여 부대비 발생유형(1~5번)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2-5 ▌ 지출관리>지출요청>계정과목정정요청>발생유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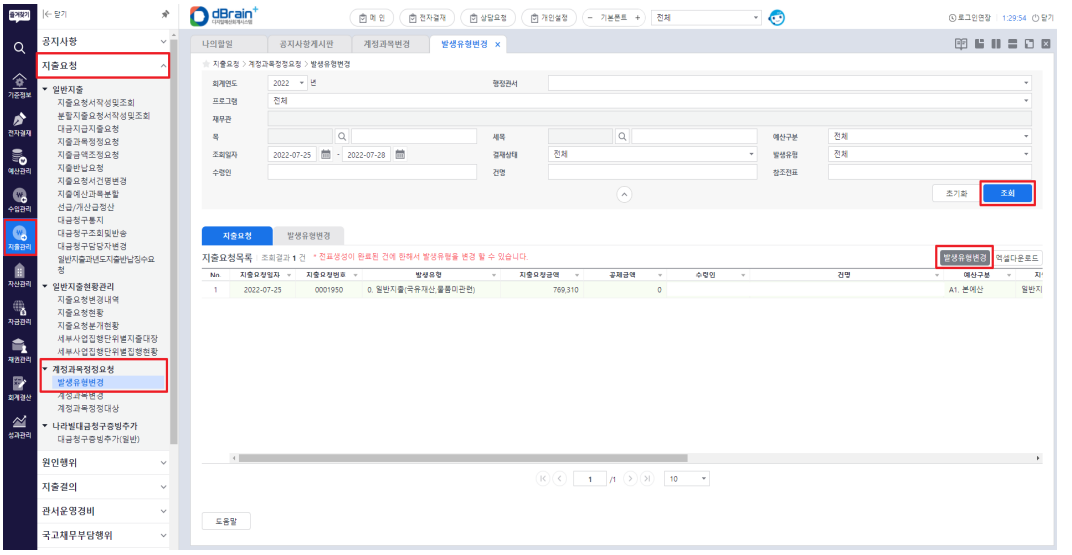

이때 부대비 발생유형은 본 자산이 대장에 이미 **등재된 경우(3,4번)**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1,2,5번)**로 나누어지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발생유형	구 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	순수한 일반지출로 기타증감의 부대비 배부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부대비로 처리될 수도 없음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 지출 시 **계약번호** 선택 필수 – **자산 취득 시:** 조달관리의 검사/검수 에서 계약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 **자산 취득 후: 기타증감**에서 부대비 배부 사유를 선택하여 계약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 **대장번호,** 요청/검수번호 선택 가능 – **대장번호 입력 시:** 별도 배부처리 없이, 선택된 대장번호의 자산 1건에 **모두 자동 배부됨** – **요청/검수번호 입력 시: 기타증감**에서 부대비배부 사유를 선택하여 요청/검수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 지출 시 공사계약통합번호 입력 가능 – '공사계약통합 정산' 화면에서 배부 가능

(**부대비배부**) 자산 등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대비를 배부한다.

○ 자산 등재 전: 검사/검수 단계에서 검사/검수서 작성 시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한다.

○ 자산 등재 후: 검수 이후의 부대비 배부는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부대비>부대비처리' 메뉴에서 사유 중 **'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 사유**를 **선택**하여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한다.

<TIP> 발생유형 선택, 부대비 배부 유의사항

1. 발생유형 3, 4번을 선택하는 경우 '대장번호'를 입력하면 추가적인 부대비 배부 처리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요청번호' 또는 '검수번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2.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정보 입력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검수 시점에 관련 부대비 배부를 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유형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출 시 공사계약통합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② 수리요청서의 선택 오류 수정

‘공사수리(증축, 개보수)’ 및 ‘수리요청’ 메뉴에서 ‘공사구분’ 또는 ‘지출구분’ 선택 오류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를 선택하여 자본적지출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6 ▌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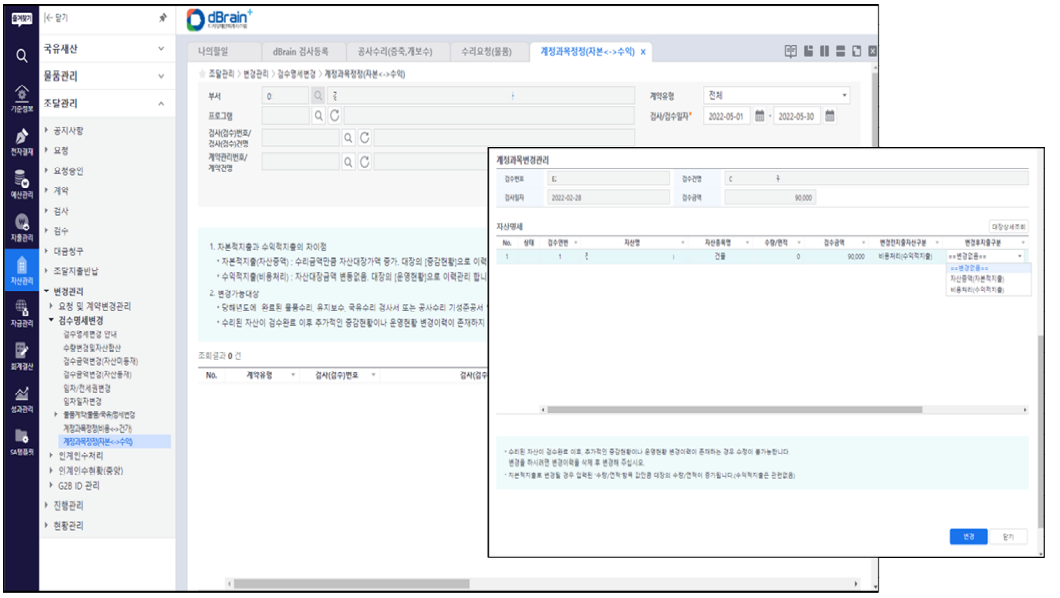

<TIP> 취득부대비용, 자본적 · 수익적 지출 사례

1.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예: 토지보상비용, 이주단지 조성비용)
②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예: 설계용역비)
③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운임, 하역비, 매입수수료, 보험료
④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2. 참고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2」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용역계약, 공사계약의 자산명세 선택 오류 수정

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로, 부대비 관련 지출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계정과목정정)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변경할 건을 조회한 후 **변경자산구분을 '[건중자산]'으로 변경**하면 **'비용'을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2-7 ▌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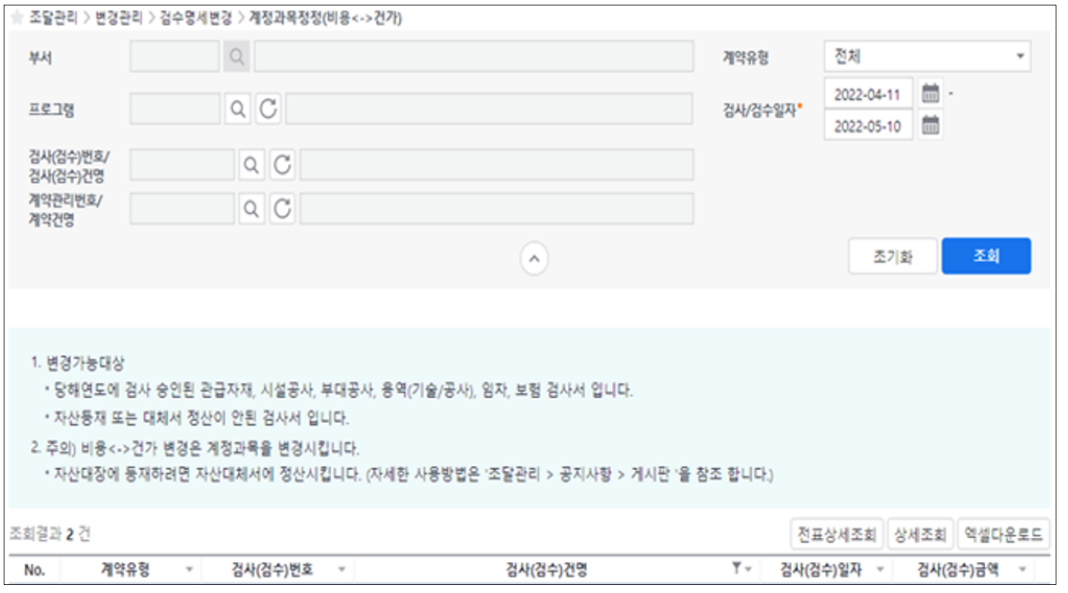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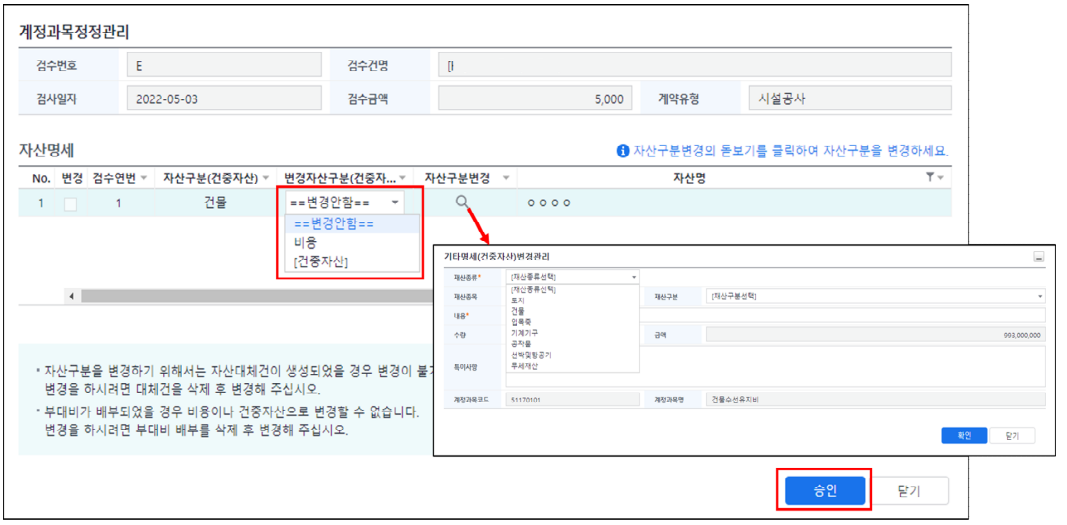

(자산 대체) 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경우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을 본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림 2-8 ▌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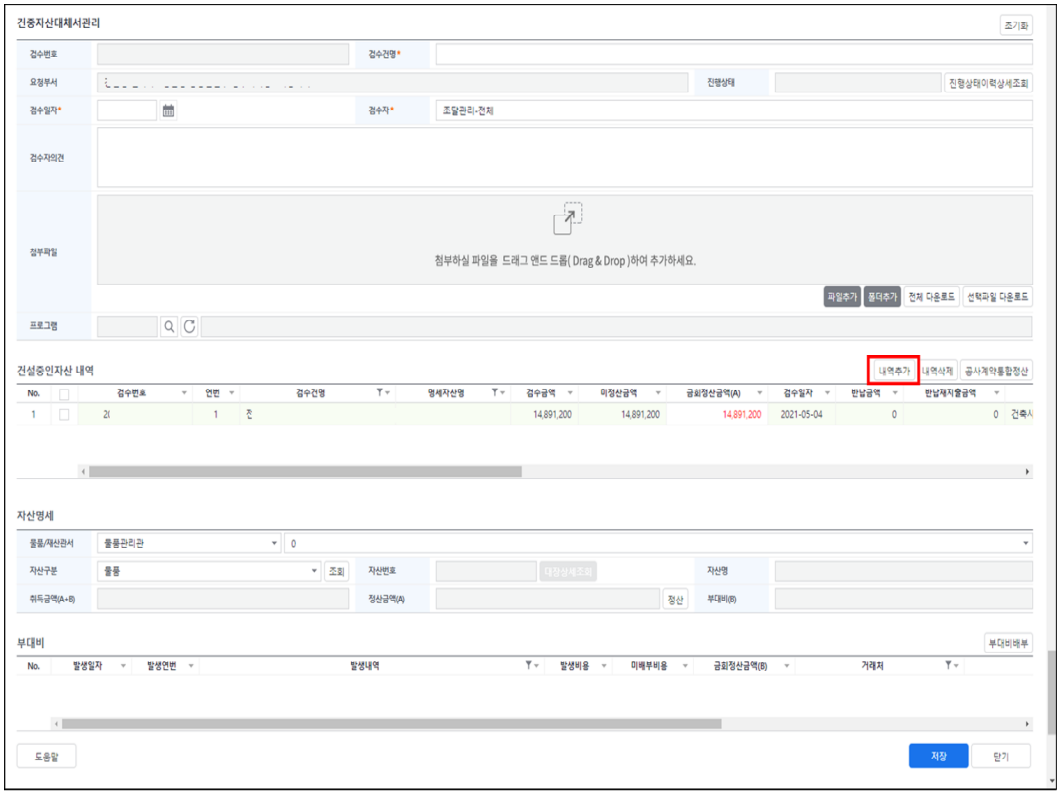

3 비용의 자산 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비용의 자산 처리 오류	2	1	4	2	6	-	1	2	5	2	25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특별회계에서 국가철도공단에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출연비(프로그램명 : 광역철도건설)가 140억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선급금(기타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세부·세세부 항목 선택 오류

○ 해외자본이전(340-03) 예산 지출 시 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고보조사업비/해외"로 비용처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담당자가 지출요청서에서 세부·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선급금'(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물품명세 및 자산명세 선택 오류

① **'구매요청서(물품)'** 작성 시 **'물품명세(요청)'에서 품종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년 사용계약)는 지출 시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품종을 '[대장X]소모품'을 선택하여야 하나, '외부소프트웨어'로 잘못 선택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3-1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물품계약>구매요청(물품)>물품구매요청서>물품명세(요청)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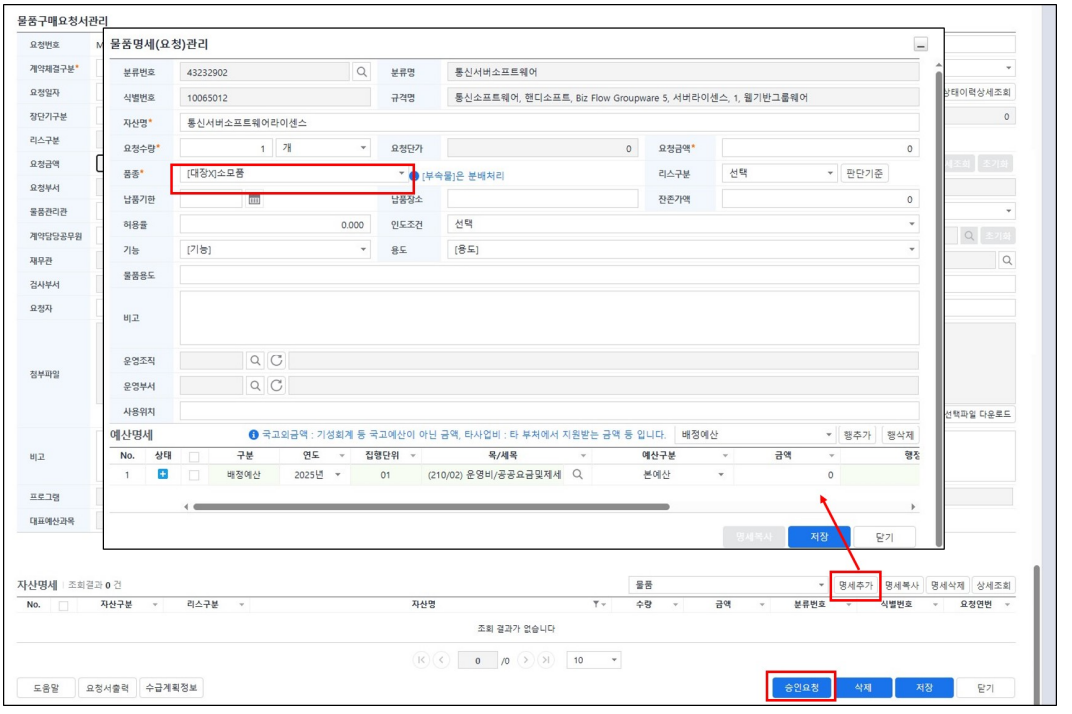

②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수선유지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 자산명세를 '비용'이 아닌 '[건중자산]'으로 선택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3-2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공사계약>공사용역(부대공사)>부대공사요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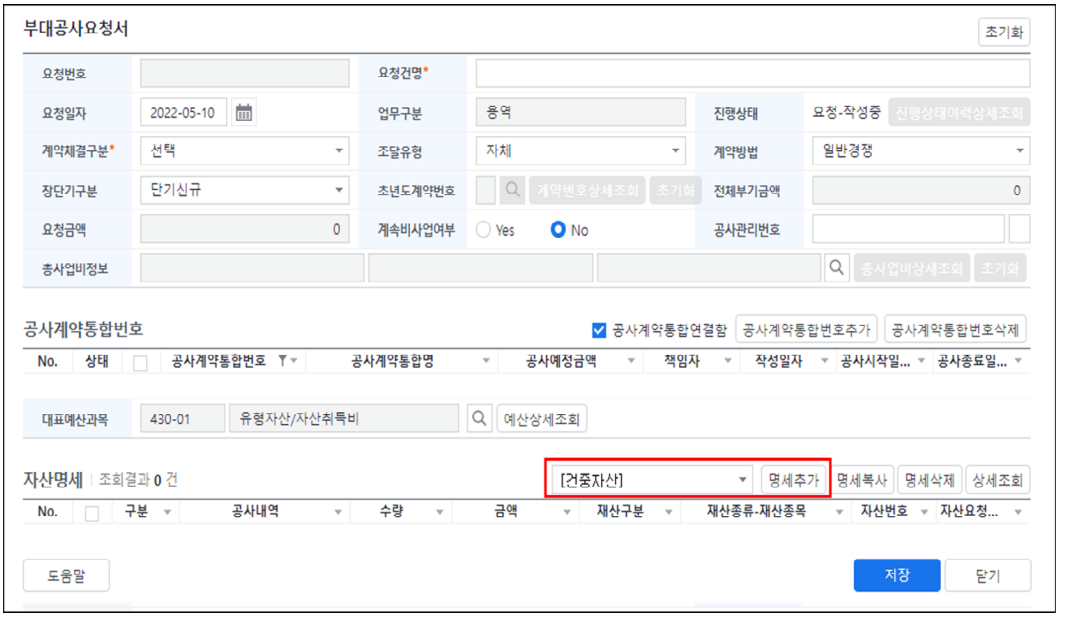

③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수수료는 지출 시 ‘비용(위탁사업비)’으로 처리 되어야 하나, 자산명세를 ‘비용’이 아닌 ‘[건중자산]’ 등을 선택하는 경우 ‘비용’이 아닌 ‘자산’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3-3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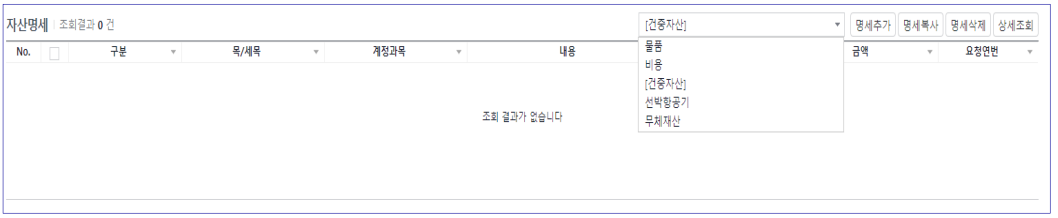

④ **‘국유재산취득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국유재산 취득시 물품계약의 취득요청(국유) 메뉴를 통해 업무처리 하는데, 국유재산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자산명세를 ‘비용’이 아닌 ‘[건중자산]’ 등을 선택하는 경우 ‘비용’이 아닌 ‘자산’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3-4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물품계약>취득요청(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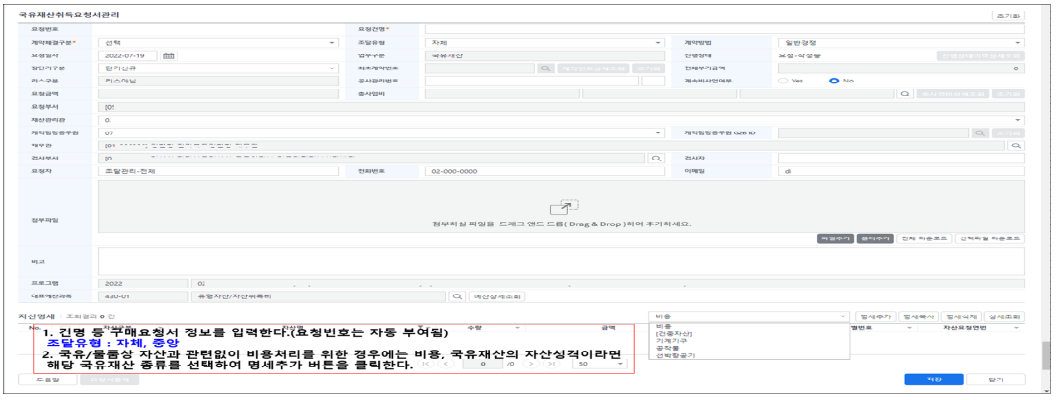

➢ Case Ⅲ: 수리요청서 작성 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오류

① 공사수리 시 ‘개보수’가 아닌 ‘증축’을 선택하는 오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사계약을 통해 증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에는 **‘공사수리(증축, 개보수)*’ 메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공사구분’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수선유지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 공사구분을 ‘개보수’가 아닌 ‘증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공사계약>공사수리(증축, 개보수)] (그림 2-1 참조)

② 수리요청 시 '비용처리'가 아닌 '자산증액'을 선택하는 오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사계약을 통하지 않고 증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 **'수리요청' 메뉴**에서 진행한다. 이때 **'지출구분'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수익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구분'에서 '비용처리'가 아닌 '자산증액'을 선택하는 경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수리폐기>수리요청(물품) 또는 수리요청(국유)] (그림 2-2 참조)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자산항목(무형자산,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분개장 전체를 금액순으로 정렬한 후 금액이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적요**를 통해 자산성 여부를 검토한다.

○ 특히 과거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일관성 없이 자산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은 없는지, 부처의 **과거 감사원 지적사례와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 **무형자산**: 국가회계실체 등이 행정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외부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인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인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
> * **선급금**: 상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이다.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는 제외)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파악한 자산성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통해 자산 계상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계약서 검토 등)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국고보조사업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 성격의 지출을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① 지출 요청서 작성 시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 업무담당자가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통해 계정과목을 정정**[2]한다. 일반지출은 [지출관리>지출요청>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 지출은 [지출관리>관서운영경비>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에서 각각 세부·세세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② 물품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요청)'의 품종을 잘못 선택한 경우

○ **(검수 이전) 자산 검수 시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해서 진행한다.

○ **(검수 이후) '명세변경서 등록*' 메뉴를 통해 자산처리된 항목을 비용으로 변경**('자산명세(변경후)'에서 '상세조회' 버튼 클릭하여 품종 변경 후 [저장]을 클릭)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명세변경서 등록] (그림 1-7 참조)

③ 공사용역요청서 및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잘못 선택한 경우

○ **(당기에 지출한 경우)** 재무결산 마감 전까지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비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그림 1-5 참조)

○ **(전기 이전에 지출한 경우)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이미 생성된 **건설중인자산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체**하고, **'소멸정리요청서*'를 통해** 조달에서도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해 주어야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그림 4-6 참조)

---

[2] 상세한 오류 정정 방법은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수입·지출)_제1장 지출_1절 세부·세세부항목 선택_1. 연계정보 선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처리_(3) 오류 정정 방법' 참조·

④ 수리요청서 작성 시 '공사(지출)구분'을 잘못 선택한 경우

○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를 선택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건을 수익적 지출로 변경**할 수 있다.

*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그림 2-6 참조)

<TIP> 공사비 선지급액 회계처리

공사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선지급액 회계처리

1.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해외자본이전(340-03)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 자산이 취득되어 대장에 계상되기 전까지 '**선급금**'으로 관리한다.
2. **출연금(350, 360)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 각 예산에 매핑되어 있는 **일반사업출연비/공공기관, 일반사업출연비/민간, 일반사업출연비/해외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출연금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 존재('17회계연도 지적사항)

4 취득완료(용역계약종료)된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취득완료(용역계약종료)된 건설중인자산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4	6	10	9	10	16	8	9	9	17	98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일반회계에서 검수 및 사용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된 나라키움 태안 정책연수원에 대해 본계정 대체 및 국유자산대장 등재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443억 3,398만 원, 건설중인토지(일반유형자산)가 13억 8,829만 원,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35억 2,195만원,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6억 5,43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건물(일반유형자산) 508억 9,853만 원, 건물감가상각비(비배분비용) 8,483만 원,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8,483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검수(자산대체) 절차 누락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검수(자산대체)절차를 수행하여 검수조서 승인, 자산대체서 승인 등을 통해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을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등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수조서 승인, 자산대체서 승인 등 검수(자산대체)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자산 대체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기타증감'으로 자산 계상

자산을 등재하면서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을 대체하지 않고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Ⅲ: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자산취득 시 업무처리 누락

민간 또는 자치단체 등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자본형성적 경비는 그 성격 상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산 취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산 취득 시 자산등재 처리를 누락하거나 기타증감 사유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예산 집행 시 계상되었던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ex) 민간에 시설 설치사업을 맡기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 원을 지출한 후 해당 시설을 완공하는 경우 기타증감 사유를 '기타증감_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으로 선택해야 하나, '기타(증)' 사유로 선택하거나 등재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 지출 시 계상한 선급금이 미상계되는 오류 발생

Case Ⅳ: 준공(완수)검사 절차 누락

○ 공사계약을 통하여 국유재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계약 관련 선금은 선금청구메뉴를 통하여 지급**된다.

- 선금 지급 시 계약종류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인 경우 '건설중인자산', 무체재산이나 비용인 경우 '선급금'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 이렇게 생성된 선급금은 등재되는 자산 없이 비용처리만 있을 경우 준공(완수)검사를 통해 비용으로 대체되는데, 업무담당자가 **준공(완수)검사 절차를 누락할 경우 선급금이 비용으로 대체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ex) 홍보사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은 준공(완수)검사 절차를 통해 소모품비로 대체되므로, 준공(완수)검사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선급금 과대, 비용 과소 계상 오류 발생

Case Ⅴ: 검사(기성/준공) 시 '선금청산금액' 입력 누락

○ **공사, 용역 등이 완료되면 'dBrain검사등록*'** 메뉴에서 검사(기성/준공)를 하는데 이때 기성/준공 승인 전에 지급한 선금을 반드시 '선금청산금액'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선금 지급 시 발생한 건설중인자산 /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미지급금이 과대 계상**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ex)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40%를 선급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이후 검사(기성/준공) 시점에 선금청산금액 입력을 누락할 경우, 선급한 건설중인자산이 차감되지 않고, 미지급금이 동액만큼 과대 계상

그림 4-1 ▌선금지급과 청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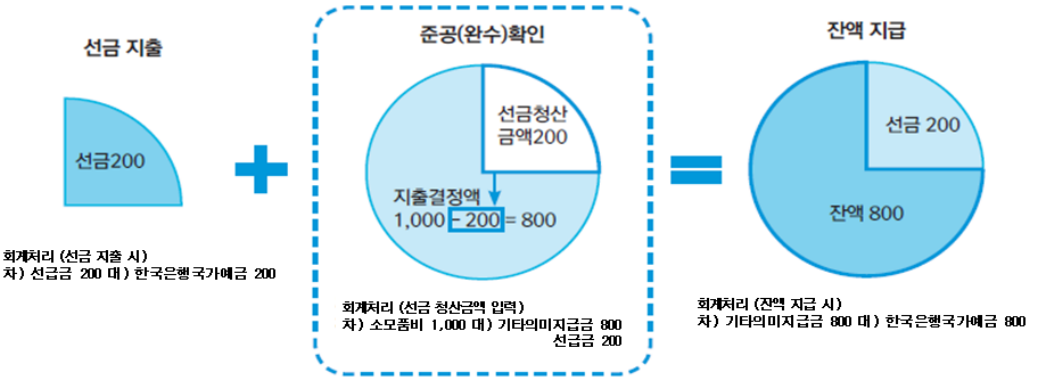

그림 4-2 ▌준공(완수)검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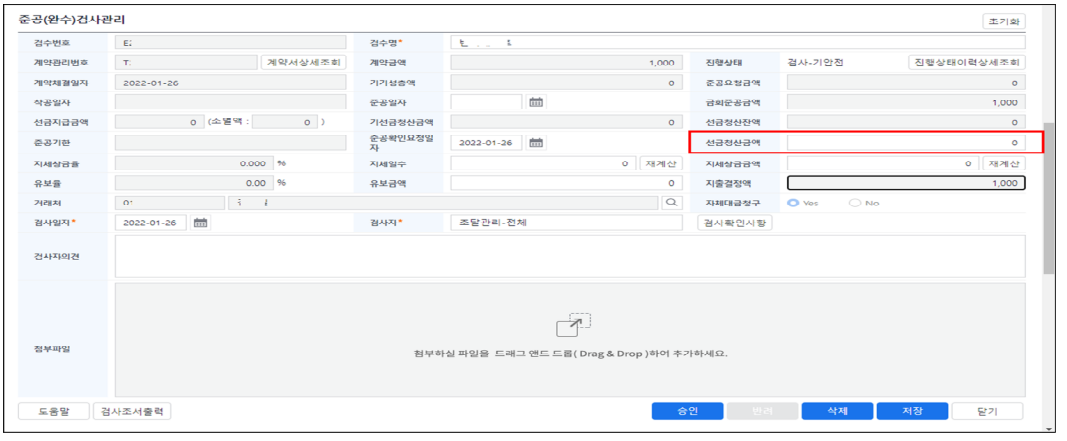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 명세서*'를 통해 일선관서, 거래처, 계약명 등의 정보('상세내역 전체받기' 가능)가 포함된 **상세내역**을 **확보**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계정과목별 명세>계정과목 세부명세서> 8.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12)건설중인자산 명세서]

○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본자산 또는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는 건은 아닌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동일 거래처·금액의 건설중인자산/선급금과 미지급금이 같이 남아있는 경우** 오류일 가능성이 더 높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오류 발견 시 업무담당자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①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발생한 오류 수정

○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은 '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검수요청등록' 메뉴에서 **미완료 대체서** (검수조서전체조회-'검수구분'이 '대체'인 건, '진행상태'가 '검수-기안전'인 건, 검수요청등록-'검수구분'이 '대체'인 건)를 조회한 후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체서를 **승인** 처리할 수 있다.

그림 4-3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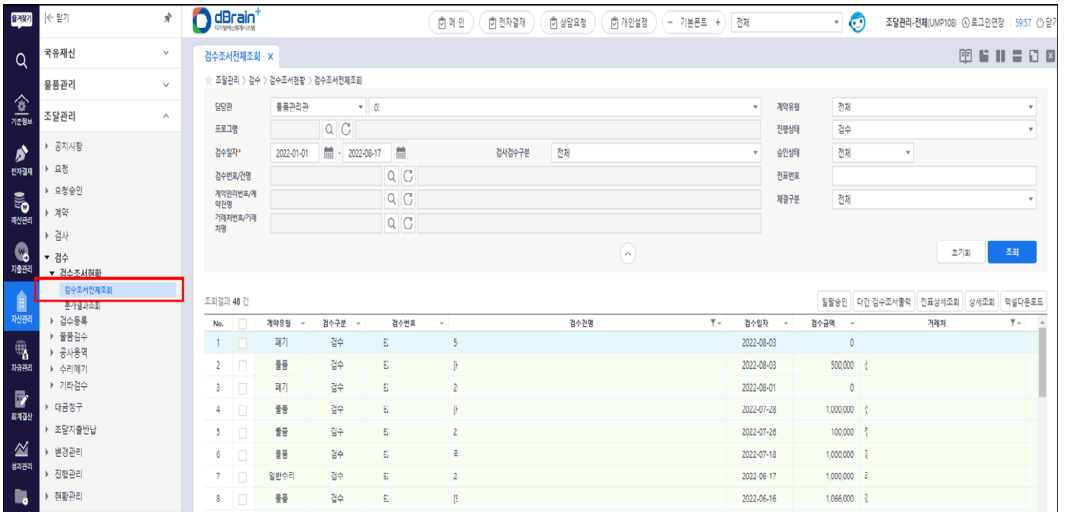

그림 4-4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검수요청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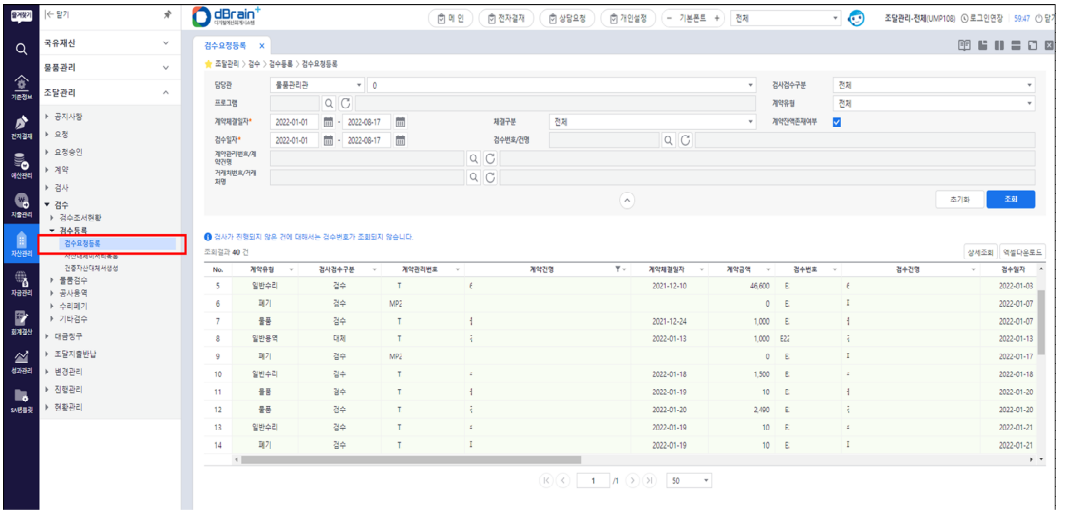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준공검사서 승인 시 자산대체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나, 조달관리 메뉴('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검수요청등록')에서 미완료 대체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한 후 대체서 승인을 통해 자산 등재**할 수 있다.

그림 4-5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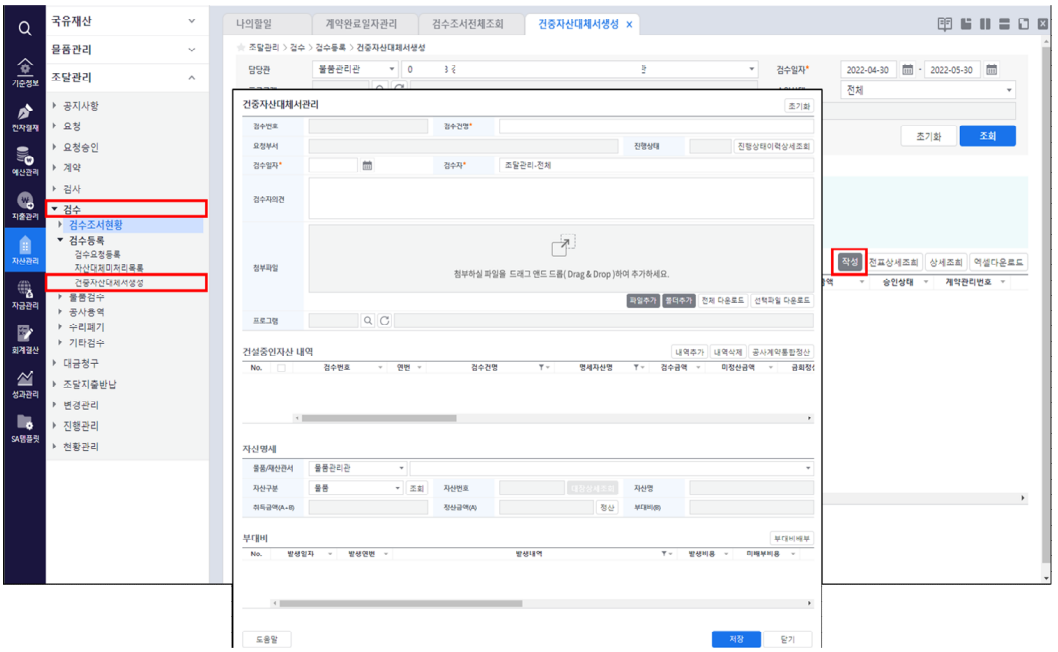

② **'기타증감'으로 자산을 계상하여 발생한 오류 수정**

○ (**'기타증감' 취소가 가능한 경우**) **'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을 등재**하여야 한다.

* 자산관리>국유재산(물품관리)>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그림 4-7 참조)

○ (**'기타증감'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상대 계정과목은 기타증감 처리한 때가 **당기**라면 **기타증감 처리 시 잘못 생성된 계정과목**(ex:전기오류수정이익, 정부외자산수증 등)으로 하고, **전기**라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한다.

결산조정분개로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소멸정리요청서' 메뉴를 통해** 검사 미정산(또는 선금 미청산, 부대비 미배부) 내역으로 조회되는 **건설중인자산도 제거**(이때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음)해야 한다.

그림 4-6 ▌자산관리>조달관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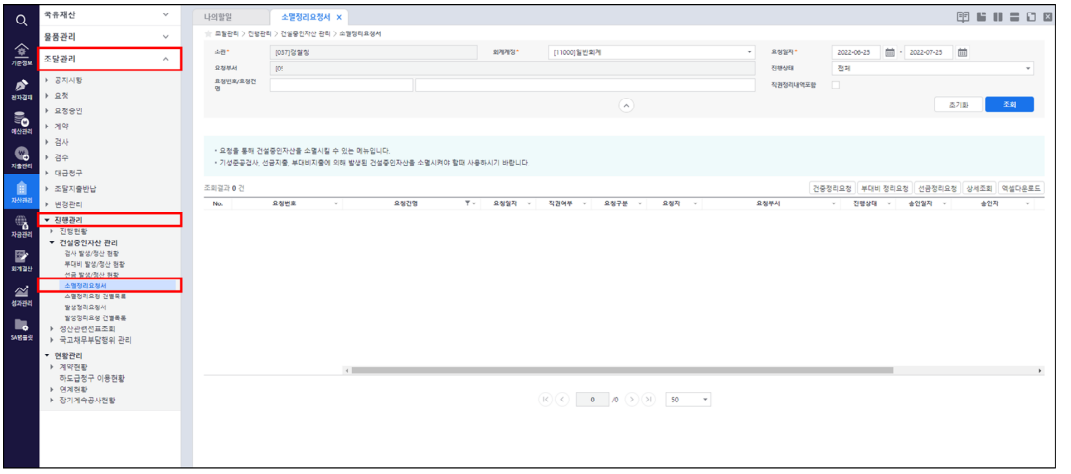

<TIP>

소멸정리요청서는 조달에 남아있는 건설중인자산 내역만 제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을 기타증감으로 직접 대장에 반영한 후 결산담당자가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제거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소멸정리요청서를 통해 관련 조달 내역을 제거해야 한다.

③ 취득이 완료된 자본형성적 경비 관련 선급금 미정산 오류 수정

○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 중 취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 메뉴에서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사유**를 통해 해당 **선급금을 상계하고 자산을 등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만약 당기에 자산 취득 완료 시 '대장관리' 메뉴에서 기타증감의 '기타(증)' 사유를 선택하여 등재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기타증감 사유를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으로 선택하여 자산을 등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림 4-7 ▌자산관리>국유재산(물품관리)>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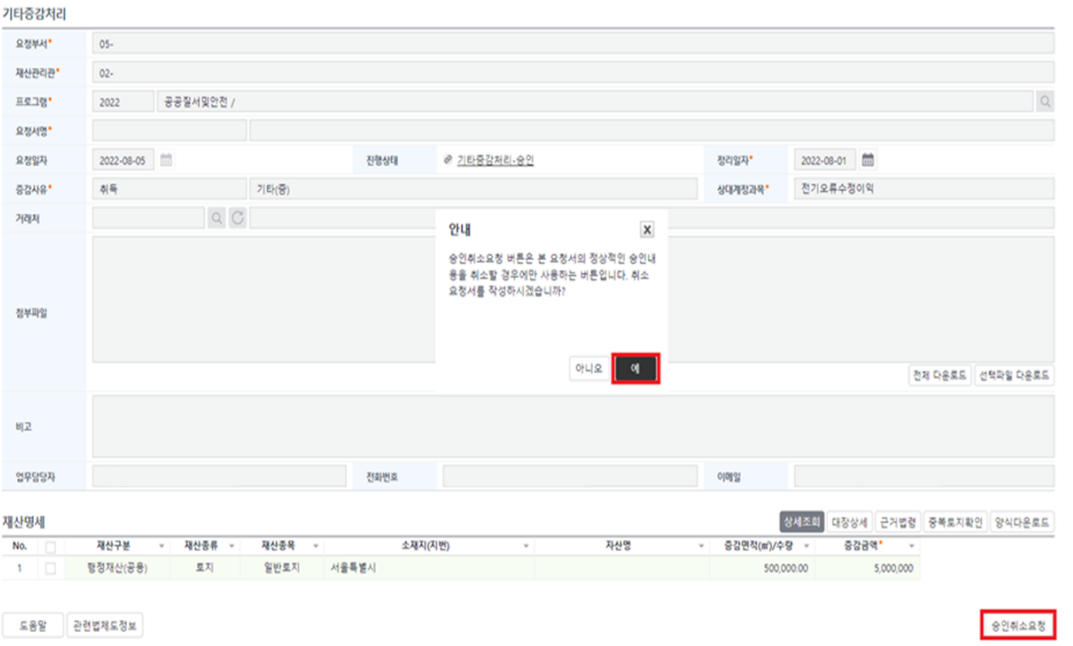

④ 준공(완수)검사를 통한 선금 청산

○ 사업담당자가 **준공(완수)검사를 누락**하여 선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검사등록*' 메뉴를 통한 준공(완수)검사로 선급금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검사>검사등록>나라장터검사등록 또는 dBrain검사등록]

- 이때 지출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검사금액'과 '선금청산금액'에 청산하려는 선금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지출결정금액[3]'이 0원이 되도록 한다.

⑤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한 선금 청산

○ 검사(기성/준공) 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아 선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 조회 후 **[선금청산 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 선금청산금액정정 화면상 '선금 미청산 잔액' 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하고 [승인]하면 **건설중인자산/선급금과 미지급금이 동시에 제거되는 분개가 생성**되어 오류가 수정된다.

3) 지출결정금액=검사금액-선금청산금액

그림 4-8 ▌자산관리>조달관리>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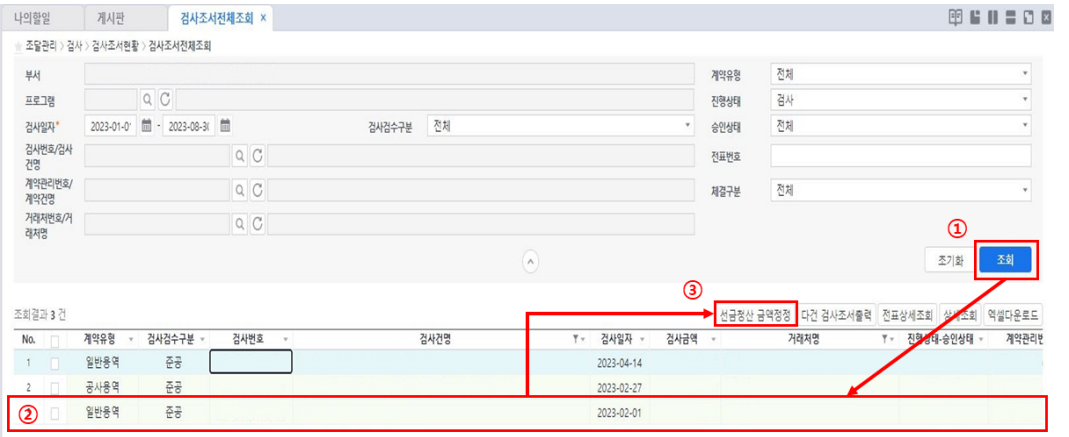

그림 4-9 ▌선금청산금액정정

<TIP>

업무담당자 파악불가 등의 사유로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선급금을 제거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의 오류는 수정되지만 dBrain+상의 선금미청산 내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사업무 재수행'이나 '선금청산 금액정정'은 개별법 대장(국유·물품·채권·채무) 마감 후라도 재무결산상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까지는 가능하므로, 결산조정전표 등록 보다는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 · 과소계상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6	10	6	3	7	10	3	5	8	3	61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특별회계에서 2024년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공항(사회기반시설)이 3,224억 70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모성물품비(프로그램명: 일반공항건설및관리)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자산 인식시점에 대한 판단 오류

국유재산은 취득이 완료된 시점에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국유재산의 취득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진행하여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을 국유재산에 등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또는 반대로 기부채납 받는 자산을 등재 누락하거나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등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유재산에 등재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계약 종류의 선택

국유재산의 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의 취득 성격에 맞는 계약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며, '무체재산취득요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임차/사용계약요청' 메뉴로 업무 처리할 경우 무체재산이 국유재산대장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용지보상 관련 업무는 **용지보상 지출요청*** 메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담당자가 일반지출 메뉴로 용지보상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대장 등재가 누락되어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조달관리>요청>기타계약>용지보상지출요청]

그림 5-1 ▌조달관리>요청>기타계약>용지보상지출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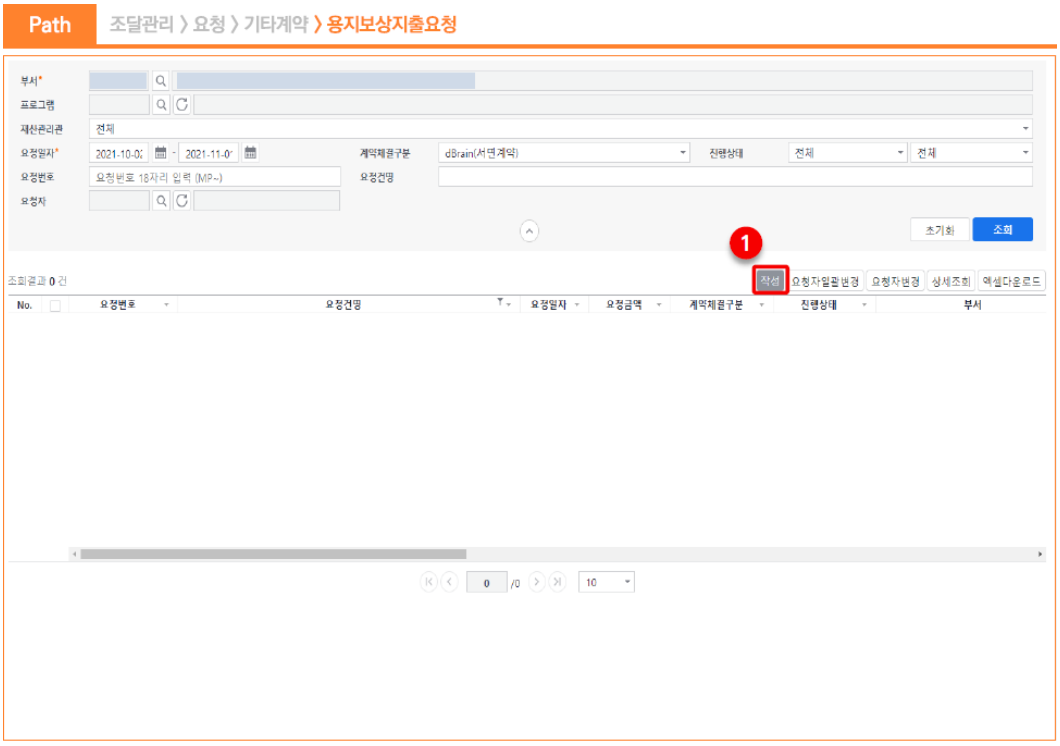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계정과목의 주요 증가 내역을 파악한 후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당기 중 기부채납 받은 자산 내역을 수령하여 **등재 누락된 자산이 없는지,**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미등기 상태이나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 자산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결산담당자는 용지보상비를 비용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 계정과목 중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사항 중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① 취득이 완료된 자산인지 여부 검토 및 오류수정

○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일반유형자산 증가 내역 중 등기대상 토지나 건물이 있을 경우, 각 건별로 당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확인 결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이 발견될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취득이 완료된 자산이 맞는지 재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 만약, 취득이 완료된 자산이 아니라면 **해당 자산을 국유재산대장에서 제거하고 재무결산상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자산대체서를 통해 자산등재된 경우>

해당 건이 업무처리상 자산대체서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에서 국유재산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그림 4-3 참조) 메뉴에서 해당 자산대체서를 조회한 후 취소**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취득(부동산, 무체재산)계약을 통해 자산등재된 경우>

해당 건이 자산대체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된 경우(토지,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에는 **업무담당자가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수량변경및자산합산] 메뉴를 통해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검수내역을 조회한 후, '내역명세'의 '자산구분'을 [건중자산]으로 변경**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2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수량변경및자산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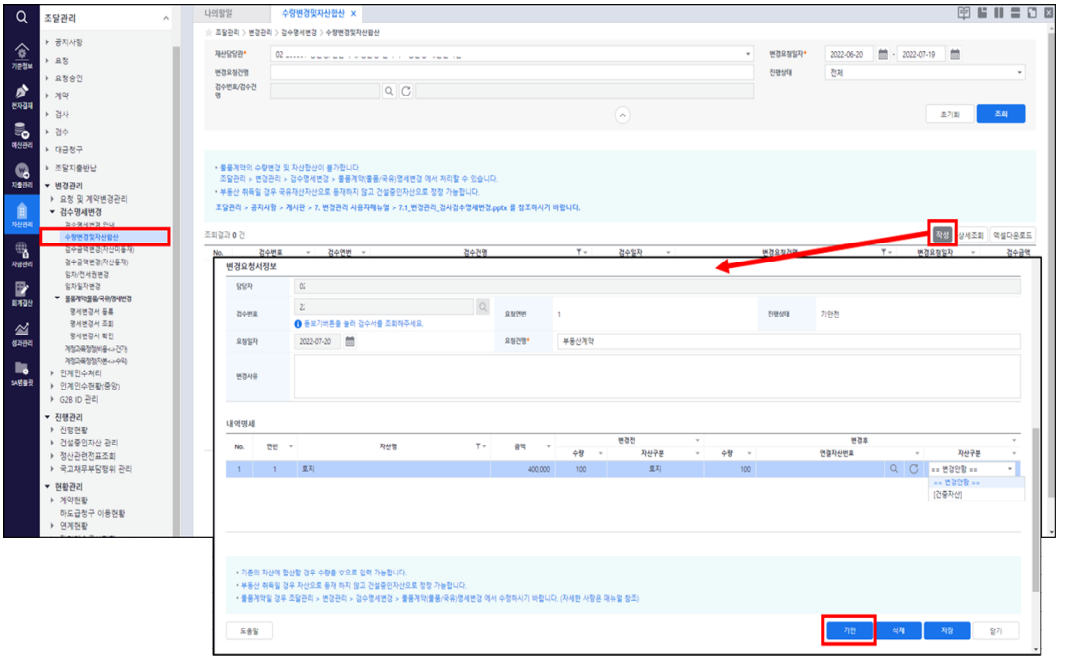

○ 또한,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수령한 당기 기부채납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기 중 누락된 자산이 없는 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산은 국유재산담당자에게 대장 등재 요청**을 해야 한다. 또는 **재무결산상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미등기 등의 사유로 국유재산 대장에 바로 등재하지 못하는 경우**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분개로 해당 자산을 인식**하는 분개를 발생시킨 후 다음 회계연도에 국유재산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전년도에 자산 인식한 결산조정분개를 반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여부 검토 및 오류수정

○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이 미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임차보증금 증가 내역이 있을 경우 보조원장**상 '임차보증금-국유',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조회되는 내역에 대해서 각 업무담당자에게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보조원장]

○ 결산담당자는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결과 계약 종류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임차/전세권 변경' 메뉴에서 '변경구분'을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림 5-3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변경

<'임차보증금-국유'에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로 등재된 경우 해당 메뉴를 통해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채권'에서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채권'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 메뉴를 통해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채권'을 '임차보증금-국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이 채권대장에서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

* [채권관리>채권마감>마감자료조정>대출·기타채권관리]

③ 용지보상 대금을 일반지출로 비용 처리한 오류 검토

○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비용(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의 분개장* 을 조회해서 용지보상 대금을 **비용처리한 건**은 없는지 확인한다. 이때 적요 기재 내용 및 예산상 지출 목(세목)을 통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용지보상 대금으로 추정되는 건(적요에 용지보상, 지장물 등 관련 내용이 기재, 400번대 예산 목 지출 건)은 업무담당자를 통해 비용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분개장조회>분개장조회]

○ 업무담당자에게 용지보상지출요청* 메뉴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연계되어 이미 작성된 지출요청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출로 업무 처리한 건**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 [조달관리>요청>기타계약>용지보상지출요청]

○ 용지보상대금을 비용 처리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용지보상대금 지급 전**이라면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용지보상지출요청** 메뉴를 통해 자산을 등재하도록 요청한다.

○ **용지보상대금 지급 후**라면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을 통해 자산을 등재하고,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잘못 발생한 계정과목을 상계시키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용지보상대금 비용처리	지급수수료	5,000,000,000	현 금	5,000,000,000
기타증감_기타(증)	토지	5,00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0,000
결산조정분개 입력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0,000	지급수수료	5,000,000,000

<TIP> 해외소재 국유재산 취득 완료시점

1. 일부 회계실체의 경우 해외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해당 국가에 등기제도가 없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허가만으로도 취득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등기제도가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각 상황별(인수시점, 사용수익인식시점 등)로 취득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취득 완료 시점에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결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6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 · BTL 관련 회계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BTL 관련 회계처리 오류	5	1	2	6	5	2	1	1	3	3	29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특별회계에서 2024년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된 서부내륙고속도로 자산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부여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속도로 공사에 대해 국가가 부담한 공사지출금을 선급금 및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사회기반시설), 구축물(사회기반시설), 건물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 구축물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각각 943억 8,245만 원, 2조 1,340억 1,264만 원, 738억 7,040만 원, 1조 6,702억 2,969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선급금, 기타민간보조비(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및관리)가 각각 2,980억 300만 원, 957억 300만 원 과대계상, 전기오류수정이익(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및관리)이 905억 8,900만 원 과소계상되었으며, 관련 상각비를 미인식함에 따라 도로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건물감가상각누계액(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각각 46억 4,249만 원, 1억 9,663만 원, 44억 4,586만 원 과소 계상, 건물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 구축물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각각 1억 5,390만 원, 34억 7,965만 원 과대 계상,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36억 3,354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사용수익권 인식 오류

BTO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관리' 메뉴에서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사용수익권 대장을 먼저 등록한 후, 기부채납이나 기타증감* 메뉴를 통해 자산을 등재하면서 사전에 등록한 '사용수익권대장'을 선택하고 '사용수익권대장가액'을 입력해야 한다.

* 기타증감 취득사유 중 '누락재산등록',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은 사용수익권 인식 가능

자산 등재 시 '사용수익권대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권 누락 오류가 발생하며, '사용수익권대장'을 선택하더라도 '사용수익권대장가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사용수익권 금액에 오류가 발생한다.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하나 불일치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6-1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사용수익권>사용수익권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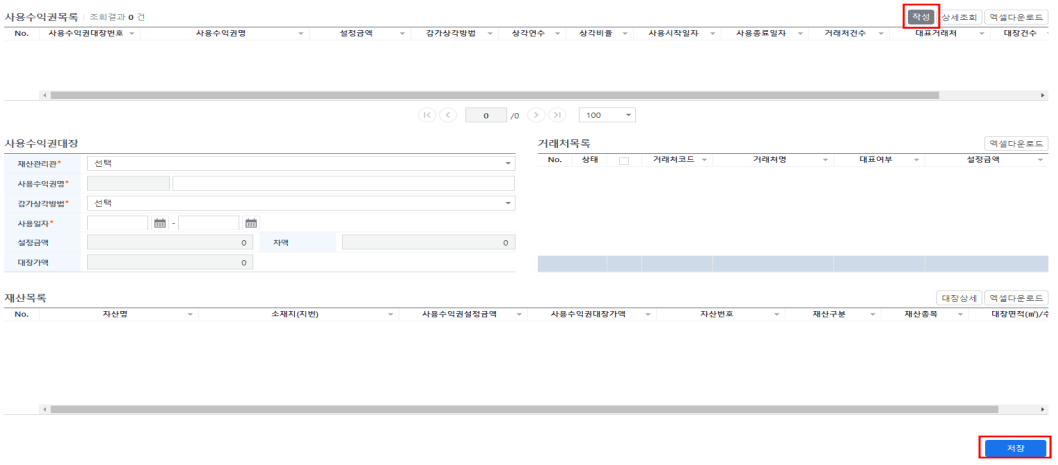

그림 6-2 ▌자산관리>국유재산>취득>기부채납>기부채납승인요청

그림 6-3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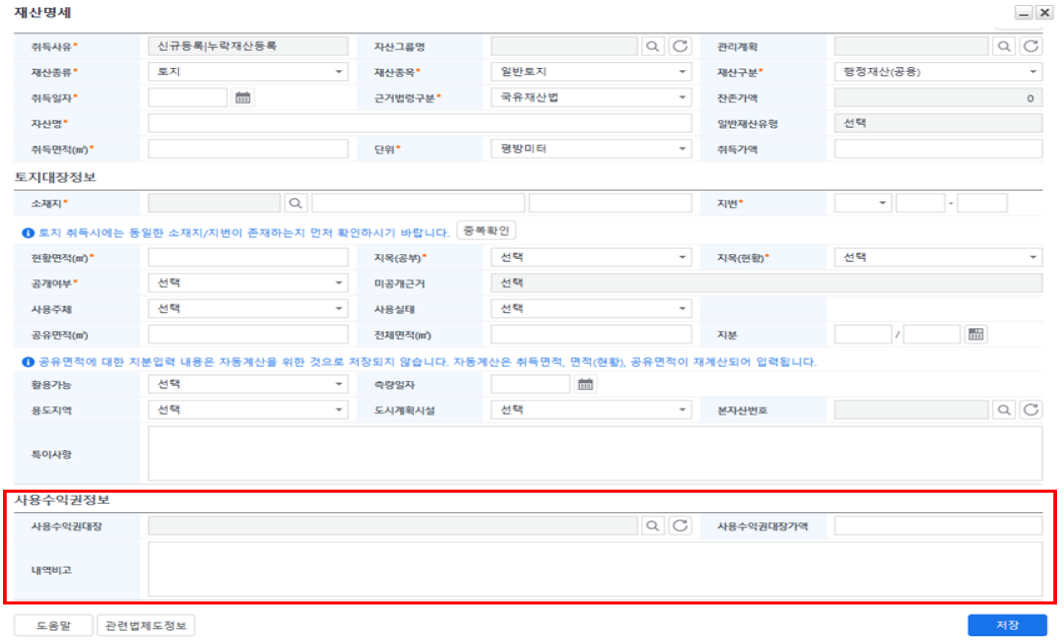

Case Ⅱ: 사용수익권 상각 오류

사용수익권 상각은 국유재산 마감 시 재산관리관이 '조정자료입력(사용수익권 상각)' 메뉴에서 사용수익권 상각금액을 직접 산출하여 '결산조정금액'에 입력하면 된다. 이때 상각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6-4 ▌자산관리>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조정자료입력>조정자료입력(사용수익권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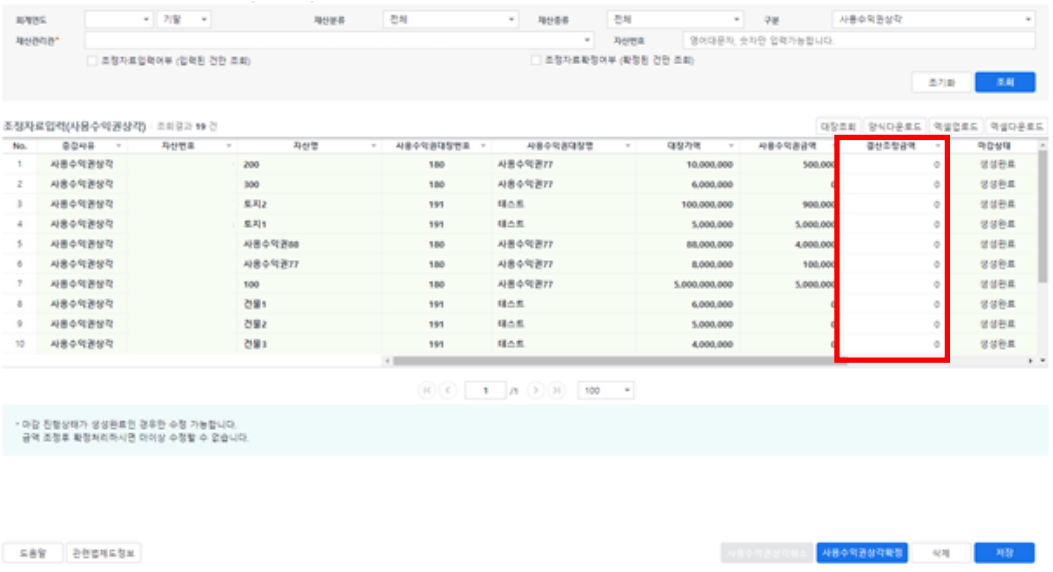

사용수익권 대장 등록을 통해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고 결산조정분개로 사용수익권을 입력하는 경우 기부채납 받은 당시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수익권 상각도 결산조정분개로 해야 하므로 사용수익권 상각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수익권 인식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BTO 계약 내역 확보

BTO 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해야 하므로, BTO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로부터 계약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 내역 검토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자산의 상대 계정과목으로 정부외자산수증이 계상되므로,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자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증가 내역 검토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큰 금액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자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결산담당자는 당기 계상된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변동원인(당기 신규 BTO 계약 증가 등)을 파악한다. 또한, 부처의 과거 감사원 지적사례 중 사용수익권 상각 누락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확보한 자산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수익권 인식 및 상각 여부를 검토한다.

① 기부채납승인요청 내역 검토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당기 중 **기부채납된 자산 내역**을 수령하여 **BTO 계약 내역 및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 내역과 비교 검토하고,** 무상사용권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의 금액과 사용기간을 미입력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② 기타증감 처리내역 검토

국유재산담당자에게 dBrain^{+}에서 당기 중 기타증감을 통해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용수익권을 계상해야 하나 누락한 것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③ 사용수익권 인식 금액 검토

사용수익권을 최초 인식할 때는 거래상대방(수증자)의 무형자산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당기에 인식한 사용수익권 금액이 거래상대방(수증자)의 무형자산 금액과 일치하는지, 거래상대방(수증자)의 무형자산 금액이 회계감사 후 수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용수익권 인식 금액을 검토한다.

④ 사용수익권상각이익 검토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당기 계상된 사용수익권 상각과 관련 계산 내역을 수령하여 직접 재계산을 수행하여 검증한다.

➤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당기에 등재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오류 정정방법

○ 당기에 자산 및 사용수익권을 등재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한 업무를 취소한 후 올바르게 업무를 다시 처리한다.

○ 당기에 '기부채납' 메뉴를 통해 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용수익권 인식을 누락하거나 사용수익권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기부채납검수' 메뉴에서 승인 처리한 기부채납검수서를 취소한 후 기부채납승인요청서를 다시 작성[4]한다.

그림 6-5 ▌자산관리>국유재산>취득>기부채납>기부채납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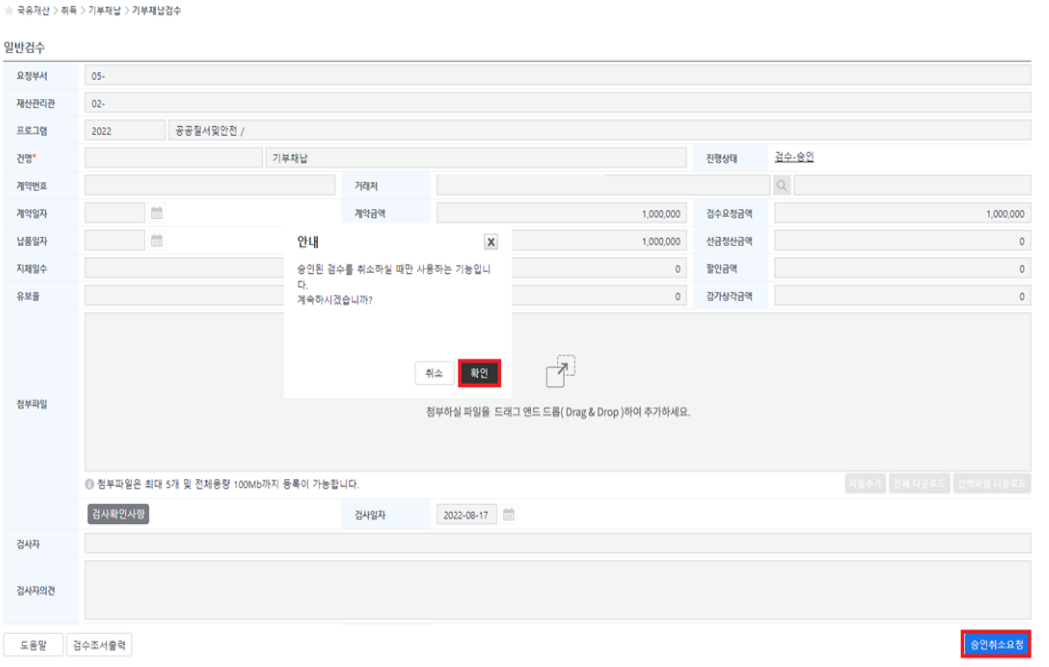

○ 당기에 '기타증감' 메뉴를 통해 자산을 등재하면서 사용수익권 인식을 누락하거나 사용수익권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당기에 수행한 '기타증감' 업무를 취소*한 한 후 기타증감 처리를 다시 수행[4]한다.

*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그림 4-7 참조)

4) 만약 사용수익권 대장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사용수익권관리' 메뉴에서 사용수익권 대장부터 등록한 후 각 업무를(기부채납 또는 기타증감) 수행한다.

② 전기에 등재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오류 정정방법

○ 전기에 자산 및 사용수익권 등재했던 업무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한 업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관리의 '증감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권 오류를 정정한다.

○ 기타증감처리 화면에서 증감사유를 '증가, 오류정정/계산착오' 또는 '증가, 오류정정/입력착오'로 선택한 후, '재산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기타증가 화면이 팝업된다.

그림 6-6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기타증감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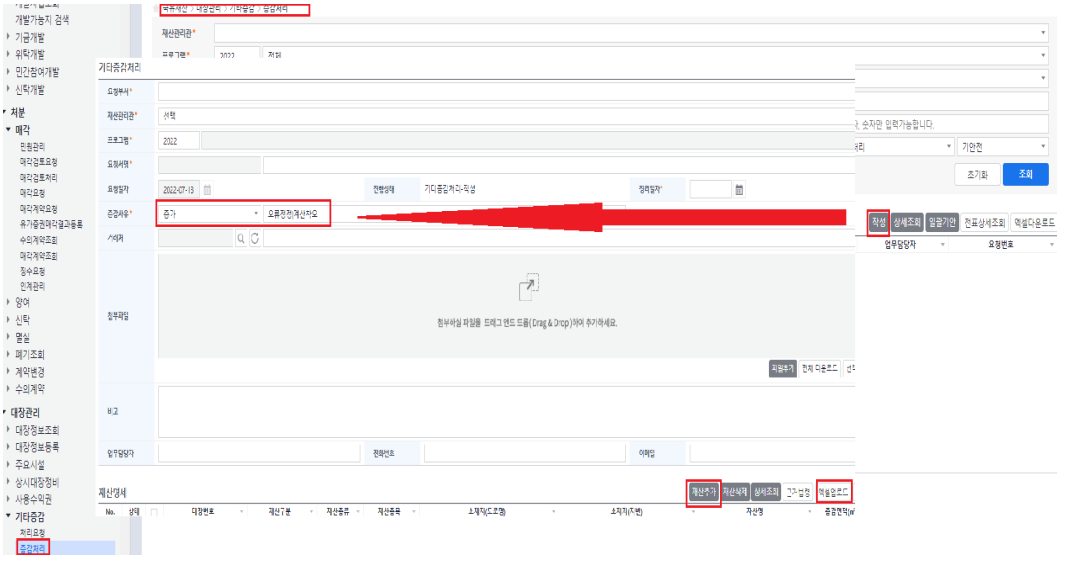

○ 기타증가 화면에서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관련 자산의 기본정보가 나타나며, 사용수익권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수익권 대장'을 선택한 후 '증가사용수익권대장가액'에 수정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만약 사용수익권 대장가액을 감소시키려면 '증가사용수익권대장가액'에 부의 금액을 입력하면 사용수익권 감소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그림 6-7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기타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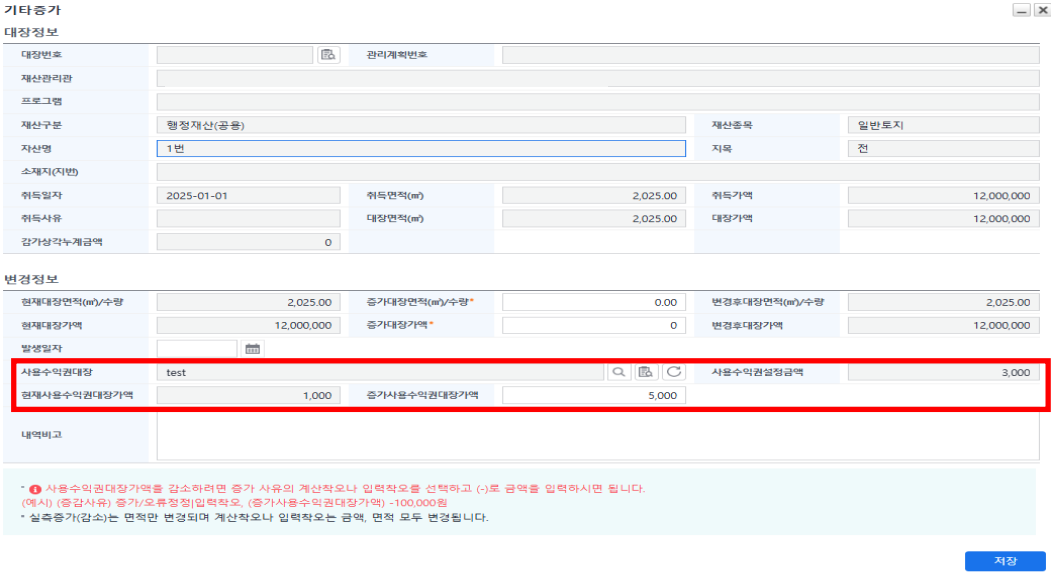

③ 사용수익권 상각 오류 정정방법

○ 사용수익권 상각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조정자료입력(사용수익권 상각)' 메뉴에서 '사용수익권상각취소' 버튼을 클릭한 후 '결산조정금액'을 수정하면 된다.

그림 6-8 ▌자산관리>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조정자료입력>조정자료입력(사용수익권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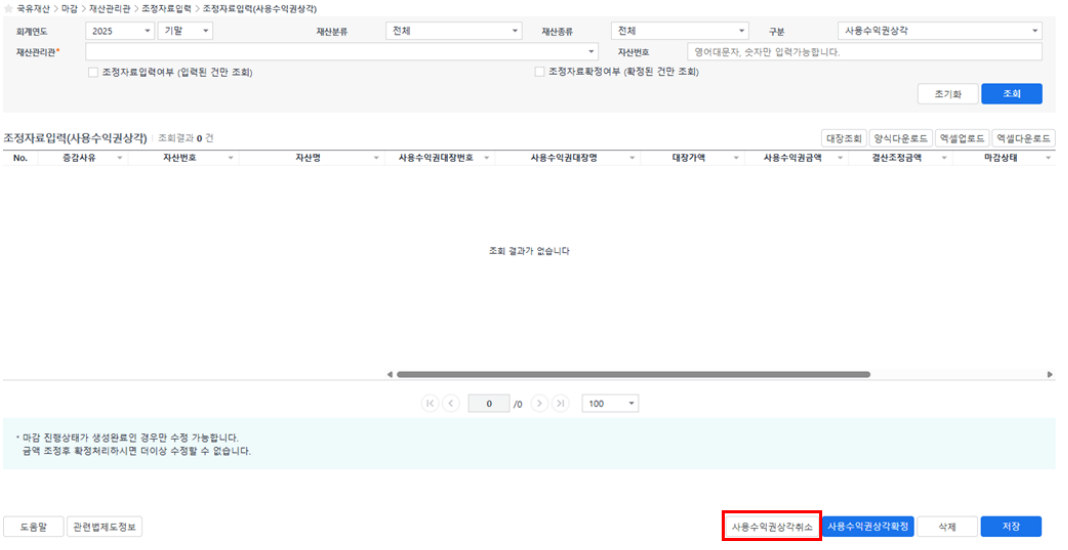

7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3	2	2	2	4	2	-	7	7	2	31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청 일반회계에서 최초계약과 후속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들 중 일부 계약번호를 혼동하여 선급금 및 미지급금이 각 계약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일부 사업은 자산으로 관리전환시키지 않고 연구개발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일부 사업은 완료되어 관리전환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거나, 표준단가를 사용하는 일부 품목과 관련하여 관리전환 시 자산 금액을 과소 등재하여 구매가격차이 등 평가이익을 과대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선급금(유동자산) 7,936억 1,361만 원, 기타의장기미지급금(기타비유동부채) 231억 1,126만 원, 기타평가이익(비배분수익) 1,810억 9,688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일반연구개발용역비(프로그램명: 지휘정찰사업, 기동화력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 유도무기사업, 방위사업정책지원) 3,546억 4,227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프로그램명: 기동화력사업) 134억 1,326만 원, 정부내자산기부(재원의이전) 2,213억 4,994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관리전환 회계처리 오류

○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수품의 대금지급은 방위사업청이 수행**(방위사업청 선급금 계상)하고, **국방부가 군수품을 수령**하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관리전환(방위사업청 선급금 상계)[5]을 수행한다.

- 자산 수령 시점에 국방부의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이 아니라 **'재물조정에 의한 자산등재'로 업무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계상한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 또한, 방위사업청이 관리전환과 관계없이 **선급금을 임의로 차감시킨 경우**에는, 국방부 자산등재 시 방위사업청에서 상계할 선급금이 없어

5) 국방부에서 군수품을 수령할 때 자원관리장비체계에 자산정보를 입력하여 자산등재를 하면 자동으로 관리전환이 수행되어 방위사업청의 선급금이 차감

미지급금이 자동생성(정부내자산기부 XX/미지급금 XX)**되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출자금 중복 계상 오류

일반회계 출자금의 경우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자산으로 해당 정부출자금을 관리하는 경우[6]가 있는데, 이때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출하는 회계실체에서도 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정부출자금 중복계상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해당 부처에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또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정부출자금과 같은 자산취득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재산관리관이 **군수품 수령** 관련 **정보 입력**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계약관련 정보를 적시에 국방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출자금 관련 결산조정전표 입력

○ 예산 지출 부처에서는 지출 시 생성된 분개(정부출자기업출자금××/국고수입××)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출자기업출자금**을 **차감**하면서 **"기타의기타이전비용"을 증가**시키는 결산조정전표(기타의기타이전비용××/정부출자기업출자금××)를 입력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출자금 국유재산 등재를 위해 기타증감의 '현금출자'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해야 하고 이때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부출자기업출자금**을 **증가**시키면서 **"기타의기타이전수익"로 회계처리**하는 결산조정전표(정부출자기업출자금××/기타의기타이전수익××)를 입력해야 한다.

---

6) 일반회계의 국유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에서 관리(「국유재산법」 제8조)

○ 예산 지출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위와 같이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여 생성된 **‘기타의기타이전비용’과 ‘기타의기타이전수익’은 국가 결산 보고서 작성 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 하므로 양쪽에서 올바르게 결산 조정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계정과목 선택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0	16	6	8	10	9	7	6	6	87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청 일반회계에서 2022년 12월과 2023년 8월 각각 준공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 공사와 관련한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을 본계정으로 대체하면서 토지조성비용 1,282억 원을 도로-토지가 아닌 도로-구축물로 잘못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토지(사회기반시설)가 1,282억 484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프로그램명: 새만금개발) 101억 7,988만 원, 도로감가상각누계액(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 37억 6,964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도로-구축물(사회기반시설) 1,282억 484만 원, 도로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새만금개발) 64억 1,024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세부·세세부 항목 선택 오류

'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은 지출하는 비용의 계정과목을, '세입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은 수납하는 현금과 관련된 수익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지출요청서, 징수요청서 또는 공사용역요청서·용역계약요청서(자산명세에서 '비용'을 선택한 경우)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해당 지출 또는 수입과 관계없는 예산과목 및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에 집계되는 비용 또는 수익 계정과목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세부·세세부항목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잡손실 또는 잡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계약요청서 작성 시 명세 선택 오류

각종 계약(물품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8-1 ▌물품명세(요청)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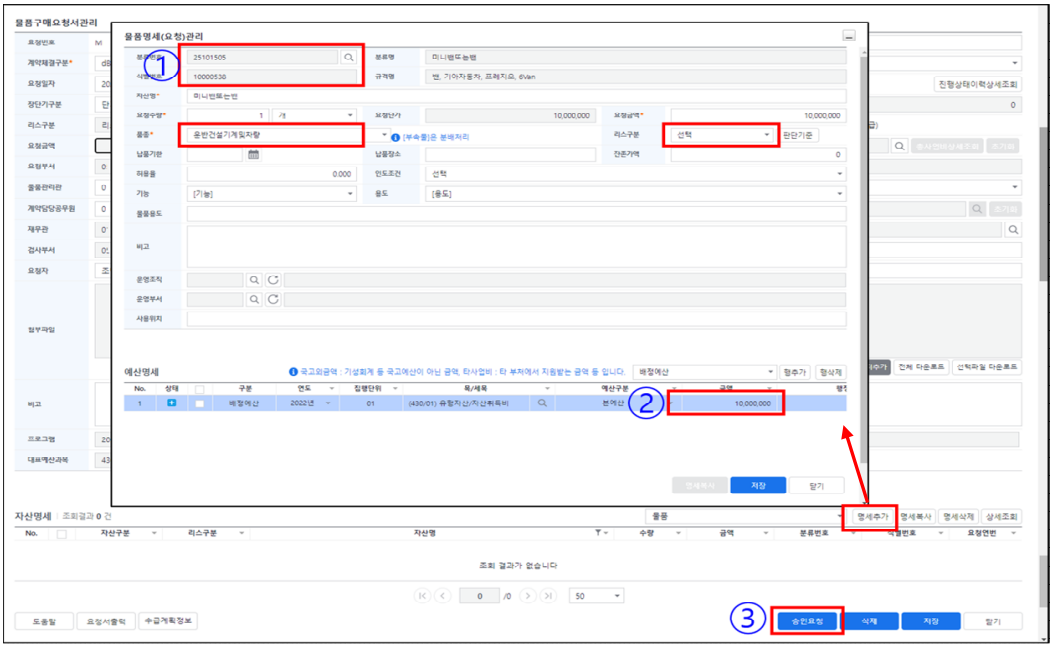

또한, 각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요청서에서 선택한 명세에 따라 생성되는 계정과목이 달라진다.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비용 및 무형자산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선급금'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향후 비용 및 무형자산으로 처리될 계약 건에 대해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항목을 선택하거나, 그 반대로 업무처리한 경우 선금지급 시 잘못된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Case Ⅲ: 과년도 지출금 반납 시 업무 처리 오류

전기 이전에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원금은 과오인지 과오가 아닌지에 따라 각각 '과오지급금회수금' 또는 '지출금반납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도 각 원금과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① '수입' 메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당기에 반납 받는 경우 dBrain+ 상 수입 업무가 아닌 지출 업무를 통해 징수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입 업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지출금반납금' 이나 '과오지급금회수금' 계정과목으로 연계된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할 수 없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수입' 메뉴로 업무 처리할 경우 dBrain+ 상에서 지출 당시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를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항목이 비배분수익으로 처리되는 원가배분 오류도 발생한다.

② '지출' 메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과년도 지출 반납 업무를 지출 업무에서 올바르게 수행하더라도 사유 선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사유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
사유를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지출금'으로 선택할 경우 '지출금반납금'으로 회계처리되며, '과오의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지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회계처리 되므로 사유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등을 통하여 **계정과목 선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과목(잡손실, 잡이익, 수선유지비, 출연비,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등)이 당기에 발생했는지와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감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과목의 분개장을 조회*하여 적요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해당 항목의 성격이 관련 계정과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분개장조회>분개장조회]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 수정

○ 지출요청서상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계정과목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할 지출 건을 조회한 후 [계정과목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른 계정과목과 관련된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8-2 ▌(일반지출) 지출관리>지출요청>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관서운영경비) 지출관리>관서운영경비>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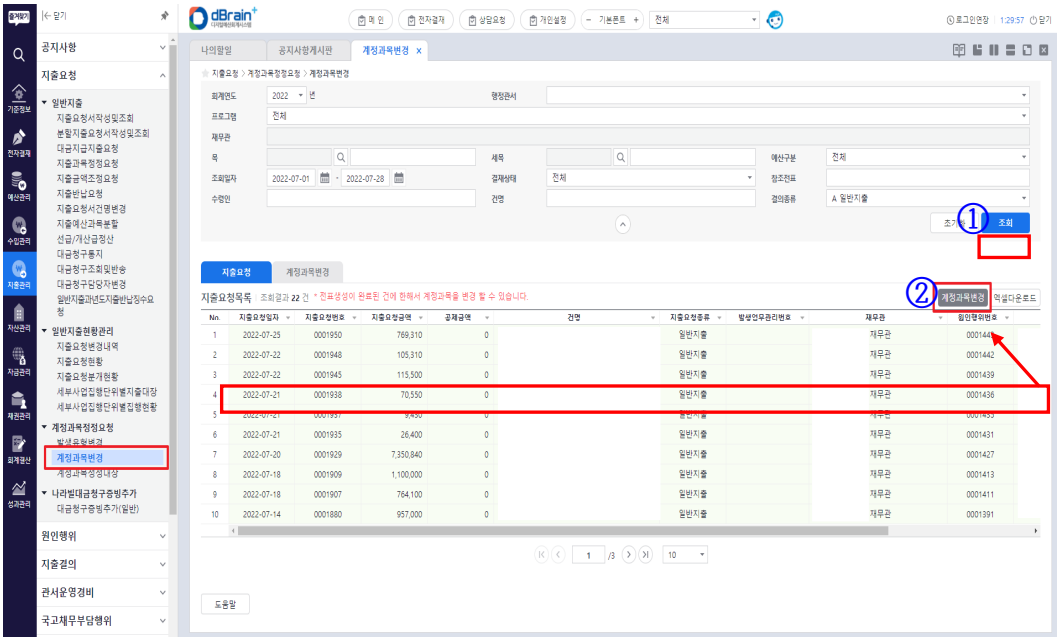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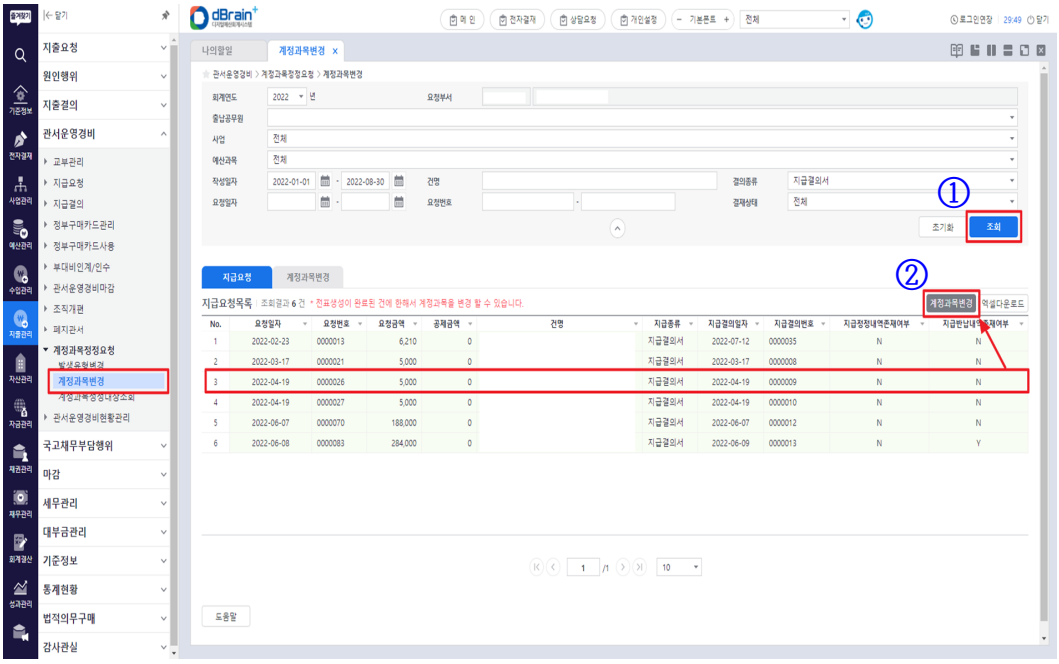

○ 징수요청서상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수입과목정정요청' 메뉴에서 **수입과목정정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요청일자'를 '수납일자'와 동일한 회계연도로 변경한 후 예산과목 조회를 통하여 올바른 수입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8-3 ▌수입관리>요청관리>변경요청>수입과목정정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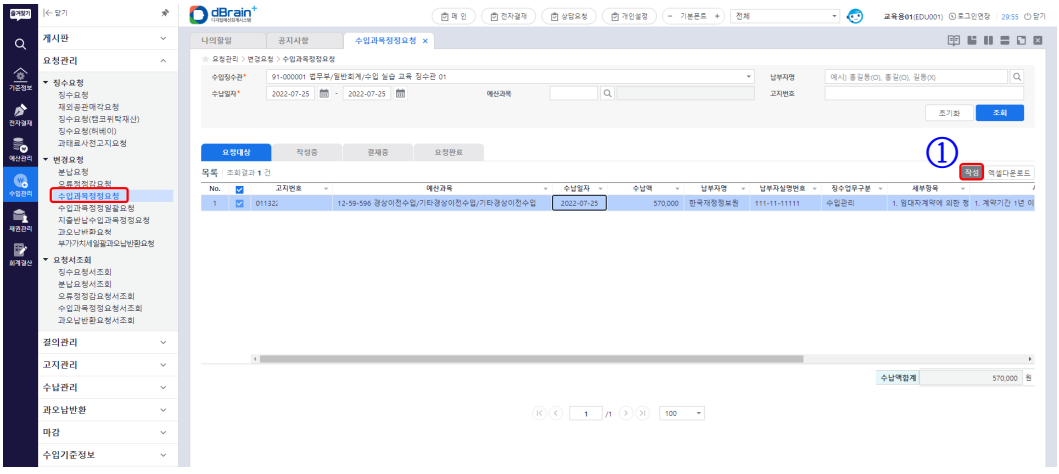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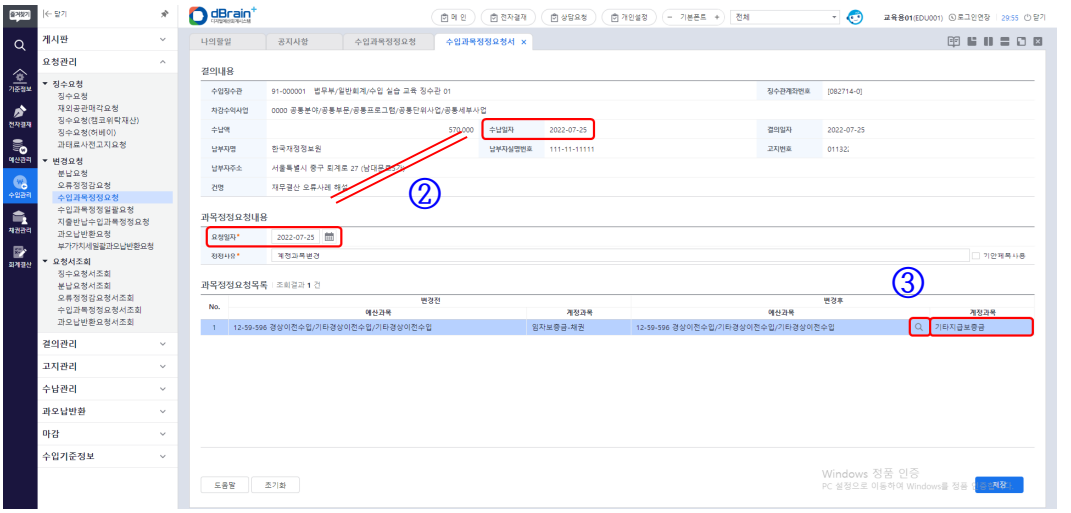

○ 공사용역요청서·용역계약요청서(자산명세에서 '비용'을 선택한 경우)상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검사(기성/준공) 단계에서 계정과목을 정정**하거나,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 **검사(기성/준공)단계에서 계정과목의 정정**은 'dBrain검사등록' 화면에서 조회된 내역 중 정정하고자 하는 기성검사서를 선택하여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검사요청서(기성확인)관리' 화면에서 할 수 있다.

  이 화면의 '자산명세' 중 자산구분이 '비용'인 대상 건에 대해서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기타명세관리' 화면에서 계정과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세부/세세부항목내역' 화면에서 올바른 계정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8-4 ▌자산관리>조달관리>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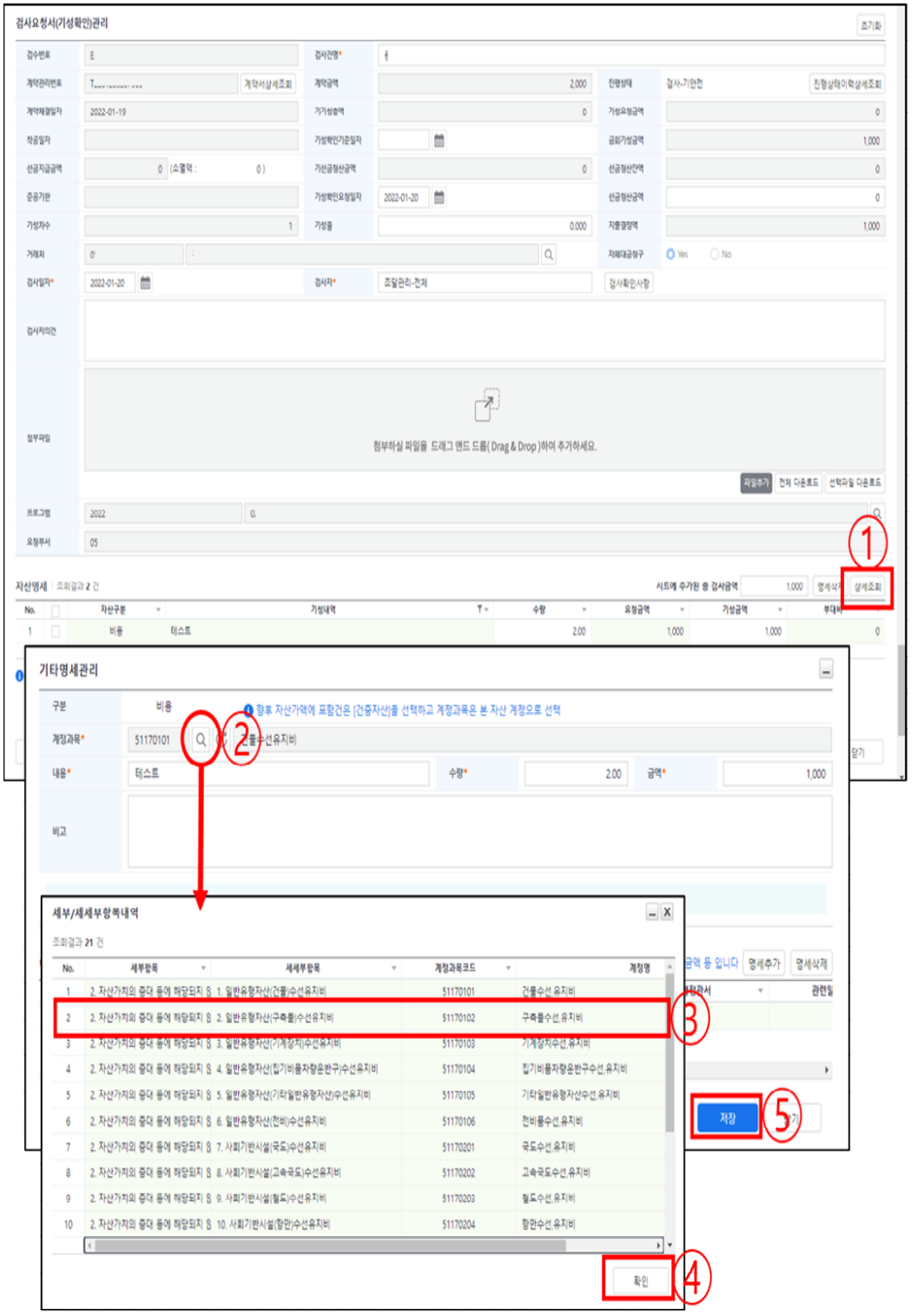

-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계정과목을 정정하는 방법**은 '변경자산구분(건중자산)'을 비용으로 선택 후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기타명세(비용)관리' 화면에서 계정과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세부/세세부항목내역' 화면에서 올바른 계정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8-5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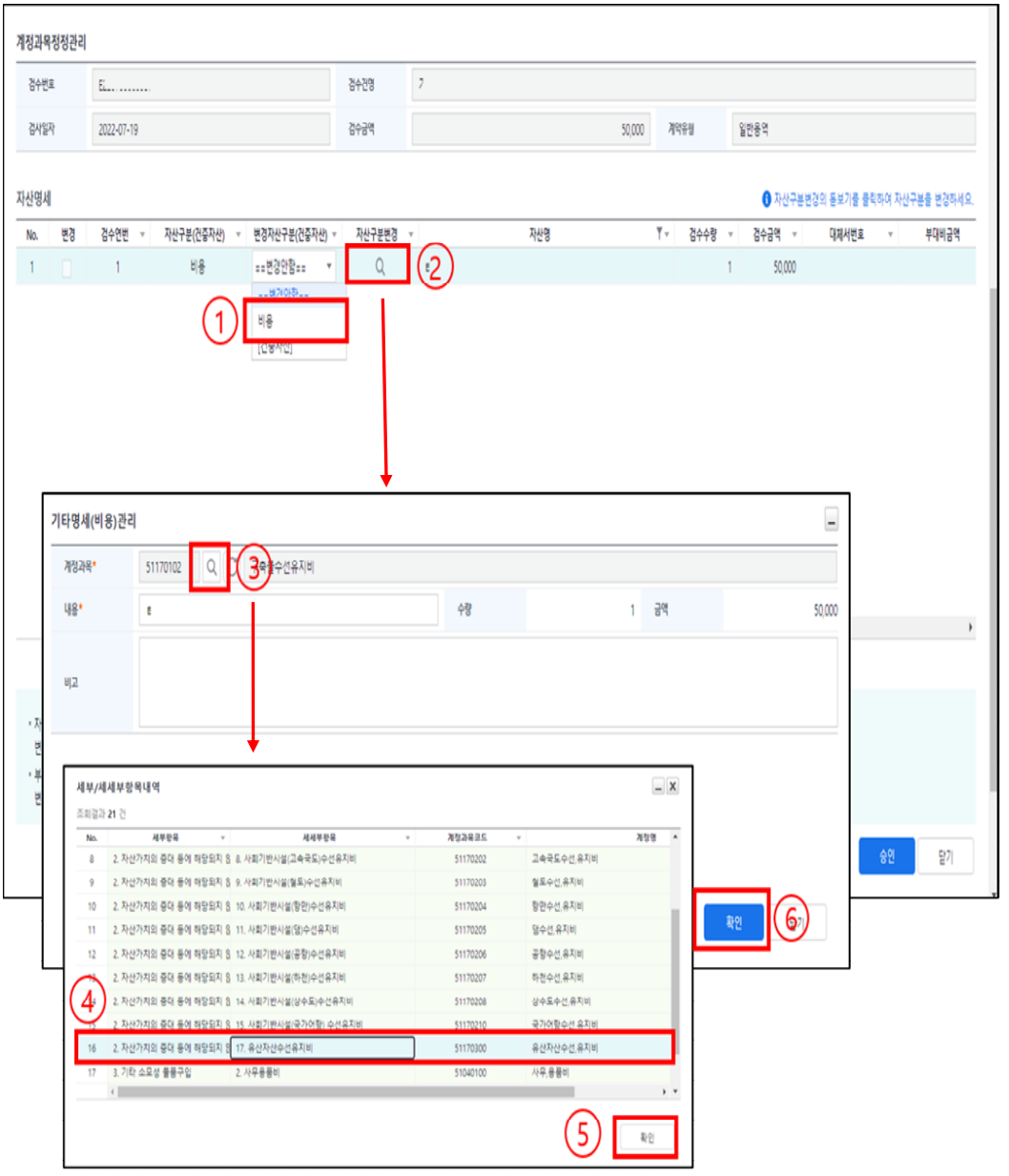

② 선금 지급액 관련 명세 선택 오류 수정

○ 자산명세 선택 오류로 인하여 선금 지급액이 잘못된 계정과목으로 연계된 경우(예: 건설중인자산과 연계되어야 할 내역이 선급금과 연계된 경우) 업무담당자가 **검사(기성/준공) 시점에 명세를 변경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말 현재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납품 미완료 등)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입력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결산담당자는 향후 검사 시점에 명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결산조정분개를 역분개 처리해야 한다.

③ 과년도 지출금 반납 시 업무 처리 오류 수정

○ 과년도 지출금 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은 해당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 **'수입' 메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은 기존에 '수입' 메뉴에서 했던 업무처리를 취소한 후, **업무담당자(지출관 또는 집행단위담당자)에게 수입이 아닌 지출 메뉴(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에서 징수요청**[7]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지출 메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지출 당시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가 같이 연계되므로 프로그램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림 8-6 ▌지출관리>지출결의>지출반납결의>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일반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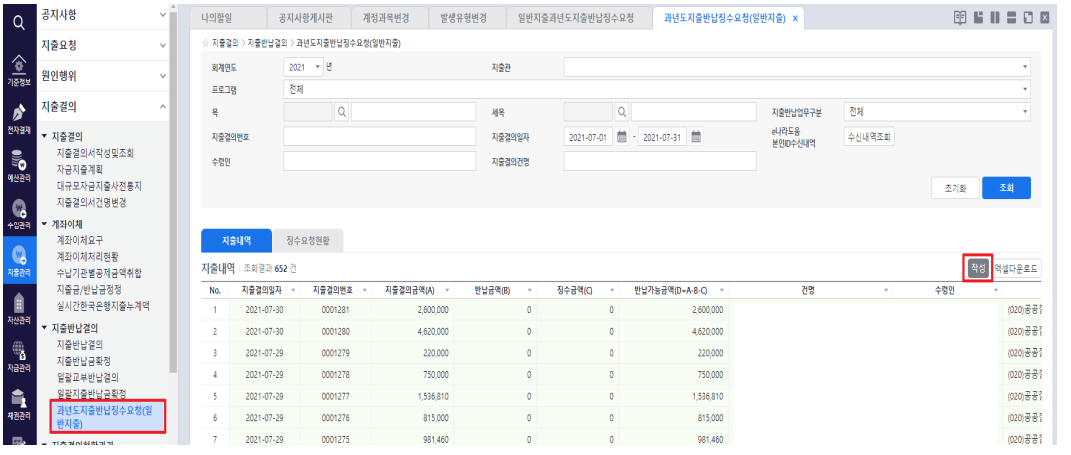

* 지출관은 위의 화면에서 징수요청하고, 집행단위담당자는 [지출관리>지출요청>일반지출>일반지출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 경로에서 징수요청한다.

---

[7] 상세한 오류 정정 방법은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수입·지출)_제2장 수입_2절 지출금 반납_1. 과년도 지출금의 반납 시 업무처리 오류_(3) 오류 정정 방법' 참조

- **'지출' 메뉴에서 올바르게 징수요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유를 잘못 선택하여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은 '지출반납수입과목정정요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그림 8-7 ▌수입관리>요청관리>변경요청>지출반납수입과목정정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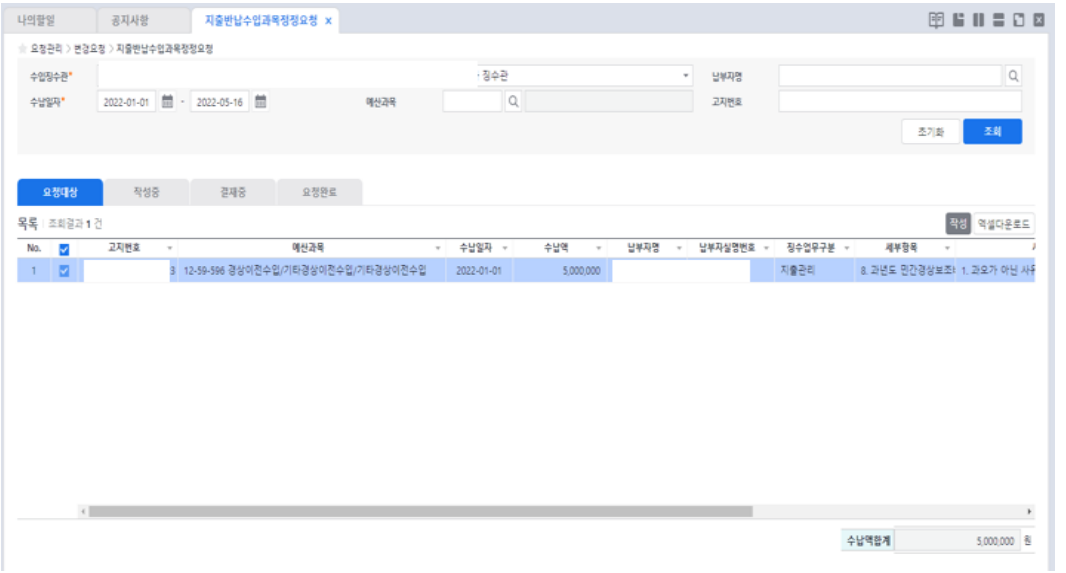

9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10	13	8	9	16	6	18	4	3	3	90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일반회계에서 덴마크 관저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기재된 미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산정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일반유형자산) 330억 2,890만 원,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 278억 6,806만 원,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이 51억 6,084만 원 과대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가격평가대상 자산 선택 오류

○ 토지재평가는 국유재산담당자가 국유재산 가격평가 메뉴에서 수행한다. **'가격평가진행현황' 메뉴에서 [정보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가격평가정보를 생성한 뒤 '가격평가증감처리'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가격평가증감처리상세' 화면이 팝업되며, 해당 화면에서 [재산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임에도 이 단계에서 **선택을 누락하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평가가 수행되지 않는다.**

그림 9-1 ▌자산관리>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진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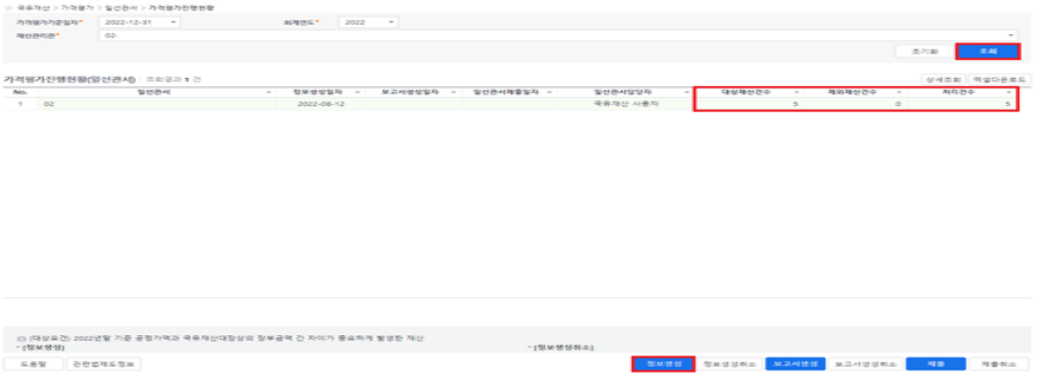

그림 9-2 ▌자산관리>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증감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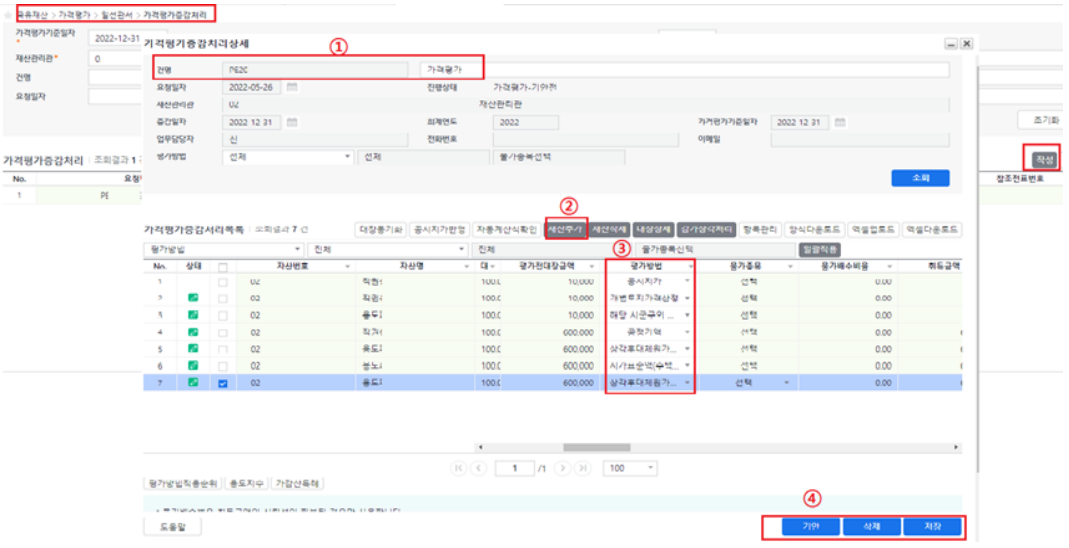

○ 재평가 대상이 아닌 자산(공정가액과 장부가액 간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자산 등)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도 재정상태표에 자산 금액이 왜곡 표시된다.

<TIP>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 및 중요성 판단 기준

1.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고정성기계장치, 선박및항공기, 입목)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 포함)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한다.

2.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했는지는 질적 요소(외부요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 및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소)에 따라 판단 후, 양적 요소(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 대비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 Case Ⅱ: 공정가액, 지번 등 평가 관련 정보 입력 오류

○ '가격평가증감처리'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가격평가증감처리 상세' 화면이 팝업되며, 해당 화면에서 재산 추가 후 '평가방법'(공정가액, 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산정 등)으로 **'공정가액', '시가표준액'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력평가금액'에 담당자가 공정가액 등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입력평가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기존 대장금액 입력 등) **재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이 잘못 입력된 경우**(토지대장 상 지번 오류 기재, 토지의 합병 과정에서 면적 과대 또는 과소 기재 등)에도 **재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Case Ⅲ: 평가방법 순서 적용 오류

○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금액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 국유재산담당자가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이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 공정가액이 없어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다른 순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 및 재평가손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각 자산별 대체적 평가는 아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구 분	대체적 평가방법
토지	(1) 공시지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3)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해당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 (4) 해당 토지가 속한 법정동(「지방자치법」 제3조의 정부기관의 법률행위시 이용되는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최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건물	(1) 주택(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공시가격 주택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2) 상각후대체원가
구축물	(1) 시가표준액 (2) 상각후대체원가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	(1) 시가표준액 (2) 상각후대체원가
입목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나 다만,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 Case Ⅳ: 상각후대체원가법 계산 오류

○ 대체적 평가방법 순서에 따라 상각후대체원가로 재평가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ext{상각후대체원가} = \text{재조달원가} \times \frac{\text{잔존내용연수}}{\text{내용연수}}$$

- 재조달원가 또는 내용연수를 잘못 계상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재조달원가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현금등가액으로, 취득 또는 건설에 투입될 원가 추정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에 대한 가정 및 산정방식은 자산 분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가배수법(=취득원가×물가배수)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취득원가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단순히 대장가액이 입력된 것으로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득원가가 신뢰성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가배수법으로 재조달원가를 계상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②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자산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하며,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 시 잔존내용연수는 장부상 미경과한 내용연수(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그 자산의 경과내용연수의 차이)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치를 잔존내용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자산에 대해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추정내용연수를 전체내용연수보다 높게 추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체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대해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취득원가의 5%와 1천원 중 작은 금액)으로 재평가한다.

<TIP>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잔존내용연수가 같은 것으로 본다. 즉 재조달원가를 상각후대체원가로 본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dBrain+에서는 국유재산 게시판을 통해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며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 시행을 공지**하고, **'가격평가대상조회' 메뉴를 통해 재평가 대상자산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9-3 ▌자산관리>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대상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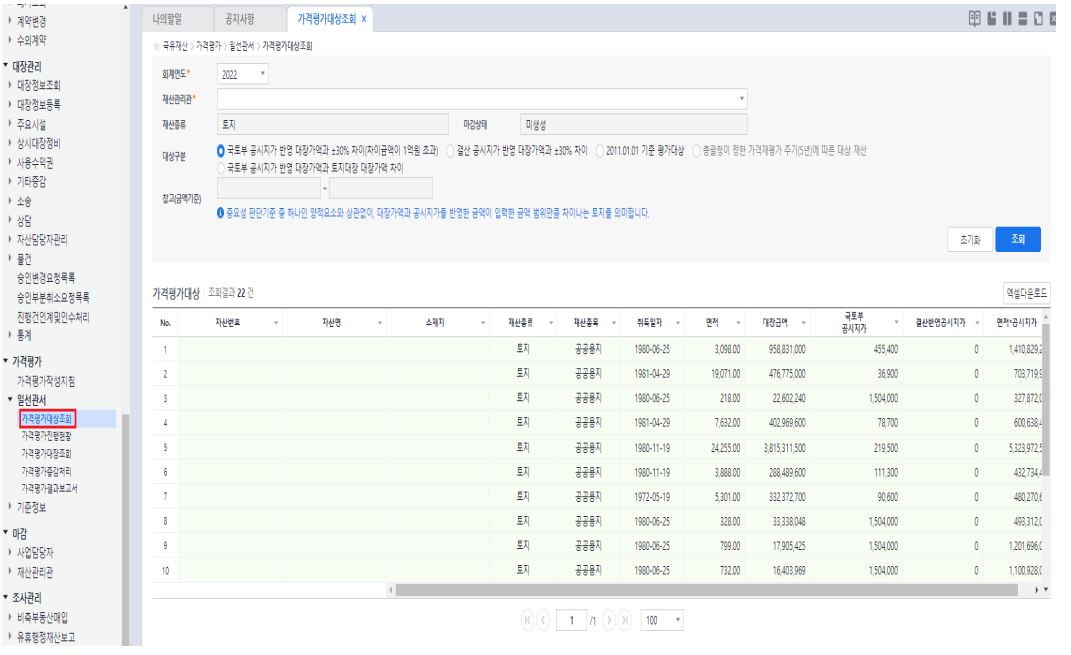

○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재평가 대상 자산의 목록을 확인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가격평가대장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가격평가대장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림 9-4 ▌자산관리>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대장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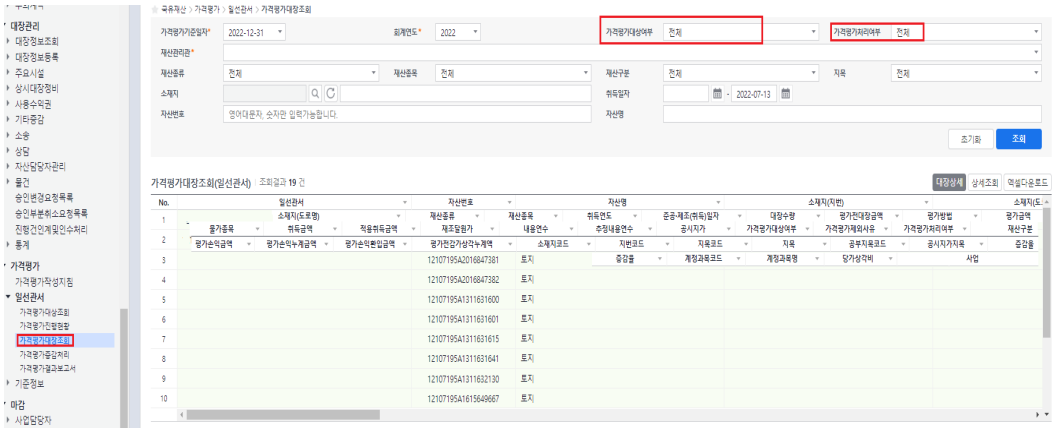

* **가격평가대상조회**란 가격평가 전에 토지의 재평가가 누락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의 목록 및 대장금액, 공시지가 등을 국유재산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다.

* **가격평가대장조회**란 가격평가 후에 재평가된 자산 및 평가방법, 평가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결산담당자도 국유재산 CFO 권한을 부여받아 가격평가대장조회가 가능하다.

○ '가격평가대상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나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국유재산 담당자는 국유재산 마감 시 자산재평가 미수행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담당자는 '가격평가미수행 사유조회' 화면을 통해 국유재산 담당자가 입력한 미수행 사유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 담당자가 자산재평가 미수행 사유를 입력한 건이 있다면 해당 사유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림 9-5 ▌자산관리>국유재산>마감>중앙관서>마감자료현황>가격평가미수행사유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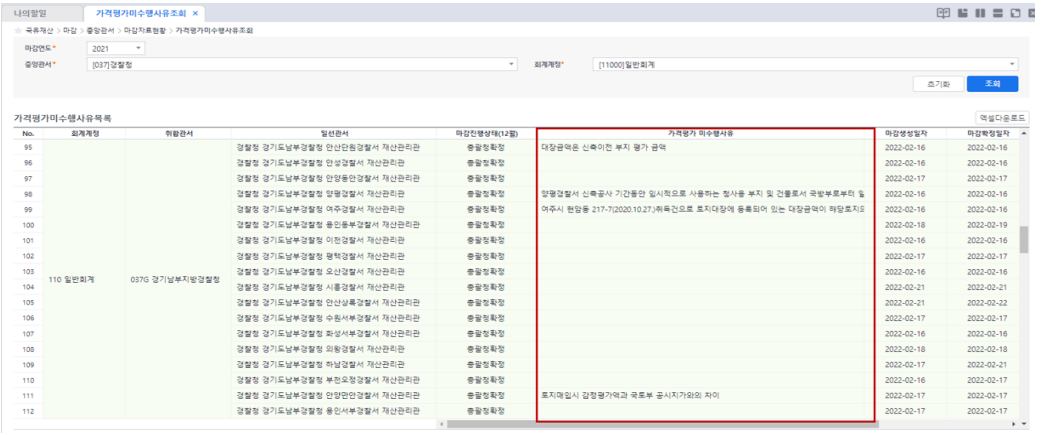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 결산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재평가 결과와 '가격평가대장'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 경우, **재평가대상에서 발생하는 차이인지 평가금액에서 발생하는 차이인지 구분하여 검토**한다.

- **(재평가대상에서 차이 발생)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임에도 재평가에서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또는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님에도 재평가된 자산**은 없는지를 검토

- **(평가금액에서 차이 발생) 토지의 면적 또는 지번 입력오류, 공정가액 등 평가금액 오기입, 공정가액 및 대체적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여부,** 시가 이외 공정가액 적용 시 **합리적인 근거(감정평가서 등) 구비 여부 등** 검토

➢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 결산담당자는 검토 결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담당자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문서화**한다.

○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담당자가 자산재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가 입력한 자산재평가 미수행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자산 재평가 미수행 등) 국유재산담당자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자산재평가 미수행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다.

○ 결산 시 검토를 통해서는 재평가오류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국유재산마감 전에 국유재산담당자와 결산담당자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되며, 재평가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담당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TIP> 결산조정분개로 재평가손익 인식 시 오류

재평가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 인식한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우선 상계시키고 나머지를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나, 전액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재정운영순원가)로 회계처리하여 감사원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가 아니라 결산조정분개로 재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다음 해에 관련 평가손익이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다. 따라서 토지 재평가는 결산조정분개가 아닌 국유재산 메뉴의 가격평가 업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0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	1	1	-	2	-	-	1	1	9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일반회계에서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청산된 해동흥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해당 주식은 이미 과거 청산절차가 종결된 시점부터 더 이상 직·간접적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금융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자산)이 1,883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1,883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 누락

○ 투자증권의 감액은 국유재산담당자가 '조정자료입력'에서 수행하는데, 업무담당자가 **매년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0-1 ▌자산관리>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조정자료입력>조정자료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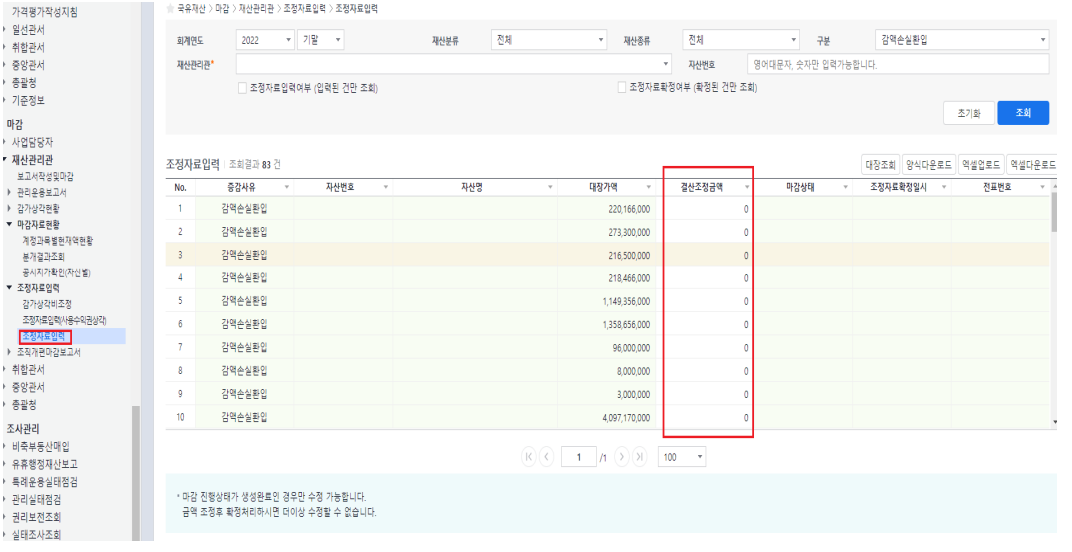

➤ Case Ⅱ: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오류

○ 공정가액으로 평가[8]하는 투자증권의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감액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해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등** 기말시점에 감액손실 발생여부 검토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① 매 회계연도 말 객관적인 감액사유 발생여부 검토

○ 결산담당자는 부처가 보유한 투자증권과 관련하여 **휴·폐업, 파산, 회생정리절차폐지, 자본잠식, 상장주식 공정가액의 현저한 하락 등**이 발생했는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사유발생 시 해당 투자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① 휴·폐업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여부 조회

② 파산, 회생정리절차폐지

⇒ 인터넷을 통해 최근 기사를 검색하여 파산여부를 확인

③ 자본잠식

⇒ 적자 누적으로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으로 적자를 상쇄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본잠식이라고 함(자본금이 모두 상쇄되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는 완전자본잠식)

④ 상장주식 공정가액의 현저한 하락

⇒ 한국거래소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 대비 현저하게 하락

8)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는 장·단기 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함

② **평가손실이 큰 투자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여부 검토**

○ 결산담당자는 투자증권 관련 **'투자증권평가손실'** 금액을 확인하여 그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한 투자증권에 대해 **평가손실이 아닌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 결산담당자는 객관적인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을 누락하였거나,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계상한 내역이 파악된 경우, 국유재산담당자에게 국유재산 마감절차를 통해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TIP> 감액손실 회계처리

1. 직전년도에 감액한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당기 시가 하락분에 대한 추가 감액손실 인식 누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 ①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감액손실환입(감액사유 발생 전 장부가액을 한도)을 ②추가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추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해당 감액손실의 환입 또는 추가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빼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11 대손충당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대손충당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관련 오류	11	4	3	7	4	6	1	4	2	2	44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특별회계에서 미수채권에 대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268억 4,124만 원, 406억 6,421만 원, 1억 2,831만 원, 189만 원, 119억 937만 원, 19억 3,38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대손충당금환입(비배분수익)이 2,754억 2,932만 원 과대 계상,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60억 495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결산 시 미수채권,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 절차 누락**

○ **미수채권, 대여금 등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매년 발생함에도 기말 결산 시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누락한** 경우 대손충당금 미설정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 산출근거 미비**

○ 결산담당자는 '대손설정기준율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대손율설정방법' 및 '대손율'을 입력**하게 되는데,

○ **대손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없이 직전연도의 대손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 **연령분석법 등 구상채권의 특성**(회수 가능성이 희박)**에 보다 적합한 대손추산액 산정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잔액비례법을 적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Ⅲ: 계정과목 단위로 대손율 설정방법 및 대손율 입력

○ **당기 말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여금, 미수채권 등 **계정과목별로 단일의 대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1-1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대손설정기준율등록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미수채권,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결산 시 미수채권,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 절차 수행

○ 전기까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채권에 대해서도 불납결손액 추세, 채권 회수기일 경과 일수 등을 고려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전기까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던 채권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는지 결산 시 검토해 본다.

② **대손충당금설정 방법 문서화**

결산담당자는 **대손추산액의 합리적인 추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가액을 만기 경과일수[9]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령을 구분하는 근거와 적용하는 대손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잔액비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로 대손추산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율[10]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미수채권 및 대여금에 대한 기말시점 회수가능성 추가 검토**

○ **특히 이행기간이 장기이고 금액이 큰 미수채권** 등의 경우 **기말 시점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휴·폐업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전액 설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보증서 확보 조치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기 대비 중요하게 변동된 채권**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당기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9) 기간경과일수의 기산일은 '최초결의일자'가 아닌 '최초납기일자'로 설정하여야 한다(20회계연도 감사원지적사항)
10) 예시: 대손율=(과거 3년간 채권의 결손처분액÷과거 3년간 채권 기말잔액)×100

<TIP>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

1. 대손충당금 설정 시 설정 대상 채권별로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프로그램/단위사업을 입력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대손상각비가 모두 비배분비용으로 배부되어 재무제표의 원가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대손충당금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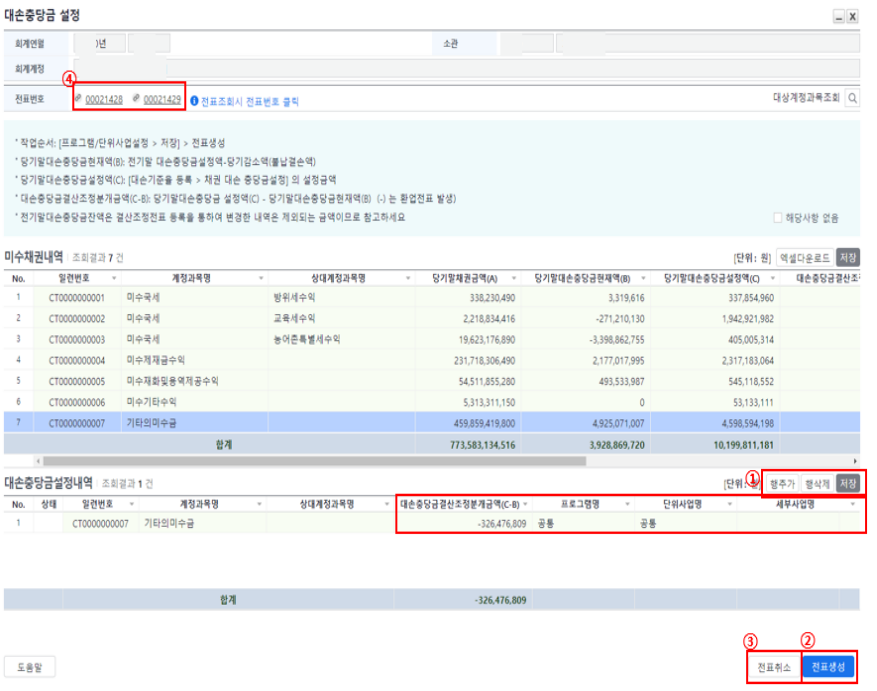

2. '대손설정기준율등록' 메뉴에서는 '계정과목별'로 일괄등록만 가능하므로, 휴·폐업 등의 이유로 각각의 채권에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잔액에 대손율을 곱한 금액과 기말 대손충당금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소송충당부채 설정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소송충당부채 설정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관련 오류	2	3	2	3	2	1	2	1	6	6	28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청 일반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 기준 진행 중인 소송 중 2심에서 일부 패소하는 등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민사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416억 1,54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전입액(관리운영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 **소송충당부채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정 기준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예: 소송가액 10억 원 미만인 소송은 충당부채 설정대상에서 제외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대부분의 부처는 소송 전담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담당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게 된다. 소송 건수가 많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 기말시점까지 소송 자료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소송충당부채 설정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ase Ⅱ: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사건 미고려

○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소송 패소가 확정되어 추정치로 인식했던 소송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지출할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Ⅲ: 기인식한 소송충당부채 미고려

○ 기중에 패소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에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를 대체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기말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시점에 **전년도까지 인식하였던 소송충당부채 및 당기 계정대체된 소송충당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① 소송충당부채 설정여부 확인

○ 결산담당자는 **소송전담부서를 통해** 부처에서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소송 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전기 소송충당부채와 비교 대사

○ 소송전담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와 전기 재무제표 및 주석에 계상된 소송충당부채를 비교하여 **당기에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소송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감사원은 각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한 후, 그 기준대로 소송충당부채가 계상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② 소송자료의 정확성 확인 및 설정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계상

○ 소송충당부채는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므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등록]

○ 결산담당자는 **소송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부채 설정 대상 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TIP>

패소 시 소송가액에 가산하여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및 이자비용, 예상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소송충당부채 미설정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결산담당자는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사건 고려

○ 소송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의무이행에 소요될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인식해야 하며, 추정할 때에는 재정상태표일 후 소송 확정 사건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만약 재정상태표일 후에 소송 패소 확정 사건이 발생하여 추정치로 인식했던 소송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지출할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소송충당부채 금액을 실제 지출할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④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 고려

○ 결산조정전표로 등록된 분개는 결산조정 이외의 업무로는 상계되지 않으므로 패소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급된다면, 전기에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한 건을 반드시 기말에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소송충당부채가 상계되지 않고 배상비 등의 비용이 인식되거나 관련 수익이 차감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설정 시**에도 **전기 결산조정분개로 인식한 소송충당부채와 당기 상계처리된 소송충당부채를 고려**해서 소송충당부채 설정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 전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1,000, 소송패소지급액 500(전기말 충당부채 설정 건으로 과징금수익 환급 결정됨),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2,000

구분	분개				시기
	차변		대변		
소송 패소 금액 지급	과징금수익환급금	500	국고수입	500	기중
소송충당부채 상계	소송충당부채	500	과징금수익환급금	500	기말 결산 조정 분개
소송충당부채 설정	소송충당부채전입	1,500	소송충당부채	1,500	

<TI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방부와 특별회계(기금포함)를 제외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비용은 법무부 예산에서 일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	세부구분	지급주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일반회계	법무부
	국방부	국방부
	특별회계, 기금	해당 행정청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外		해당 행정청

그럼에도 법무부소관의 소송을 타회계에서 인식하거나, 타부처가 인식하여야 하는 소송충당부채를 법무부에서 계상하는 등의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결산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 관련 오류	1	2	1	1	-	-	1	-	-	-	6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일반회계에서 2021회계연도 말 일부 인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평가 금액을 누락하여 기타의기타투자자산(투자자산)과 퇴직급여(관리운영비)가 각각 9,661만 원 과소계상되었고, 퇴직연금운용자산(장기충당부채의 차감계정)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각각 9,661만 원 과소계상되었다.

('21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부처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부처**는 금융기관에 약정한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 **Case Ⅱ: 기준정보 오류**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 설정오류**

○ **지급대상자 중복 계상, 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 포함, 지급대상인 1년 이상 근속 임직원을 제외하는 등 충당부채 설정대상자를 잘못 산정**하였다.

② **평균급여 입력 오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도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다.

③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입력 오류

○ **중간정산자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새롭게 근속연수를 기산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

➢ **Case Ⅲ: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퇴직보험예치금 표시 오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데, 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부(-)의 금액을 부채 차감항목인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자산항목인 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해야 한다.

○ 해당 부(-)의 금액을 금융자산으로 변경한 이후,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양(+)의 금액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다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①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확인

○ 결산담당자는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 중앙관서에서 정한 퇴직금운용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회계편람[11]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지급방식(DC, DB)***을 **확인**하여 **DC형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었는지, DB형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누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11)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평균급여*1 × 근속연수*2
*1 평균급여 = ① + ② + ③
*2 근속연수: 결산 월 기준 근속연수
① 결산 월 직전 3개월 지급급여 / 3
② 결산 월 직전 1년 지급 상여금 / 12
③ 결산 월 기준 적치 수당 / 1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12] 계정과목으로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약정한 금액 납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도 계상되지 않음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비교 분석

○ **전년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변동원인**(인원수 변동, 근속기간 증가, 임금상승 등)**을 파악**한다.

○ 재정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인지 여부와 전기에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동 금액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정보 값**(설정대상자, 평균급여, 근속연수 등)**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① 퇴직급여설정 대상 인원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중 회계연도 말 현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균급여

○ 평균급여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임금의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

12)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자산(Ⅱ레벨)_기타금융자산(Ⅲ레벨)_기타의기타금융자산(Ⅳ레벨))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 결산담당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의 기본정보 값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부처에서 적용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방식에 맞게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 이렇게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을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에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잔액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분개가 생성**되게 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진행및등록>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퇴직, 신규입사, 중간정산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당, 상여금 등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재정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퇴직보험예치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금융자산(기타의기타금융자산)으로 변경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 **이후 회계연도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으로 표시했던 금액을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변경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입력**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인식 누락 등 부채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인식 누락 등 부채 관련 오류	6	5	2	3	1	5	1	3	3	2	31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일반회계에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 위탁사업비를 국고예금이 지급되는 시점인 2025년에 비용으로 잘못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의미지급금(유동부채)이 125억 원 과소 계상되었고, 위탁사업비(프로그램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채 누락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미지급한 금액은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때 dBrain+ 상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담당자가 이를 누락할 경우 비용과 부채가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기인식한 미지급금 미상계 오류

전기 이전에 계상한 미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미지급금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런데 전기 이전에 결산담당자가 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결산조정분개를 하면서 '환원여부'에 'N'을 선택(dBrain+ 상 그 다음해에 자동 환원분개 미생성)하고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해에 미지급금이 상계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비용과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기인식한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지급 시 해당 미지급금을 상계시키지 않고 비용 또는 자산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도 비용 또는 자산과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①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채 확인

○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중 발생주의 부채 누락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참고[13]**하여 동일한 사유로 **비용 및 부채를 계상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출되지 않은 거래 중 비용 인식시기가 도래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해야 할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TIP> 비용 인식 기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비용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 3~6 참조)

사례	비용 인식시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 지급청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출연금	출연금 협약체결 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담금 협약체결 시

② 상계해야 하는 미지급금 확인

○ 전기 이전에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인식한 미지급금 등 기인식한 미지급금잔액 중 지출 완료된 것이 있는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13)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를 계상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례) 유류비, 사회보험비용, 임차료, 급여, 이자보전비용, 연구개발비 등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①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채 확인

○ 결산담당자는 **회계연도말부터 결산시점까지 실제 대금지급한 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지출항목의 성격상 회계연도말 시점에 비용 및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하여야 하는 내역[14]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TIP> 결산부표 내역 조회를 통한 부채 파악

사고이월 내역 중 지출의무가 확정되어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건이 있으면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결산부표내역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나 누락된 사고이월 건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

* [예산결산>중앙관서>기타결산업무>결산부표내역조회]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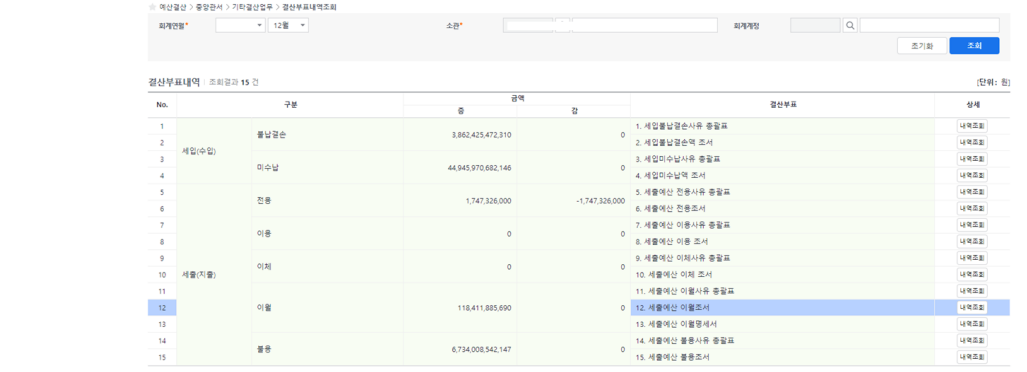

14) 해당기간 중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건은 회계연도 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② 상계해야 하는 미지급금 확인

○ 결산담당자는 전기 이전에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인식한 미지급금 등 기인식한 미지급금잔액 중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지출완료건의 분개전표를 확인하여 실제 지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결산조정으로 부채 반영

○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 및 부채(미지급금 등)를 인식하여야 할 경우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관련 효과를 재무결산에 반영**(비용 ××/부채 ××)해야 한다.

○ 이때 거래의 성격상 차기 회계연도 중에 현금지출이 반드시 수반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Y'로 선택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dBrain+상 자동 환원분개(부채 ××/비용 ××)가 생성되도록 해야 한다.

○ 차차기 회계연도 이후에 현금지출이 수반될 예정이라면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dBrain+ 상 그 다음해에 자동 환원분개 미생성)하고, 해당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금지출 시점에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환원분개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그림 14-1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 등록

② 미지급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 상계

○ dBrain+ 상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부채를 인식(비용 ××/부채 ××)한 경우,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해에 환원분개(부채 ××/비용 ××)를 생성하지 않으면 현금 지급 시 비용이 발생하는 분개(비용 ××/국고수입 ××)가 생성되어 비용 및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인식한 미지급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금이 지급되는 해에 비용 및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환원분개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15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4	5	4	3	-	2	-	2	2	2	24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익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하지 않고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기타이자수익(유동자산),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117억 779만 원, 189억 3,24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이자수익(비배분수익)이 72억 2,469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현금주의 기준 적용으로 인한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일부 회계실체는 dBrain+이 아니라 자체 수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은 대부분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가 매 회계연도 말에 자체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에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 조정을 누락할 경우 기간귀속 미반영에 따른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현금수취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이자발생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한 회계실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말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15] 등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재무결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정보관리항목의 누락 또는 오기입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금 지급시점이 비용 인식시점보다 빠른 경우인 선급비용의 경우에는 결산시점에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를 통해서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으나, 관련 정보관리항목의 누락 또는 오기입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Case Ⅲ: 부담금수익 인식 시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국가는 위탁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때 위탁기관이 납부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이 아니라, 국가가 위탁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담금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ex) XX공사가 12월에 징수한 부담금을 다음연도 1월에 OO기금에 납부하는 경우 → OO기금은 12월에 해당 부담금수익을 인식해야 함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하여 회계실체 내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계정과목**(부담금수익, 이자발생자산 및 부채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TIP> 이자 발생 자산 · 부채

합계잔액시산표상 조회되는 계정과목 중 이자발생자산과 이자발생부채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대여금
② 부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미지급금

15) 정보관리항목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부채(예: 정부내예수금)와 관련된 미지급이자비용의 경우에는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기에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TIP> 전기 결산조정전표 등록내역 조회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등록]메뉴에서 회계년월을 전기말로 하여 조회하면 전기에 등록한 결산조정전표 확인이 가능하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합계잔액시산표와 전기 결산조정전표 등록내역 조회를 통해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발견될 경우 결산담당자는 각 **계정과목별로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① 자체 수납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한 수입업무 처리 시 발생주의 효과 반영

○ 자체 수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결산시점이 아니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조회된 데이터를 수령하여 재무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 이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 **회계연도말부터 결산시점사이 수납완료 건이 미수납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아, 미수채권 인식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만일 자체 수납관리시스템 상 조회시점 변경이 어려울 경우, **회계연도말부터 결산시점까지의 수납완료 데이터를 추가로 수령**하여 부과고지가 회계연도말 이전에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미수채권을 인식**해야 한다.

②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관련 발생주의 효과 반영

○ 결산담당자는 결산시점에 **업무담당자로부터 이자율 및 만기 등 정보가 포함된 이자발생 자산 및 부채 내역과 선급비용으로 계상될 여지가 있는 용역계약 내역을 수령**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조치>

재무결산담당자의 확인 결과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재정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정보관리항목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후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절차를 재수행**하거나,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에서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기 위한 **결산조정분개를 입력**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한 부담금 수납 시 발생주의 효과 반영

○ 결산담당자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징수하는 부담금이 있을 경우, 위탁기관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에 부과한 부담금 정보를 수령해야 한다.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위탁기관에서는 부과·징수 하였으나 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부담금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위탁기관 등에 지급하는 징수대행수수료(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여 지급)가 있는 경우, 결산시점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발생주의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 조치>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라면 결산담당자가 관련 효과를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재무결산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

1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4	5	5	5	2	1	1	3	3	32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납금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제재금수익(유동자산) 1,532억 2,790만 원,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 657억 6,669만 원, 미수기타수익(유동자산) 142만 원,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 114만 원 과대계상되었고, 장기미수제재금수익(기타비유동자산) 1,532억 2,790만 원, 장기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기타비유동자산) 657억 6,669만 원, 장기미수기타수익(기타비유동자산) 142만 원, 장기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기타비유동자산) 114만 원 과소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정보관리항목 입력 오류

유동성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을 통하여 인식되며, 유동성대체분개는 해당 계정과목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준으로 dBrain+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유동성대체 오류가 발생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유동성대체]

➢ Case Ⅱ: 임차보증금 유동성 판단 오류

임차계약서상 만기일자가 1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계약 이력, 계약 연장 의도 등을 근거로 임차보증금을 장기로 분류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유동성대체가 필요한 계정과목**에 대해 합계잔액시산표*상 전기 대비 증감금액 등을 파악하여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전기말 비유동 계정과목 중 일부는 당기 유동성 대체를 통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유동 계정과목 중 당기에 감소한 금액이 없는 항목이 있다면 이상 징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검토한 내역들을 바탕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융자금/리스 상환스케줄, 보증금 계약서 등)를 수령하여 **재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 이를 dBrain+ 상 산출된 유동성대체 금액과 비교**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 입력된 정보관리항목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정보관리항목 입력 오류 수정

정보관리항목에 잘못 입력된 상환스케줄, 만기일 등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장을 수정한 후 유동성대체 업무를 재수행해야 한다.

- (융자금) 상환스케줄 변경은 [자금관리>융자>요청관리>융자집행>융자원금회수계획]에서 수정
- (리스) 리스스케줄 변경은 [자산관리>조달관리>계약>리스계약관리>리스계약등록및조회]에서 수정
- (보증금) 계약기간 변경은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정보등록>부가정보등록(무체재산)]에서 수정

② 임차보증금의 경우 결산담당자는 **계약서상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성대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TIP> 유동성 분류 계정 및 유의사항

1. 감사원 연례지적사항에서 나온 유동성 분류 관련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대여금(융자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선수수익, 차입금(금융리스부채) 등

2. 임차보증금의 경우 감사원 결산검사 수행 시 계약서 검토가 빈번히 수행되고 있으므로 유동성 대체에 유의해야 한다.

3.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인식한 유동성대체금액은 반드시 '환원여부'를 'Y'로 선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조정으로 반영한 효과가 제거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유동성 분류 관련 재검토를 수행하여 관련 효과를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17 프로그램총원가(수익), 비배분비용(수익) 등 분류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프로그램총원가(수익),비배분비용(수익) 등 분류 오류	2	2	4	2	1	-	-	2	2	1	16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청 일반회계에서 통계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수입 1,235만 원을 프로그램수익이 아닌 비배분수익으로 잘못 분류함에 따라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명: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1,235만 원이 과소 계상되고 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 절차 미수행**

자산 취득 시 입력하였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원가 재배분 업무 누락**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어 프로그램수익 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나, **원가 재배분 업무를 누락하는 경우 비배분수익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Ⅲ: 결산조정분개 입력 시 관련 프로그램 입력 누락**

결산조정분개(대손상각비 등) 입력 시 결산담당자가 관련 프로그램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이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재정운영표 조회를 통해** 비배분비용 또는 비배분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어(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제외[16]) **프로그램총원가나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TIP> 원가배분 오류 검토

결산담당자는 아래의 경우 원가배분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①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② 결산조정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항목에 있는 경우(대손상각비 등)
③ 전기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계정과목이 당기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있는 경우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결산담당자는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를 발견한 경우 업무담당자를 통해 아래 절차를 진행한다.

- '대장항목점검' 메뉴에서 '점검구분'을 '사업을 [없음]으로 지정한 재산'으로 하여 조회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림 17-1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정보조회>대장항목점검

16)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5에 의하면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코드처리를 위해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므로 동 문단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해야 한다.

- **프로그램 등록 또는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국유재산>전환관리>사업이동>사업건별이동(인계)' **메뉴에서 인계서를 작성(사유는 [기타|사업이동])**한다. 만약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사유를 파악한다.

그림 17-2 ▌자산관리>국유재산>전환관리>사업이동>사업건별이동(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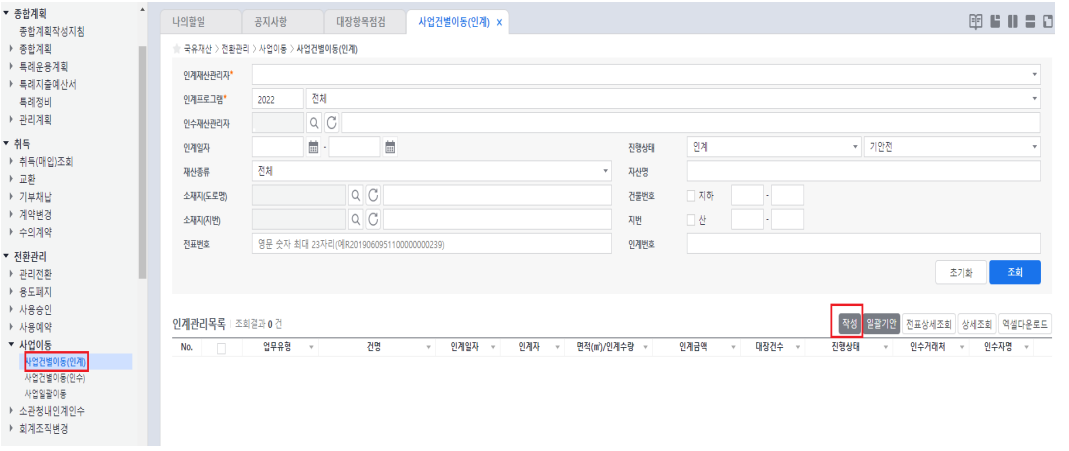

그림 17-3 ▌인계서 작성

② 원가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 **결산담당자는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내역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으로 원가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비배분비용/수익등록' 메뉴를 통해 프로그램총원가/수익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7-4 ▌비배분비용/수익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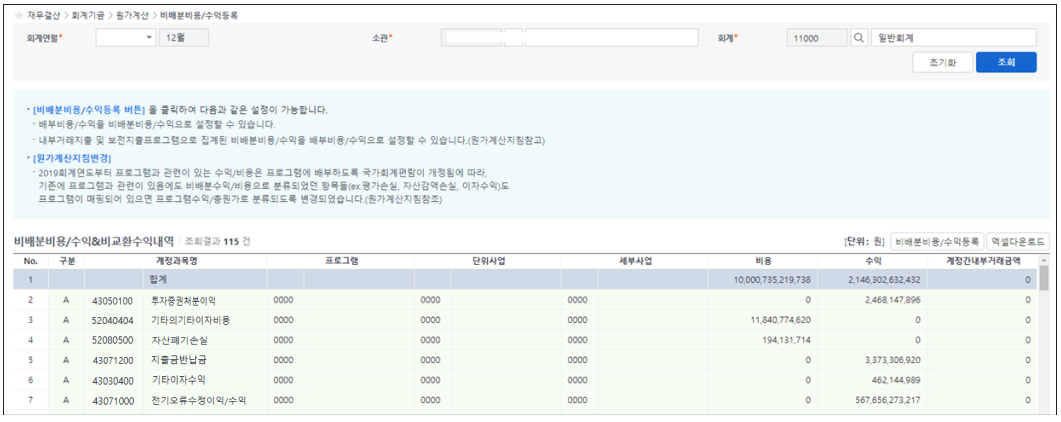

③ 결산조정분개 입력 시 관련 프로그램 입력이 필요한 경우

○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상 채권별로 관련 '프로그램/단위사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11.대손충당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관련 오류_<TIP>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 참조). 결산담당자는 이외 결산조정분개 입력 시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8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3	1	3	-	1	2	2	3	1	2	18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청 일반회계에서 군산항 해상 통관장 등 3건의 임차개량자산을 취득 시점 이후부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계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4억 7,796만 원, 기타의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수출입통관) 1억 3,185만 원, 기타의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 3억 3,553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관리운영비) 1,058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내용연수 관련 오류

○ 내용연수(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로 입력**하거나,

○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별도로 조정하지 않거나,

- 특히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가 '0'이므로, 잔존내용연수 조정이 필수

○ 재산종목 판단 오류 또는 동일 구조물에 대한 일관성 없는 내용연수 적용 등으로 내용연수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잔존가액 입력 오류

감가상각 관련 정보 입력 시, 잔존가액에 합리적인 추정치가 아니라 **취득가액 등을 입력**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담당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정과목 검토를 수행한다.

- 당기 취득 자산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비를 통해 감가상각비율을 구하고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비율과 비교**한다.

- 당기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율이 기존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잔존가액 확인이 필요**하다.

○ 결산담당자는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감가상각비 산출]*** 메뉴에서 자산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상각방법, 취득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메뉴를 통해 감가상각비 산출 내역을 검토하여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이 적정한지, 취득원가와 잔존가액이 동일한 자산은 없는지 검토**한다.

* [국유재산의 일선관서 마감이 되면 감가상각이 자동계산 처리되어 감가상각비 산출 조회가 가능하다.

○ **무형자산은** 국유재산담당자를 통해 **계약서나 협약서**[17]**상** 권리기간과 내용연수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내용연수 정정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자산관리>국유재산(물품관리)>대장관리>기타증감]

기타증감의 사유를 국유재산은 **'증감없음, 기타증가/내용년수 증가'**, 물품은 **'증감없음, 변동/내용연수변경'**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17) 무형자산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상 권리기간 등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② 잔존가액 수정

잔존가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부가정보 등록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선택하고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자산대장' 화면 상 '기타정보'에 국유재산일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에 물품일 경우, **'잔존가액'**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저장할 수 있다.

그림 18-1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정보등록>부가정보등록
자산관리>물품관리>대장관리>대장관리>부가정보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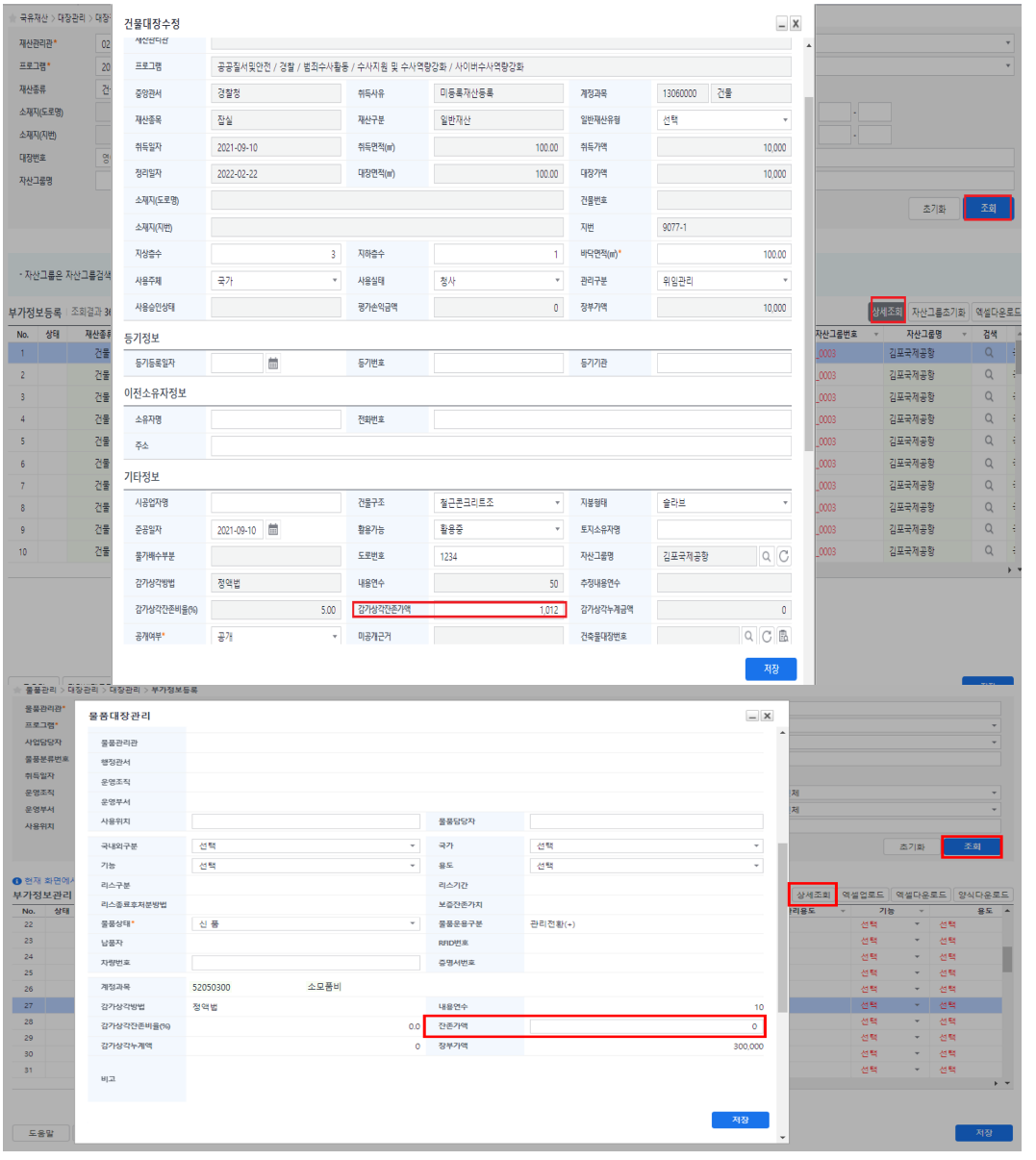

<TIP> 자본적 지출과 잔존내용연수 & 자산분류 오류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37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2.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등재하여 감가상각비가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9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3	2	5	-	3	3	4	1	5	3	29

<출처: '15~'24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부 특별회계에서 2024년 평택 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 배후부지를 매각한 후 처분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조정항목), 선수금(유동부채)이 각각 355억 3,001만 원, 148억 6,289만 원, 445억 1,358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프로그램명: 항만개발 및 관리)이 238억 4,64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요청서 작성 오류

매각요청서 작성 시 **매각하는 투자증권의 계약요청수량, 계약요청금액을 dBrain+에 잘못 입력하는 경우** 실제 처분대상과 다른 금액이 국유재산대장에서 제거되고, 이에 따라 자산처분손익이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Case Ⅱ: 수입 메뉴와 기타증감을 통한 업무 처리 진행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 메뉴에서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유재산 대장에서 자산을 제거하기 위해 '기타증감_기타(감)'을 사용할 경우 자산처분손익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Case Ⅲ: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의 인계처리 누락

'국유재산' 메뉴의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해 인계처리를 누락하면,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수금이 과대 계상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자산 매각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은 회계처리가 생성되는데, 인계처리를 누락 할 경우 '자산 인계 시' 분개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	차변	대변
수입 징수결의 시	미수금 10	선수금 10
자산 인계 시	선수금 10	자산 8
		자산처분이익 2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 결산시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 관련 계정과목(토지, 건물 등)이 **감소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처분손익 또는 폐기손실이 재무결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합계잔액시산표]

○ 결산담당자는 거래처별 선수금 잔액이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인계처리 누락 건이 아닌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거래처별 선수금 잔액이 동일한 거래처의 수납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인계처리 누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매각요청서 작성 오류 정정

○ 투자증권 매각요청서상 계약요청수량 또는 금액 입력 오류인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매각요청서를 다시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매각 관련 업무처리가 잘못 된 경우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해당 건을 반려하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림 19-1 ▌자산관리>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인계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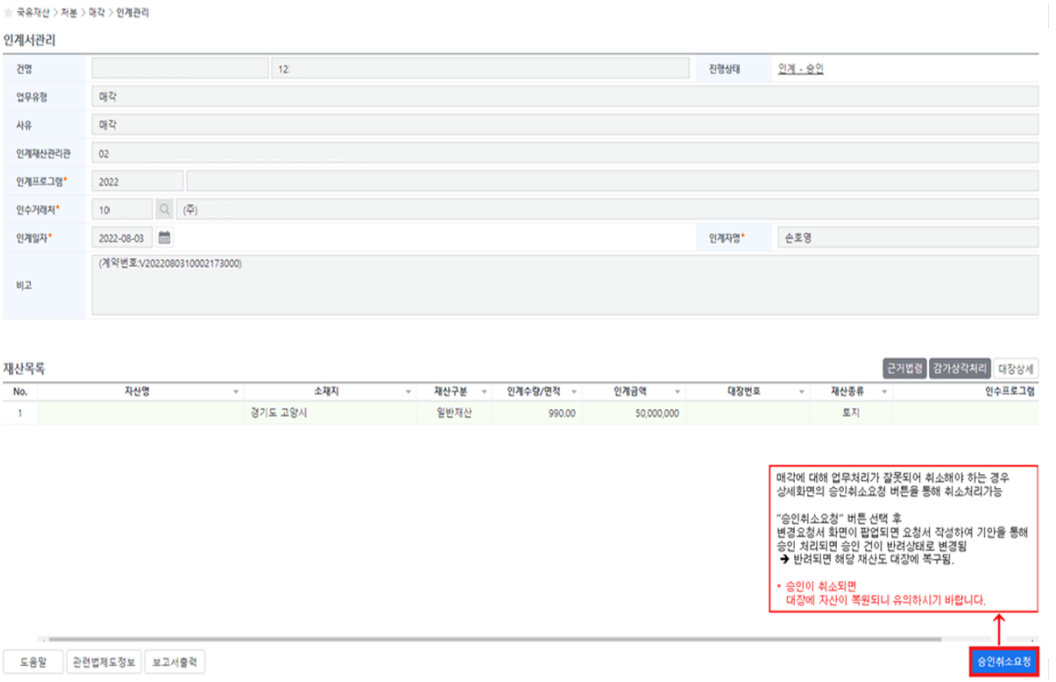

- 이때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업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수납정산취소**[18] 및 **오류정정전액감요청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19-2 ▌수입관리>수납관리>수납처리>수납정산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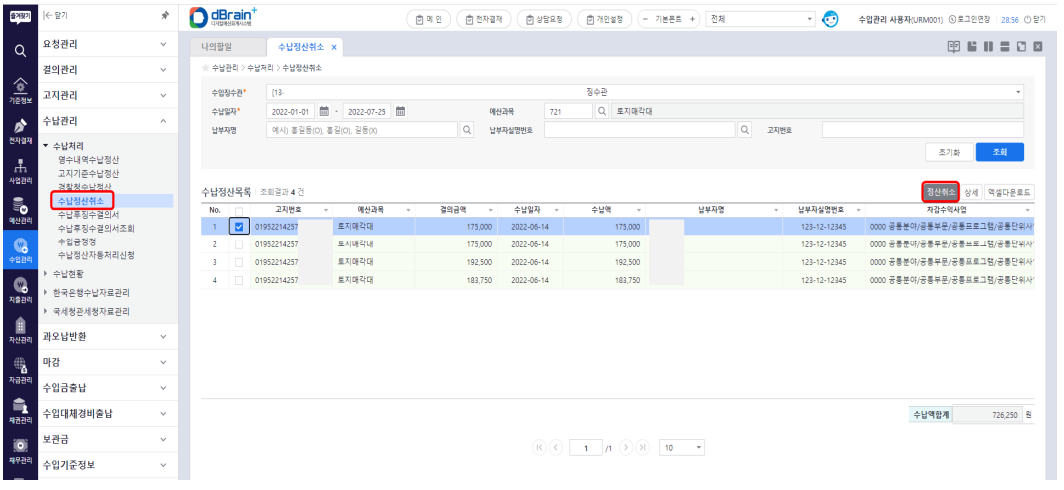

18) 국유재산에서 징수요청된 자료는 수입 메뉴에서 결의취소를 할 수 없으며, 잘못 작성된 건은 '오류정정감처리'를 통해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

그림 19-3 ▌수입관리>요청관리>변경요청>오류정정감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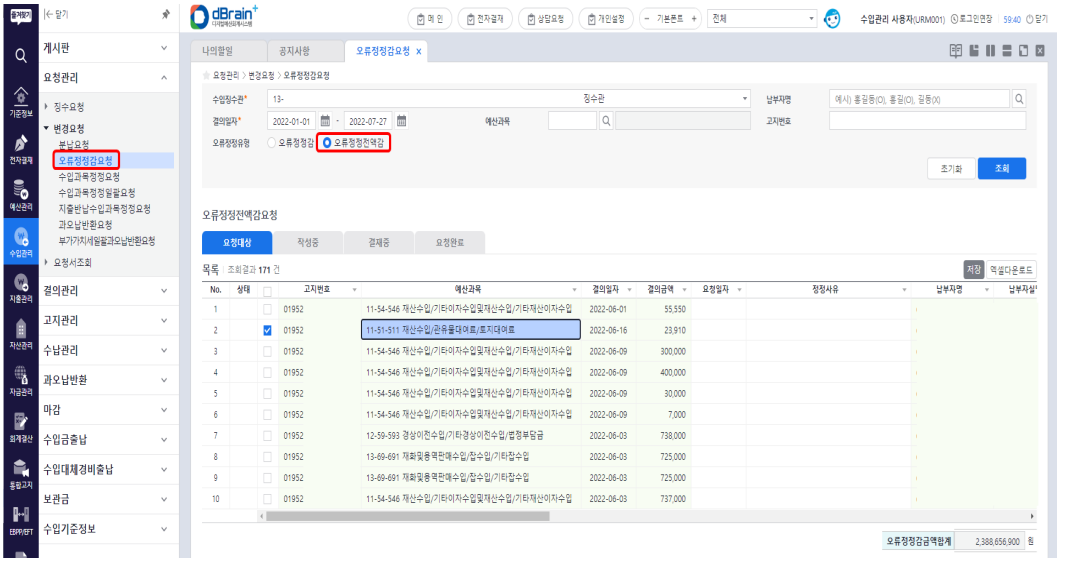

<TIP> 국유재산 매각 오류정정 방법

국유재산 매각 관련 오류정정 방법은 거의 동일하나, 매각하는 국유재산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투자증권: 기존 승인요청 건(인계서, 수입업무 처리내역)을 반려하게 되면 기존 유가증권매각등록 화면까지 돌아가, 이를 수정함으로써 오류정정이 가능하다.

② 기타 국유재산: 기존 승인 건(인계서, 수입업무 처리내역)을 반려하더라도 매각요청서까지 돌아가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계약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변경요청 업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먼저 반려된 건에 대한 징수요청서가 반려상태가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청서를 삭제 처리(자산관리>국유재산>처분>매각>징수요청)한다.
이후 계약변경요청 메뉴(자산관리>국유재산>처분>계약변경>계약변경요청)에서 계약변경 또는 계약취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② 수입 메뉴와 기타증감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경우 오류 정정

○ 업무담당자가 국유재산 메뉴가 아닌 수입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수입 관련 업무(수납정산, 징수결의 등)를 취소한 후 국유재산 메뉴를 통해 매각 업무를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기타증감 메뉴를 통해 대장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제거한 효과는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취소해야 한다.

③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 인계처리

○ **(당기 매각 완료된 자산의 인계처리 누락)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을 통해 오류 정정

○ **(전기 이전에 매각 완료된 자산의 인계처리 누락) 인계서 승인 절차를 수행한 후**, 전기 이전 매각 건이므로 **자산처분손익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대체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19-4 ▌자산관리>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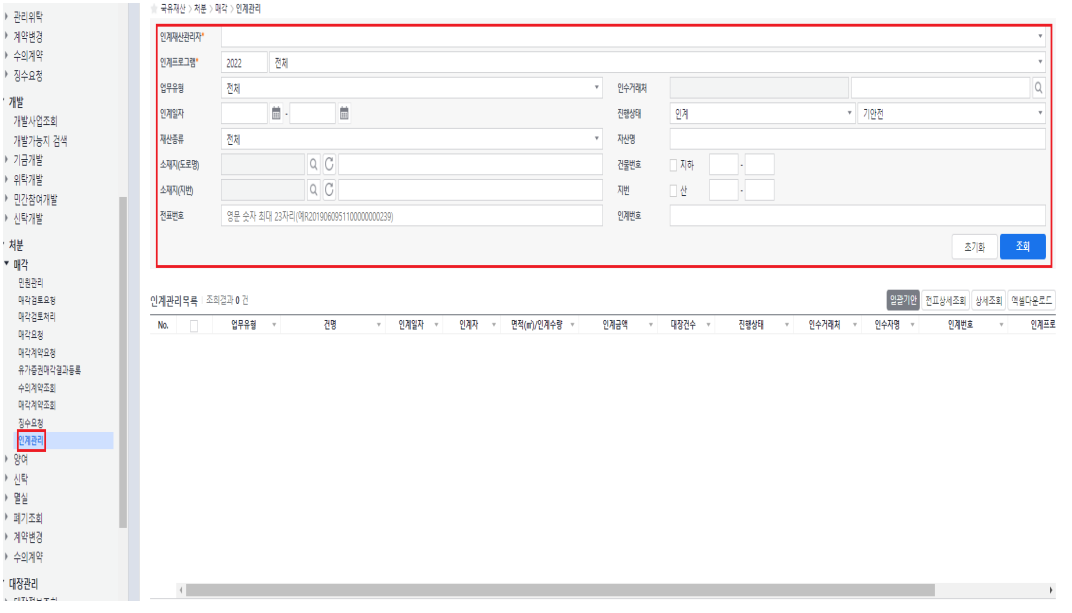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제1장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 합계잔액시산표란 기중에 발생한 분개전표를 통하여 나타난 계정과목을 집계하여 보여주는 표로 dBrain+ 시스템 상으로 결산시점 이전에도 조회가 가능하다.

◈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을 하기 전에 기중 발생한 분개전표만 집계되어 있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수정전시산표라고 하며,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절차가 시작된다.

◈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기 전 계정과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수정전시산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작업이 모두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결산시점에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중에 가능한 많이 검토하여 기말 결산시점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에 발생한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	130
2.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	…	143
3. 기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적정성	…	155
4.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적정성	…	179
5. 특정 부처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	190
6.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최종 점검	…	194

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결산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장재무 주무관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검토하면서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 계정과목 금액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입, 세출, 국유재산, 물품,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이하 '예산결산')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수정전시산표(결산조정 전 합계잔액시산표)의 마감이 가능하다. 결산담당자는 수정전시산표 검토를 할 때 가장 먼저 예산결산이 재무결산 금액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결산과 예산결산이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예산결산과 금액이 동일해야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오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1 ▌합계잔액시산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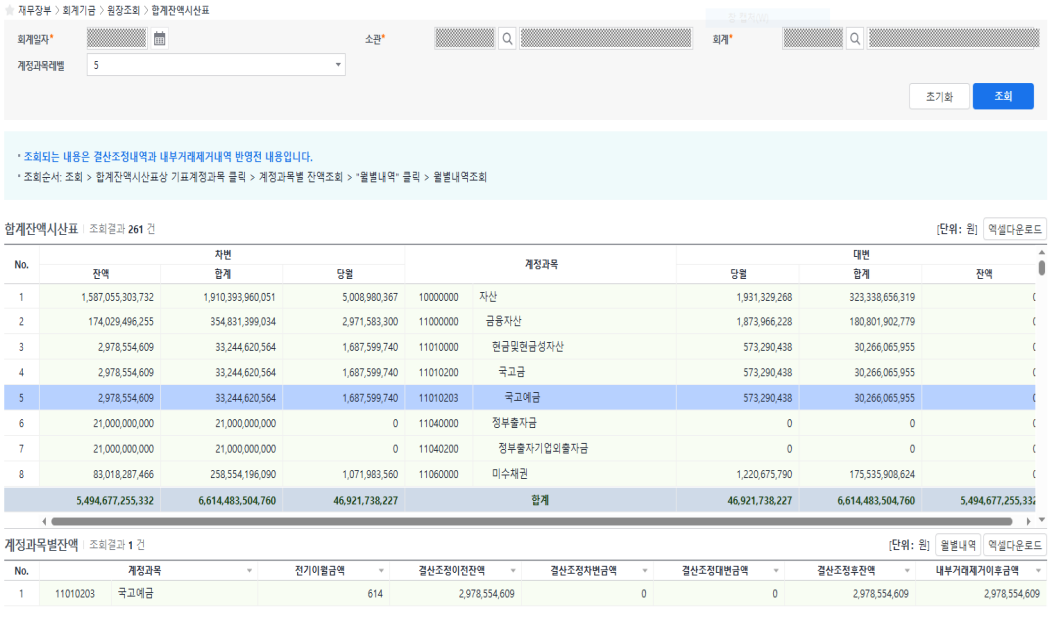

(2) 오류에 따른 영향

dBrain+ 시스템은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여 재무결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정보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액이 꼭 일치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존재한다.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은 각각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에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지출이 발생할 때 국고에서 돈을 받아 지출하고, 수입이 발생할 때 들어온 돈을 국고로 수납하는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결산 상 각 중앙관서별 회계실체 이외에 '국고금회계'가 존재하며, 여기서 국고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각 중앙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회계처리를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와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세입 업무(수수료수입 10,000원)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중앙관서	국고이전지출	10,000	수수료수익	1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	국고이전수입	10,000

○ 세출 업무(소모품 구입 5,000원)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중앙관서	소모품비	5,000	국고수입	5,000
국고금회계	세출예산지출액	5,000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

이와 같이 세입 또는 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관서에서 직접 현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금회계로 이전하거나 국고금회계로부터 이전받는 회계처리가 나타나며, 현금은 국고금회계에서 인식한다.

이에 따라 현금이 생겨 국고로 보낸 **국고이전지출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수납액(전년도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제외)과 동일**하여야 하며, 지출을 하기 위해 국고에서 이관받는 **국고수입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지출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국고금회계는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작성 시 통합되며,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과 각 중앙관서의 국고이전지출, 그리고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과 각 중앙관서의 국고수입 금액은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사례의 장재무 주무관과 같이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금액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오류일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 단위에서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오류 정정 방법

국고이전지출, 국고수입은 세입 및 세출업무와 연계되어 생성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서로 상이한 원인을 결산담당자가 찾기는 쉽지 않으므로, 차이가 나는 회계실체와 차이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내역을 dBrain^{+}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출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 합계잔액시산표 상 국고수입 금액**
- **세입결산보고서 상 수납액(전년도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제외) = 합계잔액시산표 상 국고이전지출 금액**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는 기말에 한국은행국가예금 표시를 위해 기중 발생한 국고수입, 국고이전지출을 결산조정으로 제거하므로 제거전 금액과 지출, 수납액을 비교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국유재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차이 오류

XX부처는 OO기금이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제표에 계상한 채무증권을 일반회계 재무제표에도 투자증권으로 중복 계상하여, 투자증권이 과대 계상되었다.

재무계정과목 중 국유재산과 관련된 계정과목은 국유재산 대장 금액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사례는 국유재산대장과 관련된 계정과목의 금액 차이를 확인하였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오류로 결산담당자는 수정전 시산표 마감 전에 이를 꼭 검토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재산종류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1 ▌국유재산의 재산종류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

국유재산대장 (재산종류명)	합계잔액시산표			
	중분류 (Lv.2)	회계과목 (Lv.3)	관리과목 (Lv.4)	세부관리과목 (Lv.5)
토 지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토 지	-
건 물			건 물	-
공작물			구축물	-
기계기구			기계장치	고정성기계장치[*3]
입목죽			기타일반유형자산	입 목
선박·항공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선박및항공기
유가증권[*1]	금융자산	투자증권	지분증권	주식
				기타지분증권
			채무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국세물납증권	주식
				기타지분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국유재산대장 (재산종류명)		합계잔액시산표			
		중분류 (Lv.2)	회계과목 (Lv.3)	관리과목 (Lv.4)	세부관리과목 (Lv.5)
무체재산	소프트웨어	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4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
	광업권			광업권	-
	기타무체재산권			기타무형자산	-
	전세권*2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지급보증금	임차보증금-국유

*1: 국유재산대장은 장단기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함
*2: 무체재산 중 전세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예산결산 상 채권으로 보고되며, '임차보증금-채권'과 대응됨
*3: 물품과 대응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임
*4: 물품과 대응되는 소프트웨어는 '외부구입소프트웨어'임

국유재산의 분류는 재산종류명 이외에 재산구분명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2 ▌국유재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국유재산대장 (재산구분명)			합계잔액시산표
			중분류(Lv.3)
행정재산	공공용	도 로	사회기반시설 (단, 토지, 건물 및 공작물에 한정)
		철 도	
		항 만	
		댐	
		공 항	
		하 천	
		상수도	
		어항	
		이외(기타, 사용예정 등)	일반유형자산
	보존용	문화재	유산자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기타	
		유산자산아님	일반유형자산
	기업용		
	공 용		
일반재산			일반유형자산, 투자증권, 무형자산, 기타금융자산

* 유산자산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자산으로 대응되지 않으며, 당기 취득금액은 유산자산 취득비(비용)와 대응됨

투자증권은 국유재산 대장과 연계되어 생성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금액 차이는 대부분 전기 이전의 결산조정전표 등록에 기인한다. 결산 시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결산일정 상 국유재산대장을 수정하지 않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재무결산에만 반영한 경우 국유재산 대장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기 이전의 투자증권 관련 결산조정전표를 확인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한 후, 중복계상 된 투자증권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삭제해야 한다.

<물품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물품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품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은 다음과 같다. 단,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액자산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표 1-3 ▌물품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물품대장		합계잔액시산표	
대장종류	코드명	관리과목(Lv.4)	세부관리과목(Lv.5)
비소모품대장/리스대장*1	전기통신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및공작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산업기계		
	의료및화학분석기기		
	물리실험및측정기기		
	인쇄사진및사무정각기기		
	기타잡기기	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소프트웨어대장*2		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1: 금융리스 물품만 해당

*2: 일반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

② Case Ⅱ: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차이 오류

> XX부 OO주무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13회계연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정상태표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대손충당금 등 올바른 차이내역을 모두 제외하고 나니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이 85,450원씩 서로 부호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수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현재액보고서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으로, 재정상태표는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대손충당금 등 올바른 차이 이외에도 차이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dBrain+의 경우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화면을 통해 그 차이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2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X3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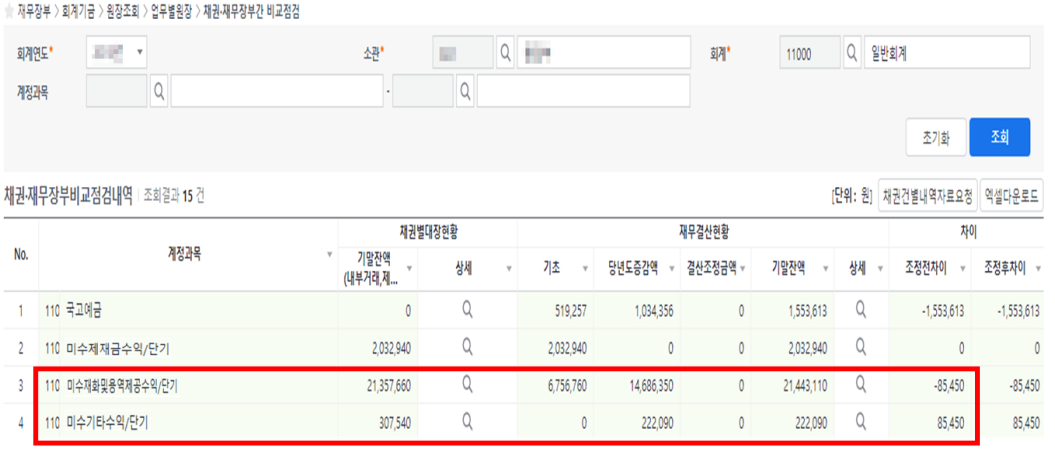

No.	계정과목	채권별대장현황		재무결산현황					차이	
		기말잔액 (내부거래,제...	상세	기초	당년도증감액	결산조정금액	기말잔액	상세	조정전차이	조정후차이
1	110 국고예금	0		519,257	1,034,356	0	1,553,613		-1,553,613	-1,553,613
2	110 미수제재금수익/단기	2,032,940		2,032,940	0	0	2,032,940		0	0
3	110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21,357,660		6,756,760	14,686,350	0	21,443,110		-85,450	-85,450
4	110 미수기타수익/단기	307,540		0	222,090	0	222,090		85,450	85,450

위 조회 화면에서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과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의 차이금액이 각각 85,45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X3회계연도에는 '재무결산현황'에 관련 '결산조정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20X2회계연도 차이내역을 다시 조회하였다.

그림 1-3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X2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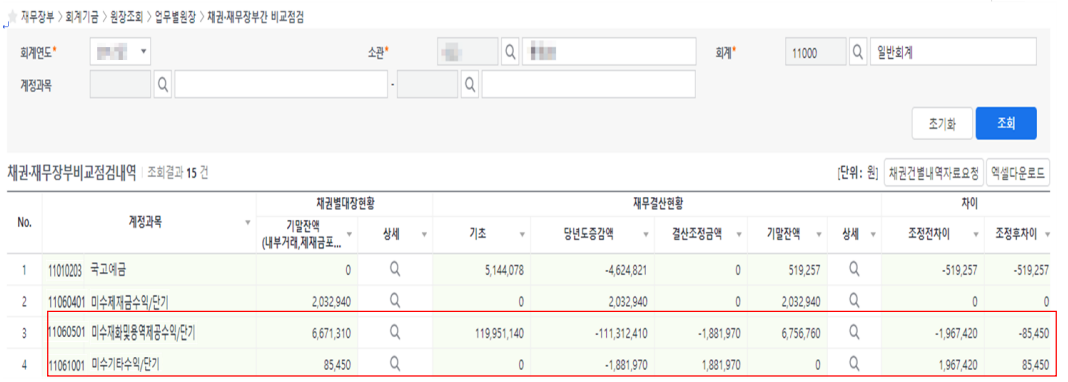
자무장부 > 회계기준 > 원장조회 > 업무별원장 >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회계연도* [redacted] 소관* [redacted] 회계* 11000 일반회계

계정과목 [redacted]

초기화 조회

채권·재무장부비교점검내역 | 조회결과 15 건 [단위: 원] 채권건별내역자료요청 엑셀다운로드

No.	계정과목	채권별대장현황		재무결산현황					차이	
		기말잔액 (내부거래,제재금포...	상세	기초	당년도증감액	결산조정금액	기말잔액	상세	조정전차이	조정후차이
1	11010203 국고예금	0		5,144,078	-4,624,821	0	519,257		-519,257	-519,257
2	11060401 미수제재금수익/단기	2,032,940		0	2,032,940	0	2,032,940		0	0
3	1106050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6,671,310		119,951,140	-111,312,410	-1,881,970	6,756,760		-1,967,420	-85,450
4	11061001 미수기타수익/단기	85,450		0	-1,881,970	1,881,970	0		1,967,420	85,450

20X2회계연도 조회 결과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을 차감하면서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을 증가시킨 결산조정금액 1,881,970원을 발견하였다. 사유를 살펴보기 위해 20X2년 결산조정전표를 조회하였더니,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 금액이 부(-)의 금액(△1,881,970원)으로 나타나 이를 '0'으로 조정하기 위해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를 등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4 ▌20X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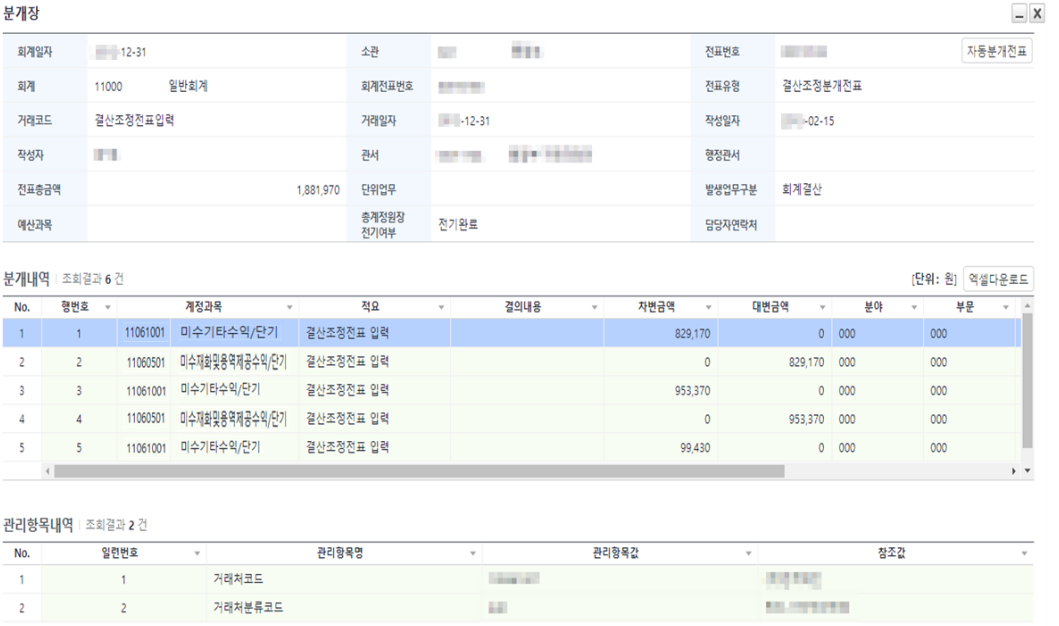
분개장

회계일자	[redacted]12-31	소관	[redacted]	전표번호	[redacted]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redacted]	전표유형	결산조정분개전표
거래코드	결산조정전표입력	거래일자	[redacted]-12-31	작성일자	[redacted]-02-15
작성자	[redacted]	관서	[redacted]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1,881,970	단위업무		발생업무구분	회계결산
예산과목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6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11061001	미수기타수익/단기	결산조정전표 입력		829,170	0	000	000
2	2	1106050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결산조정전표 입력		0	829,170	000	000
3	3	11061001	미수기타수익/단기	결산조정전표 입력		953,370	0	000	000
4	4	1106050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결산조정전표 입력		0	953,370	000	000
5	5	11061001	미수기타수익/단기	결산조정전표 입력		99,430	0	000	00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2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redacted]	[redacted]
2	2	거래처분류코드	[redacted]	[redacted]

20X2회계연도에 미수기타이자수익이 부(-)의 금액(△1,881,970원)으로 나타난 사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20X1회계연도를 다시 조회하였다.

그림 1-5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X1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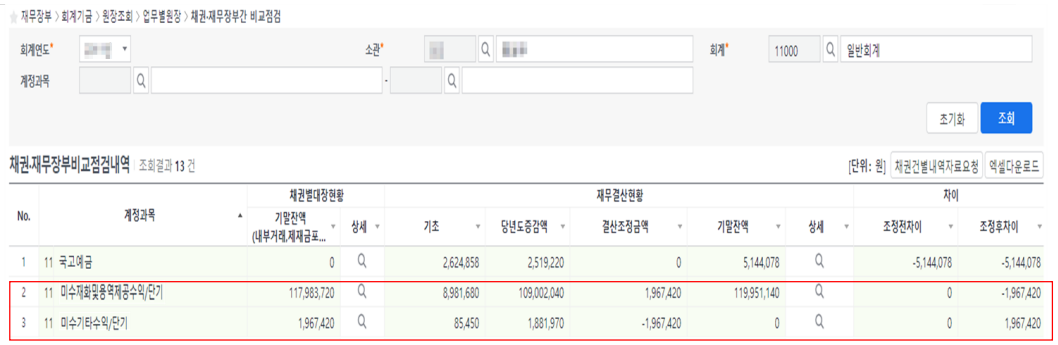
재무장부 > 회계기금 > 원장조회 > 업무별원장 >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회계연도* 소관* 회계* 11000 일반회계

계정과목 초기화 조회

채권·재무장부비교점검내역 조회결과 13 건 [단위: 원] 채권건별내역자료요청 엑셀다운로드

No.	계정과목	채권별대장현황 기말잔액 (내부거래,제재금포...	상세	재무결산현황 기초	당년도증감액	결산조정금액	기말잔액	상세	차이 조정전차이	조정후차이
1	11 국고예금	0		2,624,858	2,519,220	0	5,144,078		-5,144,078	-5,144,078
2	1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117,983,720		8,981,680	109,002,040	1,967,420	119,951,140		0	-1,967,420
3	11 미수기타수익/단기	1,967,420		85,450	1,881,970	-1,967,420	0		0	1,967,420

20X1회계연도 조회 결과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을 차감하면서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을 증가시킨 결산조정금액 1,967,420원을 발견하였다. 사유를 살펴보기 위해 결산조정전표를 조회하였더니 '미수금 조정'이라는 사유로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 금액 1,967,420원을 모두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6 ▌20X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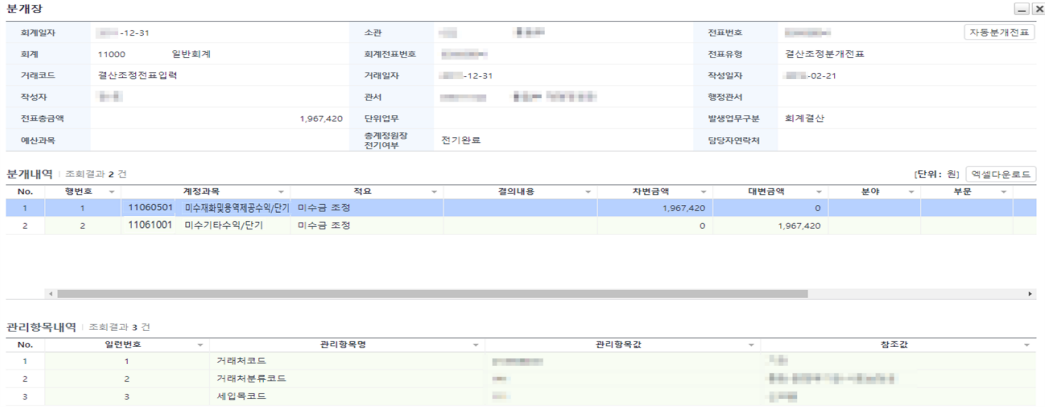
분개장

회계일자	-12-31	소관		전표번호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전표유형	결산조정분개전표
거래코드	결산조정전표입력	거래일자	-12-31	작성일자	-02-21
작성자		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1,967,420	단위업무		발생업무구분	회계결산
예산과목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1106050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미수금 조정		1,967,420	0		
2	2	11061001 미수기타수익/단기	미수금 조정		0	1,967,420		

관리항목내역 조회결과 3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	2	거래처분류코드		
3	3	세입목코드		

결론적으로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과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에서 부호가 다르게 85,45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사유는 20X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967,420원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을 차감하였고, 20X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881,970원을 가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OO주무관은 차이금액 85,450원이 20X2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미수기타이자수익임/단기을 확인하고 20X3년 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미수기타이자수익/단기 85,450원을 가산하고,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단기 85,450원을 차감하여 채권·재무장부간 차이 금액을 '0'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참고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유형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채권과 관련된 계정과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채권현재액보고서	
관	항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변상금및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입학금및수업료
	항공항만및용수수입
	교도소수입
	병원수입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융자회수금	융자원금회수
	전대차관원금회수
예금및예탁금	예금및예탁금
기타수입	기타수입
내국세 등	<생략>

합계잔액시산표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대여금	일반융자금
	저리융자금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
미수채권	미수국세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
기타금융자산	지급보증금 (Lv.5:임차보증금-채권)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아래 계정과목이 추가로 존재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비교할 때 어려운 점은 ①예산과목(관, 항, 목)과 재무계정과목이 1:1로 대응되지 않는 것 ②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차이 나는 것이다.

합계잔액시산표 상 채권 관련 계정과목은 아래 표와 같이 수입업무, 자산매각업무, 지출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표 1-5 ▌합계잔액시산표상 채권관련 계정과목 생성로직

합계잔액시산표		생성로직	분개예시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대여금	일반융자금	수입이 아닌 지출에 대응	(차) 대여금 / (대) 국고수입
	저리융자금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		
미수채권	미수국세	수입징수요청 시 세입 및 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대응	(차) 미수이자수익 / (대) 이자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미수채권	기타의미수금	자산매각 등 업무에 대응	(차) 기타의미수금 / (대) 선수금
기타금융자산	지급보증금 (Lv.5:임차보증금-채권)	수입이 아닌 지출에 대응	(차) 지급보증금 / (대) 국고수입

또한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다른 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6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차이

구 분	채권현재액	재무제표	비 고
대손충당금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포함)	차감하지 않고 채권현재액보고서 각주에 기재	차감하여 순액표시	채권현재액보고서는 총액 관리
현재가치할인차금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	미포함	• 국가회계실체: 포함 • 중앙관서, 국가통합: 내부거래 제거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은 채권현재액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 통합단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각 회계실체 단위에서는 차이가 발생

<TIP> 채권 검토 방법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상 금액 비교를 위해 dBrain+은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화면을 만들어 놓았다.
시스템 조회결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오류에 의한 차이인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미수채권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물품과 마찬가지로 결산조정전표 등록에 따른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

OO청 XX특별회계에서 토지의 취득 시 발생한 이주단지조성비 및 관련 수수료 금액을 건설중인토지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취득 완료 시 토지로 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토지가 과대 계상되고, 토지가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상기 사례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아 생긴 오류로 올바른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부대비 설정 및 배부의 올바른 업무처리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부대비 배부	조달(검수)	토 지	건설중인토지

부대비 설정은 지출업무에서, 부대비 배부는 조달업무 중 검수 시점에 수행하게 되므로, 각 업무담당자가 서로 달라 부대비 배부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존재하는 건설중인자산 중 부대비 배부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아래 <표 1-7>과 같이 건설중인자산 중 조달업무(부대공사 등)가 아닌 지출업무를 통한 부대비 설정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부대비 배부 누락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표 1-7 ▌건설중인자산 중 지출 업무를 통한 부대비 설정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

계정과목		사 유
관리과목(Lv.4)	세부관리과목(Lv.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토지	토지는 공사기간 없이 일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이 아닌 물품과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 하나의 회계연도에 취득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
	건설중인사무용기기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건설중인운반건설기계및차량	
	건설중인전기통신기기	
	건설중인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지출업무의 부대비 설정 중 발생유형 5번(계약전부대비지출) 선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계정과목**

특히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은 지출업무의 부대비 설정 중 발생유형 5번(계약전부대비지출) 선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계정과목(단, 국세청에서 나타나는 물납자산 제외)으로 지출 업무 시 자산 관련 연계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검수 시 부대비 배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대비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배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오류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부대비와 관련된 재무제표 왜곡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부대비 배부 누락: 토지 과소 계상, 건설중인토지 과대 계상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부대비 배부 누락	조달(검수)	-	-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토지가 토지로 대체되지 않아 토지는 과소 계상, 건설중인토지는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기타증감_기타(증) 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건설중인토지 과대 계상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기타증감_기타(증)	국유재산(검수 이후)	토 지	전기오류수정이익

국유재산담당자가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고 기타증감 처리를 통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토지와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각각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3) 오류 정정 방법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 중 취득이 완료된 건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각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부대비를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대비 배부는 ① 검수업무 취소 후 재검수 시 부대비 배부, ② '기타증감_부대비처리' 메뉴를 통한 사후적 부대비 배부[19]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9) 부대비 배부 오류정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제1장 국유재산의 취득_4.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또는 '제2장 물품의 취득_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참조

그림 1-7 ▌자산관리>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부대비>부대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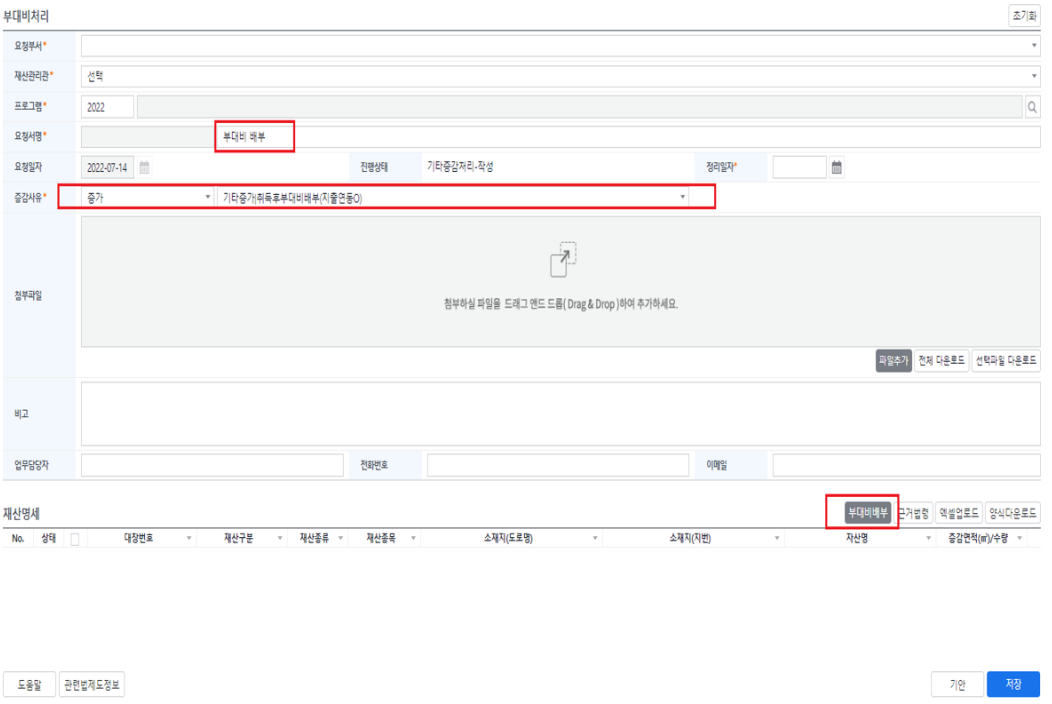

<TIP> 결산조정분개를 통한 오류수정의 문제점

국유재산대장 기마감, 업무담당자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부대비 배부 업무를 통하지 않고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차) 토지 / (대) 건설중인토지' 또는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처리 후 '(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토지' 등의 분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장 당기 회계연도 재무결산 상 금액 오류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자((차) 토지 / (대) 건설중인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와 재무결산 상 토지 금액은 달라지고, 재무결산 상 건설중인토지는 제거되지만 조달의 건설중인토지는 제거되지 않아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토지 내역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자((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토지)의 경우에도 재무결산 상으로는 건설중인토지가 모두 제거되었지만 조달의 내역은 제거되지 않아,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 내역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부대비 배부 업무를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참고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검토 방법

건설중인자산은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계정과목과는 달리 개별법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일차적으로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 내역이 일치하도록 조치하고, 이후에 조달 내역을 바탕으로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장부 상 건설중인자산 금액은 조달 업무에서 생성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로 볼 수 있다. dBrain+시스템에서는 거래처별로 조달의 건설중인자산(부대비미배부, 검사미정산, 선금미청산)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8 ▌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계정과목별명세>건설중인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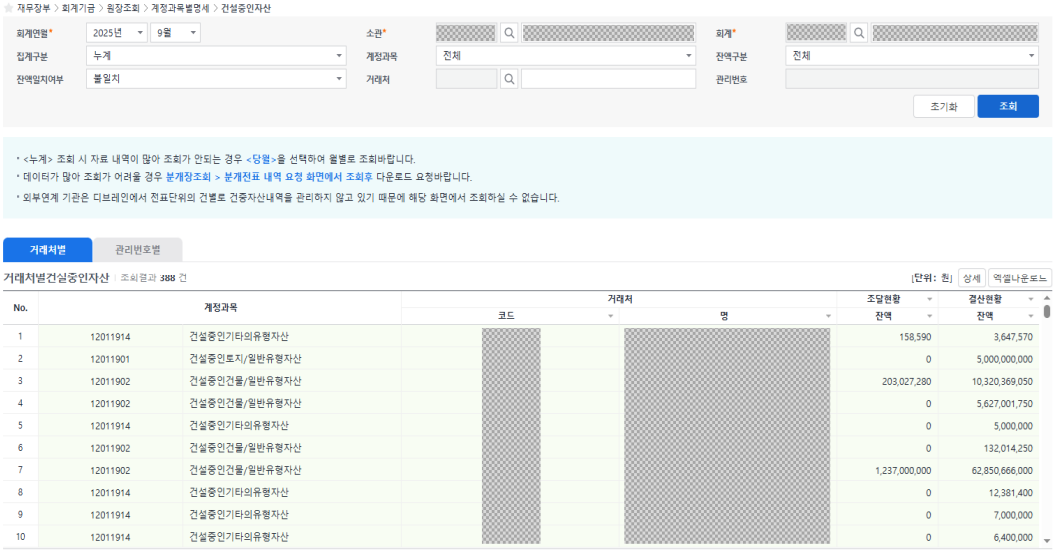

상기 메뉴에서 조달 및 재무장부 상 건설중인자산의 거래처별 불일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버튼을 선택하면 재무장부와 조달대장의 거래처별 상세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 ▌재무장부 상세내역 및 조달대장 상세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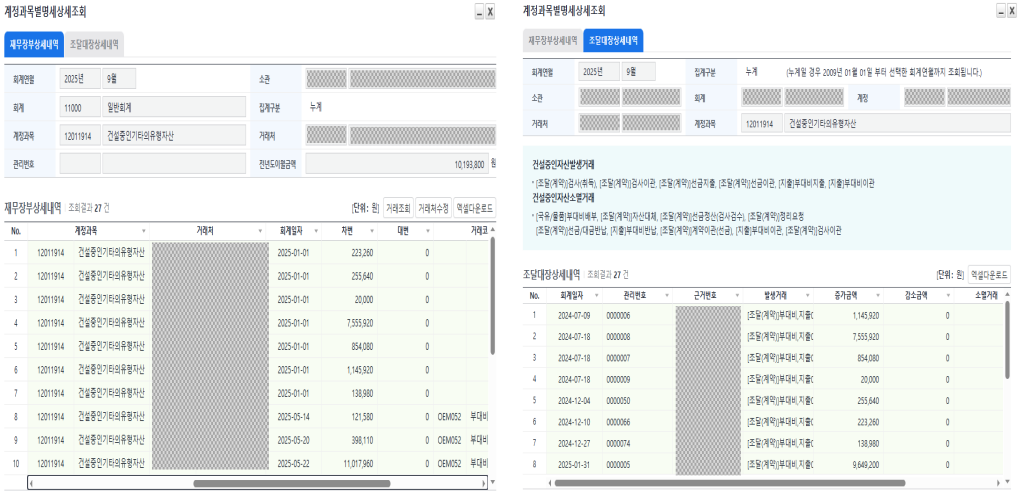

또한 조달메뉴에 일괄 조회기능[자산관리>조달관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정산/미정산현황 다운로드]을 신설하여 재무결산담당자가 한꺼번에 검사미정산, 선금미청산, 부대비 미배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0 ▌자산관리>조달관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정산/미정산현황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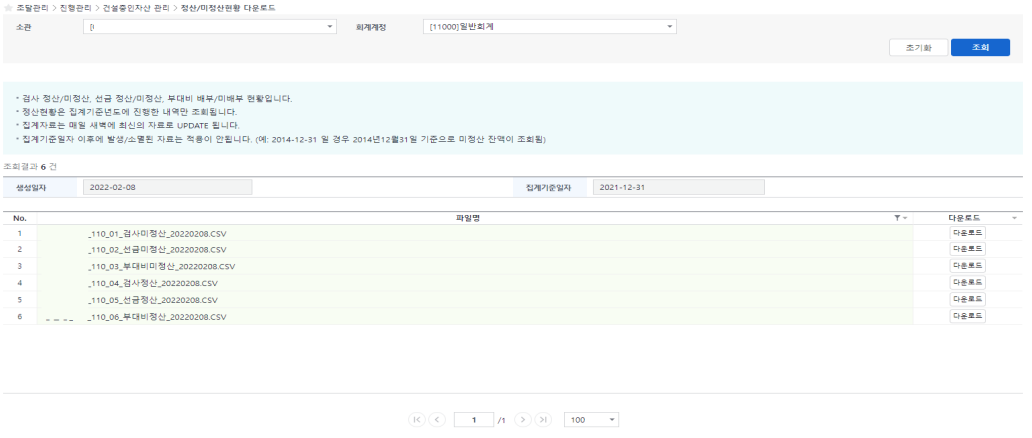

조달의 내역과 재무장부의 내역이 서로 일치되게 조치하였다면,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취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본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상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4) 관련 오류사례

① Case Ⅰ: 부대비 미배부(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 XX부처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절차 없이 업무에서 발생된 금액을 그대로 믿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마감하였다.

부대비 설정은 지출담당자가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택하는 화면과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1 ▌발생유형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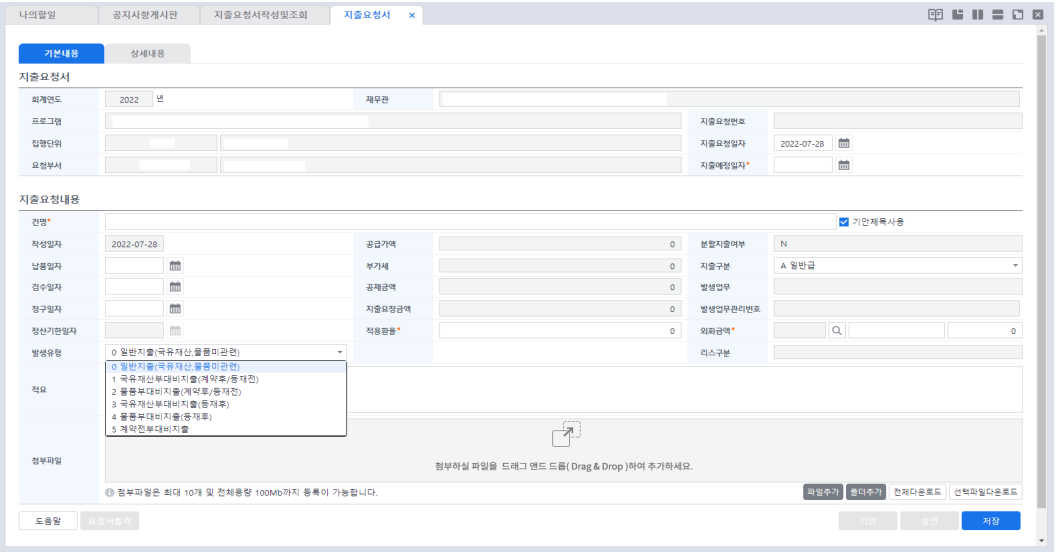

표 1-8 ▌발생유형 구분

발생유형	구 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	순수한 일반지출(비용)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부대비(계약번호 선택, 별도 배부처리)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부대비(대장번호 선택 시 자동반영) (요청번호, 검수번호 선택 시 별도 배부처리)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부대비(별도 배부처리)

발생유형 1~4번의 경우에는 각각 계약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및 대장번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각각의 정보에 따라 계정과목이 생성되며 (ex. 계약번호가 건물 관련인 경우 건설중인건물)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는 관련 정보(계약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를 통해 자산의 부대비 존재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발생유형 5번의 경우에는 계약정보 등 연계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으로 발생되며, 해당 자산 검수 시 부대비 조회를 통해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가 부대비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여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이 발생한 경우는 부대비 배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의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대비 배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업무담당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1장 국유재산의 취득_4.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또는 '제2장 물품의 취득_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참조

② Case Ⅱ: 검사 미정산(건설중인자산)

> OO부 일반회계에서 건물 완공 시점에 건설중인건물을 건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기타증감 업무를 통해 등재하여 건설중인건물이 과대 계상되었다.

상기 사례는 기성/준공검사 업무를 통하여 생긴 건설중인건물에 대하여 자산대체 업무를 누락하여 생긴 오류로 자산의 취득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계처리는 기성/준공검사, 지출 및 자산대체시점에 각각 나타나며, 생성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자산 취득시 올바른 업무절차(1차 기성/준공: 1억 원, 2차 기성/준공: 2억 원)

절차	담당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1억 원	미지급금	1억 원
중도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1억 원	국고수입	1억 원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2억 원	미지급금	2억 원
잔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2억 원	국고수입	2억 원
자산대체	**재산관리관**	**건 물**	**3억 원**	**건설중인건물**	**3억 원**

* 장기공사(건설공사 등)가 아니어서 지출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략

국유재산 관련 사업담당자가 기성/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재산관리관이 자산대체 절차(검사 정산)를 수행하지 않고,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건물을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는 경우 '건설중인건물'이 '건물'로 대체되지 않아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기타증감 처리에 따른 검사 미정산

절차	담당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1억 원	미지급금	1억 원
중도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1억 원	국고수입	1억 원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2억 원	미지급금	2억 원
잔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2억 원	국고수입	2억 원
기타증감	**재산관리관**	**건 물**	**3억 원**	**전기오류수정이익**	**3억 원**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가 '기타증감'을 취소하고 자산대체를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Case Ⅲ: 선금 미청산(건설중인자산 & 선급금)

OO청 △△특별회계에서 간선임도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지출액에 대한 건설중인자산을 기성/준공검사 시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미지급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상기 사례는 건설중인자산이 과대계상 되는 사례 중 하나로 미리 지급한 선금을 청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 유형이다. 공사계약 등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준공검사 시점에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오(誤)입력 하는 경우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

○ 올바른 업무절차(선금 2억원 지급, 총 계약금액 10억원)

절차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억원	국고수입	2억원
기성/준공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미지급금**	**8억원**
			건설중인자산	**2억원**
대금 지출	미지급금	8억원	국고수입	8억원
자산대체	자 산	10억원	건설중인자산	10억원

○ 잘못된 업무절차(선금청산금액 미입력으로 선금 미청산)

절차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억원	국고수입	2억원
기성/준공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미지급금**	**10억원**
대금 지출*	미지급금	8억원	국고수입	8억원
자산대체	자 산	10억원	건설중인자산	10억원

상기 회계처리와 같이 선금청산금액을 미입력하고 기성/준공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 인식하였던 건설중인자산 2억원이 차감되는 분개가 발생하지 않고 검사 금액 전부가 미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지출시점에 집행단위담당자 또는 지출관이 지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금청구서의 지출금액을 수정하여 올바른 지출액인 8억원만 지급이 될 수 있었지만, 건설중인자산 2억원과 미지급금 2억원이 상계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그림 1-12 ▌기성/준공검사_선금청산금액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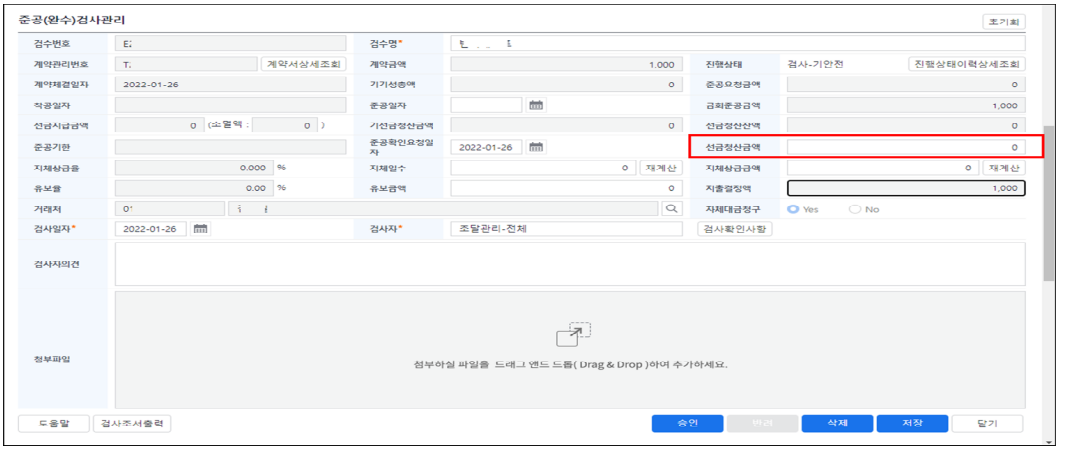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선금청산금액정정'*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1장 국유재산의 취득_6. 선금지급액 미청산' 참조

선금으로 지급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선금지급 시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건설중인자산과 선급금으로 구분된다. 자산(건물, 공작물 등, 무형자산 제외) 취득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중인자산으로, 무형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이 발생하게 된다.

④ Case Ⅳ: 자본형성적 경비(선급금)

XX부처 일반회계에서 민간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맡기고자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확인 후 해당 자산을 등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

지출 예산 중에는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 자치단체 및 해외 등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하 '자본형성적 경비')이 있다. 자본형성적 경비는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재산 등재 업무를 누락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표 1-9 ▌자본형성적 경비의 종류

예산세목	성 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 등

표 1-10 ▌자본형성적 경비 세부·세세부항목

예산목	세부·세세부항목	계정과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선급금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민간대행 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선급금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선급금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비 /해외
	해외출자금(정부출자기업 출자금)	정부출자기업 출자금
	해외출자금(정부출자기업외의 출자금)	정부출자기업외 출자금

자본형성적 경비는 자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이 취득되어 대장에 등재되기 전 까지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된다. 그리고 자산 취득 시에는 업무담당자가 선급금을 상계하고 해당 자산을 대장에 등재해야한다.

따라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등을 지출한 담당자는 해당 지출에 의하여 건설되는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를 본 자산으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관이 자본형성적 경비로 취득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할 때 기타증감처리 메뉴에서「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사유를 선택하여야 지출 시 계상된 '선급금'이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 재산관리관이「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이외의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ex.기타(증), 누락재산등록)에는 지출 시 계상된 선급금이 사라지지 않아 자산의 과대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의 검사 미정산 오류

> OO청 일반회계에서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가 당기에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 중인데도 본계정 대체 및 국유재산 등재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일반유형자산)가 59억 75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선박및항공기(일반유형자산) 59억 752만 원,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소방정책지원) 4,102만 원, 선박및항공기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4,102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60p 중>**

○ 선급금의 검사 미정산 오류

> OO부 XX기금회계에서는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2020년 중 완료되어 기존 선급금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선급금(기타유동자산)이 14억 65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4억 9,228만 원,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명: 질병관리본부지원) 2억 8,130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프로그램명: 질병관리본부지원)이 6억 3,293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26p 중>**

○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 OO청 일반회계에서는 준공이 완료되어 국유재산대장에 자산으로 등재하면서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지 않고 자산만 직접 국유자산대장에 기타증감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146억 5,211만 원,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53억 1,017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199억 6,228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34p 중>**

3 기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적정성

가. 국고예금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연내 사용하지 않은 관서운영경비의 잔액은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관서운영경비에 대응하는 재무계정과목인 국고예금 잔액 326원에 대하여 모두 오류라 판단하여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잔액을 0원으로 조정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출은 크게 일반지출과 관서운영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지출의 경우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쳐 집행이 되지만, 관서운영경비는 최초 교부 시에만 원인행위를 거치고 이후에는 지급결의를 통하여 집행된다.

관서운영경비는 사전에 교부받은 일정 금액 안에서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킨 제도이다.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서운영경비는 타 지출과 구분하기 위해서 '국고예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재정상태표 상 국고예금 금액은 '0원'이 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국고예금 잔액, 즉 관서운영경비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국고예금 금액을 '0원'으로 조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① 정부구매카드 결제일이 출납정리기한을 넘어서는 경우

관서운영경비는 통상 정부구매카드를 통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며 1개월분 카드대금이 차월에 지출된다. 이에 따라 12월의 카드대금은 차기 회계연도 1월에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납정리기한을 두어서 1월 20일 이전에 지출되는 정부구매카드 결제대금은 차기 회계연도가 아닌 당기 회계연도의 지출로 본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부구매카드는 결제일을 20일 이전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이 휴일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1일 이후에 카드대금이 지출되면 출납정리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당기 회계연도의 지출이 아닌 차기 회계연도의 지출로 처리된다. 이 경우 재정상태표 상 미지급금과 함께 국고예금 잔액이 존재하게 된다.

○ 출납정리기한 이전 지출 시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 당기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관서운영경비 교부	국고예금	100,000	국고수입	100,000
카드결제	제 비용	100,000	미지급금	100,000
지출(1월19일)	미지급금	100,000	국고예금	100,000

○ 출납정리기한 이후 지출 시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 당기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관서운영경비 교부	국고예금	100,000	국고수입	100,000
카드결제	제 비용	100,000	미지급금	100,000

- 차기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지출(1월21일)	미지급금	100,000	국고예금	100,000

② 국고금관리법 제47조[20]에 따른 단수차액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의 경우 원단위는 절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관서운영경비는 통상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이에 이자 등이 붙는 경우에는 원단위 금액이 존재하며 원단위 금액은 국고에 반납 할 수 없어 통장에 남게 된다.

따라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로 원단위 금액은 존재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에 관서운영경비 출납 단위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류사례처럼 백원, 천원 단위의 국고예금 잔액이 나타날 수 있다.

---

[20]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후략>

(2) 오류에 따른 영향

국고예금계좌에 실제로 존재하는 국고예금 금액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없애는 경우 국고예금 계정과목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며, 차기 회계연도에 국고예금 잔액이 부(-)의 금액으로 나타날 여지도 존재한다. 이처럼 실제로 중앙관서에 존재하는 현금 잔액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수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3) 점검 방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많은 중앙관서의 경우 국고예금 잔액이 위에서 설명한 올바른 금액인지, 혹은 오류로 인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dBrain+ 시스템에서는 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로 국고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3 ▌업무별원장_국고예금잔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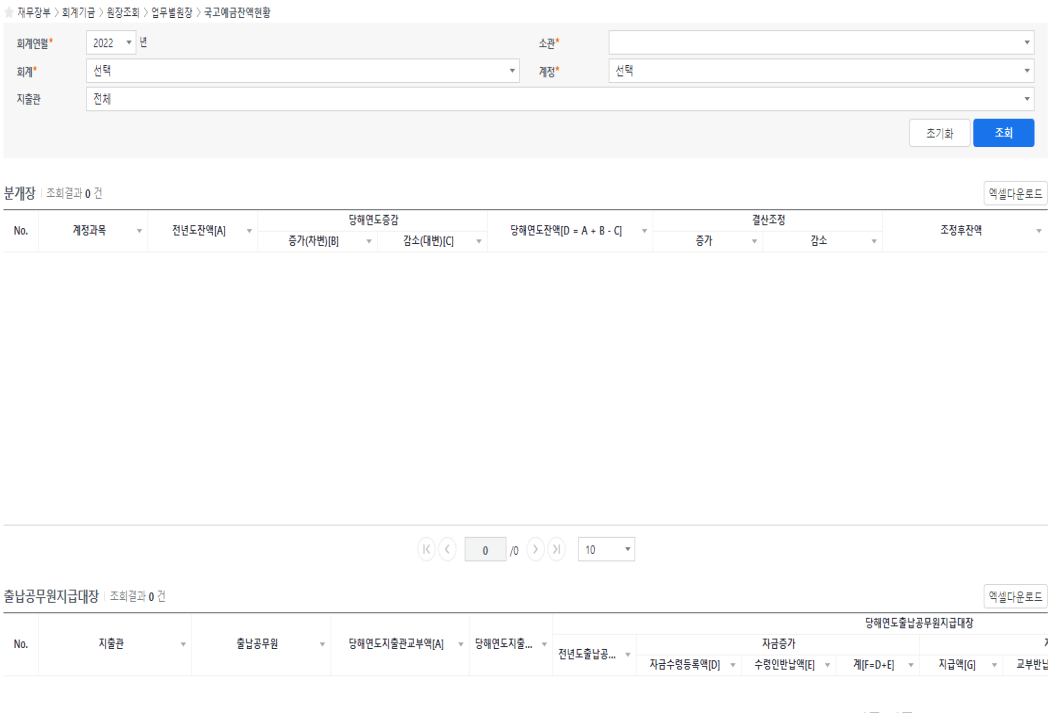

상기 화면을 통해서 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0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금융자산의 분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투자증권으로 분류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은 금융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지급보증금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결산 주무관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정기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도, 금융상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 만기일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파생상품자산을 지분증권으로, 금융상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분증권을 금융상품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자산 분류기준을 숙지하여 올바르게 분류하여야 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MMF를 포함),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등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21] 등을 말한다.

③ 투자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22]과 지분증권[23], 국세물납증권[24]으로 구분한다.

④ 기타금융자산

상기 ①~③,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생상품자산, 구상채권,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파생상품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의미한다.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 미래에 결제된다.

---

21)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구좌 또는 자산관리계좌(CMA),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 특정금전신탁, (지역발전)예탁금, CDMA 등

22)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투자증권으로서 국세물납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로 구분

23) 주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투자증권으로서 국세물납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주식과 기타지분증권으로 구분

24) 국세 물납을 통해 취득한 투자증권

(2) 오류에 따른 영향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기적인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지급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투자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그 자체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일 경우 재정운영표에 인식해야 하는 관련 평가손익을 순자산변동표에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올바른 회계처리(공정가액위험회피 대상 파생상품 평가이익 1,000)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파생상품자산	1,000	파생상품평가이익 (재정운영표)	1,000

○ 잘못된 회계처리(투자증권 평가이익 1,000)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투자증권	1,000	투자증권평가이익 (순자산변동표)	1,000

참고로 파생상품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유형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무제표	비고
공정가액 위험회피		재정운영표	당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

(3) 점검방법

결산담당자는 각 금융상품별 정보관리항목(취득일, 만기일 등) 및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의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를 참고해 금융상품의 분류가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 분류에 대해서는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파생상품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오류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TIP>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금융상품	투자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MMDA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조건부채권(RP)		○		
신종기업어음(CP)		○		
표지어음		○		
MMT		○		
특정금전신탁		○		
(지역발전) 예탁금		○		
어음관리구좌(CMA)		○		
CDMA		○		
국채			○	
공채			○	
지방채			○	
회사채			○	
장기사모채권투자신탁				○
MMF				○
ELS				○
ELF				○
ELD				○
ETF				○
연기금풀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2			○	○
신종자본증권				○

*1)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은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다.

*2)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사가 운용하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특정투자일임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이 때 투자일임계약자산이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야 한다.

① 단순한 위탁투자지침 제공 여부나 운용지시가 아니라 각 계약별로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운용지침서상에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수행하는지 여부

② 투자자가 위탁투자지침의 내용이나 운용지시를 통해 운영사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투자자가 위탁투자지침상에서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가격, 매매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운영사에게 지시하여 운영사의 투자판단 시 재량권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 분류 오류

OO부 XX기금에서 보유 중인 정기예금 중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하이고 거래비용이 없으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정기예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이 331억원 과대 계상되었고, 현금및현금성자산(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43p 중>

○ 신주인수권에 대한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

OO부 XX기금에서 2013년도에 한진해운(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면서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결산 시 공정가액 변동을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지분증권(투자자산)과 투자증권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24억 1,348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파생상품자산(투자자산)이 24억 1,348만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파생상품평가손실(비배분비용)과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65억 9,539만원, 90억 88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53p 중>

○ 단기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OO부 XX기금에서 보유 중인 금융상품 중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 기타국고금(유동자산)이 33억 6,75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의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과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유동자산)이 각각 33억 6,725만원, 2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08p 중>

○ 투자자산 분류 오류 및 평가이익 인식 누락

OO부 XX기금에서 연기금투자풀 방식으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은 장기투자증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5,125억 2,579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과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이 각각 3,027억 3,496만 원, 2,097억 9,083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연기금투자풀 방식으로 운용 중인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을 누락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과 투자증권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334억 3,06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71p 중>

○ 금융상품 유동성 대체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나라키움 원주통합청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시공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해당 부채계정을 감소시켰어야 하나 단기금융상품을 증가시켰고, 유동성 분류도 잘못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의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과 장기임대보증금(기타비유동부채)이 각각 28억 8,498만 원, 8,498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의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이 28억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7p 중>

○ 정부내예탁금의 유동성 대체 오류

OO부 XX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여한 예탁금 중 약정 상환기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인 예탁금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내단기예탁금(유동자산)이 1,000억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내장기예탁금(투자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 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94p 중>

○ 금융자산의 유동성 분류 오류

OO위원회 일반회계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납금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제재금수익(유동자산) 1,532억 2,790만 원,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 657억 6,669만 원, 미수기타수익(유동자산) 142만 원,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 114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미수제재금수익(기타비유동자산) 1,532억 2,790만 원, 장기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기타비유동자산) 657억 6,669만 원, 장기미수기타수익(기타비유동자산) 142만 원, 장기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기타비유동자산) 114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09p 중>

다. 임차보증금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임차보증금 계정과목 검토 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동일한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대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 생각하고 추가 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임차보증금은 그 성격에 따라 재정상태표 상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 임차보증금-국유: 전세권이 설정되어 국유재산대장으로 관리하는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채권: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 채권현재액보고서로 관리하는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일반: 공공기관관리기금의 임차보증금으로 국유재산대장 또는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상기 오류사례는 국유재산대장으로 보고되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로 재정상태표에 계상된 것이므로 재무결산에는 오류가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대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므로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결산 둘다 오류인 것이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금액이 '임차보증금-국유'로 표시되므로 재정상태표가 왜곡된다.

이러한 오류는 업무 수행 시 '임차/사용계약요청'(채권현재액보고서로 관리하고, 재정상태표에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인식됨)이 아닌 '무체재산 취득요청'(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재정상태표에 '임차보증금-국유'로 인식됨)으로 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변경]*메뉴를 통해 '임차보증금-국유'를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가능하다.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1장 국유재산의 취득_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_(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참조

(3) 점검 방법

임차보증금 금액 및 실재성 검토 시 전세권 설정 여부를 추가로 파악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변동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합계잔액시산표 상 임차보증금을 조회하면 연간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감 시 발생한 회계처리 적정성, 임차계약서 등과 비교를 통한 실재성 및 정보관리항목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장부' 메뉴 중 '보조원장' 화면에서는 계정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각 거래처별(임차계약 주체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4 ▌보조원장(임차보증금-국유/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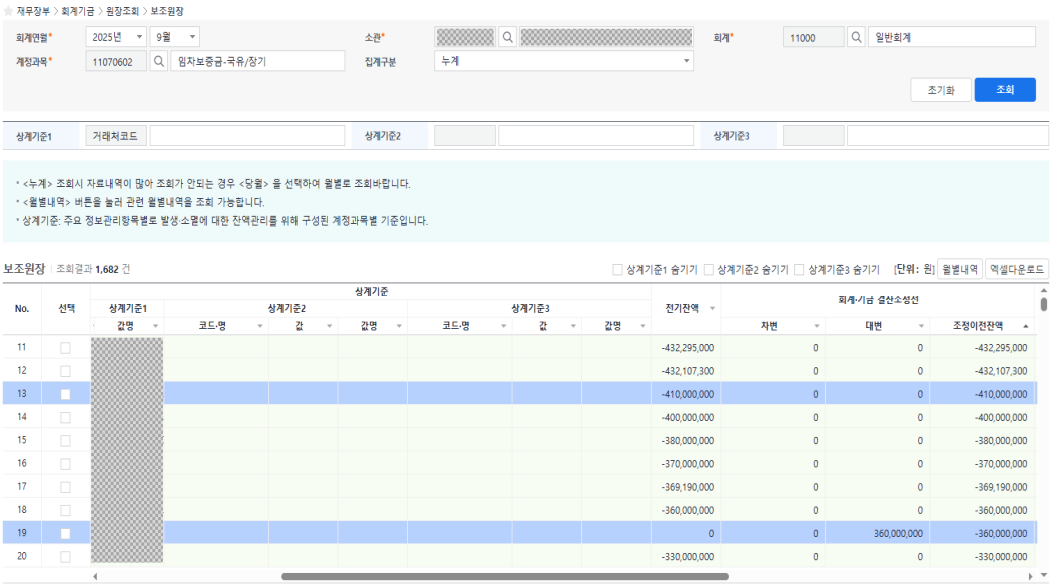

집계구분을 '누계'로 선택하여 조회하는 경우 전기이월잔액이 함께 조회가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그림의 13행, 19행과 같이 거래처별 잔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는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거래처별 금액과 실제 임차계약 주체별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15 ▌전표조회(임차보증금-국유/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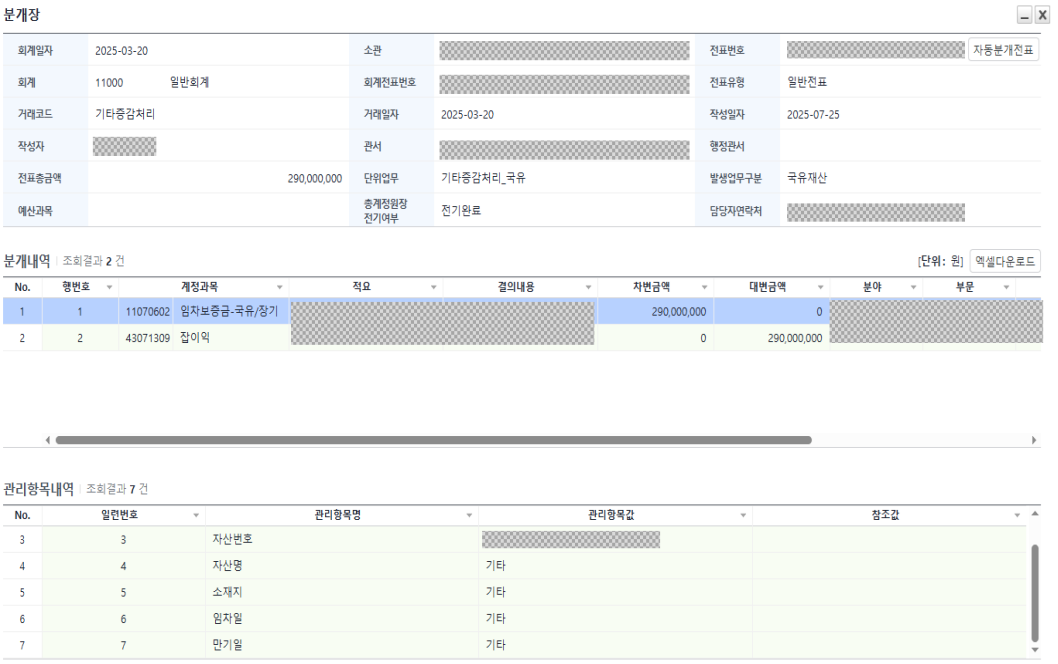
분개장

회계일자	2025-03-20	소관		전표번호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기타증감처리	거래일자	2025-03-20	작성일자	2025-07-25
작성자		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290,000,000	단위업무	기타증감처리_국유	발생업무구분	국유재산
예산과목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11070602	임차보증금-국유/장기			290,000,000	0		
2	2	43071309	잡이익			0	290,000,00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7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3	3	자산번호		
4	4	자산명	기타	
5	5	소재지	기타	
6	6	임차일	기타	
7	7	만기일	기타	

'보조원장' 화면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더블클릭하면 상세 전표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그림 1-15>와 같이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이 '기타'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회계연도말 유동성대체[25]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를 통해 만기일을 수정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유동성 미대체로 인한 감사원 지적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말 결산시 유동성대체를 누락하지 않도록 디브레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임차보증금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자를 실질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한다.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연계기관은 임차보증금/장기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5) 만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임차보증금/단기 또는 임차보증금/장기로 구분하며, 취득 시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임차보증금/장기로 분류한 임차보증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지 검토하여 해당 부분은 임차보증금/단기로 대체해야 한다(유동성 대체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임차보증금-채권과 임차보증금-국유의 분류 오류

> OO위원회는 전세권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 전체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채권(유동자산) 7억 2,450만 원 과소, 임차보증금-국유(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임차보증금-채권(비유동자산) 6억 6,950만 원이 과소, 장기임차보증금-국유(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21p 중>**

○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

> OO부 일반회계에서 만기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임차계약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국유(유동자산)가 36억 5,56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임차보증금-국유(기타비유동자산)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73p 중>**

라. 선수금

업무담당자가 국고납입하지 않고 제각되는 전세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각요청서 작성 시 '기수납여부'를 체크함에 따라 특정 거래처에 대한 부(-)의 선수금이 발생하였으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선수금 거래처별 잔액 검토를 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선수금은 dBrain+ 시스템 상 자산의 매각을 위한 징수결의 시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정상적인 자산매각절차[26]에 따른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 자산매각절차별 분개(토지 장부가액: 100,000, 매각액: 120,000)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징수결의	미수금	120,000	선수금	120,000
수납정산	국고이전지출	120,000	미수금	120,000
인 계	선수금	120,000	토 지	1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

자산매각절차의 시작인 매각요청서 작성 시 '기수납여부'를 체크하는 화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국고로 세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dBrain 매뉴얼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납입 없는 전세권 제각' 등 정상적인 자산매각절차를 벗어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기수납여부'를 체크할 경우 재무회계상 오류(부(-)의 선수금 잔액) 발생 가능성이 높다.

26) 매각절차: 자산관리>국유재산>처분>매각요청>매각계약요청>Onbid/dBrain(수의계약)계약결과 입력>징수요청>징수결의>수납정산>인계관리

그림 1-16 ▌매각요청서(기수납여부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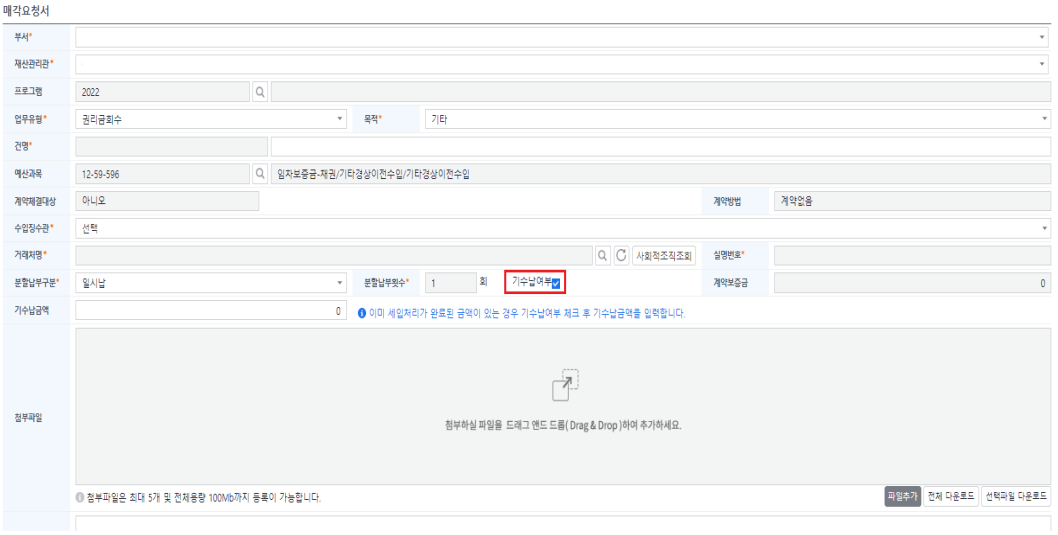

(2) 오류에 따른 영향

'기수납여부'를 체크하면, 징수결의 및 수납정산 절차 없이 인계가 이루어지므로 생성되지도 않은 선수금을 차감하면서 자산을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선수금이 부(-)의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 기수납여부 체크 시 분개(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국고납입(x)	회계처리 없음			
인 계	선수금	100,000	토 지	100,000

특히 국고납입하지 않고 전세권을 제각하는 경우라면 국고납입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금은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해서 '기수납여부' 체크로 업무를 처리하면 해당 거래처에 대해 부(-)의 선수금이 발생한다.

(3) 점검 방법

선수금은 재무장부의 '계정과목별 명세' 메뉴 중 '선수금'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선수금 계정과목 금액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7 ▌계정과목별 명세(선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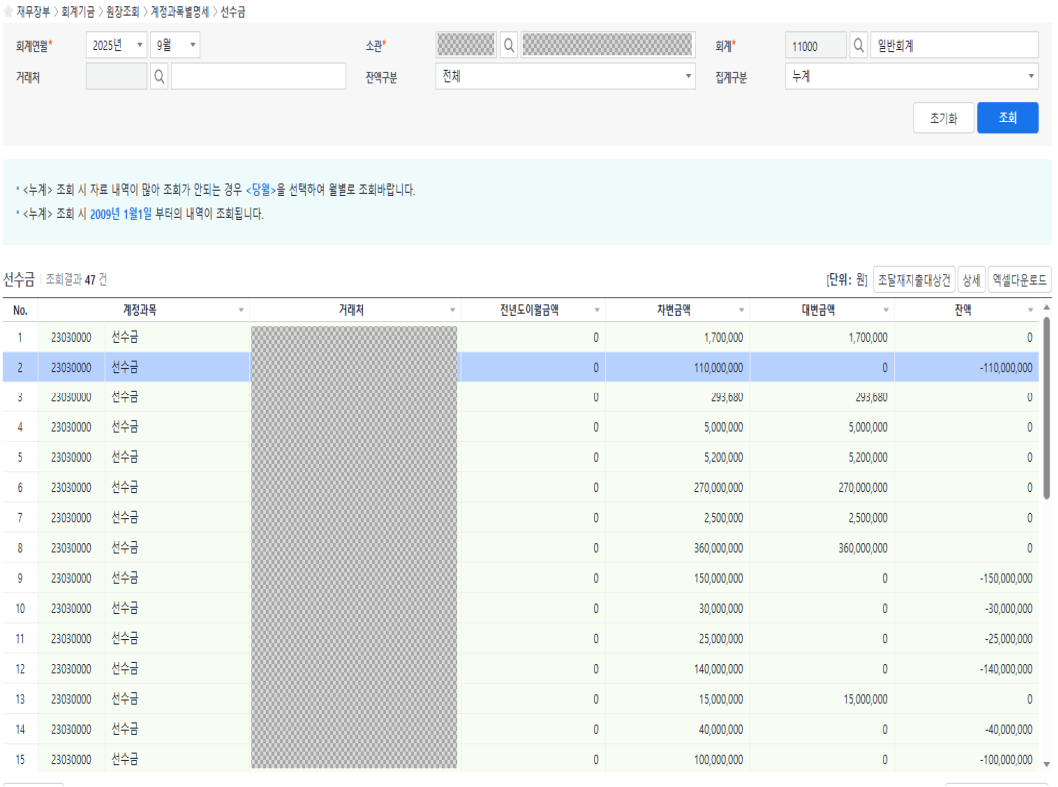

No.	계정과목		거래처	전년도이월금액	차변금액	대변금액	잔액
1	23030000	선수금		0	1,700,000	1,700,000	0
2	23030000	선수금		0	110,000,000	0	-110,000,000
3	23030000	선수금		0	293,680	293,680	0
4	23030000	선수금		0	5,000,000	5,000,000	0
5	23030000	선수금		0	5,200,000	5,200,000	0
6	23030000	선수금		0	270,000,000	270,000,000	0
7	23030000	선수금		0	2,500,000	2,500,000	0
8	23030000	선수금		0	360,000,000	360,000,000	0
9	23030000	선수금		0	150,000,000	0	-150,000,000
10	23030000	선수금		0	30,000,000	0	-30,000,000
11	23030000	선수금		0	25,000,000	0	-25,000,000
12	23030000	선수금		0	140,000,000	0	-140,000,000
13	23030000	선수금		0	15,000,000	15,000,000	0
14	23030000	선수금		0	40,000,000	0	-40,000,000
15	23030000	선수금		0	100,000,000	0	-100,000,000

계정과목별 명세 조회화면에서 우선 부(-)의 잔액으로 나타나는 건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하고(거래처 수정 등), 나머지 거래처별 선수금 금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TIP> 인계 업무 누락 시 오류

자산매각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인계 절차를 누락할 경우 징수결의 시 생성된 선수금과 매각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되면서 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는 분개가 생성되지 않아 자산, 부채가 과대 계상되고 자산처분손익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27)]

27) 인계 절차 누락과 관련한 점검 및 조치방법은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9.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선수금 상계 누락

> OO부 일반회계에서 2021회계연도에 징수결의 한 유형자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기타의미수금을 2022회계연도에 제거하면서 상대계정인 선수금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금(유동부채)이 2,812억 1,687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39p 중>**

○ 국유재산(토지) 처분 회계처리 누락

> OO부 특별회계에서 2024년 평택 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 배후부지를 매각한 후 처분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조정항목), 선수금(유동부채)이 각각 355억 3,001만 원, 148억 6,289만 원, 445억 1,358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프로그램명: 항만개발 및 관리)이 238억 4,64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89p 중>**

마. 무형자산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당기 중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용역비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 것을 발견하였지만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나, 위 사례에서처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까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타 용역비용까지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할 경우 무형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점검 방법

수정전시산표 검토를 통하여 당기 중 무형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기 중 증가한 내역들이 취득원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월별증가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월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월에 대한 전표(적요 등)확인을 통해 무형자산 취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 일관성 없이 자산 또는 비용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TIP> 무형자산 과소 계상

감사원 지적사항은 본문 사례와는 반대로 무형자산 과소 계상 오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방안은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 처리 오류' 부분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 과소계상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연구개발용역비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관리운영비)가 각각 159억 5,821만 원, 3억 6,502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연구개발용역비(관리운영비)가 163억 2,323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65p 중>

○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 과소계상 오류

OO회 일반회계에서 2020년 2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취득원가가 23억 6,196만 원인「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시스템을 무상으로 수증하면서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가 19억 2,894만 원 과소 계상, 무형자산상각비(관리운영비)가 4억 3,303만 원 과소 계상,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23억 6,196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19p 중>

○ 무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OO부 □□특별회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구축한 지능형 교통체계(국도 ITS) 관련 지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무형자산) 및 선급금(유동자산)이 각각 827억 2,573만 원, 577억 1,200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위탁사업비(프로그램총원가) 1,404억 3,773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68p 중>

○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OO부 일반회계에서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관련 지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선급금(비유동자산)이 1억 3,685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수수료(프로그램명: 사법정보화운영)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288p 중>

○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OO부 일반회계에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에 지출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고, 구축사업 대금의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분담하여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분담금에 대한 자산 취득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114억 3,574만 원, 무형자산상각비(관리운영비) 1억 9,383만 원,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 32억 8,256만 원,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41억 7,268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위탁사업비(관리운영비)가 41억 7,433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59p 중>

○ 무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4회계연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중 1단계 완료시점까지 구축사업에 투입된 금액만큼만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80억 2,757만 원,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 44억 5,976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무형자산상각비(관리운영비)가 35억 6,781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49p 중>

바. 사용수익권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당기 중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직접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용수익권을 인식한 것을 발견하였지만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판단하고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해당 자산에 무상 사용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 제외)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 취득원가 전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용수익권은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반대급부 성격으로 민간사업자 등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자산의 가액 중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인식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처가 직접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인식할 경우 자산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수익권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상각하여 '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사용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점검 방법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있다면 거래상대방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부처가 인식한 사용수익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확인해준 금액에 착오는 없는지, 회계감사 후 수정사항 발생 등으로 기존 금액이 변동하지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해본다면 오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상각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수익권이 상대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정하게 상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TIP> 사용수익권 과소 계상

감사원 지적사항은 본문 사례와는 반대로 사용수익권 과소계상 오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방안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6.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BTL 관련 회계처리 오류' 부분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어 국가로 귀속된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면서 국가의 공사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도로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1,331억 9,917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 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150억 2,183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482억 2,1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37p 중>

○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이미 준공되어 운영 중인 광주원주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해당 공사에 지출한 공사보조금만큼 차감하고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사용수익권 전액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과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각각 2,313억 3,404만 원,216억 7,696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및 관리)이 2,530억 1,1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33p 중>

○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준공되어 수증자가 무상사용 중인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 관련 사용수익권을 수증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36억 7,417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36억 7,417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868p 중>

○ 사용수익권 상각 회계처리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국립암센터 건물 관련 사용수익권을 상각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수익권(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18억 8,235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60p 중>

○ 사용수익권 상각 회계처리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국립암센터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과 관련하여 사용수익권 상각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사용수익권(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18억 8,235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68p 중>

○ 사용수익권 측정 관련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면서 수증자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사용수익권 금액과 다르게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 16억 7,101만 원과 구축물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 77억 7,340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93억 4,501만 원 과대계상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134p 중>

○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사용수익권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2024년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해당 건물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사용수익권 인식 및 사용수익권 상각을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사용수익권(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1,176억 원 과소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37p 중>

4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적정성

가. 수선유지비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구축물수선유지비 계정과목 금액이 122억원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예산 규모 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산성이 있는 지출(자본적지출)에 대해서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① '자본적지출' 성격의 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1장 국유재산의 취득_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참조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목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되며,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의 증가로, 수익적지출은 비용(수선유지비)으로 회계처리 된다.

- 자본적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수익적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410~430번대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면 업무처리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② 공사용역요청서 등 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비용 선택)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1장 국유재산의 취득_1. 계약종류의 선택 오류' 참조

국유재산 취득 관련 공사계약 시 계약종류는 크게 시설공사(본공사), 공사용역(부대공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공사의 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비용'을 선택하면 수선유지비로 처리가 된다. 따라서 자산 성격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수선유지비가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1-11 ▌공사용역요청서 작성시 자산 명세 선택

계약 종류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시설공사 (본공사)	물품	[물품대장] 물품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토지, 건물, 공작물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공작물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③ 일반지출로 처리하면 안되는 업무를 일반지출로 처리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2장 물품의 취득_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취득 오류' 참조

지출 성격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며, 업무담당자는 이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달, 국유재산 등 별도의 메뉴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일반지출' 메뉴로 진행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자산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비용이 과대계상되고 당해연도 이후의 비용은 과소계상되므로, 결과적으로 올바른 원가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3) 점검 방법

수선유지비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있는 지출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18 ▌합계잔액시산표(구축물수선유지비)

합계잔액시산표 | 조회결과 317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차변			계정과목		대변		
	잔액	합계	당월			당월	합계	잔액
257	33,330,221,514	33,330,221,514	3,297,579,817	52080200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0	0	0
258	16,202,323,485	16,202,323,485	1,401,548,230	52080201	건물수선유지비	0	0	0
259	4,382,926,600	4,382,926,600	845,573,370	52080202	구축물수선유지비	0	0	0
260	5,766,790,060	5,766,790,060	594,226,571	52080203	기계장치수선유지비	0	0	0
261	1,896,954,433	1,896,954,433	131,940,586	52080204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0	0	0
262	740,009,346	740,009,346	48,292,040	52080205	전비품수선유지비	0	0	0
263	4,341,217,590	4,341,217,590	275,999,020	52080206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0	0	0
264	862,710,923	862,710,923	3,632,113	52080500	자산폐기손실	0	0	0
	15,900,673,053,044	19,219,292,139,405	245,470,882,434		합계	245,470,882,434	19,219,292,139,405	15,900,673,053,044

구축물수선유지비 43억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해당 행을 더블클릭하면 월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9 ▌월별내역(구축물수선유지비)

전기이월금액 0

월별내역 | 조회결과 9 건 [단위: 원] 전표현황 보조원장조회 엑셀다운로드

No.	월	차변금액	대변금액	결산조정이전잔액	결산조정차변금액	결산조정대변금액	결산조정후잔액
1	01	27,685,580	0	27,685,580	0	0	27,685,580
2	02	122,059,830	0	122,059,830	0	0	122,059,830
3	03	387,679,950	0	387,679,950	0	0	387,679,950
4	04	499,693,330	0	499,693,330	0	0	499,693,330
5	05	628,908,640	0	628,908,640	0	0	628,908,640
6	06	510,807,710	0	510,807,710	0	0	510,807,710
7	07	697,928,390	0	697,928,390	0	0	697,928,390
8	08	662,589,800	0	662,589,800	0	0	662,589,800
9	09	845,573,370	0	845,573,370	0	0	845,573,370
합계		4,382,926,600	0	4,382,926,600	0	0	4,382,926,600

월별내역 확인결과 9월에 비경상적으로 많은 금액 8.4억 원이 인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표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20 ▌분개장(구축물수선유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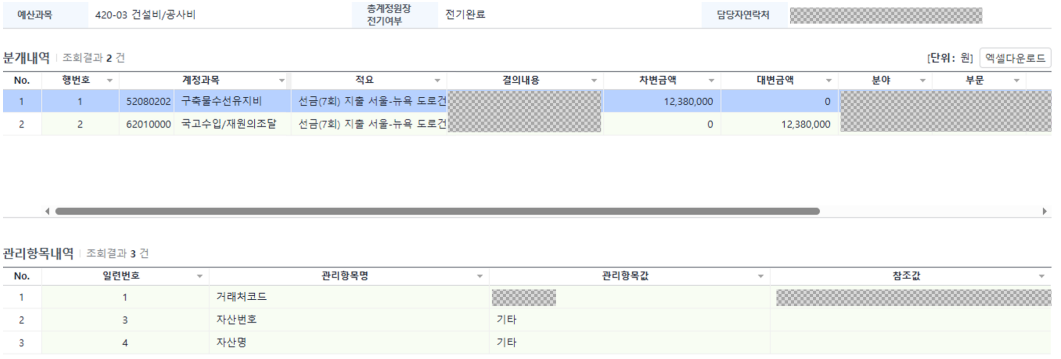

예산과목 420-03 건설비/공사비 | 승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52080202	구축물수선유지비	선금(7회) 지출 서울-뉴욕 도로건	12,380,000	0		
2	2	62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선금(7회) 지출 서울-뉴욕 도로건	0	12,380,00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3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	3	자산번호	기타	
3	4	자산명	기타	

전표 조회 결과 420-03목(건설비) 예산으로 도로 건설을 위해 선금을 지출한 건임을 알 수 있다. 자산 취득을 위한 선금 지출 금액은 수선유지비가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선유지비는 금액이 비경상적으로 큰 건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자본적지출의 비용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2023회계연도에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의 노후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본적지출 5억 8,373만 원을 포함함 전체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관리운영비) 5억 8,373만 원이 과대 계상,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같은 금액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의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 973만 원과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 973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111p 중>

○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OO청 일반회계에서 2024회계연도 농생명유전자원 재배온실 보수·개축 공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5억 6,595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물수선유지비(프로그램명: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5억 1,029만 원, 소모성물품비(프로그램명: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5,566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06p 중>

나. 전기오류수정손익

김국유 주무관은 당기에 신축 완료된 건물과 관련해 기성준공검사만 수행하고, 자산대체는 누락 하였다. 이후 기말에 건물이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자 '기타증감' 메뉴 중 '기타(증)' 을 선택하여 건물을 등재하였다.[28] 그 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였고 건설중인건물이 과대 계상되었다.
한편,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결산 시 큰 금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발견하였으나, 발생 원인의 적정 여부 검토 없이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회계처리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 전기 이전의 회계처리 오류를 당기에 수정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자산대체업무 대신 기타증감 메뉴로 건물 등재)로 인해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기중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업무담당자가 업무처리 오류를 기타증감(기타(증)) 메뉴를 통해 해결하고, 결산담당자가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수정하지 못할 경우, 건설중인자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당기 자산과 재정운영결과가 왜곡표시 된다.

---

28) 기성준공검사 시 건설중인건물이 생성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고, 자산대체 시 건물이 증가하고 건설중인건물이 감소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기타증감 메뉴에서 '기타(증)'을 선택하여 자산 등재 시 자산의 상대 계정과목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한다. 기타증감 메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2장 물품의 취득_1.일반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_참고 기타증감 메뉴' 참조

(3) 점검 방법

재무결산 메뉴 중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메뉴에서 기중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계정과목별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도 있으며, 통합하여 조회도 가능하다.

그림 1-21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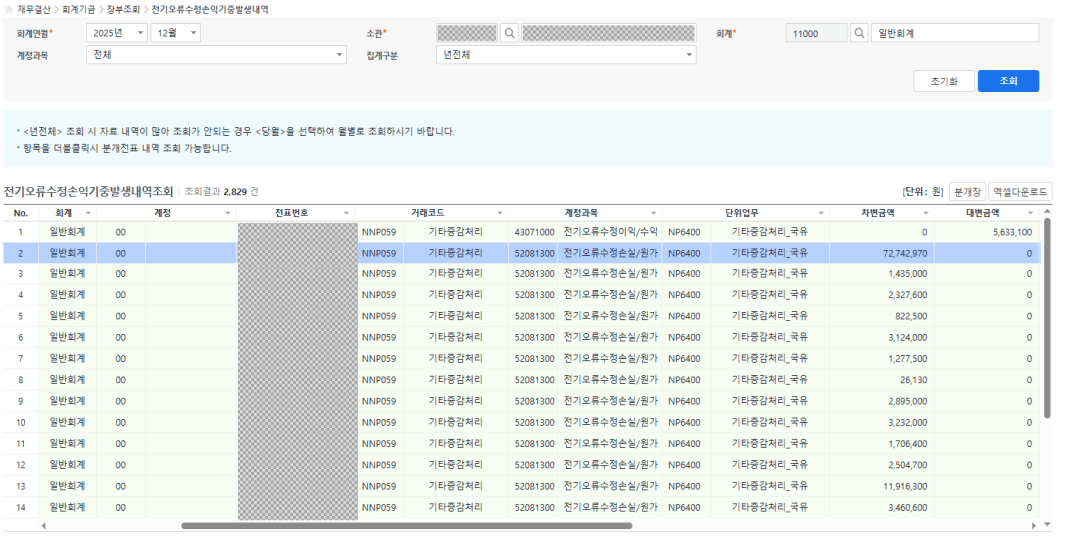
재무결산 > 회계기금 > 장부조회 > 전기오류수정손익기중발생내역

회계연월* 2025년 12월 | 소관* | 회계* 11000 일반회계 | 계정과목 전체 | 집계구분 년전체 | 초기화 | 조회

* <년전체> 조회 시 자료 내역이 많아 조회가 안되는 경우 <당월>을 선택하여 월별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을 더블클릭시 분개전표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기중발생내역조회 조회결과 2,829 건 [단위: 원] 분개장 엑셀다운로드

No.	회계	계정	전표번호	거래코드		계정과목		단위업무		차변금액	대변금액
1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430710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0	5,633,100
2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72,742,970	0
3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435,000	0
4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2,327,600	0
5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822,500	0
6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3,124,000	0
7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277,500	0
8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26,130	0
9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2,895,000	0
10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3,232,000	0
11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706,400	0
12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2,504,700	0
13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1,916,300	0
14	일반회계	00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3,460,600	0

건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받아서 금액을 점검할 수 있다. 금액이 클수록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액 순으로 정렬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1-22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엑셀 다운)

	A	B	J	K	L	M	N	O	P	Q	R
1	No.	회계일자	거래코드		계정과목		단위업무		차변금액	대변금액	적요및정보관리항목
2	390	2025-05-12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0,864,265,434	0	
3	2737	2025-09-11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9,494,511,040	0	
4	2688	2025-09-08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3,845,853,760	0	
5	2301	2025-09-04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2,634,243,942	0	
6	1193	2025-07-01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2,629,424,000	0	
7	102	2025-02-04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2,200,680,000	0	
8	2077	2025-08-22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971,598,200	0	
9	2290	2025-09-04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654,155,998	0	
10	1192	2025-07-01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618,536,000	0	
11	2293	2025-09-04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309,806,344	0	
12	1942	2025-08-18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139,672,820	0	
13	2212	2025-09-01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115,424,000	0	
14	2134	2025-08-22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047,499,200	0	
15	2285	2025-09-04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1,009,762,600	0	
16	337	2025-04-03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929,489,375	0	
17	2014	2025-08-21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901,775,100	0	
18	1224	2025-07-17	NNP036	기타증감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833,350,600	0	
19	1400	2025-07-31	NNP036	기타증감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731,096,320	0	
20	368	2025-04-24	NNP036	기타증감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703,493,700	0	
21	2510	2025-09-04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701,693,900	0	
22	2127	2025-08-22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627,858,000	0	
23	1386	2025-07-31	NNP059	기타증감처리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NP6400	기타증감처리_국유	617,895,416	0	

금액이 가장 큰 건에 대해서 전표 조회결과 다음 <그림 1-23>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3 ▌분개장(전기오류수정이익)

분개장

회계일자	2025-05-12	소관		전표번호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기타증감처리	거래일자	2025-05-12	작성일자	2025-07-14
작성자		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36,553,726,407	단위업무	기타증감처리_국유	발생업무구분	국유재산
예산과목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3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12010100	토지/일반유형자산	[오류정정]입력착오] RQ2	0	36,553,726,407	0000	0000	000
2	2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환가	[오류정정]입력착오] RQ2	10,864,265,434	0	0000	0000	000
3	3	64020100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오류정정]입력착오] RQ2	25,689,460,973	0	0000	0000	00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5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06441777	기타거래처
2	2	거래처분류코드	440	민간-기타민간단체
3	3	자산번호	12203751A2220011530	
4	4	자산명	기타	
5	5	자산감소구분	99	기타

전표 조회 결과 108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기타증감처리' 업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적요 및 결의내용으로는 전기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전표 작성 일선관서와 담당자를 찾아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적요가 'RQ~' 로 시작되는 전표는 모두 기타증감업무에서 나타난 업무처리로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타증감업무로 나타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서는 전기오류가 아닌 당기 업무처리 오류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1) 배경

국유재산과 물품에서 발생시킨 기타증감 분개 전표는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계정과목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결산담당자가 기타증감에 따른 계정과목의 적정성을 쉽게 파악하도록 기타증감에 따른 분개 전표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재무결산>회계기금>장부조회>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을 구현하였다.

(2)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그림 1-24 ▌기타증감 분개전표일괄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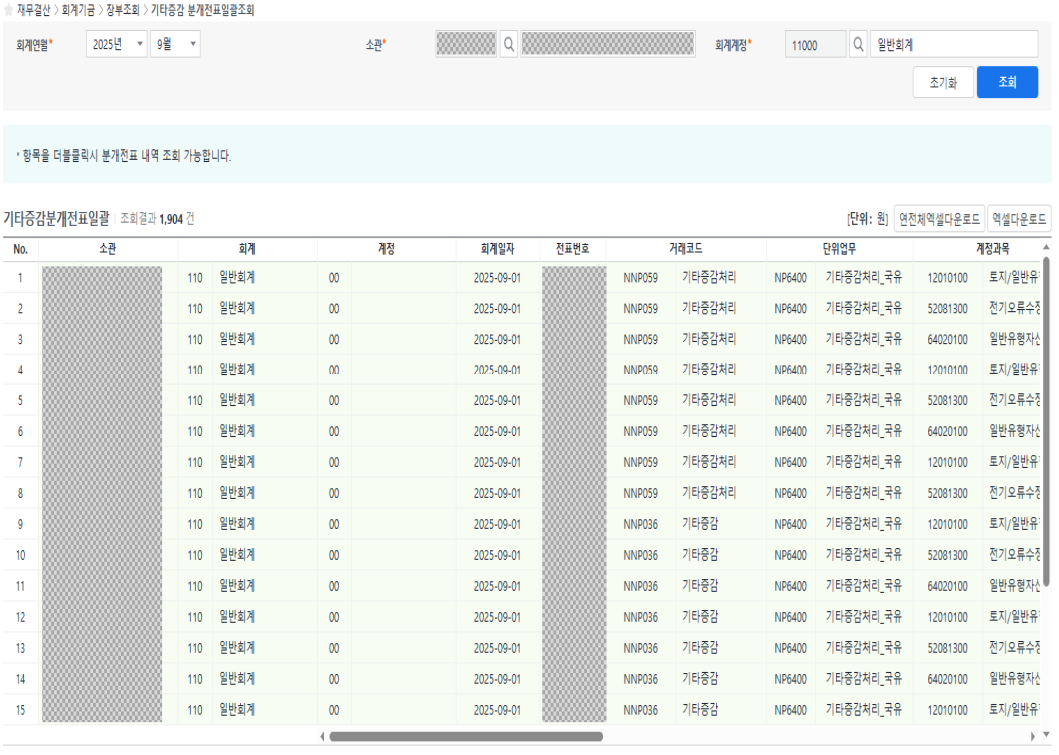

다. 잡이익, 잡손실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잡손실 금액이 70억원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내역에 대하여 추가 검토 없이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였다.

(1) 오류의 유형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수입·지출)」 '제1장 지출_1절 세부·세세부항목 선택_3. 잡손실 과다계상', '제2장 수입_1절 세부·세세부항목의 선택_2. 잡이익 과다계상' 참조

기중에 발생하는 잡손실과 잡이익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출 또는 수입 업무에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당기에 발생한 잡이익과 잡손실 금액이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잡이익과 잡손실은 각각 국가운영수익, 국가운영비용의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으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부처별 업무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특정 계정과목으로 포괄하지 못하여 잡이익, 잡손실이 계상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3) 점검 방법

잡이익과 잡손실의 경우 각 지출건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금액이 큰 지출건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림 1-25 ▌월별내역(잡손실)

월별내역 조회결과 9 건 [단위: 원] 전표현황 보조원장조회 엑셀다운로드

No.	월	차변금액	대변금액	결산조정이전잔액	결산조정차변금액	결산조정대변금액	결산조정후잔액
1	01	14,030,710	0	14,030,710	0	0	14,030,710
2	02	5,149,850	0	5,149,850	0	0	5,149,850
3	03	3,871,650	0	3,871,650	0	0	3,871,650
4	04	188,983,910	0	188,983,910	0	0	188,983,910
5	05	8,151,700	0	8,151,700	0	0	8,151,700
6	06	15,293,820	0	15,293,820	0	0	15,293,820
7	07	20,349,270	0	20,349,270	0	0	20,349,270
8	08	184,614,766	0	184,614,766	0	0	184,614,766
9	09	10,206,230	0	10,206,230	0	0	10,206,230
	합계	450,651,906	0	450,651,906	0	0	450,651,906

잡손실 4.5억원 중 4월에 1.8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4월의 잡손실 내역을 위주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개장 검토를 통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6 ▌분개장(잡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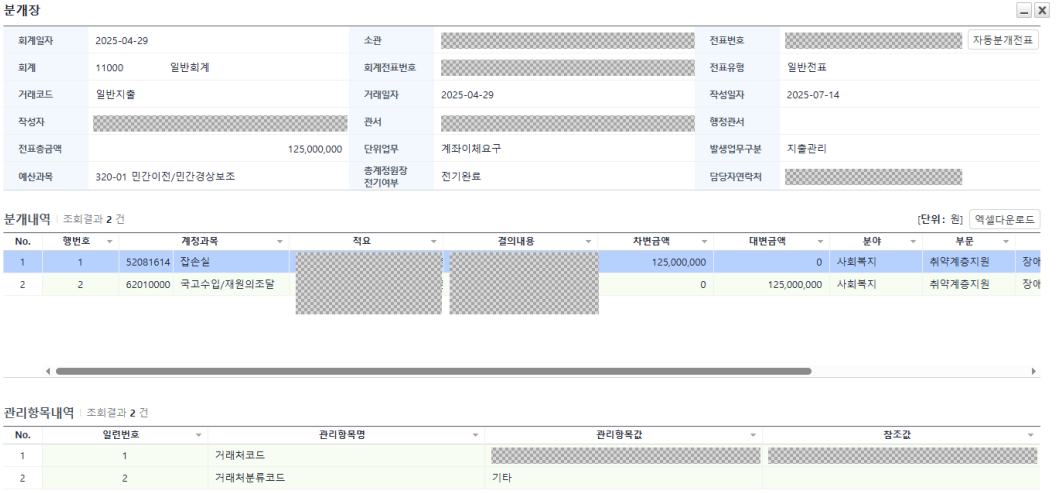
분개장

회계일자	2025-04-29	소관		전표번호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일반지출	거래일자	2025-04-29	작성일자	2025-07-14
작성자		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125,000,000	단위업무	계좌이체요구	발생업무구분	지출관리
예산과목	320-01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52081614 잡손실			125,000,000	0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
2	2	62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0	125,000,000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2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	2	거래처분류코드	기타	

상기 지출건은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여 잡손실이 발생된 건으로 업무담당자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12 ▌320-01목 세부·세세부항목

예산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재무계정과목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공공기관보조	국고보조사업비/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보조	국고보조사업비/민간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공공기관보조	공공기관원가보상비
		공공기관 외 보조	기타민간원가보상비
	기타비용	-	**잡손실**

5 특정 부처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사회기반시설(공항)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결과 공항수선유지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계정과목 중에는 일부 중앙관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기 사례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국도, 고속국도,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은 일부 중앙관서*에만 나타날 수 있으며, 타 중앙관서에서 발생한 경우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른 오류**로 추정할 수 있다.

* 2024회계연도 말 계상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

**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수입·지출)」 '제1장 지출_1절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참조

(2) 오류에 따른 영향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중앙관서에만 나타날 수 있는 계정과목이 타 중앙관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의 존재만으로도 오류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

(3) 점검 방법

사회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수선유지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오류이기 때문에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여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계정과목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그림 1-27 ▌합계잔액시산표(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합계잔액시산표 | 조회결과 376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차변 잔액	차변 합계	계정과목		대변 합계	대변 잔액
313	3,267,095,232	3,267,095,232	52080206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0	0
314	753,716,185,298	753,716,185,298	5208030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0	0
315	752,062,041,018	752,062,041,018	52080301	국도수선유지비	0	0
316	951,781,170	951,781,170	52080302	고속국도수선유지비	0	0
317	158,855,090	158,855,090	52080303	철도수선유지비	0	0
318	59,113,000	59,113,000	52080304	항만수선유지비	0	0
319	605,000	605,000	52080306	공항수선유지비	0	0
320	594,000	594,000	52080308	상수도수선유지비	0	0
	369,390,301,705,416	698,362,574,314,510	합계		698,362,574,314,510	369,390,301,705,416

계정과목별잔액 | 조회결과 1 건 [단위: 원] 월별내역 엑셀다운로드

No.	계정과목		전기이월금액	결산조정이전잔액	결산조정차변금액	결산조정대변금액	결산조정후잔액	내부거래제거이후금액
1	52080306	공항수선유지비	0	605,000	0	0	605,000	605,000

<그림 1-27>에서 사회기반시설(공항)이 없는 부처임에도 공항수선유지비가 605,000원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8 ▌분개장(공항수선유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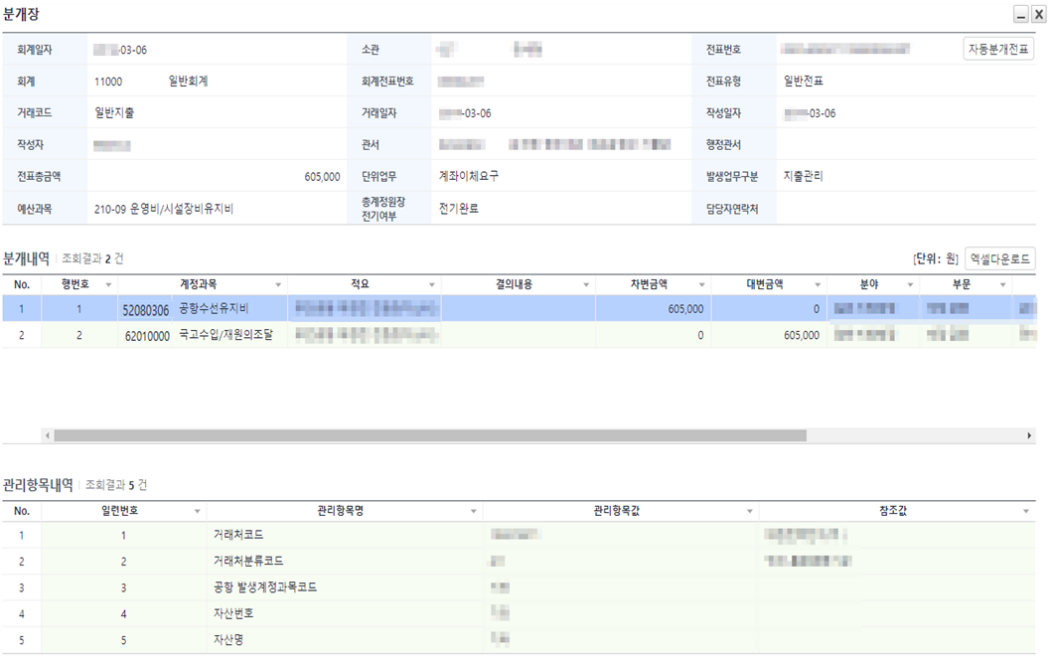

분개장

회계일자	-03-06	소관		전표번호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일반지출	거래일자	-03-06	작성일자	-03-06
작성자		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605,000	단위업무	계좌이체요구	발생업무구분	지출관리
예산과목	210-09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 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52080306	공항수선유지비			605,000	0		
2	2	62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0	605,00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5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	2	거래처분류코드		
3	3	공항 발생계정과목코드		
4	4	자산번호		
5	5	자산명		

공항수선유지비의 내역을 분개장을 통해 검토한 결과 청사 수선유지비를 공항수선유지비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항은 상기 중앙관서의 소유가 아니므로 공항수선유지비를 계상하는 것은 오류이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유산자산취득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국유재산대장에서는 '보존용재산'으로 관리된다.

유산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대신 '유산자산취득비'가 계상되며, 유산자산을 취득한 이후 관리 및 수선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계상된다.

따라서 유산자산(국유재산대장 상 보존용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산자산취득비'와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나타나면 이는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유산자산은 국가유산청의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다.

* 2024회계연도 말 유산자산 관리 부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국회, 국가보훈부 등 7개 부처

결산담당자는 유산자산 관련 비용이 합계잔액시산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건별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유산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29 ▌분개장(유산자산수선유지비)

분개장

회계일자	2025-06-22	소관		전표번호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정부구매카드지급결의	거래일자	2025-06-22	작성일자	2025-07-15
작성자		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167,000	단위업무	지급결의	발생업무구분	지출관리
예산과목	210-09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52080400 유산자산수선유지비			167,000	0		
2	2	21040215 기타의미지급금/단기			0	167,00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2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2	2	거래처분류코드	411	민간-통화금융기관

②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로 정의된다. 공공기관관리기금 중 일부는 법인으로 등록된 기금이 존재하며, 해당 기금의 법인세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외의 회계실체에서 법인세비용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0 ▌분개장(법인세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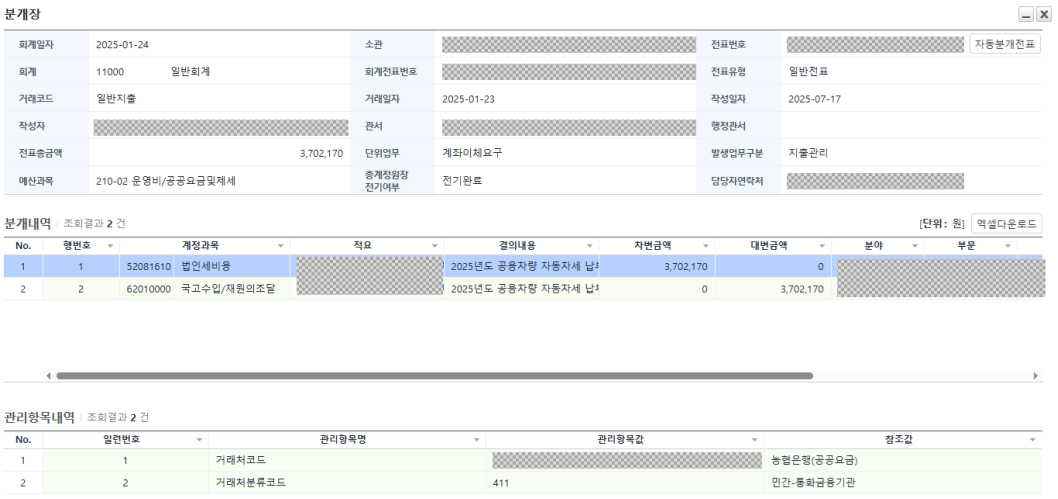
분개장

회계일자	2025-01-24	소관		전표번호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일반지출	거래일자	2025-01-23	작성일자	2025-07-17
작성자		관서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3,702,170	단위업무	계좌이체요구	발생업무구분	지출관리
예산과목	210-02 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분개내역 |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분야	부문
1	1	52081610	법인세비용		2025년도 공용차량 자동차세 납부	3,702,170	0		
2	2	62010000	국고수입/재원의조달		2025년도 공용차량 자동차세 납부	0	3,702,17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2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1	거래처코드		농협은행(공공요금)
2	2	거래처분류코드	411	민간-통화금융기관

6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최종 점검

해마다 감사원에서는 재무결산보고서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다.

과거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유형화하여 발생원인과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을 기술한 것이 책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이다.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가 전체 지적사례의 약 90%(과거 10개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정전시산표 마감전에 이와 유사한 오류 발생 여부를 검토한다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오류사례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점검 대상 계정과목	오류 발생가능성 확인	추가 검토 및 조치
비용처리된 자산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등 오류가 빈번한 비용	월별 추세 분석을 통해 비경상적인 월의 세부분개장 적요 등 검토	계약서 검토, 거래실질과 계정과목 매칭 여부를 확인해 비용이 아닌 자산일 경우 계정과목 정정 등을 통해 비용을 자산으로 분류
취득미완료 자산	토지, 건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자산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자산의 자산 인식조건 충족 여부 확인	자산 인식조건 미충족 자산은 관련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
잘못분류된 수익, 비용	잡손실, 잡이익, 수선유지비, 출연사업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 계정과목 선택 오류가 빈번한 계정과목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금액의 거래 내역 확인	계정과목이 잘못 처리된 경우 거래 실질에 맞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변경
재평가 자산	재평가한 토지, 건물 등	재평가 대상자산 확인 및 독립적으로 재평가 금액 재계산 후, dBrain+ '가격평가대장조회 ' 의 재평가 결과와 비교	불일치 항목에 대해 합리적 사유 확인 후 문서화, 업무담당자에게 재평가 대상 자산, 공시지가, 면적, 평가방법 순차적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재평가를 다시 수행해줄 것을 요청
원가분류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수익	비배분비용·수익 중 프로그램총원가·수익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	자산의 관련 프로그램 연계조치, 원가재배분 업무 수행, 결산조정분개시 관련 프로그램 정보 입력

제2장 내부거래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즉, 국회, 정책결정자,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국가회계실체의 개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는 자산 또는 부채의 과대표시 및 수익 또는 비용의 중복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과정에서 국가회계계실체간의 거래인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 내부거래의 제거는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작성 작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내부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 장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주요 오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거래처 관련 오류	…	196
2. 계정과목 관련 오류	…	205
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	207
4. 수동대사	…	210

1 거래처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폐지를 매각하면서 세입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폐지를 매각한 곳은 민간으로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징수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서를 거래처로 입력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입처리를 위해 징수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거래처를 등록하여야 한다. 납부거래처는 실제 수납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개인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차징수 주무관은 해당 거래처가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자신의 관서를 입력하였다.

그림 2-1 ▌징수요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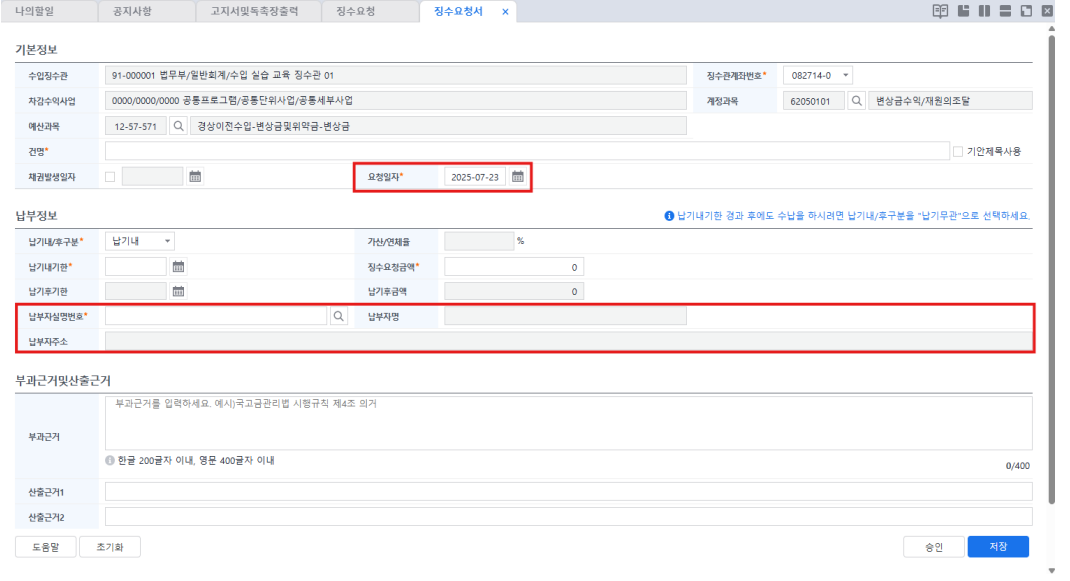

사례와 같이 거래처를 본인의 관서 등 국가회계실체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국가회계실체간의 거래인 내부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지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위와 같은 오류는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상호점검>수익비용상호점검] 메뉴에서 조회되며, 실제 내부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 제거가 수행되지 않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2-2 ▌수익비용상호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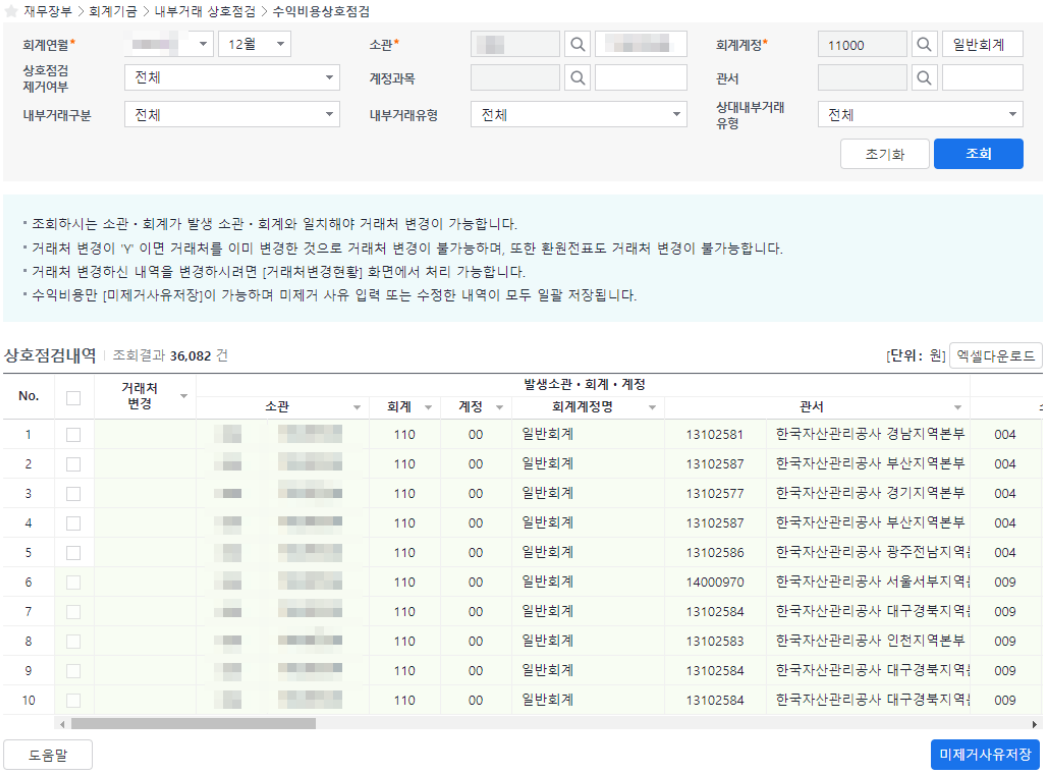

(3) 사용자 유의사항

납부거래처 입력 시 거래처가 없는 경우 사업자번호 등으로 해당 거래처를 확인한 후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기관 및 개인을 거래처로 입력하여야 한다.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처를 수입징수관 등 자신의 관서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거래가 내부거래로 인지되어 내부거래제거 대상으로 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올바른 거래처 입력을 통하여 해당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 거래처 입력 오류

- B부 b기금의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수행한 수납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선택을 총괄계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관계정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여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를 잘못 입력한 회계실체가 거래처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2-1 ▌거래처 입력 오류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위와 같은 경우는 B부 b기금에서 거래처를 소관, 회계까지는 올바르게 선택하였으나, 총괄계정이 아닌 차관계정으로 선택하여 거래처가 불일치한 사례이다. 따라서 B부 b기금의 차징수 주무관이 거래처 수정을 하여야 한다. 거래처 수정은 수입 및 지출 업무가 마감된 상태라도 수정후시산표 마감 전이라면 '수익비용상호점검' 메뉴[29]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3 ▌수익비용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

'수익비용상호점검' 메뉴에서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한 후 거래처를 수정할 전표를 선택하고 '거래처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29) 자산부채 계정과목의 거래처를 수정할 경우 '자산부채상호점검' 메뉴에서 거래처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림 2-4 ▌수익비용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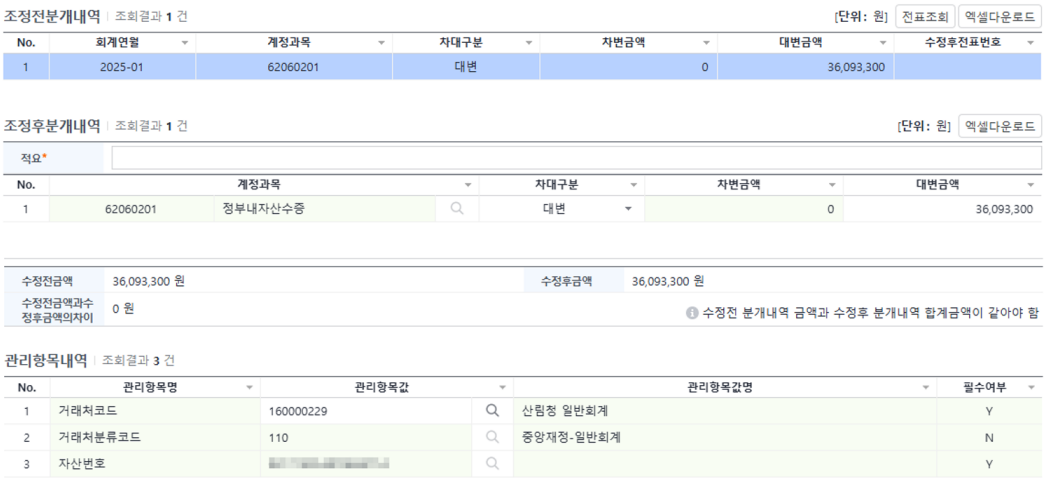

'거래처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올바른 거래처를 선택하여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은 거래처만 변경되고 거래처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동일한 거래처조정전표를 입력하는 것으로, 거래처 수정을 하면 '수익비용상호점검' 메뉴에서 조회 시 '거래처변경' 열이 'Y'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번 거래처를 수정하여 '거래처변경' 열이 'Y'인 전표는 재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처를 수정한 전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정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거래처 수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 수정 취소 기능은 결산담당자만 할 수 있고, 업무담당자는 권한이 없으므로 업무담당자가 거래처 수정 취소를 원할 경우 담당 부처의 결산담당자에게 거래처 수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Case Ⅱ : 상대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

- A부 a기금의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으나,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와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표 2-2 ▌내부거래 상대 없음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	B부	b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위와 같은 경우는 내부거래 대상자료 조회 시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와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①A부(발생소관)가 내부거래로 집계되지 않아야 할 전표의 거래처를 정부내 거래처로 잘못 발생시킨 경우, ②B부(상대소관)가 짝이 되는 전표의 거래처를 A부(발생소관) 이외의 다른 거래처로 잘못 발생시킨 경우이다.

따라서 내부거래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된 발생소관의 전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거래 여부를 확인 후, 내부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여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내부거래가 맞는 경우에는 상대 소관이 전표를 잘못 생성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소관의 결산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Case Ⅲ : 거래처 선택 및 등록 오류

<기금을 거래처로 선택하지 않고 공공기관을 거래처로 선택한 오류>

- OO특별회계에서 거래처가 XX기금인 미수채권 전표를 차감하는 결산조정 전표를 입력하면서 원전표의 거래처와 다른 YY공공기관을 거래처로 입력하여 재정상태표 상 미수채권은 '0원'이나 내부거래제거 대상은 계속 남아 있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을 거래처로 선택하지 않고 민간기관을 거래처로 선택한 오류>

- 일반회계에서 OO기금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거래처를 OO기금의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투신운용사로 처리하여 내부거래 제거대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거래처구분'을 잘못 선택한 오류>

- 일반회계에서 XX기금을 거래처로 등록하면서 '거래처구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선택하여 국가회계 실체간 거래로 인지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납부자란 수납의무를 지는 거래상대방을 의미하는데, 수입징수 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미수채권이나 수익의 거래처 정보가 되며, 이는 향후에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기본 정보 역할을 담당한다.

납부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 등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계·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인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 해당된다.

④ Case Ⅳ : 거래처 수정 중복 처리 오류

- 업무담당자는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 메뉴에서 전표적요가 '거래처 수정'이고 부(-)의 금액으로 미제거되는 거래 건을 발견하였다.

업무담당자는 결산담당자보다 신속하게 업무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고,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 조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내부거래 제거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당 사례는 결산담당자와 업무담당자간 협조 미비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류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업무담당자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처를 국가회계실체로 잘못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구 분	차 변		대 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지출	잡손실	100	현금	100	OO부 일반회계

② 이후 결산담당자는 위의 업무담당자가 발생시킨 전표의 거래처가 잘못 선택된 것을 알고 업무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처를 '기타'로 수정하였다.

구 분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거래처 수정	잡손실	100	기타	잡손실	100	OO부 일반회계

③ 업무담당자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알고 기존에 입력했던 전표를 취소하고 거래처를 수정하여 다시 전표를 생성하였다.

구 분	차 변		대 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지출 취소	현금	100	잡손실	100	OO부 일반회계
지출	잡손실	100	현금	100	기타

위의 사례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가 거래처수정을 중복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 결과적으로 결산담당자가 처리했던 거래처수정 전표만 내부거래 미제거로 남게 된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산담당자가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메뉴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한 후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수정 전표를 취소해야 한다.

그림 2-5 ▌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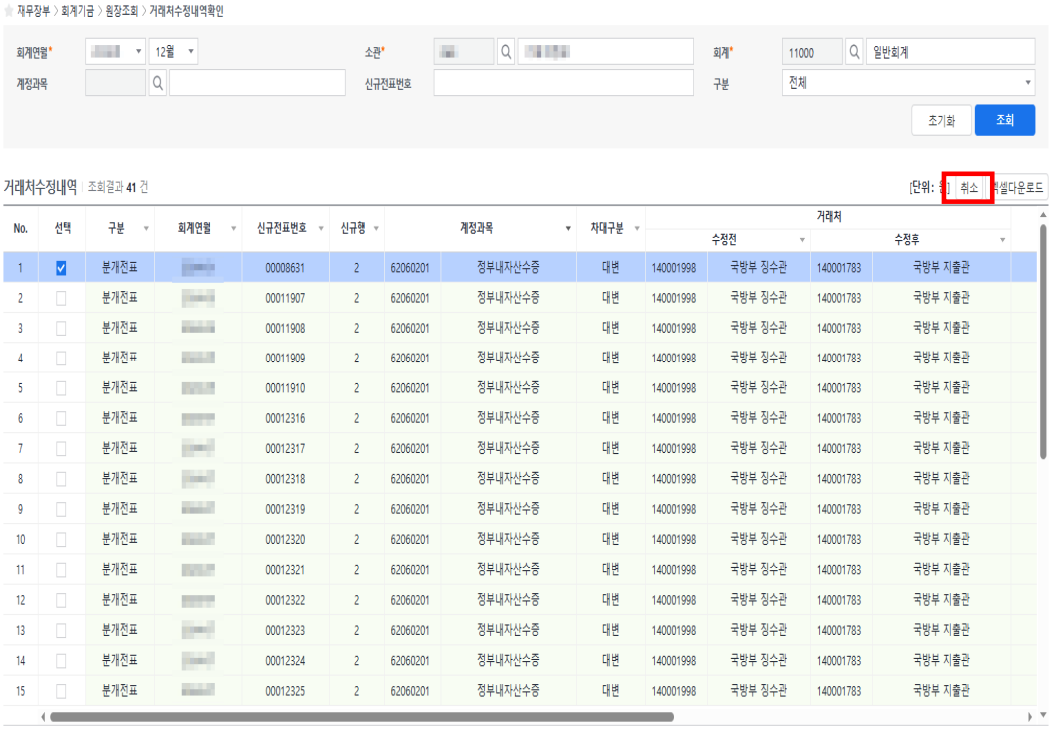

No.	선택	구분	회계연월	신규전표번호	신규행	계정과목	차대구분	거래처			
								수정전		수정후	
1	☑	분개전표		00008631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2	☐	분개전표		00011907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3	☐	분개전표		00011908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4	☐	분개전표		00011909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5	☐	분개전표		00011910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6	☐	분개전표		00012316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7	☐	분개전표		00012317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8	☐	분개전표		00012318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9	☐	분개전표		00012319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10	☐	분개전표		00012320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11	☐	분개전표		00012321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12	☐	분개전표		00012322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13	☐	분개전표		00012323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14	☐	분개전표		00012324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15	☐	분개전표		00012325	2	62060201	정부내자산수중	대변	140001998	국방부 징수관	140001783	국방부 지출관

참고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기능**

(1) 배경

기존에는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 내부거래 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시스템 개선으로 재무결산 및 재무장부 화면에서 미제거 사유를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상호간에 미제거 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재무결산 및 재무장부 화면상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그림 2-6 ▌재무결산의 내부거래미제거사유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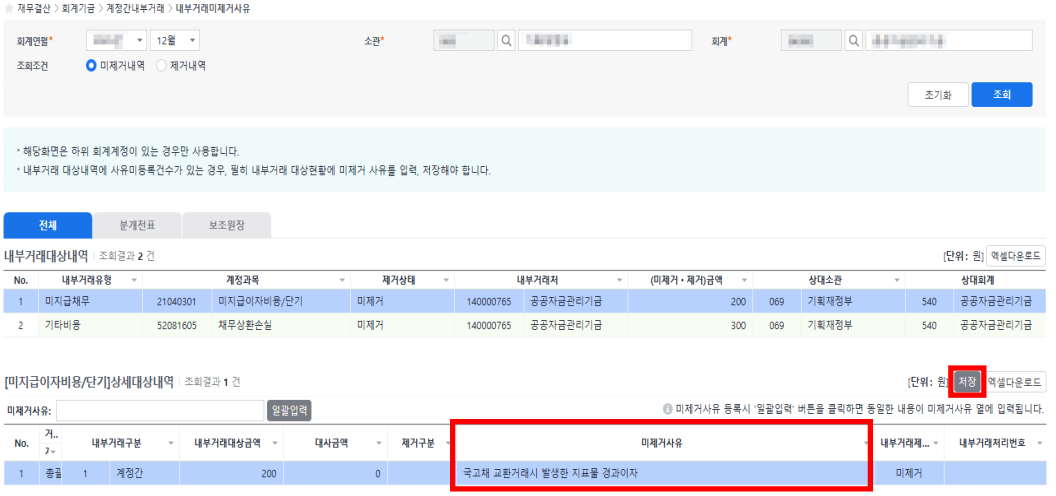

그림 2-7 ▌재무장부의 수익비용상호점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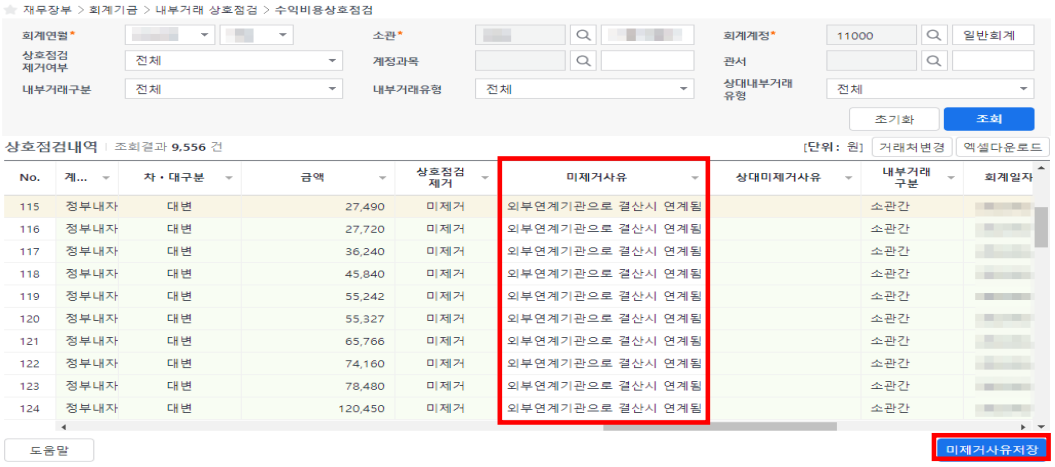

2 계정과목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계정과목이 잘못 되어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표 2-3 ▌내부거래 유형 불일치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정부내자산수증**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총괄계정	**기타의기타이전비용**	**미제거**

위 사례는 서로가 발생시킨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자산수증vs전출금)이 일치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로, 두 부처의 업무담당자 중 계정과목을 잘못 발생시킨 업무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표 2-4 ▌내부거래 유형별 COA 예시

유형	Code	계정과목명	상대 유형	Code	계정과목명
이자 비용 (501)	52040100	국채이자비용	이자 수익 (502)	43030201	국채이자수익
	52040200	공채이자비용		43030202	공채이자수익
	52040303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43030304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5204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43030305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자산 기부 (505)	51051100	정부내자산기부/이전비용	자산 수증 (506)	42040204	정부내자산수증/이전수익
	62030200	정부내자산기부		62060201	정부내자산수증

내부거래 유형별 COA란 '이자비용ㆍ이자수익', '자산기부ㆍ자산수증'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계정과목과 제거 가능한 상대 내부거래 계정과목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서로 짝이 되는 유형끼리만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내부거래가 잘못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오류 정정방법

계정과목은 업무담당자의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올바른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의 정정은 지출 메뉴 중 '계정과목변경'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 ▌계정과목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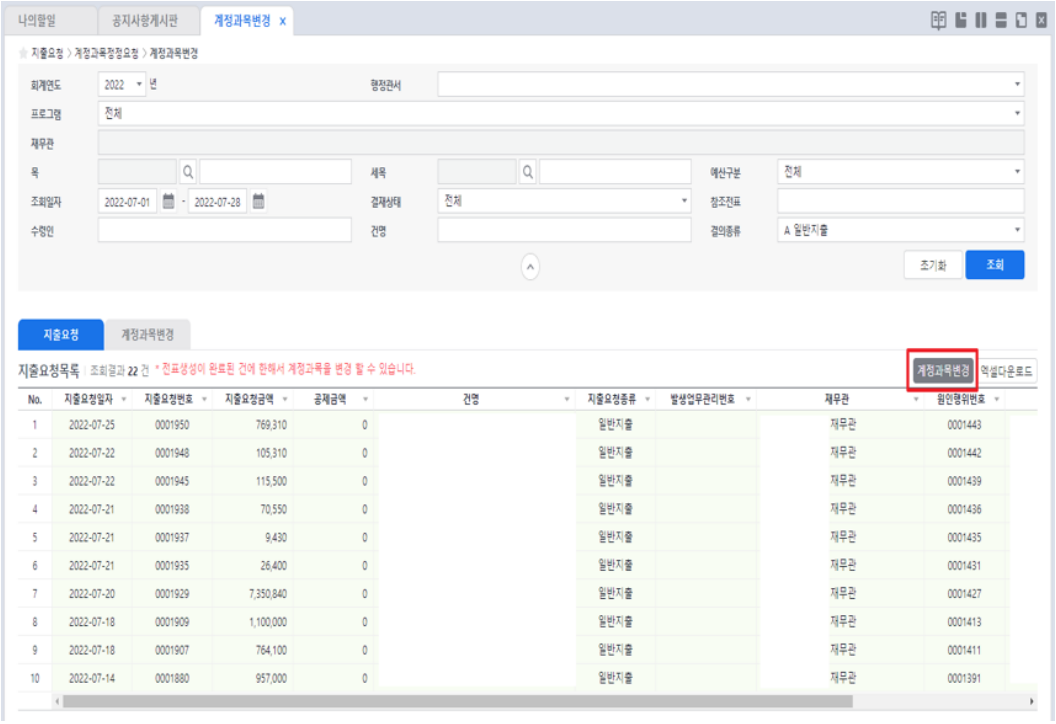

수정해야 하는 지출이 일반지출이었다면 [지출관리>지출요청>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을 하였던 건이라면 [지출관리>관서운영경비>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메뉴에서 각각 조회되므로, 이를 선택하여 계정과목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미제거'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① Case Ⅰ : 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 지출 시 거래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지정해야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집계된다. 그러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거래처를 잘못 선택하면 우편요금이 '대상제외'로 분류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2-5 ▌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OO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OO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OO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② Case Ⅱ : 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과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거래처는 적정하게 선택하였으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결과, 내부거래가 '대상제외'로 분류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2-6 ▌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OO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OO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잡손실	미제거
OO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지급수수료	대상제외
OO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소모품비	미제거

내부거래가 소액다수 건이어서 제거로 인한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dBrain+시스템에서는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으로 분류하여 내부거래 자동대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표 2-7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항목	대상제외 조건		대상제외 사유
	거래처	계정과목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조달사업회전자금	지급수수료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자산 취득 관련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수료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우편요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우편요금은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등기료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지급수수료	등기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등기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세금	국세청 일반회계/ 관세청 일반회계	지급수수료, 제세, 법인세비용	국세청, 관세청의 경우 dBrain+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징수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금 중 비중이 높지 않음. 이에 따라 내부거래로 국세수익이 과대되는 위험보다 전체 국세수익이 공시되어야 하는 효익이 더 높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2) 오류에 따른 영향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은 시스템에서 '대상제외'로 조회되므로 내부거래 제거 관련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시스템 상 '대상제외'가 아닌 '미제거'로 조회된다면 불필요한 내부거래 검토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3) 오류 정정방법

사례와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미제거'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각각 거래처 수정* 또는 계정과목 변경**을 통해 대상제외로 올바르게 집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수익비용상호점검(또는 자산부채상호점검)

** 지출관리>요청관리>일반지출>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한편, 대상제외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계정과목 등의 오류로 '대상제외'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올바른 거래처나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IP>

국유재산 임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 차이로 인해 자동대사 및 수동대사가 불가능하므로, 업무 담당자가 내부거래 제거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통합 단계에서 수동 대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업무 담당자는 해당 거래의 거래처, 내부거래 유형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금액 차이만 10%로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4 수동대사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거래처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거나, 전표의 회계일자가 크게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동대사를 통해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미제거' 항목을 발견하였다.

(1) 내부거래 제거 방법

내부거래의 거래처, 내부거래 유형 및 금액이 모두 일치하면 시스템에서 자동대사되어 내부거래가 제거되나, 회계일자 차이가 크거나 전표가 1:1대응이 되지 않고 1:n 또는 n:n으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가 수동대사를 해야 한다.

(2) 수동대사 필요 유형

① Case Ⅰ : 상대방 전표와 1: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표 2-8 ▌전표 1:n 대응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 액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8,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	미제거

위 사례와 같이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내부거래 수동대사를 통해 해당 전표를 1:2로 짝지어 주어야 한다.

② Case Ⅱ : 상대방 전표와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표 2-9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회계일자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20X1. 7. 31	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10,000,000	20X1. 8. 31	제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20,000,000	20X1. 7. 31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0	20X1. 12. 31	미제거

위 사례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인 경우에도 회계일자의 거래월을 기준으로 상대거래 건의 거래월이 전월부터 차월까지의 범위를 벗어나면 dBrain+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1:n, n:n 으로 전표가 대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동대사를 통해서 해당 전표를 각각 짝지어 주어야 한다.

(3) 수동대사 방법

그림 2-9 ▌상호점검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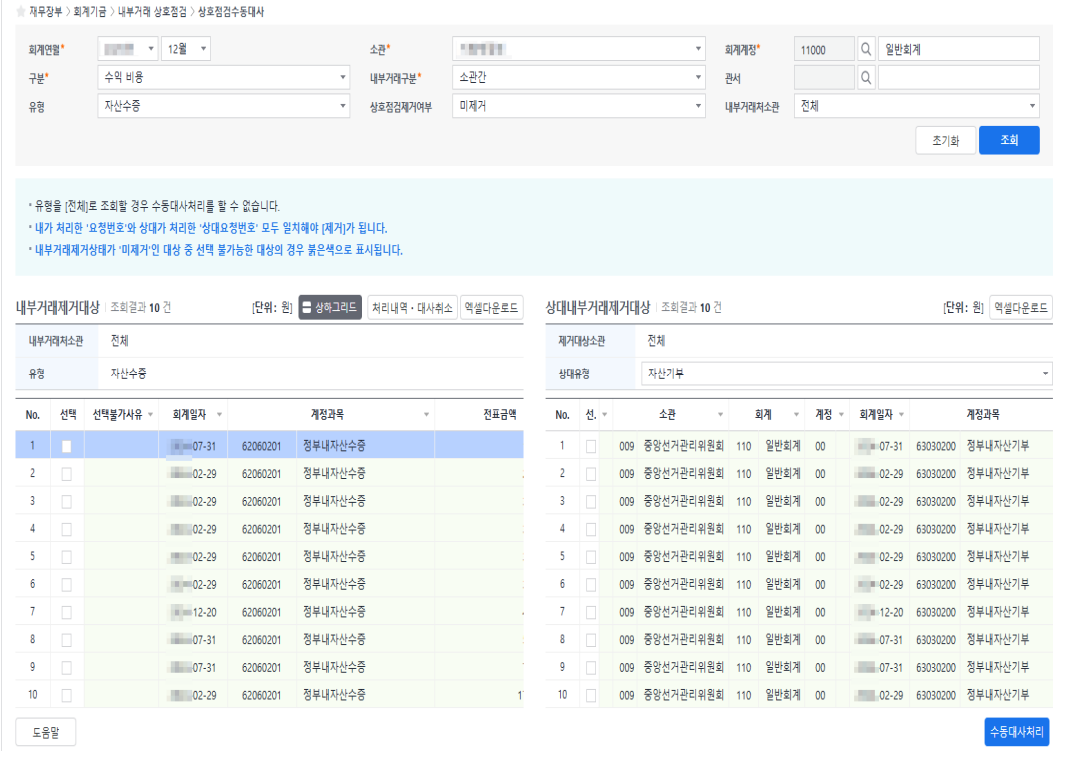

수동대사 메뉴에서 소관과 회계를 선택하고, 내부거래 구분과 상호점검 제거 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상기 <그림 2-9>와 같이 내부거래 대상 자료 중 수동대사를 수행할 전표들이 조회된다. 또한 화면의 우측('상대내부거래제거대상')에서는 상대방에서 발생시킨 전표(내가 발생시킨 거래와 제거해야 하는 상대 거래처에서 발생시킨 전표)가 조회된다.

내부거래 유형을 전체로 놓고 조회하면 조회는 가능하나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내부거래 유형을 특정하여 선택한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거래 유형을 선택하면 '상대내부거래제거대상'에서는 상대 거래처가 발생시킨 전표 중 선택한 유형과 짝이 되는 내부거래 유형만 조회된다.

그림 2-10 ▌상호점검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선택)

<그림 2-10>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거래 유형을 '자산수증'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면 관련 내부거래 제거대상 전표가 조회되고, 상대 내부거래유형은 '자산기부'로 고정되어 '상대내부거래제거대상'에서 조회가 이루어진다.

조회되는 전표 중 짝이 되는 전표를 '내부거래제거대상'과 '상대내부거래제거대상'에서 각각 선택한 후 '수동대사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수동대사가 수행된다. 이때 내가 발생시킨 전표의 금액과 상대방이 발생시킨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대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동대사를 수행하게 되면 '내부거래제거대상' 및 '상대내부거래제거대상'의 '요청번호' 열에 일련번호가 생성된다.

수동대사 업무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상대방 거래처에서도 동일한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모든 업무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단, 차감전표 수동대사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서 동일한 수동대사를 할 필요 없음)

그림 2-11 ▌수동대사 제거대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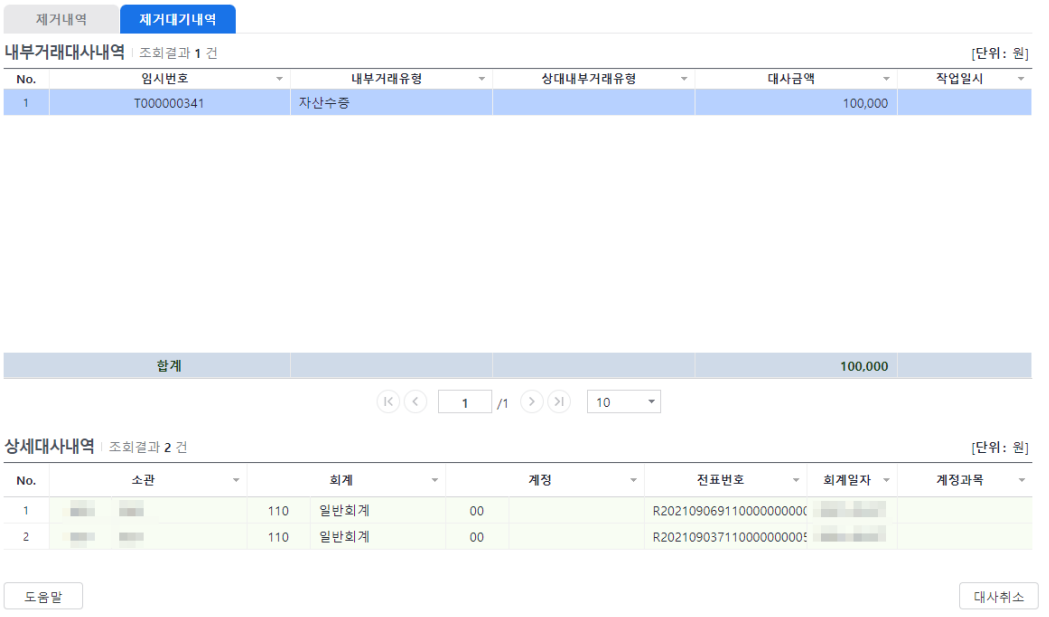

상호점검수동대사 화면에서 '처리내역·대사취소'를 클릭하면 '제거대기내역'에서 수동대사를 수행한 전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일하게 수동대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제거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거내역에서 조회가 되는 건은 자동대사와 마찬가지로 결산시점에 자동으로 내부거래 제거가 이루어진다.

수익비용상호점검 화면에서 내부거래 전표를 확인하는 경우 본인이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되며, 상대 거래처에서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상대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 된다.

'요청번호'와 '상대요청번호'가 일치하면 수동대사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된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제거', '미제거' 대신 '불일치'라고 '상호점검제거' 열에 표시된다. 만일 '불일치'로 표시되는 건이 있다면 각 담당자가 서로 다르게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으로 수동대사를 취소하고 재수행하여야 한다.

수동대사가 양 거래처에서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면, <그림 2-12>와 같이 '제거내역'으로 조회가 이루어진다.

그림 2-12 ▌수동대사 제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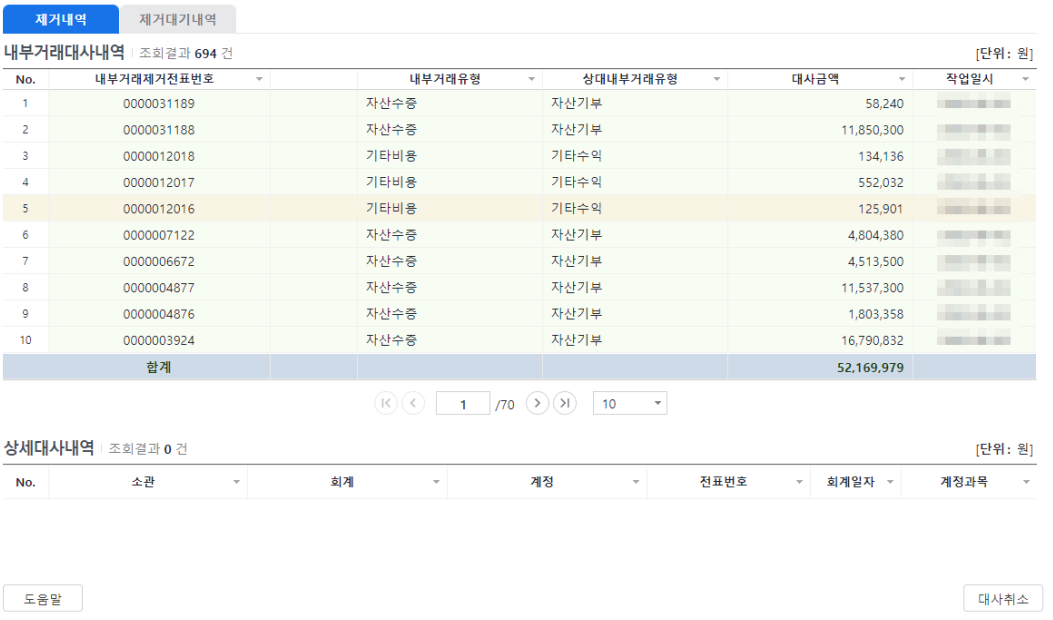
제거내역 제거대기내역

내부거래대사내역 | 조회결과 694 건 [단위: 원]

No.	내부거래제거전표번호	내부거래유형	상대내부거래유형	대사금액	작업일시
1	0000031189	자산수증	자산기부	58,240	
2	0000031188	자산수증	자산기부	11,850,300	
3	0000012018	기타비용	기타수익	134,136	
4	0000012017	기타비용	기타수익	552,032	
5	0000012016	기타비용	기타수익	125,901	
6	0000007122	자산수증	자산기부	4,804,380	
7	0000006672	자산수증	자산기부	4,513,500	
8	0000004877	자산수증	자산기부	11,537,300	
9	0000004876	자산수증	자산기부	1,803,358	
10	0000003924	자산수증	자산기부	16,790,832	
합계				52,169,979	

1 /70 10

상세대사내역 | 조회결과 0 건 [단위: 원]

No.	소관	회계	계정	전표번호	회계일자	계정과목

도움말 대사취소

참고 **수동대사 유의사항**

(1) 차감전표 수동대사

수동대사는 상호간에 각각 동일한 수동대사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거래 차감전표의 경우에는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에서만 수동대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만 수동대사를 수행해도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3 ▌차감전표 수동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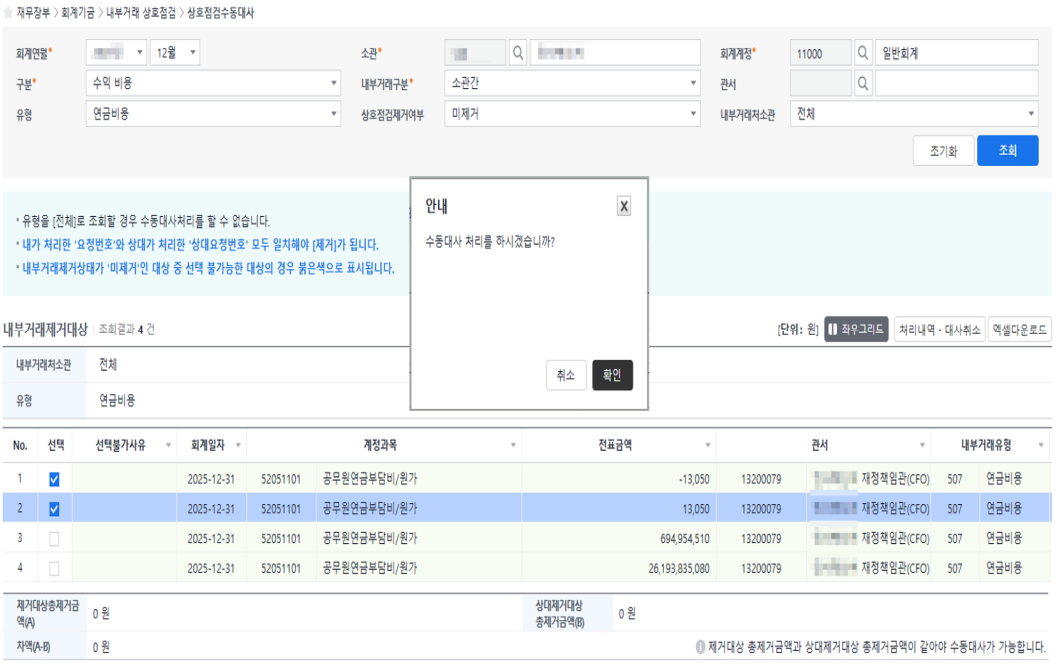

(2) 내부거래 상대소관의 수동대사 취소

수동대사 취소는 요청한 회계실체만 가능하고 요청받은 회계실체는 수동대사를 취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동대사 요청 후 발생소관에서 원전표를 취소하면 요청받은 상대소관은 수동대사 요청 내역을 삭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동대사 요청을 받은 회계실체에서도 수동대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4 ▌상대소관 수동대사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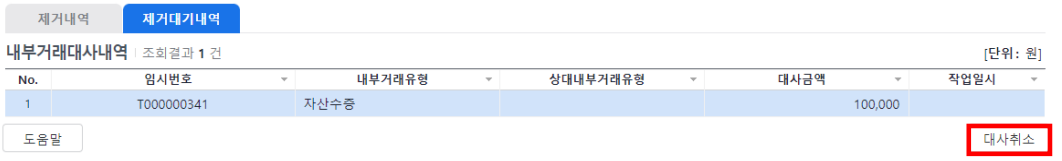

(3) 거래처 또는 계정과목 오류 건에 대한 수동대사 처리 불가

수동대사는 전표가 1:1 대응이 아니거나 또는 전표간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짝을 지어주는 업무이다.

따라서 거래처 또는 계정과목 오류로 내부거래가 미제거되는 경우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며, 수동대사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외부연계기관의 수동대사

외부연계기관은 dBrain 시스템에서 수동대사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국가통합 단계에서 수동 대사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통합 단계에서 내부거래 수동 대사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연계기관은 입력한 내부거래가 모두 적절하게 제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 **회계간 내부거래 미제거 시 조치사항**

(1) 회계간 내부거래

회계간 내부거래는 중앙관서 결산 단계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미제거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계일자가 근접하지 않거나,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아 디브레인에서 자동제거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회계실체(기금, 일반회계)의 결산을 확정한 후 중앙관서 결산 시 수동대사 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거래 미제거 원인이 거래처 또는 계정과목 선택 오류인 경우에는 해당 오류를 발생시킨 회계실체에서 수정후시산표 마감 전까지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중앙관서 결산 시 회계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회계간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등록

[재무결산>중앙관서>회계간내부거래>내부거래미제거사유] 메뉴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확정 전에, 내부거래 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거가 되지 않은 건을 확인하고 정당한 미제거 사유가 있는 경우 미제거 사유를 등록할 수 있다.

그림 2-15 ▌내부거래미제거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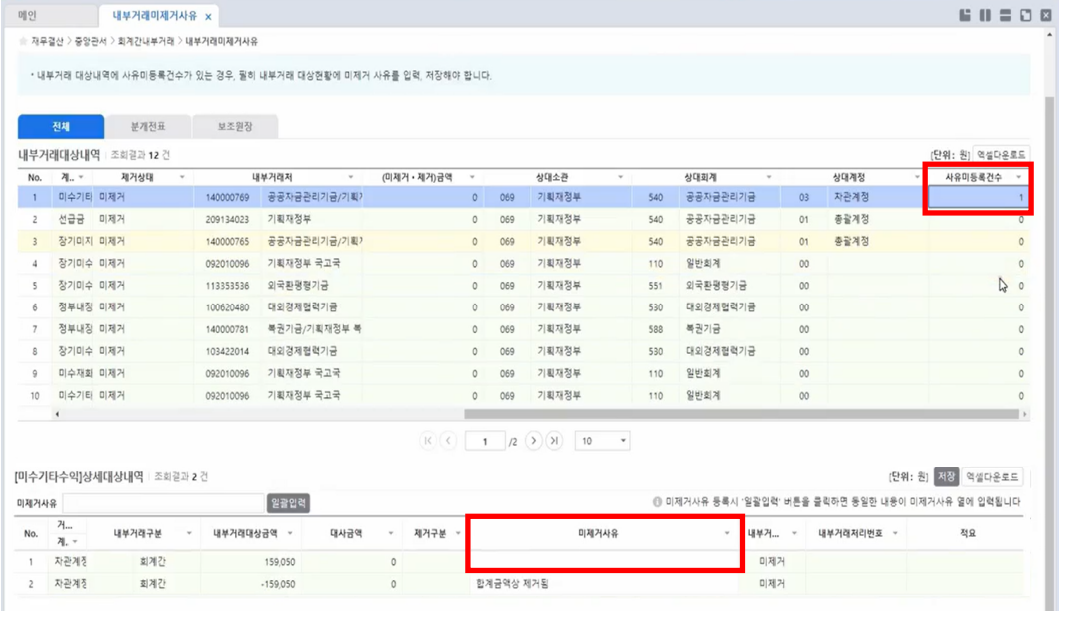

‘내부거래미제거사유’ 메뉴의 ‘내부거래대상내역’에서 ‘사유미등록건수’가 0이 아닌 건을 클릭하면 하단에 미제거사유를 등록할 수 있는 ‘상세대상내역’이 조회된다. ‘상세대상내역’의 ‘미제거사유’란에 사유를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저장되며, 모든 미제거사유를 입력하면 ‘사유미등록건수’가 0으로 표시된다. ‘사유미등록건수’가 모두 0이어야 내부거래 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내부거래 필수계정과목인 경우에는 미제거 사유를 입력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TIP> 내부거래 필수계정과목

내부거래 필수계정과목은 정부내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 정부내자산기부 등 거래상대방이 국가회계실체일 수밖에 없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내부거래 필수계정과목은 내부거래 제거 시 반드시 모두 제거되어야 하며,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에서는 잔액이 0이 되어야 한다.

제3장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

◈ 결산조정분개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 등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결산시점에 수행하는 분개를 말한다.

◈ 결산조정분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① 회계기간 말에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재정상태표를 적정하게 기록, ②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운영성과를 파악하여 재정운영표를 적정하게 기록

◈ 결산조정분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① 주요 결산조정항목에 대하여 디브레인에 입력한 정보관리항목 등을 근거로 dBrain+ 시스템에서 결산조정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과 ②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 본 장에서는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결산조정분개 관련 오류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산담당자의 결산조정전표 등록에 따른 오류사례는 제4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1. 대손충당금	…	220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226
3. 재고자산 평가	…	231

1 대손충당금

○○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의 대손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미수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만기가 5년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였다는 사유로 동일한 대손설정률(1%)을 적용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연령분석법**: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 **채권잔액비례법**: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 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 **대손실적률법**: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대손충당금은 채권보존절차 등 행정적 절차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국가회계기준은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같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충당금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기의 비용이 과소(과대) 계상 되며, 자산이 과대(과소) 계상된다.

그림 3-1 ▌대손설정기준율 등록

그림 3-2 ▌대손충당금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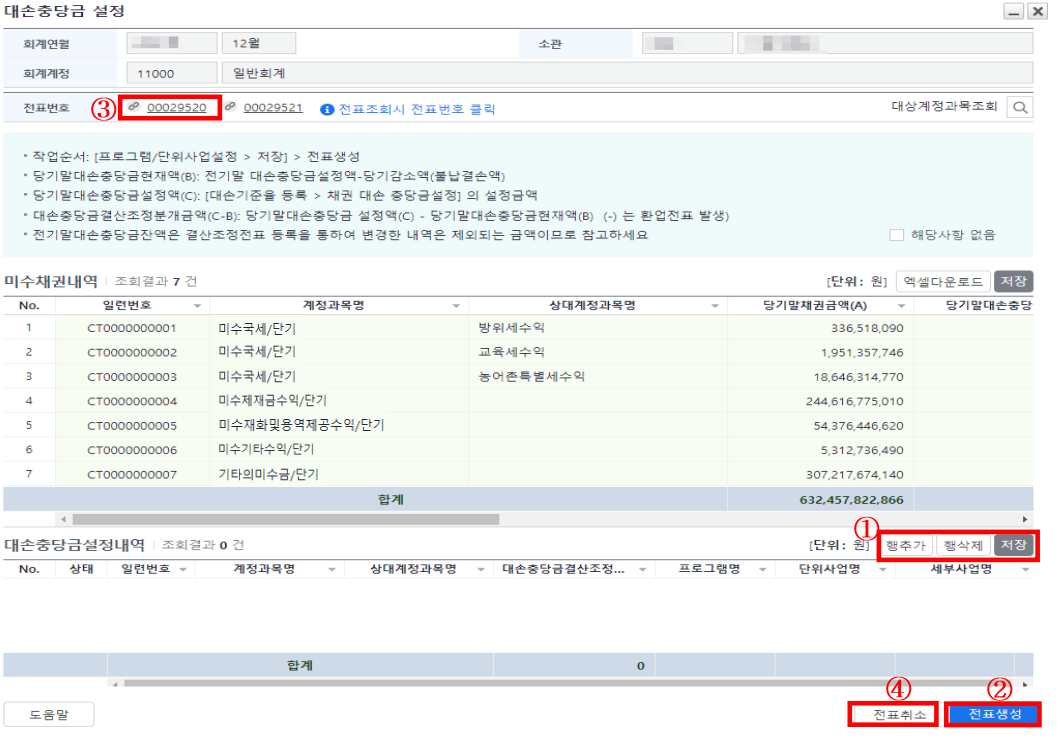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dBrain+ 메뉴[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대손설정기준율등록]에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과 대손설정기준율을 등록한다.

이를 위해 결산담당자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대손 설정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휴·폐업, 소멸시효 연장, 불납결손 신청 등 특수한 상황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1. 대손충당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관련 오류] 참조

<TIP> 이행기한도래 미수채권 내역 조회

결산담당자는 [채권관리>채권마감>채권관리관서마감>이행기한도래미수채권내역] 메뉴에서 '발생사유별 현황' 탭의 자료를 조회하여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채권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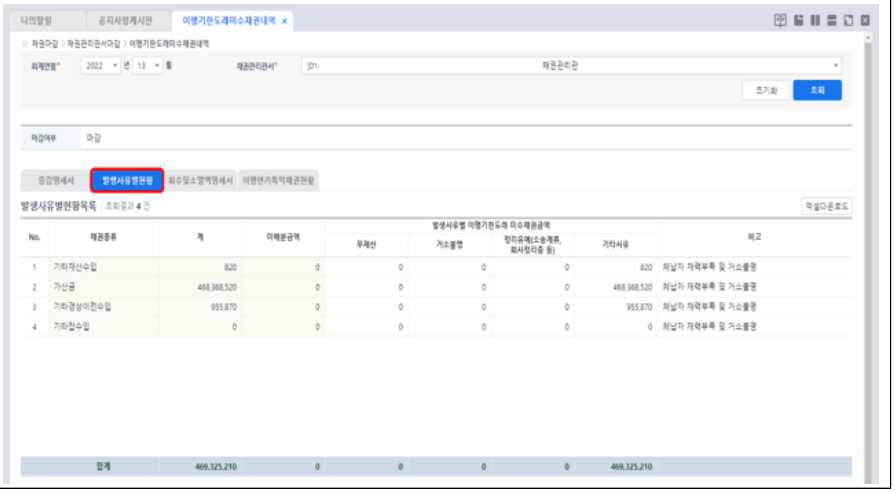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과대 설정

> OO부 일반회계에서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충당금 기초금액을 환입한 후 기말금액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금액을 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도에 설정되어야 하는 대손충당금 전체를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15억 2,655만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50p 중>**

○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 OO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계상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금을 산정하면서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해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29억 8,52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42p 중>**

○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 OO부 일반회계에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서 기간경과 및 채권 성질별 대손경험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미수채권 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67억 5,311만원, 67억 4,062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수익(비배분수익)이 1,24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52p 중>**

○ 대손충당금 과대 계상

> OO청 일반회계에서 기말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서, 티센크루프해양시스템(ThyssenKrupp Marine Systems) 채권은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되는 등 대손가능성이 낮은데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대손경험률을 높게 반영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및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826억 2,063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51p 중>**

○ 미수대여금이자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OO처 XX기금에서 신용대부채권이 부실화됨에 따라 미수대여금이자수익에 대한 불납결손액도 매년 발생하는데도, 미수대여금이자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대손상각비(프로그램명: 생활안정지원), 대손상각비(프로그램명: 제대군인대부지원)가 각각 2억 8,171만원, 1억 4,598만원, 1억 3,573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39p 중>

○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OO처 XX기금에서 기타의미수금(사고채권 연체이자)은 만기 90일 이상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으나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 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가 4억 5,42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04p 중>

○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OO회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채권 잔액의 1%로 일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4억 8,07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2p 중>

○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OO회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율 계산 시 미수채권의 연령별 수납액을 '최초 납기일자'로 하여야 하는데 '최초 결의일자'로 잘못 설정하여 납기가 경과한 채권에 대한 수납율이 과대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497억 6,22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95p 중>

○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해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58억 6,542만 원, 5억 6,893만 원, 64억 3,435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35p 중>

○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OO위원회는 대손충당금 설정 시 2023년 기준 연령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22년 기준 연령분석을 실시하여 납기가 지난 채권에 대한 수납률이 과대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이 215억 2,705만 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19p 중>

○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미수채권에 대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수부담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제재금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미수기타수익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268억 4,124만 원, 406억 6,421만 원, 1억 2,831만 원, 189만 원, 119억 937만 원, 19억 3,38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대손충당금환입(비배분수익)이 2,754억 2,932만 원 과대계상,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60억 495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110p 중>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청 일반회계에서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시켜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소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표 3-1 ▌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조정분개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조정분개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은 평가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확정기여형	금융기관에 약정된 금액 납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므로 퇴직급여 관련 결산조정분개는 나타나지 않음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대상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조정분개를 수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한 금액을 퇴직금추계액으로 설정하며,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국가회계편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계산방법[30]을 따르되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은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므로 상기 사례처럼 퇴직금추계액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30)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평균급여*1 × 근속연수*2
*1 평균급여 = ① + ② + ③
*2 근속연수: 결산 월 기준 근속연수
① 결산 월 직전 3개월 지급급여 / 3
② 결산 월 직전 1년 지급 상여금 / 12
③ 결산 월 기준 적치 수당 / 12

(2) 오류에 따른 영향

결산담당자가 아래 <그림 3-3>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화면에서 기말충당금잔액(퇴직금추계액)을 입력하면 전표 생성을 통해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추계액을 과소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 과소 계상된다.

○ 퇴직금 회계처리 사례 Ⅰ (퇴직금추계액 80,000, 기초잔액 100,000, 기중지급액 30,00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중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	국고수입	30,000
추계액 입력 시	퇴직급여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 퇴직금 회계처리 사례 Ⅱ (퇴직금추계액 50,000, 기초잔액 100,000, 기중지급액 30,00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중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	국고수입	30,000
추계액 입력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	기타충당부채환입	20,000

그림 3-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3) 점검 방법

퇴직금추계액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퇴직, 중간정산, 신규입사 등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확정기여형임에도 충당부채를 설정하거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부(-)의 금액으로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3.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 관련 오류]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시 기본급만 포함함에 따라 부채 과소 계상

> OO부 일반회계에서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시켜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9,57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114p 중>**

○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회계처리 오류

> OO부 일반회계에서 전기의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분을 회계처리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으로 계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9억 39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876p 중>**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 계상

> OO회 XX기금에서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퇴직급여(관리운영비)가 각각 2,517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56p 중>**

○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상 오류

OO부 XX기금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퇴직금 추계액을 잘못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억 2,12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퇴직급여(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에 과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본 회계연도에 추가로 설정하면서 퇴직급여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퇴직급여(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가 114억 5,52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에 예치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예치금은 기타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퇴직보험예치금(장기충당부채의 차감계정), 기타투자자산(투자자산)이 각각 168억 6,674만원, 32억 8,27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국고금(유동자산)이 201억 4,952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2p 중>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오류

OO부 XX회계에서 비공무원의 급여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17년 12월 중 담당업무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이 중복 생성되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7억 1,075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퇴직급여(프로그램명:국민과함께하는우편서비스)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70p 중>

○ 퇴직보험예치금 계상 오류

OO부 XX기금에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기타투자자산으로 인식하여 기타투자자산(투자자산)과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각각 34억 8,42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72p 중>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계상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21회계연도 말 일부 인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평가 금액을 누락하여 기타의기타투자자산(투자자산)과 퇴직급여(관리운영비)가 각각 9,661만 원 과소계상되었고, 퇴직연금운용자산(장기충당부채의 차감계정)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각각 9,661만 원 과소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24p 중>

3 재고자산 평가

○○부 ○○특별회계에서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미계상하여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재고자산은 취득 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며, 기말시점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단가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량은 실지재고수량으로 한다. 국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회계실체는 아래 표와 같이 제한적이다.

표 3-2 ▌재고자산 보유 국가회계실체(예시)

구 분	종 류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 잡곡, 기타부산물, 포장재 등
조달특별회계	6대원자재(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광석, 아연, 니켈), 희귀금속 등 비축물자
우편사업/우체국예금	저장품, 미착자산
경찰병원/국립병원/국립재활원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공무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상품, 식재료, 원재료, 저장품, 용지, 미성공사(분양주택), 분양주택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	비축농산물, 농산물 종자, 조성토지
축산발전기금	생장물 및 정액
수산발전기금	비축재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협동화용 자산,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미성공사(단지)

재고자산 보유 실체는 결산 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dBrain+ 상 '재고자산 인식 및 평가'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결산시점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며,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된다.

○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 사례(기초: 0, 기중 구입: 10,000, 기말 평가 8,00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재고자산 구입	재화판매원가	10,000	국고수입	10,000
재고자산 인식(결산 시)	재고자산	10,000	재화판매원가	10,000
재고자산 평가(결산 시)	기타자산평가손실	2,000	재고자산	2,000

그림 3-4 ▌재고자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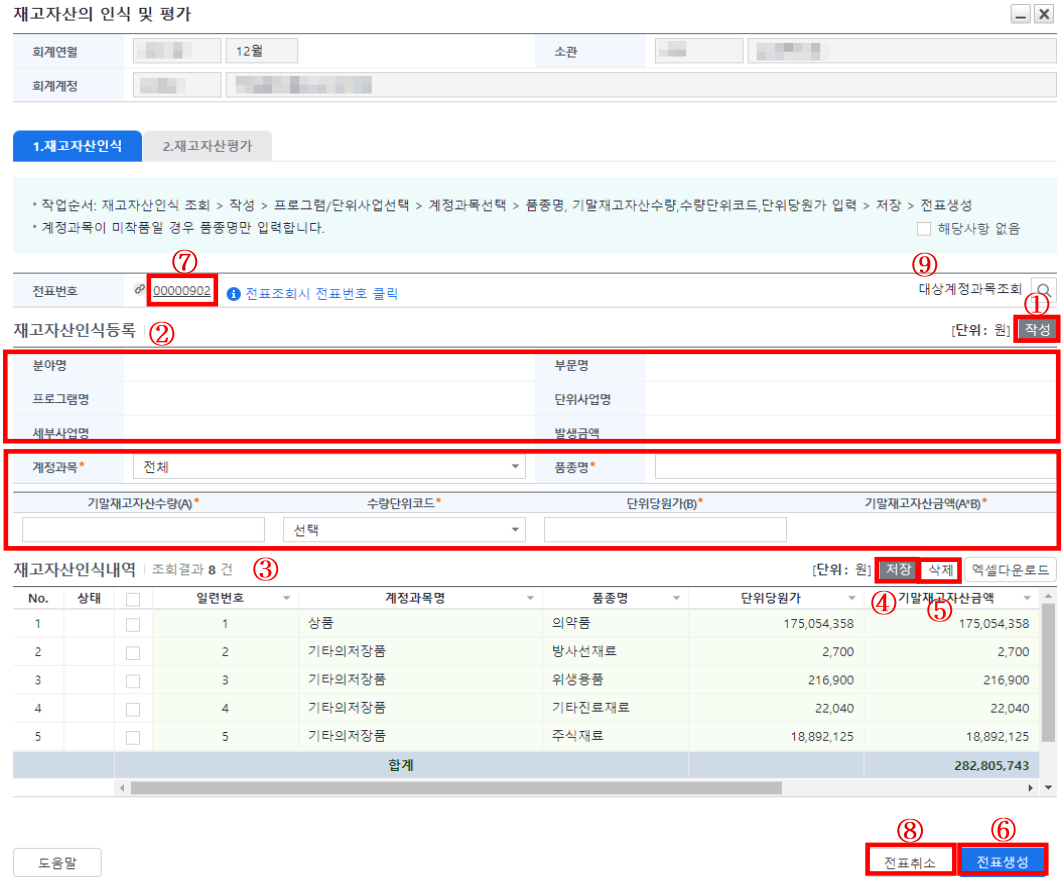

그림 3-5 ▌재고자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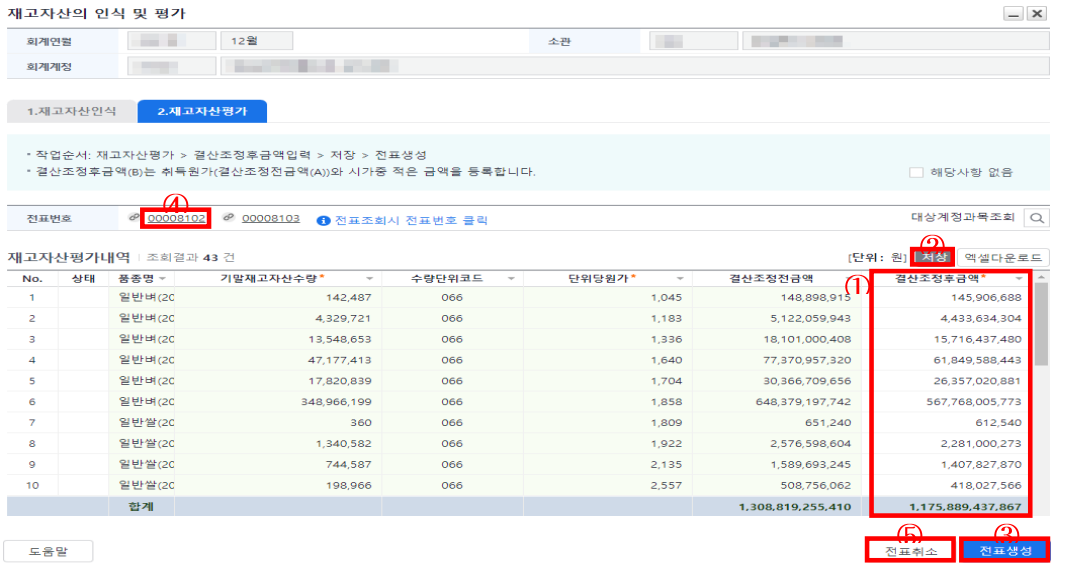

(3) 점검 방법

재고자산을 소유한 회계실체는 결산시점에 꼭 시가 평가를 수행하여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에 따른 자산 과대 계상

> OO부 XX회계 및 XX기금에서 일반 쌀, 일반 벼, 콩 등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미계상하여 재고자산(유동자산)이 계 267억 494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545p 중>**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반영

> OO부 XX기금에서 재고자산 중 시가(순실현가능가액)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자산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재고자산(유동자산)이 12억 7,78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88p 중>**

제4장 결산조정전표 등록

◈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은 자동분개 생성이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이루어진다.

◈ 앞서 3장에서 살펴본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는 결산조정분개는 대부분 기중에 발생한 계정과목의 정보관리항목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정보관리항목 값이 잘못 입력되어 있지 않는 한 결산담당자가 오류를 발생시킬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 하지만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결산담당자의 실수로 재무제표의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 본 장에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과 관련된 오류사례를 확인하고, 동일한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정보관리항목 등의 입력 오류	…	235
2. 전기 결산조정전표 관리	…	241
3.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 오류	…	247
4.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	253
5. 자산 감액여부 판단	…	257

1 정보관리항목 등의 입력 오류

전년도에 임차개량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건을 비용으로 잘못처리한 것을 발견하여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임차개량자산을 인식하였다. 임차개량자산 인식 시 임차시작일, 임차종료일, 내용연수 등의 관리정보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음에 따라 당기 임차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결산조정전표의 등록은 '결산조정전표작성'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는 결산조정분개와는 달리 결산담당자가 직접 분개를 입력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의 산출근거를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산조정전표 작성 시 결산담당자가 각 계정과목마다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관리항목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1>의 ③번 부분에서 정보관리항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필수여부'에 'Y'로 표시된다.

그림 4-1 ▌결산조정전표작성

본 사례는 결산조정전표 작성으로 임차개량자산을 인식하면서 임차개량자산과 관련된 정보관리항목(임차시작일, 임차종료일, 내용연수 등)을 잘못 입력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결산조정전표 작성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도 기중 업무를 통해 발생한 계정과목과 동일하게 정보관리항목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향후 분개가 제대로 발생하게 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dBrain+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출되는 결산조정분개는 정보관리항목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작성 시 정보관리항목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이후 dBrain+ 시스템에서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결산조정분개 산출 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정보, 유동성대체가 필요한 대여금·차입금·임차보증금의 만기일 정보 등이 '필수여부'가 'Y'인 정보관리항목이다. <그림 4-2>와 같이 만기일에 '기타' 또는 '99991231'과 같이 의미없는 정보를 입력하면 유동성대체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4-2 ▌정보관리항목 오류

회계일자	[redacted]	소관	[redacted]	전표번호	[redacted] 자동분개전표
회계	11000 일반회계	회계전표번호	00012199	전표유형	일반전표
거래코드	기타증감처리	거래일자	[redacted]	작성일자	[redacted]
작성자	[redacted]	관서	[redacted]	행정관서	
전표총금액	300,000,000	단위업무	기타증감처리_국유	발생업무구분	국유재산
예산과목		총계정원장 전기여부	전기완료	담당자연락처	[redacted]

분개내역 | 조회결과 2 건 [단위: 원] 엑셀다운로드

No.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1	1	11070602 임자보증금-국유/장기	[신규등록]미등록재산등록] RQ20	기획재정부 2차관 관사	300,000,000	0
2	2	62060202 정부외자산수증	[신규등록]미등록재산등록] RQ20	기획재정부 2차관 관사	0	300,000,000

관리항목내역 | 조회결과 7 건

No.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3	3	자산번호	08300107G2016978160	
4	4	자산명	기타	
5	5	소재지	기타	
6	6	임차일	기타	
7	7	만기일	기타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가 등록한 결산조정전표는 '결산조정전표현황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분개 마감 전 해당 화면에서 정보관리항목 등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동성대체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참조

그림 4-3 ▌결산조정전표현황조회

No.	조정전표번호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반영전금액		조정금액
				차변금액	대변금액	차변금액
1	00021448	52080702	투자증권감액손실	22,300,000,000	0	680,050,800
2	00021447	52060101	건물감가상각비	30,464,440,633	506,361,573	-5,431,863
3	00021447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88,775,841,427	0	5,431,863
4	00021446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89,319,027,737	0	-492,241,870
5	00021446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88,826,785,867	0	-50,944,440
6	00021446	430710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568,199,459,527	0
7	00021446	43071000	전기오류수정이익/수익	0	567,707,217,657	0
8	00021445	64050401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164,500,000,000	22,182,681,217,243	15,501,824,963
9	00021445	52081300	전기오류수정손실/원가	104,820,852,700	0	-15,501,824,963
10	00021442	11061103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단기	326,476,809	6,602,568,541	0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장기융자금 유동성 대체 오류

> OO부 XX특별회계에서 장기융자금을 유동성대체하면서 단기융자금으로 과다하게 대체하여 단기융자금(유동자산) 및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679억 670만원, 1억 8,176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융자금(투자자산) 및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투자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00p 중>**

○ 장기대여금 및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누락

> OO처 OO기금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OO기금 예탁액을 정부내단기예탁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정부내장기예탁금으로 처리하여 단기대여금(유동자산)이 500억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대여금(투자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또한, 2017년 5월에 조기상환 예정인 OO기금 차입금을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정부내장기예수금으로 처리하여 유동성장기차입부채(유동부채)가 70억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차입금(장기차입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717p 중>**

○ 임대료미지급금 유동성 대체 누락

> OO부 OO회계에서 전라선·경전선의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미지급금은 유동성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미지급금(유동부채)이 887억 76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미지급금(기타비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유동부채의 차감계정)이 408억 7,05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기타비유동부채의 차감계정)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68p 중>**

○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장기임차보증금-국유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유동성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임차보증금-국유가 34억 1,204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임차보증금-국유가 34억 1,204만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26p 중>

○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

OO부 OO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대여금 총 12건을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대여금(유동자산)이 77억 3,49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대여금(투자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96p 중>

○ 장기대여금 유동성대체 누락

OO처 XX기금에서는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장기대여금 중 2021회계연도 중에 회수일이 도래하는 월분할상환원금 227억 원에 대하여 유동성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장기대여금(투자자산) 및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투자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27억원, 27억 원 과대 계상되었고, 단기대여금(유동자산) 및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27억 원, 27억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88p 중>

○ 미수채권의 유동성 대체

OO부 XX기금에서는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이행기한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는 미수채권을 유동성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유동자산)이 23억 4,216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미수채권(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29p 중>

○ 금융상품 유동성 대체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는 나라키움 원주통합청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시공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해당 부채계정을 감소시켰어야 하나 단기금융상품을 증가시켰고, 유동성 분류도 잘못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의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과 장기임대보증금(기타비유동부채)이 각각 28억 8,498만 원, 8,498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의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이 28억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7p 중>

○ 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오류

OO부 OO회계에서 우체국예금 이용고객의 예치금(예금 및 적금 등)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중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미지급비용을 유동부채로 잘못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지급비용(유동부채)이 2,288억 9,005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미지급비용(기타비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94p 중>

○ 투자자산의 유동성 분류 오류

OO부 OO기금에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여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저리융자금(투자자산) 210억 2,432만 원,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투자자산의 차감계정) 4,686만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단기저리융자금(유동자산) 210억 2,432만 원,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4,686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09p 중>

2 전기 결산조정전표 관리

○○부 XX회계는 전기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소 계상된 국고보조사업비와 미지급금을 결산조정전표로 반영하였다. 당기에 국고보조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전기 결산조정분개로 계상했던 미지급금을 제거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비로 회계처리하여 국고보조사업비와 미지급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결산조정전표 환원은 전기에 결산조정전표로 회계처리한 내역을 당기 취소하는 회계처리로, 결산조정전표를 환원하게 되면, 기중의 수입·지출 업무에 따른 회계처리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기에 결산조정전표로 국고보조사업비와 미지급금을 인식한 회계처리(차변 : 국고보조사업비 xx 대변 : 미지급금 xx)를 당기에 환원(차변 : 미지급금 xx 대변 : 국고보조사업비 xx)하게 되면 기중에 국고보조사업비를 지급하면서 미지급금이 있었는지 고려할 필요 없이 회계처리(차변 : 국고보조사업비 xx 대변 : 현금 xx) 할 수 있다.

결산조정전표 환원은 결산조정전표를 작성할 때 환원 여부 선택(Y or N)을 통해 이루어진다. 환원 처리가 필요한 결산조정전표는 환원 여부를 'Y'로 하고, 환원 처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환원 여부를 'N'로 처리한다.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차기에 환원시켜야할 분개인지 잘 판단하여 환원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전기에 입력한 결산조정전표에 대해 당기에 환원 분개가 제대로 발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에 결산조정전표 등록한 분개와 연동된 추가 오류가 당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기 결산조정전표의 환원여부 'N' 선택 시 회계처리(잘못된 회계처리)

구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전기(결산조정전표)	부채 인식	국고보조사업비	10,000	미지급금	10,000
당기	국고보조사업비 지급	국고보조사업비	10,000	국고수입	10,000

상기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당기에 국고보조사업비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원분개 미발생으로 전기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인식한 미지급금이 그대로 장부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기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환원여부를 'Y'가 아니라 'N'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해당 오류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입력하는 결산조정전표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사원 지적은 주로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입력하게 되는데, 입력 시 환원 여부를 잘못 선택하고 이후에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사원 지적이 발생할 수 있다.

(3) 점검 방법

<그림 4-4>의 '⑥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면 환원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Y'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환원분개가 차기 회계연도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작성 시 환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림 4-4 ▌결산조정전표작성

○ 상기 오류사례 환원여부 'Y' 선택 시 회계처리(올바른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전기 (결산조정전표)	부채인식	국고보조사업비	10,000	미지급금	10,000
당기	환원분개	미지급금	10,000	국고보조사업비	10,000
	국고보조사업비 지급	국고보조사업비	10,000	국고수입	10,000

따라서 상기 오류사례의 경우 전기결산조정전표 작성 시 환원 여부를 'Y'로 선택해야 올바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만약 전기에 착오로 환원 여부를 'N'으로 선택하였다면 당기에 결산조정분개 등록을 통해 환원 분개를 수기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참고 환원분개 대상 결산조정분개

결산조정분개 입력사항은 환원분개가 필요한 결산조정분개와 환원분개가 필요하지 않은 결산조정분개로 구분할 수 있다.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비용 항목이나 유동성대체와 같은 결산조정분개 사항은 대부분 환원분개가 필요하다.

○ 환원분개 대상 결산조정분개(유동성대체)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유동성대체(20X1.12.31) (결산조정정표)	임차보증금-국유/단기	10,000	임차보증금-국유/장기	10,000
환원분개(20X2.1.1)	임차보증금-국유/장기	10,000	임차보증금-국유/단기	10,000
회수(20X2.3.31)	국고이전지출	10,000	임차보증금-국유/장기	10,000

디브레인 시스템 상 임차보증금은 모두 장기임차보증금으로 관리가 되므로, 회수 시에도 '장기임차보증금'으로 기중 분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X1년말에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유동성대체'를 수행하면 20X2년 1월에 '장기임차보증금'으로 환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환원분개 비대상 결산조정분개(투자증권평가)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투자증권취득(20X1.10.31)	투자증권	100,000	현 금	100,000
투자증권평가(20X1.12.31)	투자증권	10,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
매각(20X2.3.31)	현 금	120,000	투자증권	110,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	투자증권처분이익	20,000

위와 같이 투자증권평가이익은 처분 시 까지 관리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조정분개를 환원처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결산조정분개에는 환원처리를 해야 하는 분개와 하지 않아야 하는 분개로 구분된다.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의 경우에는 환원여부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결산조정전표를 등록하는 결산담당자가 반드시 환원여부를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한다.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기초 환원분개 회계처리 오류

> OO청 일반회계에서 담당자 오류로 발생한 기초 환원분개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잘못 회계처리하여 지급임차료(프로그램명: 궁능원관리 등) 및 기타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이 각각 5,905만원, 4,06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지급임차료(비배분비용)가 1,84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906p 중>**

○ 승소하거나 지급의무를 이행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미제거

> OO부 XX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이전에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로 인식하였던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승소하거나, 패소하여 소송금액을 기지급하였음에도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를 환입하지 않아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3억 9,499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수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035p 중>**

○ 농업자금 이차보전 상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

> OO부 XX회계에서 전년도에 미지급한 농업자금 이차보전액을 당기에 상환하면서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여 기타이전비용(프로그램명: 농가경영안정)과 기타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이 각각 880억 3,752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93p 중>**

○ 납부기일이 도래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 OO부 XX회계에서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에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는 본 회계연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선급금(기타유동자산)이 8억 2,26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6,591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금융리스이자비용(프로그램명: 여권업무선진화)이 5,671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88p 중>**

○ 지급 완료된 미지급금 미제거 오류

OO부 XX회계에서 2014년 말에 지급이 확정된 민자고속도로(서울북부고속도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제이영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에 대한 토지 선보상비와 2015년 말에 지급이 확정된 인천대교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대한 통행료 운영수입 보장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전기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 미지급금을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제거하지 아니하여, 미지급금(유동부채)이 2,903억 9,260만원 과대계상되었으며,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38p 중>

○ 전기 감사원 지적사항 미환원 오류

OO부 XX회계에서 한국공항공사가 건축하고 OO부가 2019년 11월 중 준공 승인하여 국가에 귀속된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증축분에 대하여 2019회계연도에 이미 자산으로 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중복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사회기반시설)과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각각 764억 871만 원씩 과대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106p 중>

○ 매각대금 관련 선수금 미제거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20회계연도에 징수결의를 한 유형자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기타의미수금을 2021회계연도에 제거하면서 상대계정인 선수금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금(유동부채)가 4,598억 5,94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9p 중>

3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발생주의에 따르지 않고 현금주의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발생주의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비용 및 미지급비용이 과소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발생주의에서는 비용과 수익을 현금의 유출입과는 무관하게 발생 사실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현금의 유출입 시점보다 늦게 수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수수익, 선급비용을, 먼저 수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을 결산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

선수수익, 선급비용의 경우는 유효일자 등 정보관리항목을 통해 dBrain+ 상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결산조정분개가 생성된다.

○ 선금지급 [1년 임차료(20X1. 10. 1 ~ 20X2. 9. 3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현금 지출 시	토지임차료	100,000	국고수입	100,000
결산조정분개	선급임차료	75,000	토지임차료	75,000

결산조정분개를 통해서 20X1회계연도의 비용은 현금 지출분인 100,000원이 아니라 실제 3개월 임차사용분인 25,000원만 인식된다.

선수수익, 선급비용과 같이 현금 유출입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는 dBrain+ 상 자동으로 발생주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수수익은 현금 유입이 늦게 발생하지만 징수결의 업무를 통하여 관련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지급비용[31], 미지급금은 현금 유출이 비용 인식 시점보다 늦을 뿐 아니라, 현금 유출 전에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별도 업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따로 발생주의 효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비용과 부채를 누락하기 쉽다.

31) 미지급이자비용은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에서 정보관리항목으로 입력된 유효기간 시작 및 종료일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산조정분개 생성 가능

○ 미지급금 [지출의무가 발생한 국고보조사업비]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결산조정분개	국고보조사업비	100,000	미지급금	100,000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채가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과 부채가 모두 과소 계상된다.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중앙관서에 동일한 사유로 인식해야 할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교환거래 비용 중 비용 인식시기가 도래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해야 할 건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TIP> 비교환거래 비용 인식 기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비용 회계처리지침」 문단 15.(1), 실무해설16, 적용사례3~6 참조)

사례	비용 인식시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 지급청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출연금	출연금 협약체결 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담금 협약체결 시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관련 부채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대중교통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본 회계연도에 교부가 확정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보조비(프로그램명: 광역교통정책, 지역개발, 도시정책, 산업단지개발및지원)가 2,005억 5,28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17p 중>

○ 최소운영수익보장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과 관련하여 본 회계연도에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민간보조비(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및관리)가 629억 5,4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32p 중>

○ 미지급비용 계상 누락

OO부 XX기금에서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수당 등을 발생시점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납부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미지급비용(유동부채), 전기료, 급여, 기타수수료, 국내교육비, 공공요금이 각각 3억 4,856만원, 1억 1,762만원, 1억 7,096만원, 3,058만원, 1,583만원, 1,35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에 퇴직한 인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급여와 미지급비용(유동부채)이 각각 1억 1,75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63p 중>

○ 임차료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본 회계연도 임차료 중 지급한 임차료와 관리비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납한 임차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지급임차료(프로그램명: 인도적 문제해결)와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각각 3억 9,896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07p 중>

○ 이차보전금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농림사업정책자금 관련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2018년 12월에 확정되어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지급시점인 2019년 1월에 인식하여, 이차보전비용(프로그램명: 농가경영안정)이 1,173억 6,757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714p 중>

○ 보조비 관련 비용 계상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18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실제 지출이 발생한 2019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민간보조비 58억 4,923만 원, 위탁사업비 14억 4,700만 원, 기타공공기관보조비 2억 3,599만 원, 공공요금 2,027만원, 기타수수료 518만 원, 업무대행수수료 220만 원, 연료비 15만 원(이상 프로그램명: 고용창출 및 훈련), 업무대행수수료 272만 원(프로그램명: 고용평등증진), 기타수수료 18만 원(프로그램명: 근로조건보호복지증진) 및 공공요금 8,304만 원, 연료비 1,058만 원, 특정업무비 1,182만 원, 기타수수료 182만 원, 업무대행수수료 33만 원(이상 관리운영비)이 과대 계상되었고, 해당 프로그램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각각 75억 6,002만 원(프로그램명: 고용창출 및 훈련), 272만원(프로그램명: 고용평등증진), 18만 원(프로그램명: 근로조건보호복지증진), 1억759만 원(관리운영비)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96p 중>

○ 최소운영수익보장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XX회계에서 인천북항 2-1단계 운영수입보장금(MRG)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당기에 확정되어 2020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는 시점인 2021년 2월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비(프로그램명: 항만개발 및 관리)가 53억 923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부채)이 53억 923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869p 중>

○ 발생주의 비용 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세종청사 관리비 지출 시 2021년 12월분의 전기료는 2021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2022년 1월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료(관리운영비)가 1억 2,38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55p 중>

○ 발생주의 부채 미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고용부담금에 대하여 2023년 1월 납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의미지급금(유동부채)이 3억 8,005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제세(관리운영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34p 중>

○ 장병 지원금 등 기타충당부채 미계상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실제 지급된 재정지원금만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었고, 현재 의무에 따른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2,129억 5,622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 987억 3,034만 원, 기타의기타충당부채전입액(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 1,142억 2,588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98p 중>

○ 발생주의 부채 미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관련 위탁사업비를 국고예금이 지급되는 시점인 2025년에 비용으로 잘못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의미지급금(유동부채)이 125억 원 과소계상되었고, 위탁사업비(프로그램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73p 중>

4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부 일반회계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소송충당부채와 소송충당부채전입액이 과소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손실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거나, 손실 부담 가능성 또는 추정액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소송충당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소송충당부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을 경우 부채, 비용(소송충당부채전입) 또는 수익(소송충당부채환입)이 과소, 과대 계상되어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가 왜곡 표시된다.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충당부채 설정대상건 자체를 누락하거나 환급가산금, 이자 등이 부채설정금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이후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충당부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등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2. 소송충당부채 설정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관련 오류]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경우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전입액(관리운영비)이 각각 1,004만원, 96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환입액(비배분수익)이 41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885p 중>

○ 재정상태표일 후 패소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과대 계상

OO회 XX기금에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추정손실과 재정상태표일 이후 위 소송의 패소로 확정된 손실금액의 차이를 소송충당부채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기타장기충당부채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각각 154억 913만원, 42억 11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환입액(비배분수익)이 11201억 800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71p 중>

○ 재정상태표일 후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과소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소송충당부채가 266억 2,715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전입액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26p 중>

○ 재정상태표일 후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과소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패소한 국세수익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가 66억 3,60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국세가 66억 3,604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79p 중>

○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2020회계연도 말 현재 1심 및 2심에서 연속하여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30억 2,151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국세(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88p 중>

○ 소송충당부채 미인식 오류

OO부 △△특별회계에서 2021회계연도 말 현재 1심과 2심에서 연속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5억 1,23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55p 중>

○ 소송충당부채 계상 누락

OO청 일반회계에서 환급대상 기납부세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1개 사건의 환급가산금을 잘못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억 786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국세(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39p 중>

○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오류

OO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 기준 고등법원 계류 중인 소송사건 6건에 대하여 과거 소송결과를 고려할 때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소송충당부채 계상을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278억 7,100만 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소송충당부채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20p 중>

○ 소송충당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회계에서 터널 조성 공사에 대한 보상 관련 소송(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1심 패소 및 항소심 기각 등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만족하였음에도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전입액(비배분비용)이 48억 9,586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108p 중>

5 자산 감액여부 판단

○○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중 휴·폐업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투자증권(지분증권)이 1,084억 8,044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국유재산담당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투자증권에 대해 회계연도말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감액 대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마감 메뉴[자산관리>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조정자료입력>조정자료입력]에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와 감액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감액손실 인식이 누락된 경우 국유재산담당자가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감액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할 경우 관련 자산, 비용(투자증권감액손실) 또는 수익(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이 과대, 과소 계상되어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가 왜곡 표시된다.

(3) 점검 방법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투자증권을 보유한 경우, 회계연도 말에 국유재산담당자와 감액 인식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가 왜곡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투자증권 감액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_10.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투자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

> OO부 XX기금에서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은 해당 기업이 폐업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7,05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07p 중>**

○ 투자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

> OO부 일반회계에서 취득한 평창철강(주)의 주식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6억 8,005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71p 중>**

○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액손실 오류

>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한 건물과 토지이용권에 대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였음에도 자산의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일반유형자산) 375억 3,037만 원, 기타무형자산(무형자산) 13억 716만 원,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26억 6,064만 원,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16억 7,404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프로그램명: 남북회담) 331억 9,569만 원, 기타자산감액손실(프로그램명: 남북회담)이 13억 71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75p 중>**

참고 **일선관서담당자의 결산조정 요청 메뉴**

(1) 배경

결산조정분개는 결산담당자가 반영해야 하지만 관련 세부내용을 직접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결산담당자는 일선관서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문 등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적시에 조정분개를 입력하기 어렵다.

dBrain+에서는 '결산담당자 확인' 및 '일선관서 요청 등록' 메뉴를 신설하여 결산담당자가 적시에 조정분개를 입력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결산담당자 확인

결산담당자는 '결산담당자 확인'* 화면의 '요청구분기준관리'를 통해서 일선관서 담당자에게 결산조정분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회계결산 > 재무결산 > 회계기금 > 분개장조회 > 결산담당자 확인]

그림 4-5 ▌결산담당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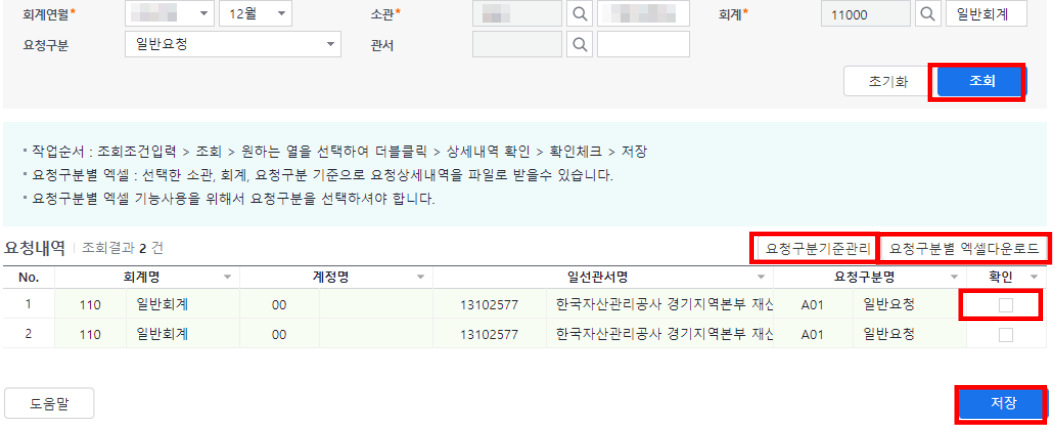

(3) 일선관서 요청 등록

일선관서 담당자는 '일선관서 요청 등록'* 화면에서 결산담당자가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엑셀업로드 할 수 있다.

* [회계결산 > 재무장부 > 회계기금 > 일선관서 요청 등록]

그림 4-6 ▌일선관서 요청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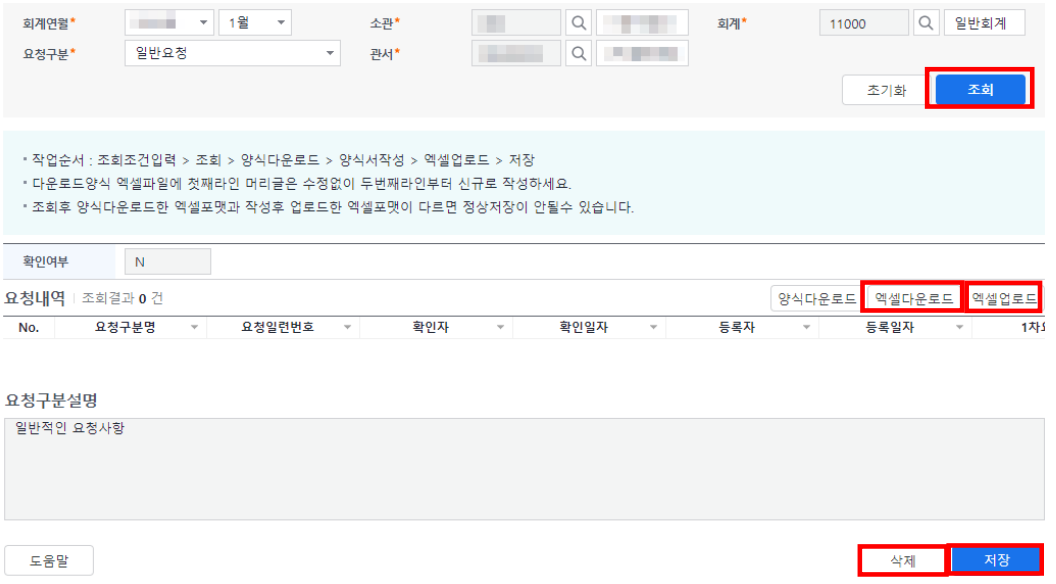

제5장 결산서 생성

◈ 결산조정분개 후 내부거래 제거 및 원가집계 등을 거치면 회계실체의 결산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 재무제표는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부분과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장에서는 결산보고서 중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시스템을 통한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	262
2. 주석 작성 방법	…	285

1 시스템을 통한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결산보고서를 생성하였을 때,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나온 숫자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결산을 마감하였다.

(1)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재무제표는 대부분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dBrain+에 결산보고서 생성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된다. 이 경우에 정보관리항목 누락 등으로 숫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산담당자는 디브레인에서 자동산출된 숫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아래 항목(보고서생성내역조정)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상 '보고서생성내역조정 및 점검' 메뉴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한다.

표 5-1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구분	항목	수정 방법	비고**
주 석	차입부채 상환계획	직접 입력	중앙관서
	투자증권감액손실명세서	엑셀 업로드	중앙관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중앙관서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융자사업세부현황(당해년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직접 입력	회계·기금
	투자증권명세서	직접입력 엑셀업로드	회계·기금
	출자금명세서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금융리스자산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공채상환계획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직접 입력	회계·기금
	출연비명세서(출연대상기관별현황)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기타금융자산(구상채권변동내역)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의 비교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중앙관서
별첨	자산·부채조정 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투자증권명세서(투자증권감액손실내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자료가 없음(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존재)

**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은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또는 중앙관서)>보고서생성내역조정및점검]에 있으며, 회계·기금과 중앙관서의 항목이 다르고 그 차이는 '비고'란과 같다.

그림 5-1 ▌보고서생성내역조정 및 점검(회계 ·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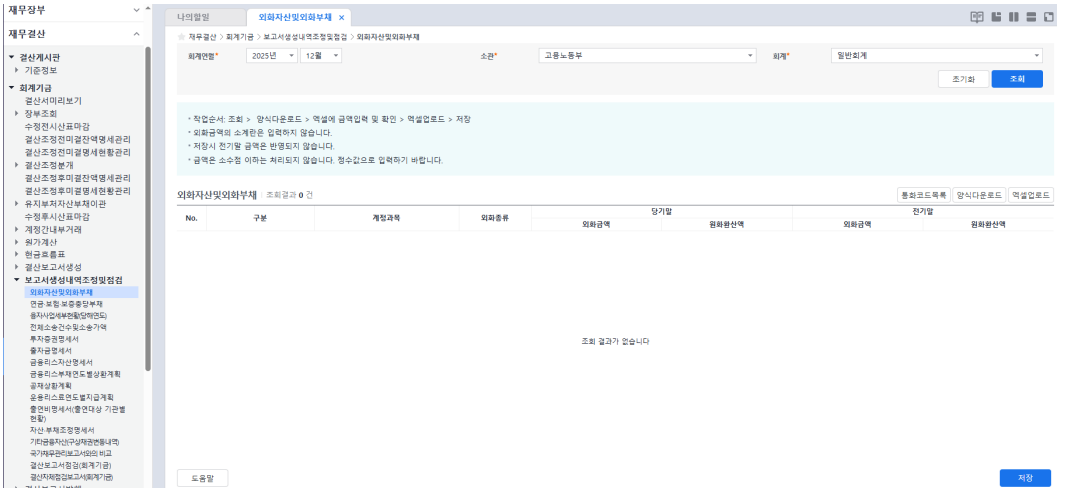

(2) 결산보고서수정요청

그림 5-2 ▌결산보고서수정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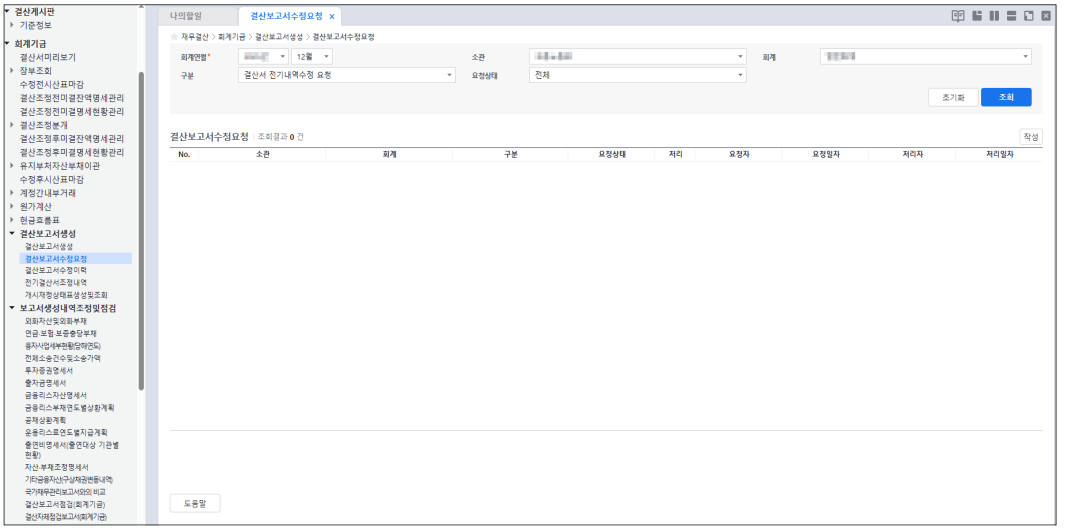

① 결산서 당기내역수정 요청

결산보고서 내용 중 재무제표,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이외에 당기 숫자를 수정해야 할 경우 '결산보고서수정요청'* 메뉴에서 구분을 결산서 당기내역수정 요청으로 선택한 후,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또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생성>결산보고서수정요청

그림 5-3 ▌결산보고서수정요청(결산서 당기내역수정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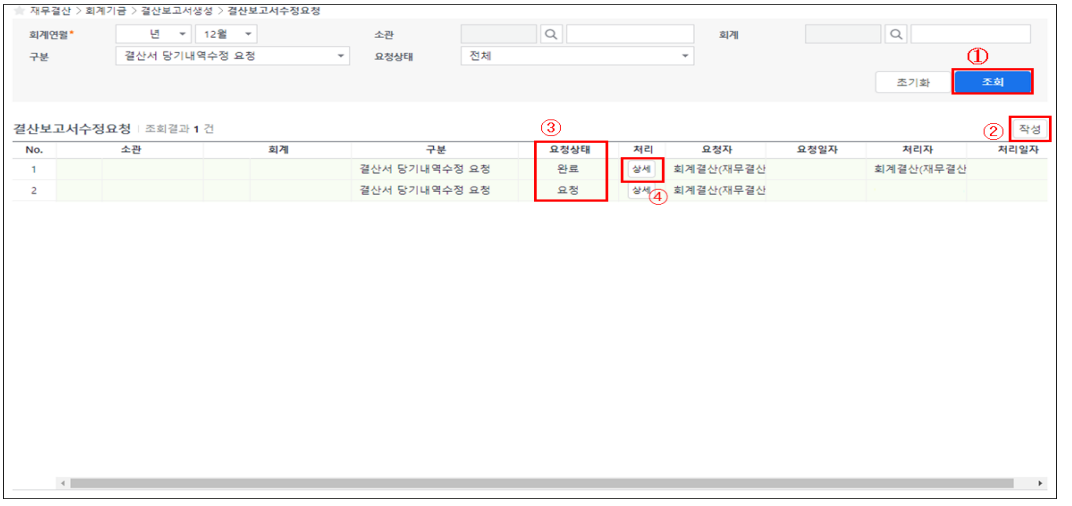

②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

결산보고서 모든 항목에 대해 전기 숫자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수정요청' 메뉴에서 구분을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으로 선택하여 수정하면 된다. 단,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회계·기금 단위에서 전기내역을 수정하였다면, 중앙관서 단위에서도 전기내역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기금 결산담당자는 전기내역 수정한 건을 중앙관서 결산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림 5-4 ▌결산보고서수정요청(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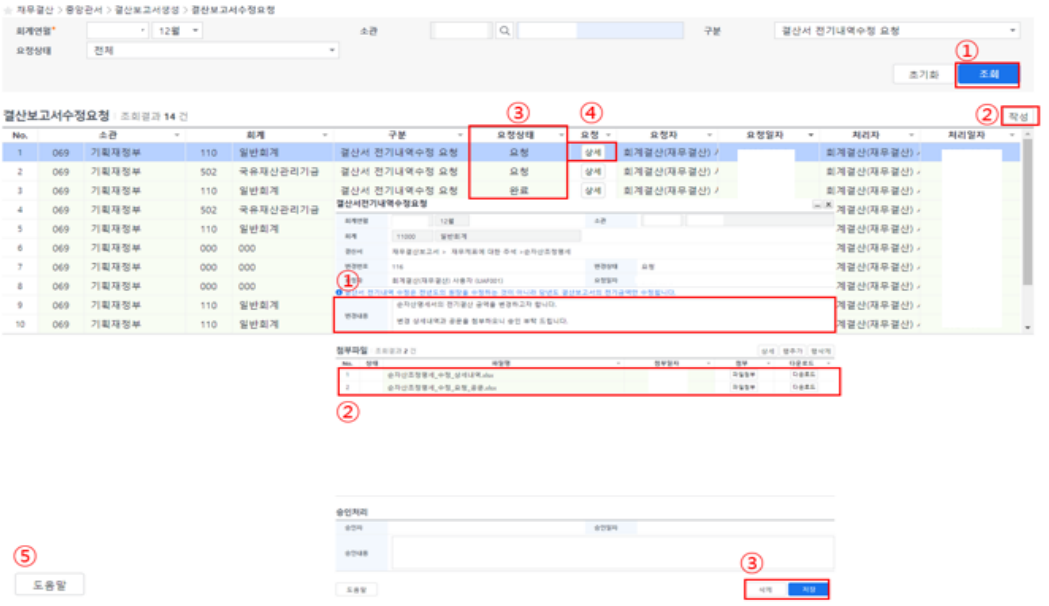

(3) 전기결산서조정내역

'결산보고서수정요청' 메뉴에서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을 선택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전기결산서조정내역'* 메뉴를 통해 재작성 회계처리를 입력한다. 이는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을 통해 수정한 결산보고서 수정내역과 '전기결산서조정내역'에서 입력한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추가 절차이다. 해당 메뉴에서 회계처리 입력 시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정책변경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택하고 수정 반영될 재무제표도 선택하여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또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생성>전기결산서조정내역

그림 5-5 ▌전기결산서조정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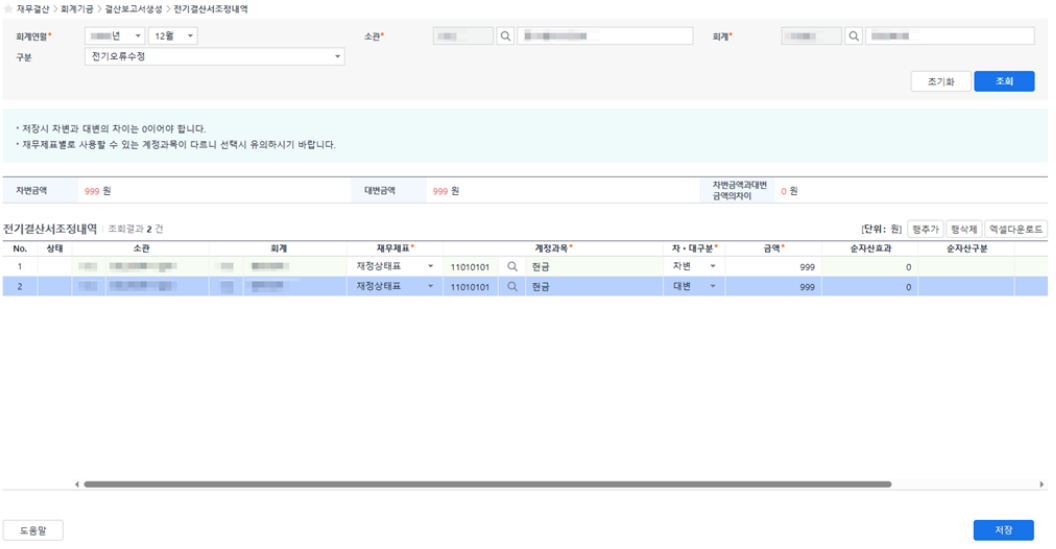

참고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절차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관련 재무정보를 재작성하며,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효과를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한다. 또한, 당기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는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전기오류수정손익"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수정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결산담당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

(1) 결산조정전표 등록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당기 누적 효과가 당기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반영되도록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등록] 메뉴에서 결산조정분개를 입력해야 한다.
기중에 전기오류수정손익(재정운영표)으로 처리된 내역 중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전기오류수정손익(순자산변동)으로 대체하여 기초순자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 결산보고서수정요청(전기내역수정)

당기에 비교표시되는 결산보고서 내역 중 전기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보고서수정요청] 메뉴*에서 구분을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으로 선택한 후 수정해야 한다.

* 결산보고서 수정요청(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 (그림 5-4 참조)

(3) 전기결산서조정내역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전기결산서조정내역] 메뉴*에서 구분을 '전기오류수정'으로 선택한 후,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재작성 분개를 입력한다.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에는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을 통해 수정한 결산보고서 내역과 '전기결산서 조정내역'에 입력한 회계처리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 전기결산서 조정내역 (그림 5-5 참조)

(4) 결산보고서점검

결산보고서를 생성하려면 결산보고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화면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점검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수정요청 및 보고서 생성내역조정 항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상없음'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에 체크제외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5-6 ▌결산보고서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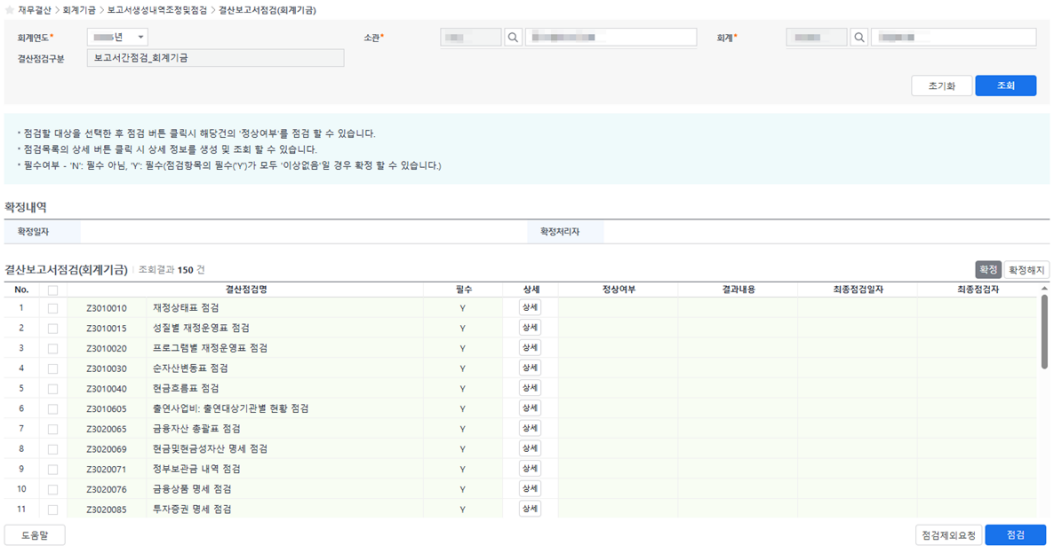

(5)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상세

① 차입부채 상환계획(주석)

'차입부채 상환계획'은 차입부채/차입금 상환계획에 표시될 내역이 각각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된다. '차입부채 상환계획' 탭을 클릭하여 국채, 차입금, 기타차입부채별 연도별 금액을 조회 확인하고 내역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한다. '차입금 상환계획' 탭에서는 국내차입금, 정부내차입금, 해외차입금별연도별 금액을 조회하고 만약 내역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한다.

'차입부채 상환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중앙관서에만 있고 회계·기금에는 없다.

그림 5-7 ▌차입부채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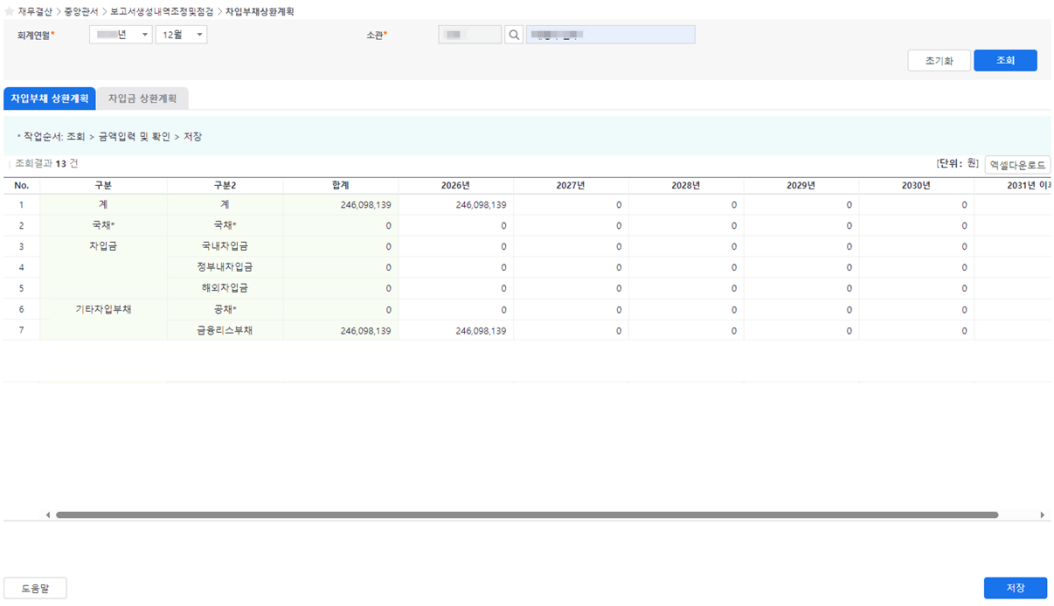

② 투자증권감액손실명세서(주석)

'투자증권감액손실명세서'는 투자증권감액손실내역 주석을 작성하는 메뉴로서 '기준정보조회'를 클릭하여 보고서 양식 정보를 조회 확인하고, '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시트에 조회된 보고서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보고서 양식에 맞게 투자증권 감액손실명세서 내역을 엑셀파일로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통해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투자증권감액손실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회계·기금과 중앙관서의 메뉴 위치가 다른데, 회계·기금은 '투자증권명세서' 하위의 '투자증권감액손실내역'에서 수정하고, 중앙관서는 '투자증권감액손실명세서'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8 ▌투자증권감액손실명세서

③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주석)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32]에 따라 주석에 해당 명세를 공시하여야 한다. '원화환산액'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즉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재하며, 외화금액의 소계는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소수점 이하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수로 기재해야 한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주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직접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통해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그림 5-9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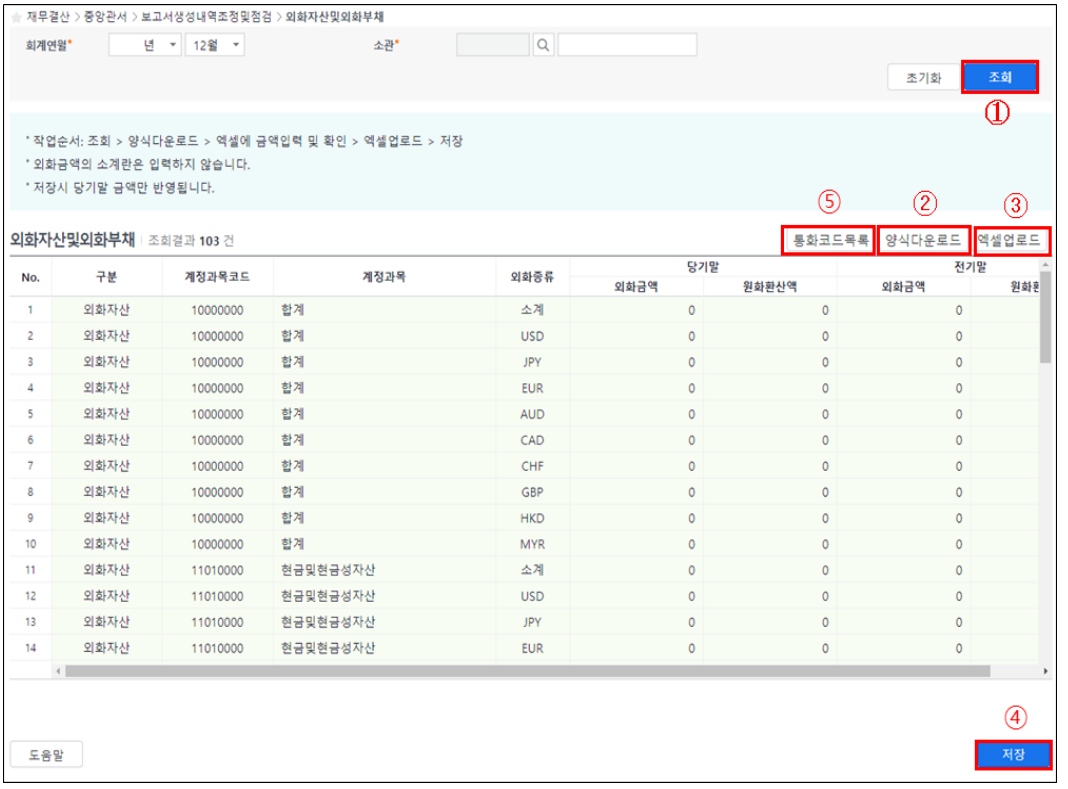

3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⑤ 생략
⑥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④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주석)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는 국가회계예규에 따라 주석에 해당 명세를 공시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주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구분 별로 조회한 후, 결산담당자가 '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직접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통해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그림 5-10 ▌연금 · 보험 · 보증충당부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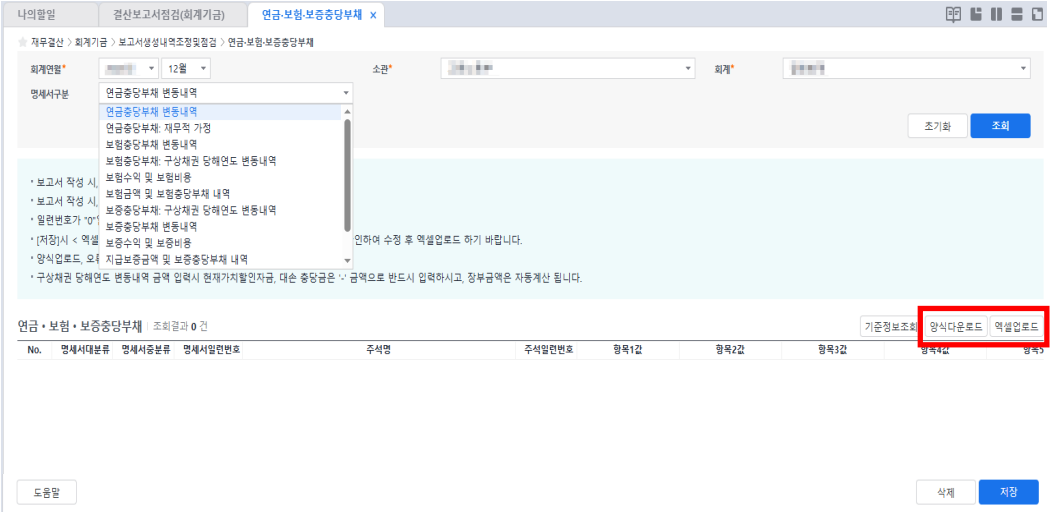

단, 명세서구분에서 '보험충당부채/보증충당부채/사회보험부채의 구상채권 당해연도 변동내역'은 '엑셀업로드' 처리 방식이 아닌 직접 입력 후 저장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기금의 구상채권액, 현재가지할인차금, 대손충당금에 대해 직접 입력하고, 장부금액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된다. 현재가지할인차금, 대손충당금 금액은 '-' 로 입력한다.

그림 5-11 ▌연금 · 보험 · 보증충당부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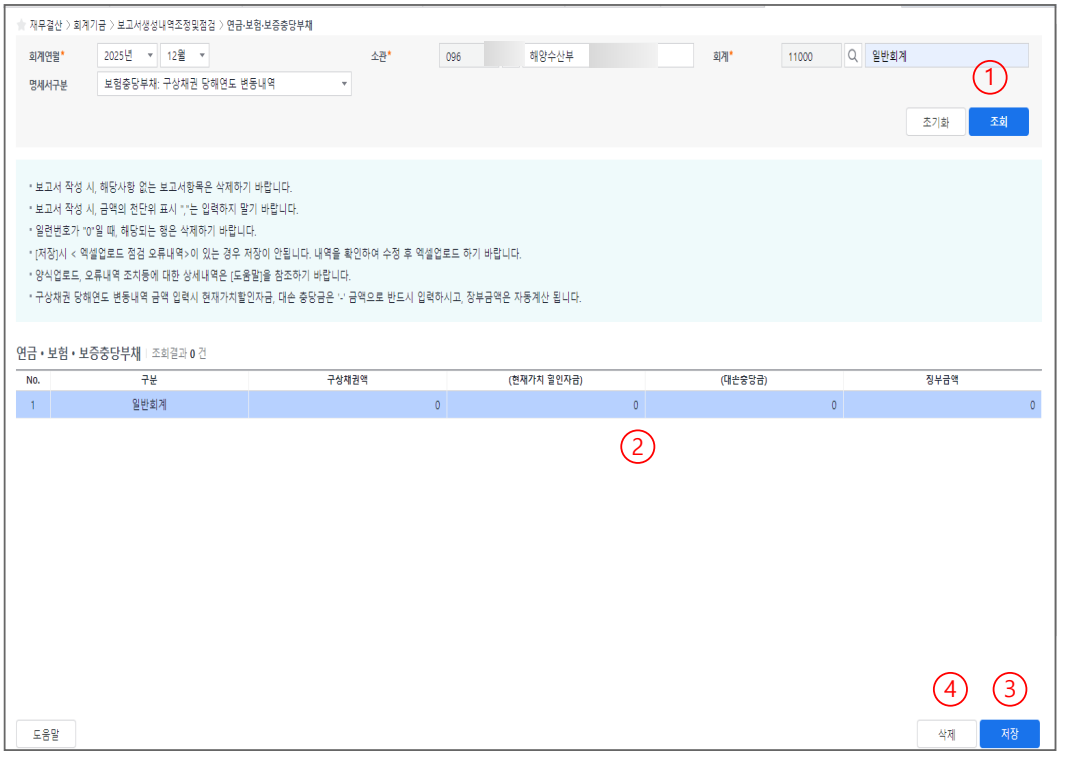

⑤ 융자사업 세부 현황(주석)

'융자사업 세부현황'은 국회 요청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결산보고서에 공시되고 있으며, dBrain+ 화면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 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융자사업 세부현황'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조직개편 금액 제외)되나 누락, 중복계상 및 금액 오류가 있을 경우,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해 결산보고서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

그림 5-12 ▌융자사업세부현황(당해년도)

표 5-2 ▌융자사업 관련 주석 기재 내역

구분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융자사업의 개요	직접작성(서술)	
(2) 융자조건	직접작성(표)	융자사업세부현황과 융자사업명 일치
(3) 융자사업의 규모	자동 산출	
- 융자사업 세부 현황	엑셀 업로드	(3)의 금액과 합계 금액 일치
(4) 융자사업 관련 수익·비용	자동 산출	
(5) 그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직접작성(서술)	

⑥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주석)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은 시스템에서 내용이 자동 산출되지 않으므로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되며 입력 가능)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해야 한다.

그림 5-13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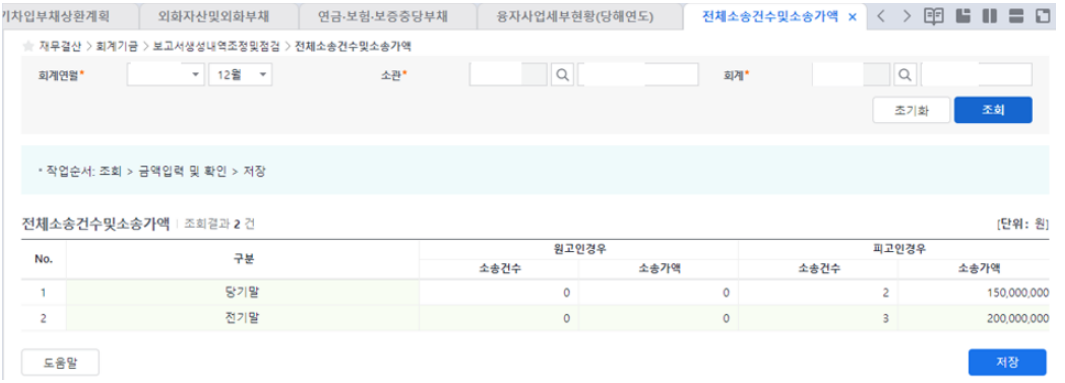

⑦ 투자증권명세서(주석)

'투자증권명세서'는 투자증권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평가손익 및 감액손실 금액 등을 보여주며 그림과 같이 총 2가지의 명세서가 존재한다.

그림 5-14 ▌투자증권명세서(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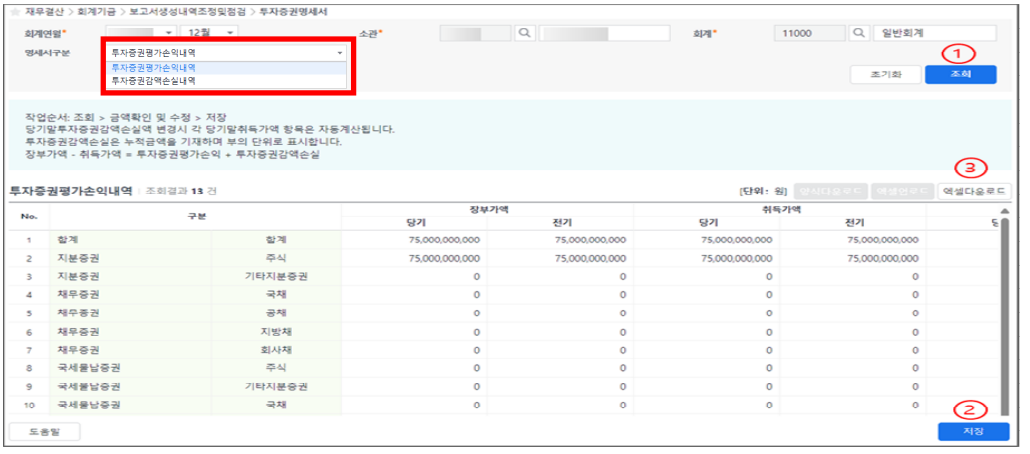

'투자증권평가손익내역'은 조회 후 금액을 수정한 경우 [저장]을 클릭하여 수정한 금액을 저장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15 ▌투자증권명세서(투자증권평가손익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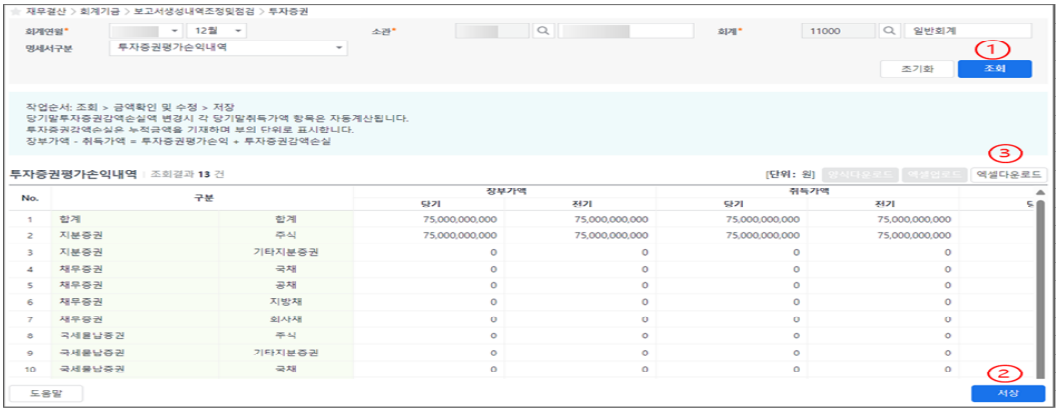

투자증권감액손실내역은 dBrain+ 화면에서 양식작성 후 엑셀업로드 방식으로 입력한 후 저장한다.

그림 5-16 ▌투자증권명세서(투자증권감액손실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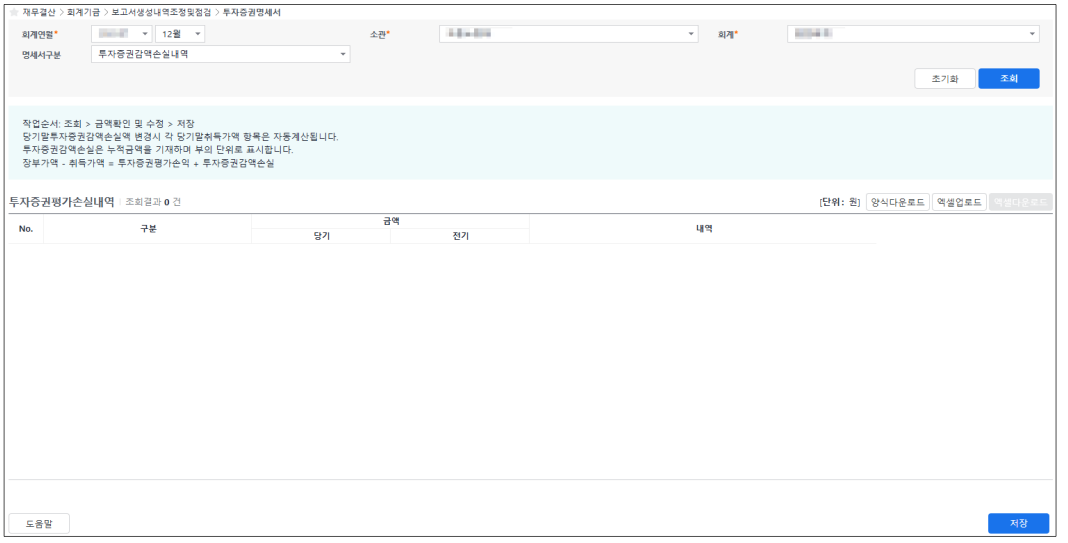

⑧ 출자금명세서(주석)

'출자금명세서'는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출자대상기관별로 금액이 표시된다.

그림 5-17 ▌출자금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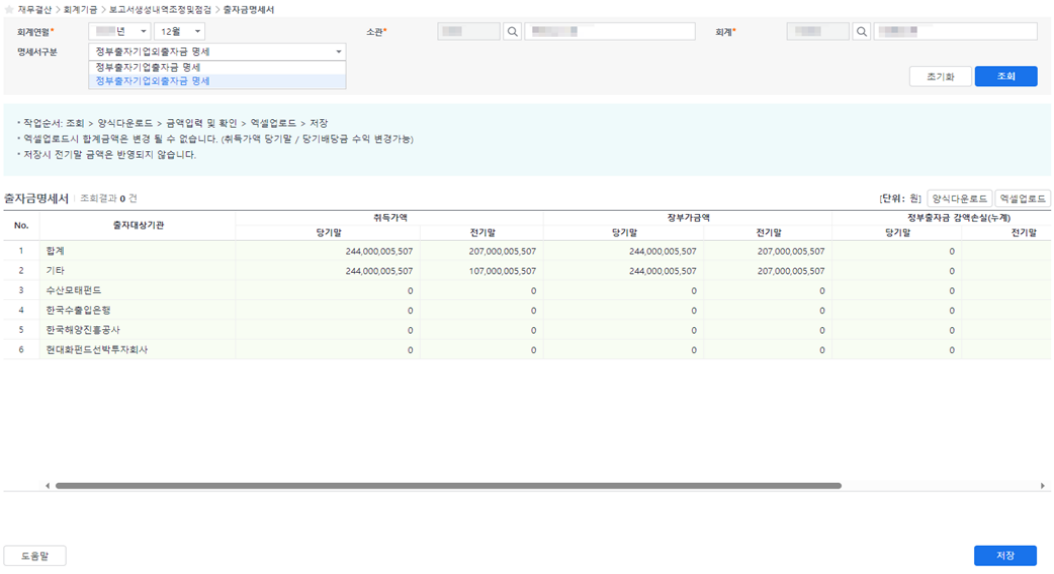

⑨ 금융리스자산명세서 및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주석)

본 메뉴에서는 금융리스자산의 명세와 금융리스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조회한 후 오류가 있으면,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18 ▌금융리스자산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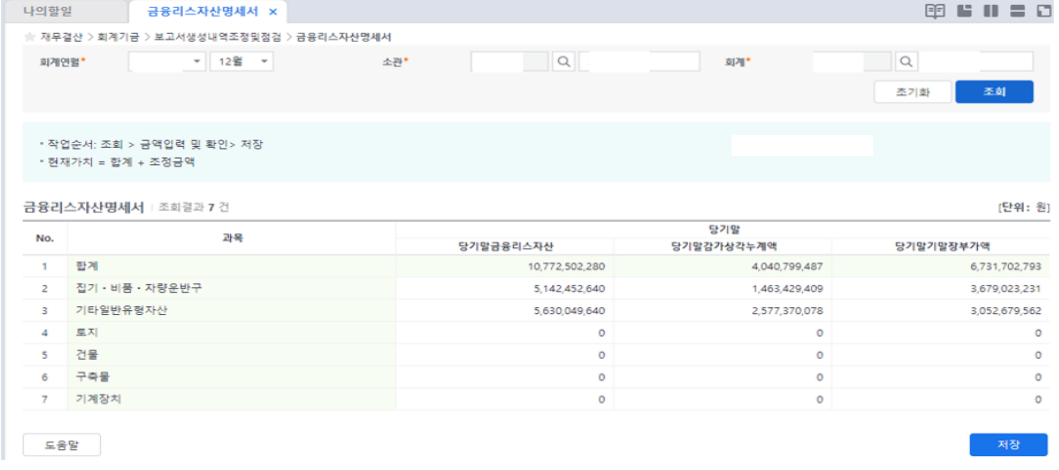

그림 5-19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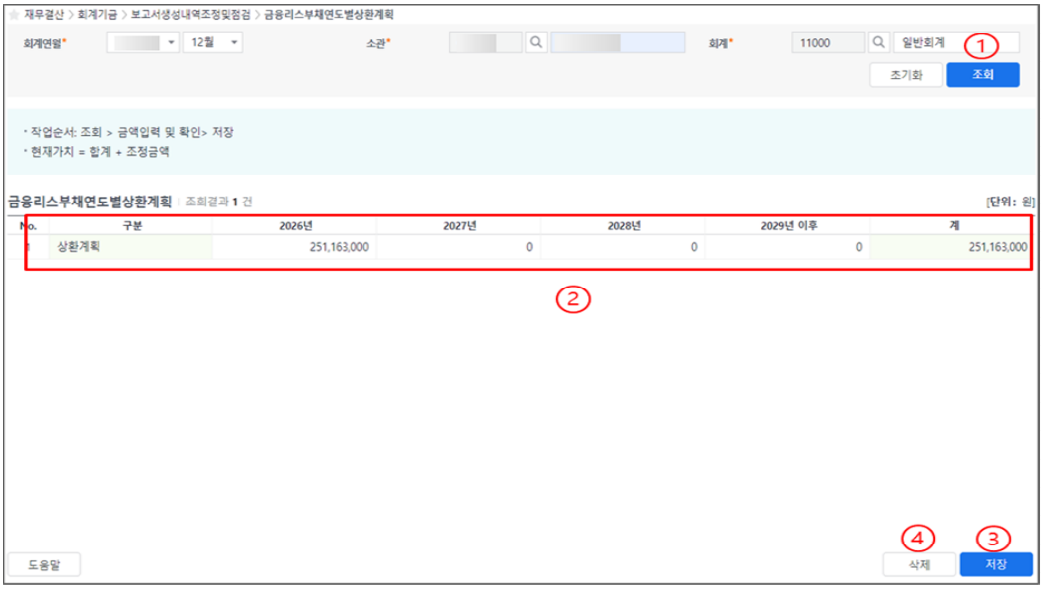

'금융리스자산 명세서'와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은 디브레인 회계결산의 계정과목별 명세의 '계정과목 세부명세서' 메뉴와 조달의 '리스계약관리' 메뉴를 활용하여 오류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금융리스 관련 자료 조회>

ㅇ 계정과목 세부명세서

– 메뉴: 회계결산 > 재무장부 > 회계기금 > 원장조회 > 계정과목별 명세 > 계정과목 세부명세서 > 8.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 > (4,5)물품 계정과목별현재액현황(관서별,자산별)

– 조회조건: 대장종류를 '금융리스대장' 으로 선택

ㅇ 리스계약관리

– 메뉴: 자산관리 > 조달관리 > 계약 > 리스계약관리 > 리스계약조회(중앙관서용),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장기차입금(금융리스부채)

⑩ 공채상환계획

본 메뉴에서는 공채 상환 계획을 조회한 후 실제 금액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조정 입력 할 수 있다.

그림 5-20 ▌공채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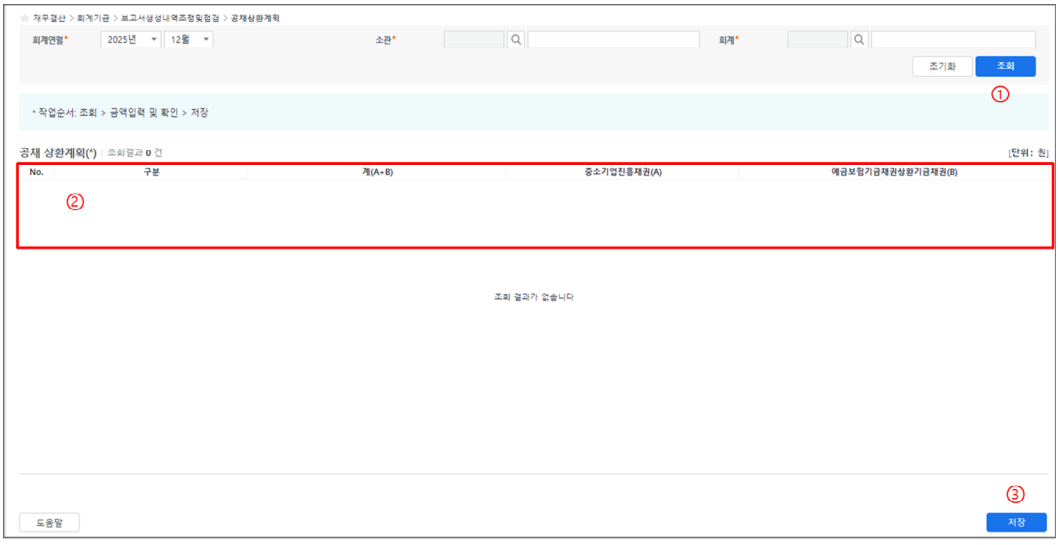

⑪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주석)

본 메뉴에서는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을 조회한 후 오류가 있으면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21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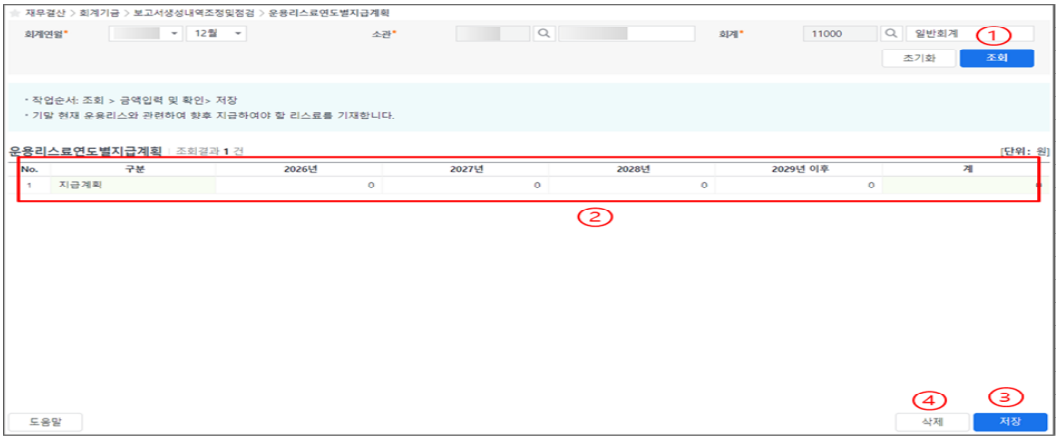

당기 총계정원장에 '운용리스료'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차기 이후에 지급할 운용리스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세서 작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⑫ 출연비명세서(출연대상기관별현황)(주석)

'출연비명세서'는 조회되는 명세서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출연대상기관별로 금액이 표시된다.

그림 5-22 ▌출연비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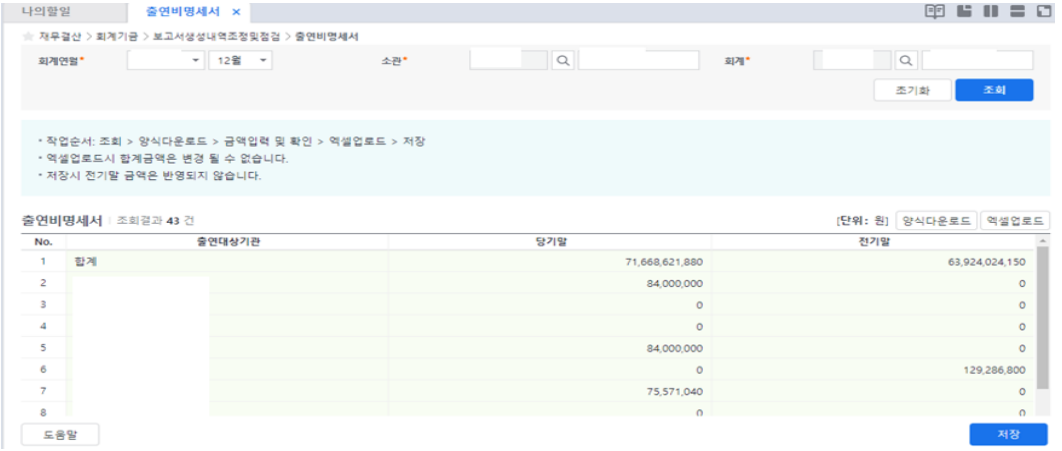

⑬ 기타금융자산(구상채권변동내역)(주석)

'기타금융자산(구상채권변동내역)'은 조회 시 조회 내역이 없는 경우 '생성'을 클릭하여 기타금융자산의 구상채권 당해연도 변동내역을 생성한다.
기타금융자산 구상채권 당해연도 변동내역은 보험충당부채/보증충당부채/사회보험부채 구상채권 당해연도 변동내역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생성된 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23 ▌기타금융자산(구상채권변동내역)(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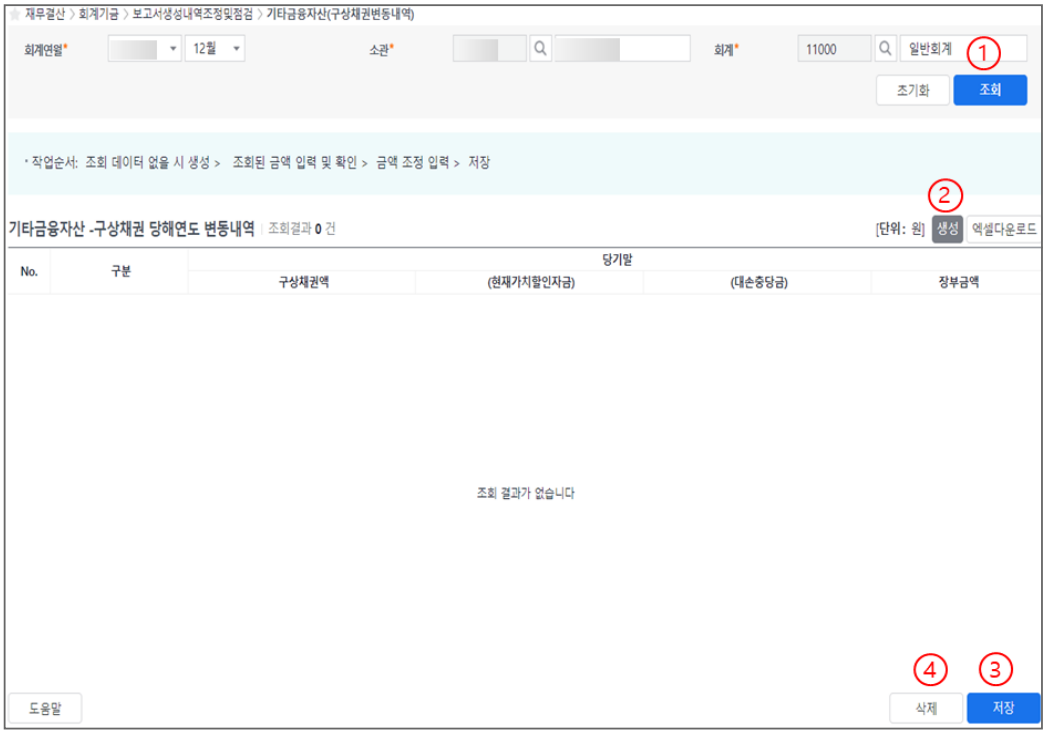

⑭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의 비교(주석)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의 비교'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각각에 대한 국가채무보고서 비교 내역을 나타낸다. '국채' 의 경우 양식을 다운받아 엑셀업로드 방식으로 입력하고,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조회 후 등록된 금액이 없는 경우(전체 '0') 직접 시트에 입력, 저장한다.

그림 5-24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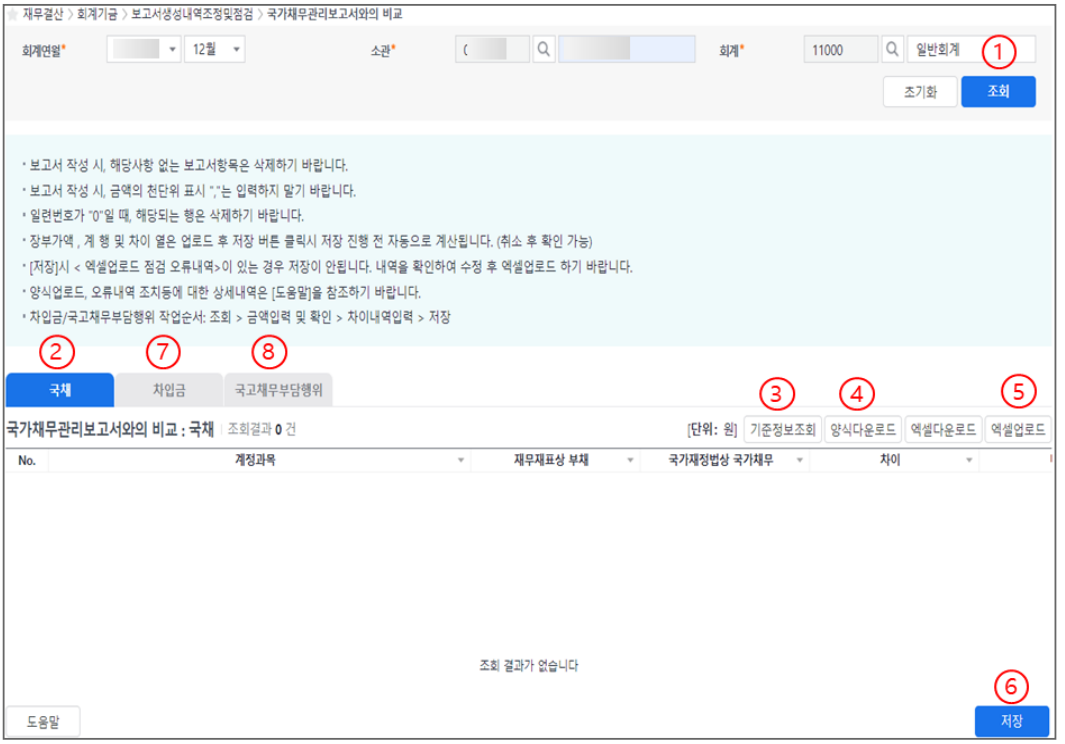

⑮ 자산·부채조정명세서(별첨)

'자산·부채조정 명세서'는 개별법 자산·부채(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국가채무) 금액과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간의 차이 상세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로, 'Ⅲ. 차이내역'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차이내역 하위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금액을 수정한 경우 '저장'을 클릭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조회된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림 5-25 ▌자산 · 부채조정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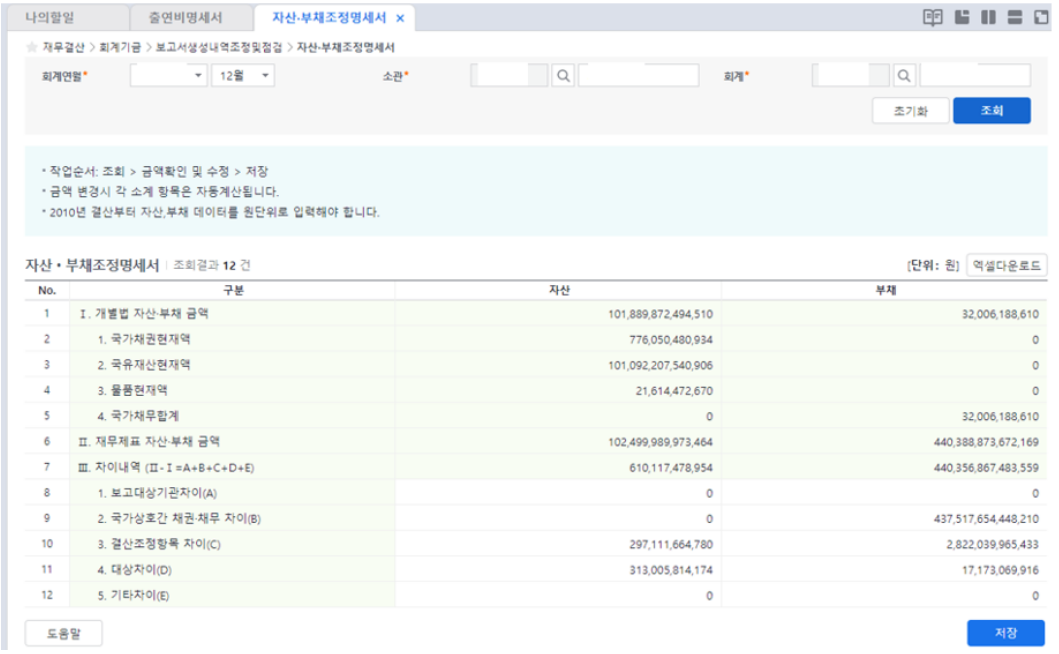

2 주석 작성 방법

가. 소송

OO부에서 '계류중인 소송사건' 주석을 작성하면서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에 전체 소송사건이 아닌 소송가액이 큰 소송사건만 포함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하도록[33] 되어 있다. 소송사건은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사례로 결산보고서에 '21.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중 '21-8.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산작성지침에서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①원고, 피고인 경우 각각 총 소송건수와 총 소송가액을 기재**하고, **②중요한 내역은 계류법원, 사건내용, 소송가액 및 진행상황 등을 소송건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표 5-5 ▌계류 중인 소송사건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 건, 원)

구분	OO기금(또는OO회계)이 원고인 경우		OO기금(또는OO회계)이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전기말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OO기금(또는OO회계)이 원고인 경우					
OO기금(또는OO회계)이 피고인 경우					

3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생략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2) 점검방법

결산담당자는 당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전체 내역을 업무담당자로부터 입수하여 주석에 전체소송 건수 및 가액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전기 주석에 공시하였던 소송사건의 경과가 당기에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

(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누락

>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으로 국가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의 소송가액 1조 8,886억 원에 대해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주석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 406억 원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나머지 1조 8,480억 원에 대해서는 주석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59p 중>**

○ 소송사건에 대한 주석 공시 오류

> OO부 일반회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부장관이 대표하는 소송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공시하면서 완료된 소송사건 등 공시대상이 아닌 1,634건 및 관련 소송가액 4조 8,366억 원을 포함하여 잘못 공시하였다.
>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00p 중>**

나.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OO부에서 소관내 XX기금이 작성한 파생상품 내역(통화선도)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시에는 통화선물로 잘못 기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이외에도 많은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이 존재하며,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공시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5-6 ▌국가결산보고서 상 공시 중인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구 분	내 역
지급보증	보증채무의 규모 및 구성내역, 보증채무 외 지급보증내역
중요한 계약사항	건설공사계약, 업무위탁계약 등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천재지변, 화재사건 등
최소운영수입보장내역(BTO 등)	BTO 등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 내역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 부담 계약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국가귀속물품, 몰수품
담보제공자산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 및 채권 최고액 등
계류 중인 소송사건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주요 소송사건 등

(2)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과 관련된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및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부처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는 하위 회계·기금에서 작성한 주석 내용이 부처 결산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구체적 사항 주석 미공시

> OO부 XX회계에서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최소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보장사업 건수 및 주요 협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별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을 단순히 기간(예: 20년)으로만 공시하고 구체적인 약정기간(예: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을 표시하지 않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704p 중>**

○ 주파수할당대가 관련 우발자산 주석 미공시

> OO부 XX기금에서 일정기간(6년~10년) 동안 특정 주파수대역 이용 대가를 징수하기로 통신 3사(SKT, KT, LGU+)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수취하게 될 금액 8,042억원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781p 중>**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석 미기재

> OO청 XX특별회계에서 비축물자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관련한 파생상품거래는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거래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표시하지 않았다.
>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80p 중>**

다. 정부보관금

○○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기탁금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 등은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보관금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관련 기탁금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1) 오류의 유형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예산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 국가소유가 아닌 현금을 의미)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처리지침 상 정부보관금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021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외 현금'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보관금' 용어로 통일함

표 5-7 ▌정부보관금 항목 및 관련 법령

구 분	관련법령
공탁금	• 채무자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맡기는 금전 • 「공탁법」에 따른 공탁 절차상 공탁하는 금전 및 법령상 명시적으로 「공탁법」을 준용하여 공탁하는 금전 *「도로교통법」상 차량 매각처분 후 공탁,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강제처리 후 공탁,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매각 또는 폐차 후 잔액 공탁
보증금	• 행정사무의 진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거나 사무 이행을 보증·보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전 • 금전을 받아두지 않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정운영상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징수하는 금전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관세법」상 담보, 산지관리복구비, 농지복구비 등 국공유재산 복구비 선예치금
압수·압류금	• 「법무·세무 행정상 압수된 금전 또는 압수물·압류재산 환가대금 • 압수·압류 자체가 사무의 목적인 경우로서 압수·압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금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 압수현금 및 압수물 환가대금,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무원 급여가압류, 국세환급금 가압류 등

<table>
<tr><th>구 분</th><th>관련법령</th></tr>
<tr><td>권리자
미상금</td><td>• 권리자의 신원 또는 거소 불명, 지급 거부・포기, 요구 부재, 배분에 대한 이의 발생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금전
• 법정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공고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못한 보증금, 압수・압류금 등의 금전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상 거소 불명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포상금,「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체납정리계좌불명액, 배분에 이의가 있어 배분 유보된 금액
* 배분기일이 지난 체납자배분금 또는 매각취소결정 후 30일 경과된 계약보증금,「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상 14일간의 반환공고가 완료된 환가대금</td></tr>
<tr><td>기타
보관금</td><td>• 위 네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국가 소유가 아닌 현금으로 현실에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금전
* 영치금, 가납 벌과금 등</td></tr>
<tr><td>일시
보유금</td><td>• 사무처리 절차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금 계좌에서 처리하는 아래 유형의 금전
<table>
<tr><th>종류</th><th>예시</th></tr>
<tr><td>몰수금</td><td>「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상 몰수품 환가대금, 도박몰수금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td></tr>
<tr><td>납입금</td><td>퇴직자에게 과지급된 급여 및 복지포인트 환수금,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송달료, 지체상금, 환율연동을 위한 해외금전 등으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td></tr>
<tr><td>소액현금</td><td>국고금 끝수 누적액, 보관금 계좌 예금이자로 국고귀속 전 일시보유금</td></tr>
<tr><td>미지급금</td><td>배분 전 급여 등 권리자에게 곧 지급될 금전, 보험료·소득세 등 기타 회계주체에 귀속될 급여공제금, 국제기구 분담금 해외송금용 금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재계약· 신규계약에 따라 지급 예정인 관사임차료</td></tr>
</table></td></tr>
</table>

(2)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디브레인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정부보관금' 주석이 사실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 후, 불일치하는 경우 보관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수입>중앙관서보관금마감>중앙관서보관금마감화면'에서 마감취소 및 내역 수정 후 해당 주석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세입·세출외 거래>

세입·세출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 자산·부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주석 공시 뿐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대차관: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전대차관대여금으로 회계처리**
- **현물출자: 세입·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나 투자증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 **회전자금: 세입·세출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재정상태표의 기타금융자산으로 반영**

<기술료>

국가재정법의 개정(2014.1.1.)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통칭 기술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삭제되어 세입세출 內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 이전에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기술료는 세입세출외 거래인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처리 변동은 없었다.

(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세입·세출외 현금(기탁금) 주석 공시 누락

>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후보자 등록 기탁금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 등은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관련 기탁금 103억 5,764만원(후보자 등록 기탁금 17억 100만원 및 정치자금 기탁금 86억 5,664만원)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19p 중>**

○ 세입·세출외 현금 주석 공시 누락

>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른 지방선거관리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경비로 OO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지방선거관리경비 등 653억 9,617만원(집행액 594억 3,115만원, 반환액 59억 6,502만원)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19p 중>**

○ 세입·세출외 현금 주석 공시 누락

>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세입·세출외 현금인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24억원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표시하지 않았다.
>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276p 중>**

제6장 결산서 발행

◈ 결산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 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dBrain+에서 발행할 수 있다.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와 주석으로 구성된다.

◈ 결산보고서 발행 단계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었거나 '보고서 생성내역조정' 등을 통해 작성한 내역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산담당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적절히 입력해야 한다.

◈ 결산담당자는 결산서 제출전에 재무제표와 주석 구성항목 간 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결산보고서 체크리스트**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결산보고서 제출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산보고서 발행단계는 재무결산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는 단계이므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결산개요 &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294
2.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	…	297

1 결산개요 &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결산개요

○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A)	전기(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Ⅰ. 금융자산				
Ⅱ. 유·무형자산				
Ⅲ. 기타자산				
부채합계(b)				
Ⅰ. 차입부채				
Ⅱ. 충당부채				
Ⅲ. 기타부채				
순자산(a-b)				

※ 전년과 비교하여 당년도 자산부채 중 재정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 항목 등을 상세히 기술 (휴먼명조 11p)

※ "□", "○", "-" 의 글머리표 체계에 따라 작성

(작성예시)

□ 금융자산 증감 내역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정기예금 해지, 국유재산매각대금 유입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XX백만원 증가함

○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전년대비 XX백만원 감소함

○ 투자증권은 주식에 대한 투자확대 및 평가이익 인식으로 전년대비 XX백만원 증가함

○ 정부출자금은 공익사업에 대한 출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XX백만원 증가함

○ 대여금은 융자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로 XX백만원 감소하였고, 융자금 지원 확대로 XX백만원 증가함

○ 미수채권은 세입징수실적 저조 등으로 전년대비 XX백만원 증가함

○ 기타금융자산은 임차보증금 XX백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XX백만원 증가함

□ 유·무형자산 증감 내역

○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취득, 건물의 관리전환,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XX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으로 인해 XX백만원 감소함

○ 사회기반시설은 고속국도 토지 취득, 경의선 철도의 국가 귀속 등으로 인해 XX백만원 증가함

- 기업회계용어를 사용하진 않았는지
- "□", "○", "-"의 글머리표 체계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 백만원 단위로 작성되었는지
- 주요변동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였는지
- 문구양식을 통일하였는지
- 표 하단에 기술한 내용이 표 금액과 일치하였는지

- 재정상태 분석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분석, 순자산변동 분석도 확인

(2)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주석	20XY	20XX
자산			
Ⅰ. 금융자산	**2**	**XXX**	**XXX**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	XXX	XXX
2. 금융상품	2-2	XXX	XXX
3. 투자증권	2-3	XXX	XXX
4. 정부출자금	2-4	XXX	XXX
5. 대여금	2-5	XXX	XXX
6. 미수채권	2-6	XXX	XXX
7. 기타금융자산	2-7	XXX	XXX
Ⅱ. 유·무형자산	**3**	**XXX**	**XXX**
1. 일반유형자산	3-1	XXX	XXX
2. 사회기반시설	3-2	XXX	XXX
3. 무형자산	3-4	XXX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잔액이 부(-)의 금액으로 잘못 표시되지 않았는지

☞ **오류발생 사례**

- ✓ 재화판매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정과목 선택 오류로 인하여 재화판매수익이 발생
- ✓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앙관서에서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계정금액이 발생하는 오류 발생
- ✓ 투자증권에서 발생한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환입은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나 기타자산감액손실 및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을 사용하는 오류 발생
- ✓ 금융상품과 대여금이 없는 소관에서 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대여금이자수익 계정 발생
- ✓ 투자증권평가손실 잔액, 기타의기타이전비용, 기타의선급비용,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금액이 부(-)의 금액인 오류 발생
- ✓ 재정운영표상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운용리스료, 지급임차료, 보증수익이 부(-)의 금액인 오류 발생
- ✓ 프로그램 중 'XX활동'의 프로그램수익이 양(+)의 부호로 기재되는 오류 발생
- ✓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의 잔액으로 표시되는 오류 발생
- ✓ 인건비(퇴직급여), 공무원연금부담비, 지급수수료, 배상비, 융자보조비용,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평가손실 등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비배분비용으로 분류
- ✓ 행정지원프로그램(7100)인 '환경행정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
- ✓ 사업비 반납액을 지출금반납금이 아닌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 ✓ 기금의 보증비용과 관련한 전기 재작성 사항이 중앙관서 결산 시 미반영
- ✓ 기금에서 부의 보험비용과 관련하여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나, OO부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결산보고서를 작성

○ 순자산변동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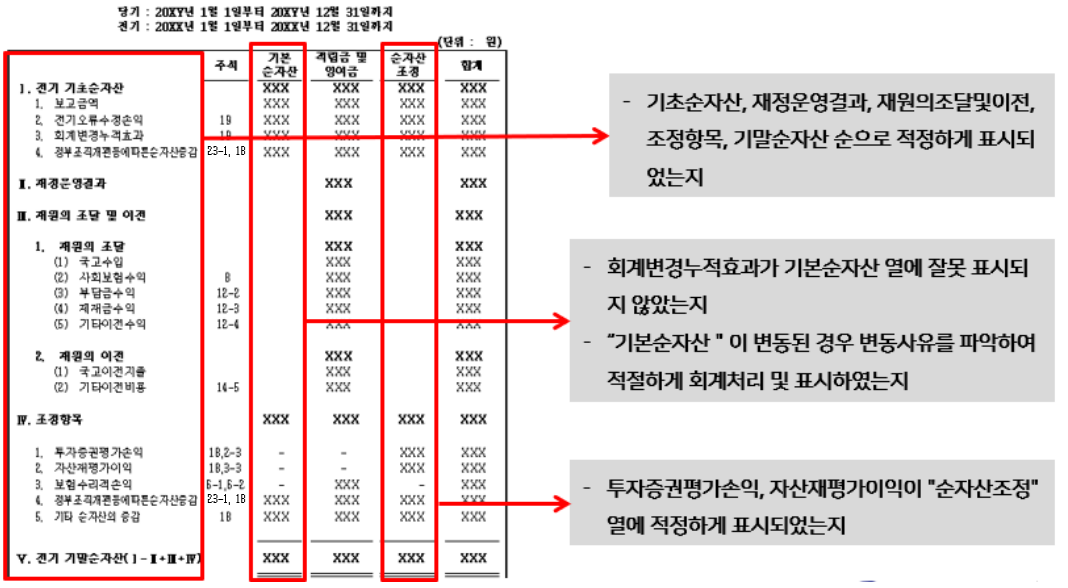

당기 :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주석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19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19	XXX	XXX	XXX	XXX
4.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23-1, 18	XXX	XXX	XXX	XXX
Ⅱ.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8		XXX		XXX
(3) 부담금수익	12-2		XXX		XXX
(4) 재제금수익	12-3		XXX		XXX
(5) 기타이전수익	12-4		XXX		XXX
2. 재원의 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기타이전비용	14-5		XXX		XXX
Ⅳ.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투자증권평가손익	18,2-3	-	-	XXX	XXX
2. 자산재평가이익	18,3-3	-	-	XXX	XXX
3. 보험수리적손익	6-1,6-2	-	XXX	-	XXX
4.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23-1, 18	XXX	XXX	XXX	XXX
5. 기타 순자산의 증감	18	XXX	XXX	XXX	XXX
Ⅴ. 전기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XXX	XXX	XXX	XXX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조달및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 순으로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 회계변경누적효과가 기본순자산 열에 잘못 표시되지 않았는지
- "기본순자산 " 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및 표시하였는지
-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이 "순자산조정" 열에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 오류발생 사례

- ✓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비교환수익 회계처리 시 재정운영표 계정과목(4번대)을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한 명칭의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6번대)을 사용
  * (오류) 62060401 기타의기타이전수익 → (적정) 42040401 기타의기타이전수익/이전수익
- ✓ 회계정책변경인 미수제재금수익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적립금및잉여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으로 회계처리
- ✓ 정부미술품 취득분에 대하여 기본순자산으로 잘못 반영
- ✓ 당해연도에 조직개편이 없었음에도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기본순자산)' 금액이 발생

2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 '②~㉒번 중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 삭제 후 번호를 적절히 수정하였는지 (ex. 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⑩번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 ⑪번을 ⑩번으로 수정하여 번호 오름차순으로 표시)

ㅇ 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⑦ 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예)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하 "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xx년 ~ xx년	정액법
구축물	xx년 ~ xx년	
기계장치	xx년 ~ xx년	
집기・비품・차량운반구	xx년 ~ xx년	
전비품	xx년 ~ xx년	
기타 일반유형자산	xx년 ~ xx년	

- 사회기반시설이 존재하는 부처 이외의 부처가 해당 항목을 잘못 기재하진 않았는지 (24년말 기준 사회기반시설이 있는 중앙관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
-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 실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 상각방법 및 내용 연수를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ㅇ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⑨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연수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xx년 ~ xx년	정액법
산업재산권	xx년 ~ xx년	
광업권	xx년 ~ xx년	
기타무형자산	xx년 ~ xx년	

→ -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해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ㅇ 자산의 감액 등

⑪ 자산의 감액 등

예) ㅇㅇ부의 재정상태표 자산 중 국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감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손실 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감액사유
일반유형자산	건물			물리적 손상
사회기반시설	국도			물리적 손상
투자증권	지분증권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재정운영표에 자산감액손실이 있는 경우 감액명세를 기재하였는지
- 감액 내역표의 "전기" 금액이 전기 결산보고서 상 동일한 표의 "당기" 금액과 일치하였는지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⑭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예) ○○부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을 "⑭ 장기충당부채와 우발상황"으로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예) ○○부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며,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율변동효과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의 구분(순자산조정 또는 재정운영결과)에 따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결산작성지침 상 변경된 예시 문구대로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2) 금융자산

2-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등가물과 국고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금"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공공기관관리기금)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명세〉

(단위: 원)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금액		증감률(%)
		당기	전기	
합계				
현금및현금등가물	소계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			

- 한국은행국가예금 잔액이 실제 국고계좌 잔액과 일치하는지

- 국고금회계에서만 발생하는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계정과목을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1)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정부보관금(일시보유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합니다.

〈정부보관금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합계			
재무제표 미인식	소계		
	공탁금		
	보증금		
	압수 · 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 정부보관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작성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 지침상 제시된 보관금분류코드(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에 따라 기재하였는지
- (국가소유)일시보유금을 포함하지는 않았는지

(3) 정부출자금

1) 정부출자금 명세

출자대상기관별 감액손실, 배당수익 등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출자기업출자금 명세〉

(단위 : 원)

출자대상기관	취득가액		장부가액		감액손실(누계)		당기 배당금수익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 명세〉

(단위 : 원)

출자대상기관	취득가액		장부가액		감액손실(누계)		당기 배당금수익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 출자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는 명칭(국토부 교특회계, 기재부 일반회계 등)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 출자대상기관의 과거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는지(농업기반공사(X) -> 한국농어촌공사(O))
- 금액이 큰 출자금의 출자대상기관 명을 '기타'로 잘못 표시하지 않았는지
- 취득가액, 장부가액은 없으나 '당기배당금 수익'만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4) 대여금

2-5. 대여금

(단위: 원)

구분			이자율(%)	금액		증감률(%)
				당기	전기	
종류별	일반융자금	소계				
		대여금 실행가액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저리융자금	소계				
		대여금 실행가액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전대차관대여금	소계				
		대여금 실행가액				
		(대손충당금)				
	정부내예탁금					
합계						
계정별	대여금 실행가액					
	(대손충당금)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이자율 기재가 누락되거나 0%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단위로 적절히 표시되었는지

-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었는지

(1) 융자사업의 개요

예) ○○부의 ○○기금은 관광시설확충과 관광사업체운영지원을 위해 조달이자율(국채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사업예정자입니다.

(2) 융자조건

융자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융자대상	이자율(%)	융자기간
관광시설확충	yy.mm.dd~ yy.mm.dd	관광시설 건설 자금지원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사업예정자	1.6 ~ 2.8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관광시설 개보수 자금지원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yy.mm.dd~ yy.mm.dd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지원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		…

- '(2) 융자조건'상 사업명이 '당해연도 세부현황'의 사업명과 일치하였는지

■ 당해연도 세부현황

(단위 : 원)

융자사업명	기초융자금 잔액(A)	당기증가 (B)	당기감소 (C)	조직개편 (D)	기말융자금잔액 (E=A+B-C+D)	(융자보조원 가충당금)
합계						
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						

☞ 오류발생 사례

✓ 융자사업 세부현황의 기말 융자금 잔액과 총계정원장 상 저리융자금의 합계가 불일치

(5) 미수채권

2-6. 미수채권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미수채권 명세〉

(단위: 원)

구분	관리과목	금액		증감률(%)
		당기	전기	
종류별	미수국세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			
합계				
만기별	단기			
	장기			

☞ 오류발생 사례

- ✓ 명세서 상 전기말 미수부담금수익 금액과 총계정원장상 금액이 불일치
- ✓ 당기말 미수연금수익을 부(-)의 금액으로 기재
- ✓ 총계정원장 상 미수이자수익 채권 잔액은 없으나 대손충당금 잔액은 존재하는 오류

(6) 기타금융자산

ㅇ 파생상품

1) 파생상품

〈파생상품 당해연도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평가손익					기말잔액	
		소계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자산	부채
합계								
통화 관련	소계							
	통화선도							
	통화스왑							
	매입통화옵션							
	매도통화옵션							
	환변동보험							
이자율 관련	소계							
	이자율스왑							
	이자율변동보험							
신주인수권								
기타파생상품								

- 표에 예시된 종류 이외의 파생상품이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 전기결산보고서 당해연도와 당기결산보고서 직전연도 기재내용이 일치하였는지

☞ 오류발생 사례

✓ 중앙관서의 당해연도 파생상품 내역이 하위 기금 결산보고서 상의 파생상품 내역과 불일치

✓ 전기 결산보고서상 당기 파생상품 내역과 당기 결산보고서상 전기 파생상품 내역 불일치

(7) 유·무형자산

ㅇ 일반유형자산

2)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존재)						
토지 (공시지가 없음)						
계						

-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 표의 '전기말' 공시 내역이 전기결산보고서의 ' 당기말 ' 공시 내역과 일치하였는지
- 공시지가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ex.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 오류 가능성 있음)

☞ 오류발생 사례

✓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상 기타일반유형자산의 대체로 증가하는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됨
✓ 구축물의 취득, 자본적지출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됨
✓ 증감명세서의 재평가이익 합계가 하위항목의 합계와 불일치

ㅇ 사회기반시설

3) 사회기반시설 증감 명세

사회기반시설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3-3. 자산재평가'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 당해연도 증감 명세>

(단위: 원)

구분		합계	국도	고속국도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초장부가액											
증감내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상각										
	재평가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기초장부가액 및 기말장부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 및 사용수익권 등 차감항목을 고려한 후 순액을 기재하였는지
- 자본적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인해 자산의 가액에 더해진 지출 금액을 기재하였는지
- 처분은 당기중의 매각으로 인한 감소액을 기재해야하는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하였는지
- '취득',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등 다른 증감내역에 기재되어야할 금액이 '기타증감'란에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 오류발생 사례

✓ '공항 당해연도 증감 명세'의 사용수익권 항목, 합계란과 하위항목 합계가 불일치, '항만 당해연도 증감 명세'의 전기말 금액과 당기초 금액이 불일치

✓ 사회기반시설 증가 내역을 '기타증감'으로만 분류

○ 자산재평가

1) 자산재평가 : 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 일반유형자산〉

(단위: 원)

자산종류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 가정	재평가금액 (A+B-C)	재평가전 장부가액(A)	평가증 (B)	평가감 (C)
일반유형자산 합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기타일반유형자산 (입목)					

2) 자산재평가 : 사회기반시설

〈자산재평가: 사회기반시설〉

(단위: 원)

자산종류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 가정	재평가금액 (A+B-C)	재평가전 장부가액 (A)	평가증 (B)	평가감 (C)
토지					
건물					
구축물					
사회기반시설 합계					
국도					
고속국도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 당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결산작성지침 예시를 참고하여 표 하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1) 재평가기준일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참여 여부

(3) 해당 자산의 재평가금액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4) 재평가된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경우 장부가액

(5) 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금액과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원단위로 표시)

– 평가증 및 평가감 관련된 하단의 식 성립여부를 검토한다

✓ 평가증 = 순자산조정명세 상 자산재평가이익 증가 + 총계정원장 상 재평가손실환입

✓ 평가감 = 총계정원장 상 재평가손실 + 순자산조정명세 상 자산재평가이익 감소

– 위의 식이 타당한 사유가 있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ex. 자산의 합병 또는 용도변경, 폐기, 재평가이익을 감가상각비와 상계 등)를 체크리스트 '자체 검토결과' 란에 기재

– 단,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재평가 표와 하단의 설명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예) 표 상의 평가증 금액(133,358,428,826) = 문구 상의 자산재평가손실환입 (12,056,118,269) + 문구 상의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121,302,310,557)

ㅇ 무형자산

1) 무형자산 증감 명세

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형자산 당해연도 증감 명세〉

(단위: 원)

구분		합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광업권	기타무형자산
기초장부가액						
증감내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란에 적절히 표시되었는지
- '취득',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등 다른 증감내역에 기재되어야할 금액이 '기타증감'란에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 오류발생 사례

✓ 기타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기타증감' 에 잘못 표시

○ 유산자산

3-5.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의미하며, 취득 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산자산취득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산자산이 있으나 작성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와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구분		단위	당기	전기
문화유산	토지	㎡		
	건물	㎡		
	입목	식		
	구축물	식		
	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등	점		
국립공원		㎢		
보호구역		㎢		

〈유산자산 관련 비용〉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국가운영비용	유산자산취득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표에 비교 표시되는 전기 내역과 전기 결산보고서 상 당기 내역이 일치하였는지

(8) 차입부채 상환계획

〈차입부채 상환계획〉

(단위: 원)

구분		합계	y+1년	y+2년	y+3년	y+4년	y+5년	y+6년 이후
계								
국채*								
차입금	국내차입금							
	정부내차입금							
	해외차입금							
기타 차입 부채	공채*							
	금융리스부채							

-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국공채 액면가액과 차입금 기말장부가액을 기재하였는지
- 자기국채 및 자기공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고 발행된 모든 국채 및 공채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는지
- 국채 및 공채의 경우 할인, 할증 발행한 경우에도 실제 상환금액은 액면가액 기준으로 기재하였는지

(9) 충당부채

- 자동 생성된 예시 문구나 표 중 해당사항 없는 것은 삭제 후 '세부 내용'에 기재된 각 제목 옆에 " :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였는지(6-1. 연금충당부채 : 해당없음)

○ 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A)			
	당기근무원가(B)		
	이자원가(C)		
	과거근무원가(D)		
연금비용 소계(E=B+C+D)			
보험수리적손익(F)			
연금충당부채 설정액(G=E+F)			
연금 지급액(H)			
기말잔액(I=A+G-H)			

-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및 과거근무원가의 합계는 성질별재정운영표의 공무원(군인) 연금비용과 일치하였는지
-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설정액 중 지방직과 교육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 대상 중앙관서(대상기금):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기금), 국방부(군인연금기금)

○ 보증충당부채

6-3. 보증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률 및 예상손실률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약정을 하였으나, 자원유출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석21.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보증충당부채	기초잔액(A)		
	증가액(B)		
	감소액(C)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에 회계실체가 운용하고 있는 보증사업을 주요 보증위험별로 보증대상군과 주요 보증조건 등을 요약하여 서술 형태로 기술하였는지
-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에 보증충당부채의 변동 금액을 회계실체별로 기재하였는지
- 보증종류별 지급보증 금액에 보증종류별 지급보증잔액을 기재하고 예상손실률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하였는지

○ 보험충당부채

6-4. 보험충당부채

* 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만 작성하고, 본 주석에 공시한 6개 항목 외 공시가 필요한 사항은 '주석24-2. 보험보고서'에 작성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방식이 보험금지급예상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정을 하였으나, 자원유출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석21.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1)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보험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보험충당부채	기초잔액(A)		
	증가액(B)		
	감소액(C)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 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석 공시사항을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회계실체가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업을 보험 종류별로 현황 및 주요내용을 서술형태로 기재하였는지
-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에 회계실체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을 기재하되, 보험종류 구분이 중요한 경우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 오류발생 사례

✓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기재 누락
✓ 보험의 현황 및 주요내용 기재 누락
✓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의 전기 및 당기금액이 총계정원장 금액과 불일치

○ 기타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1) 소송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는 소송사건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국가회계실체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현황은 '주석 21-8.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원)

관리과목	구분	금액	
		당기	전기
소송충당부채	기초잔액(A)		
	증가액(B)		
	감소액(C)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소송충당부채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충당부채 관련 수익 · 비용>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기타국가운영수익	소송충당부채환입		
기타국가운영비용	소송충당부채전입		

☞ 오류발생 사례

✓ 소송충당부채 금액의 표시 단위를 '원'이 아닌 '백만원'으로 잘못 기재
✓ 소송이 끝나 지급의무만 남아있는 건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소송충당부채로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
✓ 소송충당부채 설정대상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말 현재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표 하단에 전기와 동일한 문구를 그대로 작성

-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퇴직금 지급액(B)		
	퇴직급여(C)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F)		
	국민연금전환금(G)		
	퇴직연금운용자산(H)		
	기말잔액(I=F+G+H)		
퇴직급여충당부채(J=E-I)			

- '퇴직급여' 금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으로 발생한 금액을 제외하였는지

- 기타의기타충당부채

<기타의기타충당부채 명세>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A)		
증가액(B)		
감소액(C)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예) OO부의 기타의기타충당부채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해당연도 부과금액에 대한 수익 인식된 부담금 중 환급·부과 취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과거 5개년간 경험률을 통해 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으로 xx원입니다.

충당부채 상세내역을 표 하단에 기술하였는지

☞ 오류발생 사례

✓ 조직개편이 발생한 부처가 '주석 6-5. 기타충당부채' 작성 시, 당기말 내역만 기재하고 조직개편일에 이관받은 기타장기충당부채 내역 작성을 누락

(10) 기타부채

○ 사회보험부채

7-1. 사회보험부채

* 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만 작성하고, 7개 항목 외 공시가 필요한 사항은 '주석24-3. 사회보험보고서'에 작성

1)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 사회보험부채 변동내역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가「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을 사회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법이「고용보험법」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준비금 적립과 관련한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과 동일하게 해당 준비금을 "사회보험부채"로 계상합니다.

〈사회보험부채 변동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사회보험부채	기초잔액(A)		
	증가액(B)		
	감소액(C)		
	조직개편으로인한증감(D)		
	기말잔액(E=A+B-C+D)		

-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서술로 기재하였는지
- 사회보험부채 산정방식을 당기설정액, 근거법령, 산정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표에 기재하였는지
- 사회보험비용은 (+)로 표시하되, 부의 사회보험비용 산출 시 (-)로 기재하여 사회보험비용과 구분 표시하였는지

(11) 연금사업

9. 연금사업

* 본 주석에는 연금사업의 주요내역을 서술하되, 상세한 사항은 '주석24-1. 연금보고서'에 공시

1) 연금사업의 개요

연금사업이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퇴직,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근로자 등 여부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 국민·사학연금이 부채 인식 등 회계처리 상으로는 구분되나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포괄하여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이 수행하는 연금사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사업의 개요〉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근거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소관 중앙관서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리·운영주체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설치일	1960. 1. 1.	1960. 1. 1.	1975. 1. 1.	1988. 1. 1.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	복무군인	사립학교법, 초·중등 교육법 상 교직원	18~60세 국민 및 거주외국인

- 주석 24-1. 연금보고서를 요약하여 연금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 10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양식에 맞춰 기재하였는지

· 연금사업의 주요 현황
· 연금기금 운용에 따른 금융자산 수익률 및 투자자산 현황
· 연금가입자, 퇴직자 및 수급자 등 추이
·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

(1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10.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단위: 원, 달러, 엔 등)

구분	계정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합계	소계				
		USD				
		JPY				
		…				
	금융자산	소계				
		USD				
		JPY				
		…				
	금융자산외	소계				
		USD				
		JPY				
		…				

- 통화별로 환율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였는지, 환율이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과 일치하였는지

(13)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보조대상 실체별 현황〉

(단위: 원)

구분	대상 실체	당기	전기
합계			
공공기관			
자치단체			

- 민간과 해외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만 기재하였는지
- 대상 실체는 해당 보조사업비를 받은 공공기관명 또는 자치단체명을 기재하였는지

(14) 프로그램순원가

16-1.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 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단위사업)의 중간단계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반영하여 원가 정보를 프로그램예산제도와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원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순원가(원)	주요내역

- 회계실체의 프로그램 중 금액,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표를 작성하고 주요내역을 기재하였는지
- 프로그램순원가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기재하였는지

(15)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

17.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

(단위: 원)

	당기		전기	
Ⅰ. 프로그램총원가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XX		XXX	
2. 출연사업비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XX		XXX	
4. …				
Ⅱ. 프로그램수익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XXX		XXX	
2. 연금수익	XXX		XXX	
3. 이자수익	XXX		XXX	
4. …	XXX		XXX	
Ⅲ. 관리운영비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XX		XXX	
2. 출연사업비	XXX		XXX	
3. …	XXX		XXX	
Ⅳ. 비배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XX		XXX	
2. 출연사업비	XXX		XXX	
3. …	XXX		XXX	

- 해당 결산주체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의 성질별 구분에 따른 금액정보를 기재하였는지
- 각 항목(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의 합계액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일치하였는지

(16) 순자산조정명세

18. 순자산조정명세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및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구분됩니다.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원)

구 분		금액				
		전기	증가	감소	조직개편	당기
순자산조정 계						
투자증권평가손익	소계					
	투자증권평가이익					
	투자증권평가손실					
자산재평가이익	소계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					
기타순자산의증감	소계					
	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감					

- 순자산조정 항목 관련 중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이나 회계변경누적효과가 있는 경우 전기말 금액에 이를 반영하였는지

(17)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자동 생성된 예시 문구 중 해당사항 없는 것은 삭제 후 제목 옆에 " :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는지(1)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1)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예) ○○부는 전기 재무제표 중 ○○○의 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오류사항에 대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전기말 재정상태표 상 자산 1,000백만원 증가 및 부채 500백만원 감소에 따라 순자산 1,5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기말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는 변동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기말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 1,0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는 변동된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기재를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을 동 항목에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2)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예) ○○부는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100백만원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50백만원을 당기 재정운영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100백만원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20백만원은 프로그램수익으로,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80백만원은 비배분수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실 50백만원은 모두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총원가로 반영하였습니다.

→ - 주석에 기재한 금액과 총계정원장상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이 일치하였는지
- 실제 전기 오류(전기 자산 누락 등)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로 잘못 회계처리하지는 않았는지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수익 또는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였는지

3) 회계정책 변경

4) 회계추정의 변경

-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유,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방법,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시기에 관한 내용을 3)에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4)에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 오류발생 사례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기초순자산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상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의 구분내역과 불일치

* 미수제재금수익으로 인한 회계변경누적효과

(오류) 순자산변동표(적립금및잉여금) ≠ 주석(기본순자산)

(적정) 순자산변동표(적립금및잉여금) = 주석(적립금및잉여금)

(18)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 지급보증

21-1. 지급보증

○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는 기금(또는 특별회계)이 제공한 지급보증을 제외한 모든 지급보증 제공 내역을 기재하고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로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역을 추가로 기술

(단위 : 원)

보증처	피보증처	구분	지급보증금액		비 고
			당기말	전기말	
XX기금 (또는 XX특별회계)	소계				
	BBB기금				
	CCC공단				
	XXX주식회사				
합계					

- '보증처'에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기금(또는 특별회계)명
- '구분'에 해당 지급보증의 내용(예: 관련된 사업) 등을
- '비고'란에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상 보증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였는지

☞ 오류발생 사례

✓ 지급보증 표의 비고란에 채무관리보고서상 보증채무 해당 여부 기재 누락
✓ 전기 결산보고서상 지급보증 내역이 존재하나 당기 결산보고서 상 기재 누락

○ 중요한 계약사항

21-2. 중요한 계약사항

예) ○○기금(또는 ○○특별회계)은 갑전력 주식회사와 석탄수송 목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XXXX년 XX월 XX일부터 XXXX년 XX월 XX일까지입니다.

- 중요한 계약 사항이 있음에도 작성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21-4.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민간투자사업 중 BTO계약 등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내역을 기재하고, 아래 표로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역을 추가로 기술

예) ○○부의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oo계정			
…			
계			

○○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oo계정	oo도로	20xx~20xx	20년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			

- 민간투자사업 중 BTO계약 등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내역을 기재했는지 (※ 대상 중앙관서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21-6.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우발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 압수품 및 몰수품)

(단위: 원)

구분	종 류	금액
압수품		
몰수품		

- 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처분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하여 기재하였는지

○ 담보제공자산

21-7. 담보제공자산

(단위 : 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이유	담보권자	차입금액

- 전기와 동일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는지, 당기 변동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 오류발생 사례

✓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가액 잘못 기재

○ 계류 중인 소송사건

21-8. 계류 중인 소송사건

○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현황을 기재하고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하여 소송상대방,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 건, 원)

구 분	OO부가 원고인 경우		OO부가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전기말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OO부가 원고인 경우					
OO부가 피고인 경우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및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표 작성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 **다음의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에 기재된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기재된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 **전기결산보고서 당기 수치와 당기결산보고서 전기 수치가 일치하였는지**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의 원고와 피고 명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

☞ 오류발생 사례

- ✓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계류법원, 기말현재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을 누락
- ✓ 당기 소송 현황을 기재하지 않고 전기 현황을 그대로 기재
-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한 표 누락
-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대비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기재한 소송 건수 및 가액이 현저히 적음
- ✓ 피고가 법무부 혹은 대한민국인 건은 법무부의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나, 다른 중앙관서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

(19) 정부조직개편

23-1. 정부조직개편

1)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두 부처 이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받는 부처별로 이관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내역을 각각 작성

□ 이관과 관련된 사항 개요 : 관련 법령, 정부조직개편일, 직무범위 변동,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된 경우 기금의 정부조직 개편일을 1월 1일로 보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등 기술

- 조직개편이 발생한 경우 결산작성지침(IV)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20) 연금·보험·사회보험보고서

○ 연금보고서

24-1. 연금보고서

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 해당 기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연금보고서를 작성(연금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 12)

- 서술형으로 기술하였는지 (ex. ~함(X), ~합니다.(O))

※ 대상 중앙관서(기금)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기금), 국방부(군인연금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보험보고서

24-2. 보험보고서

□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보험보고서를 작성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 16)

- 서술형으로 기술하였는지 (ex. ~함(X), ~합니다.(O))

※ 대상 중앙관서 : 통일부(남북협력기금),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재해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사회보험보고서

24-3. 사회보험보고서

□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사회보험보고서를 작성(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 16)

- 서술형으로 기술하였는지 (ex. ~함(X), ~합니다.(O))

※ 대상 중앙관서(기금)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21) 자산·부채조정명세

<별첨> 자산·부채조정 명세

* 자산·부채조정명세는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재정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무의 기말현재액과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와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보고용으로 작성

(단위: 원)

구분	자산	부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XXXX	XXXX
1. 국가채권현재액	XXXX	-
2. 국유재산현재액	XXXX	-
3. 물품현재액	XXXX	-
4. 국가채무합계	-	XXXX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XXXX	XXXX
Ⅲ. 차이내역(Ⅱ-Ⅰ=A+B+C+D+E)	XXXX	XXXX
1. 보고대상기관차이(A)	XXXX	XXXX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차이(B)	XXXX	XXXX
3. 결산조정항목차이(C)	XXXX	XXXX
4. 대상차이(D)	XXXX	XXXX
5. 기타차이(E)	XXXX	XXXX

< 주요내역 >

1.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에는 '제3장 부속서류'에 첨부된 각 개별법상 결산서상 당년도말 잔액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개별법 보고서(최종) 상 금액 및 재정상태표 자산·부채 금액과 일치하였는지

- 결산작성지침(Ⅳ) 참조하여 '3. 차이내역' 분류를 적절히 하였는지

- 표안의 금액과 표 하단에 기술한 내용이 일치하였는지

☞ 오류발생 사례

✓ 정부미술품을 '기타차이'에 잘못 기재

INDEX

1. INDEX 표 항목 상세 설명

① 번호 : 국가결산검사보고상 감사원확인서 번호
② 지적금액 : 국가결산검사보고상 감사원확인서 지적금액으로 자산 및 부채의 과대과소 절대값 합계금액(단위: 억 원)
③ 유형번호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유형화*하여 분류
④ Case번호 : 각 유형번호별로 세부적인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Case별로 분류
⑤ 발생원인 : 오류발생원인**

* 유형번호별 세부내용

유형번호	세부내용
1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 처리 오류
2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3	비용의 자산 처리 오류
4	취득완료(용역계약종료)된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6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BTL 관련 회계처리 오류
7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8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10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11	대손충당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관련 오류
12	소송충당부채 설정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관련 오류
13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 관련 오류
14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인식 누락 등 부채 관련 오류
15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1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17	프로그램총원가(수익), 비배분비용(수익) 등 분류 오류
18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19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20	기타 오류

** 오류발생원인별 세부내용

발생원인 번호	세부내용
1	업무담당자 단순오류
2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3	국가회계기준 미숙지
4	시스템 미숙지
5	기타

2. INDEX 표 활용방법

결산담당자는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의 상세 내용을 국가결산검사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형번호 및 Case번호를 통해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에서 해당 감사원 지적사항의 발생원인, 점검 및 조치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2015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건설중인건물 등 본계정 대체 누락	351	4	1	3
	②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	16	16	2	3
	③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426	11	2	2
고용노동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8	9	1	3
	②	토지 지번 착오로 인한 자산 재평가 오류	37	9	2	1
공정거래위원회	①	환급가산금 관련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1	12	1	2
관세청	①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19	11	-	5
	②	미지급국세 회계처리 오류	2,662	20	-	5
	③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9	1	1	3
교육부	①	융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설정	77	11	1	3
	②	신주인수권에 대한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	48	8	-	5
	③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과소 계상	-	10	-	5
	④	토지 면적 착오로 인한 자산재평가 오류	44	9	2	1
국가보훈처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174	4	1	3
	②	유산자산의 자산 계상 오류	53	5	-	5
국가인권위원회	①	임차보증금의 과소 계상	6	14	1	3
	②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자산 누락	0	1	-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①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자산 누락	4	1	-	5
국민안전처	①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과대 계상	1,237	20	-	5
	②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관련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176	1	4	3
	③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관련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51	1	4	3
국방부	①	무상양여 받은 전비품 계상 누락	2,839	7	1	5
	②	무상양여 받은 전비품 과대 계상	1,108	7	1	5
	③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3,655	4	-	5
	④	자본적 지출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 누락	1,464	18	-	5
	⑤	사무용집기 표준단가 적용 오류	25	20	-	5
	⑥	위문품 자산 등재 누락	267	5	1	3
	⑦	건설중인건물 본계정 대체 누락	2,335	4	-	5
	⑧	양도한 입목 미제거	172	19	-	5
	⑨	건설중인건물 등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42	1	-	5
	⑩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대 설정	156	11	-	5
	⑪	주거지원보증금 계상 누락	6,055	20	-	5
	⑫	소모성군수품 등 자산 등재 오류	578	5	-	5
국세청	①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245	11	3	2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국토교통부	①	사회기반시설 자산 등재 누락	3,071	6	-	5
	②	사용수익권 인식 및 상각 오류	698	6	2	3
	③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누락	2,387	6	-	5
	④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과대 계상	599	20	-	5
	⑤	장단기대여금 과대 계상	654	10	-	5
	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자산 및 부채 누락	1,032	6	-	5
	⑦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630	14	1	3
	⑧	누락 토지 등재 시 상대계정 적용 오류	-	1	4	3
	⑨	건설중인도로 등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482	2	3	3
금융위원회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분류 오류	16,384	8	-	5
	②	퇴직금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2	14	1	3
기상청	①	구축물 등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9	1	3	3
	②	회수한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누락	3	19	-	5
	③	퇴직연금운용자산 과소 계상	1	13	-	5
기획재정부	①	한국은행 결산상 순이익금 세입 분류 오류	-	8	-	5
	②	사용료수익의 수익인식시기 오류	-	15	1	3
	③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30	11	3	2
	④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관련 미지급금 과소 설정	1,259	20	-	5
	⑤	투자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65	10	1	2
	⑥	물납주식의 배당금수익 과소 설정	-	15	1	3
	⑦	임대보증금 관련 미수채권 과소 계상	3	20	-	5
	⑧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분류 오류	662	8	-	5
	⑨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관련 미지급금 과소 설정	35	14	1	3
농림축산식품부	①	토지 면적 착오 및 재평가 누락으로 인한 토지 과대 계상	4,369	5	-	5
	②	건물 관련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72	2	2	2
	③	미지급금 상계처리 누락 및 유동성 분류 오류	570	14	2	3
	④	토지 재평가 누락	81	9	1	3
	⑤	프로그램총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	17	2	3
농촌진흥청	①	건물 등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및 비용 계정분류 오류	17	1	3	3
	②	토지 재평가 누락	111	9	1	3
대법원	①	건물 신·증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6	1	3	3
	②	건설중인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4	2	2	2
문화재청	①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4	2	1	3
	②	유산자산수선유지비의 건물수선유지비 계상 오류	-	8	1	3
	③	사용료수익의 수익인식시기 오류	-	15	1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미래창조과학부	①	지급수수료 내부거래 미제거	-	20	-	5
방위사업청	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선급금 제거 오류	1,110	20	-	5
	②	무상양여한 자산의 회계처리 오류	2,839	7	1	5
	③	전비품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0	1	-	5
	④	소송충당부채 과대 계상	140	12	1	2
법제처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0	1	1	3
병무청	①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0	11	3	2
	②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자산 누락	0	1	-	5
보건복지부	①	잡이익 및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과대 계상	-	20	-	5
	②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5	11	2	2
	③	건설중인건물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	2	3	3
	④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4	1	1	3
	⑤	토지 재평가 누락	13	9	1	3
산림청	①	토지 재평가 누락	17	9	1	3
	②	입목 재평가 오류	69	9	1	3
	③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본계정 대체 시기 오류	33	5	1	3
	④	처분된 토지에 대한 자산처분이익 과소 계상	-	19	3	4
산업통상자원부	①	환수대상 융자금 미수채권 계상 누락	8	15	-	5
새만금개발청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	1	1	3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	1	1	3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관리용역비의 건물수선유지비 계상 오류	-	8	1	3
	②	관리운영비의 프로그램총원가 분류 오류	-	17	2	3
여성가족부	①	미지급금 계상 누락	1	14	1	3
외교부	①	단기대여금 유동성 대체 오류	600	16	1	1
	②	지정기부금의 유동부채 계상 오류	13	20	-	5
원자력안전위원회	①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1	11	3	2
중소기업청	①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미수이자수익 과소 계상	0	11	-	5
	②	토지 및 건물 재평가 누락	164	9	1	3
	③	자산성 없는 소프트웨어의 자산 계상	7	3	2	3
통계청	①	비용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 계상	0	20	-	5
통일부	①	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간 분류 오류	6	8	2	3
	②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자산 누락	0	1	-	5
	③	구축물과 건물 간 분류 오류	29	5	-	5
	④	토지 취득원가의 비용 처리	4	1	1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특허청	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자산 처리	5	3	2	3
	②	무형자산과 일반유형자산 간 분류 오류	68	8	2	3
	③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11	18	1	2
해양수산부	①	도로 건설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586	1	-	3
	②	건설중인항만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09	2	3	3
	③	토지 및 구축물 자산 등재 시 상대계정 적용 오류	-	20	-	5
	④	토지 재평가 누락	2,019	9	1	3
행정자치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4	1	1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①	건설중인토지의 본계정 대체 오류	3	20	-	5
	②	국유재산 등재시점 지연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	4	18	-	5
환경부	①	미수이자수익 계정분류 오류	41	8	-	5
	②	사용수익권 인식 및 상각 오류	113	6	-	5
	③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과대 계상	180	11	-	5
	④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누락	117	16	1	1

▣ 2016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전기 재평가 누락 및 토지 면적 착오로 인한 토지 과대 계상	501	9	2	1
	②	토지면적 착오로인한 토지과대계상	1,839	9	2	1
고용노동부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2	4	4	3
	②	토지 재평가 오류	116	9	3	3
	③	미지급금 계상 누락	2	14	1	3
공정거래위원회	①	미수채권 및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누락	1	20	-	5
관세청	①	건설중인토지에 대한 본 계정 대체 시기 오류	100	5	1	3
교육부	①	미지급비용 계상누락	5	14	1	3
	②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회계처리 오류	1,051	6	-	5
	③	자산재평가이익의 계정분류 오류	-	9	-	5
국가보훈처	①	유형자산 연부매각 회계처리 오류	64	19	1	1
	②	장기대여금 및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누락	1,140	16	1	1
국가인권위원회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	1	1	3
국민안전처	①	프로그램총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	17	1	4
	②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8	4	1	3
국방부	①	무상양여 받은 전비품 계상 누락	2,037	7	1	5
	②	선급비용 계상 누락	141	15	-	5
	③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146	11	2	2
	④	프로그램총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	17	-	5
	⑤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상 오류	404	13	2	1
	⑥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과대 계상	12	20	-	5
	⑦	잡손실과 잡이익 임의 상계 오류	-	20	-	5
	⑧	기금전입금 인식 오류 및 내부거래 미제거	-	8	-	5
국세청	①	토지 재평가 오류	339	9	3	3
국토교통부	①	국유재산 등재 오류에 따른 토지 및 재평가이익 과대 계상	3,151	5	-	5
	②	사회기반시설 등 자산 등재 누락	25,117	5	1	3
	③	철도자산의 자산 등재 누락	41,996	5	1	3
	④	선급금 과대 계상	14,498	20	-	5
	⑤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154	11	1	3
	⑥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18	2	3	3
	⑦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대 설정	3,127	11	-	5
	⑧	매각 완료된 토지관련 선수금 제거 오류	252	19	3	4
	⑨	지급 완료된 미지급금 제거 오류	752	20	-	5
국회	①	비용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선급금 과대 계상	9	4	4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금융위원회	①	기타충당부채 계상 누락	3	14	1	3
기상청	①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상 오류	1	13	-	5
	②	임차보증금 회수 및 지급시 회계처리 오류	-	20	-	5
	③	무형자산 등재 누락	17	5	-	5
기획재정부	①	미수채권 계정분류 오류	5,201	16	1	1
	②	선수금과 미수채권의 미상계 오류	66	20	-	5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관련 회계처리 누락	87	20	-	5
	④	토지 재평가 오류	567	9	2	1
	⑤	자산처분이익 계정분류 오류	-	8	-	5
농림축산식품부	①	토지 재평가 오류	6,545	9	3	3
	②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0	1	1	3
	③	기계장치 계정분류 오류	34	8	2	3
	④	단기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67	8	2	3
	⑤	건설중인건물 등 본계정 대체 누락 등	17	4	1	3
농촌진흥청	①	건물 등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	1	3	3
대법원	①	미수채권(비유동자산) 계정분류 오류	40	16	1	1
문화재청	①	건물 취득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0	1	3	3
문화체육관광부	①	구축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55	2	-	5
	②	건물 증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6	2	2	2
	③	건설중인건물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20	2	2	2
미래창조과학부	①	선급금 계상 누락	57	1	-	5
	②	토지 재평가 오류	11	9	2	1
	③	지출금반납금 관련 수익인식 오류	-	8	3	4
방송통신위원회	①	지출금반납금 관련 수익인식시기 오류	44	15	-	5
방위사업청	①	무상양여한 자산의 회계처리 오류	4,628	7	1	5
	②	건설중인건물 등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23	2	-	5
	③	건설중인건물 자산 누락	4,641	20	-	5
법무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	1	1	3
	②	소송충당부채 과대계상	51	12	1	2
병무청	①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0	12	1	2
보건복지부	①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172	14	1	3
	②	건설중인토지 및 건설중인건물 계정분류 오류	109	8	2	3
	③	연구용역비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	12	3	2	3
	④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6	4	4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산림청	①	입목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	9	-	5
	②	선박및항공기 자산재평가 오류	250	9	4	3
	③	토지 자산재평가 오류	275	9	2	1
산업통상 자원부	①	토지 및 건물 과대 계상	229	5	-	5
	②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4	5	-	5
	③	환급금 회계처리 오류	-	12	-	5
	④	성공불융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22	11	3	2
새만금개발청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0	4	4	3
	②	미지급금 계상 누락	0	14	1	3
식품의약품 안전처	①	선급금 계정분류 오류	118	8	-	5
여성가족부	①	건물 자산 등재 누락	8	5	1	3
외교부	①	건설중인건물의 본계정 대체 오류	91	5	1	3
	②	건물임차료 누락	0	15	2	3
	③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16	15	-	5
중소기업청	①	지급수수료의 수선유지비 계상 오류	-	8	3	4
통계청	①	선급비용 과대계상	0	15	2	3
통일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	1	2	3
	②	건물 관련 자본적 지출의 계정 분류 오류	2	2	3	3
	③	개성공단 피해업체 지원금 계정분류 오류	-	8	1	3
특허청	①	무형자산 취득시기 오류	2	5	1	3
해양수산부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93	1	4	3
	②	국유재산 분류 변경에 따른 건물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	7	8	2	3
	③	건설중인항만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05	1	3	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①	내용연수 적용 오류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1,070	18	1	2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평가 누락	576	9	2	1
	③	토지에 대한 재평가 오류	19	9	2	1
환경부	①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41	1	3	3
	②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	36	16	1	1

▣ 2017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토지 면적 착오로 인한 토지 과소 계상	122	9	2	1
	②	건물 증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7	2	2	2
고용노동부	①	임차료 내부거래 미제거	-	20	-	5
	②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272	11	2	2
	③	처분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오류	-	19	-	5
공정거래위원회	①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27	12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건물 잔존가액 과다 설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	215	18	2	2
	②	출연비의 선급금 계상 오류	101	3	-	5
	③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오류	7	13	2	1
교육부	①	해외보조비 자산 계상 오류	44	3	1	3
	②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8	3	4
국가보훈처	①	토지 연부 매각 회계처리 오류	58	19	3	4
	②	미지급금 계상 누락	5	14	1	3
국가인권위원회	①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비용처리	2	2	2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1	1	1	3
국민권익위원회	①	무형자산 계정분류 오류	242	8	-	5
국방부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3,951	4	-	5
	②	정부내자산수증 관련 수익 인식 오류	-	7	1	5
	③	건설중인건물의 본계정 대체 오류	25	20	-	5
	④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오류	10	11	-	5
	⑤	입목 재평가 누락	33	9	-	5
	⑥	프로그램총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	8	-	5
	⑦	매각 완료된 토지 관련 선수금 계상 오류	4	19	-	5
	⑧	물품 취득 관련 지출의 계정분류 오류	31	4	-	5
	⑨	임차보증금 계상 누락	21	5	-	5
국토교통부	①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11	5	2	4
	②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29	1	3	3
	③	토지 매각 회계처리 오류	297	19	3	4
	④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용수익권 누락	7,613	6	1	3
	⑤	출자증권 과소 계상	7,885	5	-	5
	⑥	임대료미지급금 유동성 대체 누락	2,592	16	1	1
	⑦	임대형 민자사업(BTL) 자산 과소 계상	60	6	-	5
	⑧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8	3	4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국회	①	미술품자산 재평가 오류	1	9	1	3
	②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누락	3	16	2	3
금융위원회	①	소송충당부채 과대 계상	154	12	2	3
기획재정부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56	1	1	3
	②	토지 재평가 오류	98	9	2	1
	③	국유재산위탁개발 임대보증금 계정분류 오류	129	16	-	5
	④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8	3	4
농림축산식품부	①	기타지급보증금 과대 계상	286	20	-	5
	②	토지 연부매각 회계처리 오류	181	20	-	5
	③	토지 재평가 오류	894	9	1	3
농촌진흥청	①	선급금 계정분류 오류	242	8	2	3
	②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17	3	3
대법원	①	건설중인건물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	2	3	3
문화재청	①	유산자산수선유지비 계정분류 오류	-	8	1	3
	②	구축물 계상 누락	3	2	2	2
문화체육관광부	①	건설중인토지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75	1	4	3
	②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3	1	3	3
	③	국고금 잔액의 비용 및 건설중인자산 계상	793	20	-	5
	④	부담금수익의 수익인식시기 오류	15	15	3	3
	⑤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8	3	4
	⑥	외화평가손실 계정분류 오류	-	8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	무형자산 누락	2	1	1	3
방송통신위원회	①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누락	1	16	2	3
방위사업청	①	무상양여한 자산의 회계처리 오류	5,124	7	1	5
	②	대손충당금 과대 계상	826	11	3	2
법무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15	9	1	3
	②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17	2	3
병무청	①	건물과 구축물의 분류 오류	6	5	-	5
보건복지부	①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8	3	4
	②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27	1	1	3
산림청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3	1	1	3
	②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	8	3	4
	③	매각 완료된 토지 관련 선수금 제거 오류	14	19	3	4
	④	선급금 본계정 대체 관련 회계처리 오류	5	4	5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산업통상자원부	①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17	2	3
새만금개발청	①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4	1	3	3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①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누락	5	16	1	1
소방청	①	건설중인건물의 본계정 대체 누락	7	4	1	3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지급수수료 계정분류 오류	-	8	1	3
	②	건물 관련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1	2	2	2
	③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7	1	1	3
여성가족부	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	0	3	2	3
	②	선급비용 계상 누락	0	15	2	3
외교부	①	납부기일이 도래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8	15	-	5
	②	부담금수익의 수익인식시기 오류	33	15	3	3
중소벤처기업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	1	1	3
	②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17	2	3
통일부	①	임차료 미지급금 계상 누락	4	14	1	3
	②	비용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선급금 과대 계상	0	4	4	3
	③	투자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1	10	1	2
	④	보조비 계정분류 오류	-	8	1	3
특허청	①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8	3	4
해양경찰청	①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의 본계정 대체 누락	1,094	4	1	3
	②	토지 등 재평가 오류	139	9	1	3
해양수산부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14	4	1	3
	②	비용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선급금 과대 계상	4	4	4	3
	③	선박 등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11	1	3	3
	④	수선유지비의 건설중인자산 계상	273	3	3	2
	⑤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	-	8	3	4
	⑥	출자증권 과소 계상	4,436	5	-	5
행정안전부	①	건설중인건물의 본계정 대체 오류	82	5	1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①	건물 내용연수 적용 오류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1	18	1	2
	②	토지 재평가 오류	728	9	1	3
환경부	①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214	4	4	3
	②	잔존가액 적용 오류에 따른 감가상각 과소 계상	192	18	2	2
	③	유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	8	-	5
	④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의 본계정 대체 오류	424	4	2	4

▣ 2018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토지 재평가 누락	71	9	1	3
	②	건물(일반유형자산)의 중복 계상	5	5	-	5
고용노동부	①	진폐위로금 미지급금 과소 계상	193	14	1	3
	②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3,876	11	2	2
공정거래위원회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7	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임차보증금 유동성 분류	465	16	2	3
관세청	①	임차보증금-국유 유동성 대체	68	16	2	3
	②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266	12	2	3
교육부	①	건물 취득원가 과대 계상	50	20	-	5
	②	선급금의 토지 대체 누락	52	4	1	3
	③	건물 등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8	1	-	5
	④	융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15	11	3	2
국가보훈처	①	미수대여금이자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3	11	1	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3	1	1	3
국민권익위원회	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	3	3	2	3
국방부	①	정부내자산수증 인식 누락	3,642	7	1	5
	②	자산취득시 관련 선급금 미정리	1,857	4	-	5
	③	비용 인식 관련 선급금 미정리	291	3	-	5
	④	금융리스 회계처리 오류	-	8	-	5
	⑤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미지급금 회계처리 오류	2,115	6	-	5
	⑥	투자자산 분류 오류 및 평가이익 인식 누락	10,585	8	-	5
	⑦	퇴직보험예치금 회계처리 오류	70	13	3	3
	⑧	회수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평가 누락	6	11	1	3
국토교통부	①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자산등재 누락	36,436	6	-	5
	②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자산등재 누락 및 자산등재 오류	24,383	6	-	5
	③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오류	1,451	6	1	3
	④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오류	2,415	11	2	2
	⑤	미지급금 제거 누락	2,904	14	2	3
	⑥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382	1	3	3
	⑦	출연비 계정분류 오류	-	8	1	3
국회	①	건설중인 사무용기기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	1	2	3
금융위원회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0	1	1	3
기상청	①	토지의 재평가 누락	68	9	1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기획재정부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5	1	2	3
	②	프로그램총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	17	2	3
	③	비배분수익 계정분류 오류	-	20	-	5
	④	국유재산위탁개발 임대보증금 계정분류 오류	53	16	-	5
	⑤	건설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오류	118	4	2	4
	⑥	국유재산위탁개발 결산 회계처리 지연	10,922	20	-	5
농림축산식품부	①	토지 재평가의 누락	1,151	9	1	3
	②	이차보전비용 인식시기 오류	1,174	14	1	3
	③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2	1	1	3
농촌진흥청	①	정부외자산수증 관련 계정분류 오류	-	8	-	5
대법원	①	토지 재평가 누락	23	9	1	3
문화재청	①	유산자산수선유지비 계정재분류	-	8	1	3
문화체육관광부	①	국고금 잔액의 비용계상	173	20	-	5
	②	선급금의 자산계상 오류	583	5	1	3
	③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	1	3	3
	④	토지 재평가 오류	316	9	1	3
	⑤	건설중인 자산 계상 오류	111	4	1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	무형자산 누락	2	1	1	3
방송통신위원회	①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5	12	1	2
방위사업청	①	무상양여한 자산의 회계처리 오류	3,642	7	1	5
	②	미수기타수익 이중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다설정 오류	1,202	11	2	2
법무부	①	소송충당부채 과대 계상	3	12	2	3
병무청	①	건물 관련 자본적 지출의 비용처리	3	2	2	2
보건복지부	①	의료용 헬기 엔진의 자산 누락	20	1	4	3
	②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27	1	1	3
산림청	①	자산 손상 관련 회계처리 누락	86	10	1	2
	②	선박및항공기 관련 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540	4	1	3
	③	건설중인 건물의 본계정 대체 누락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2	4	1	3
새만금개발청	①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44	20	-	5
	②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누락	3	16	2	3
	③	사용료수익의 수익인식시기 오류	0	15	2	3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지급수수료 계정재분류	-	8	1	3
여성가족부	①	BTL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수선충당금적립금의 장기선급금 계상 누락	34	6	-	5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외교부	①	건설중인 건물을 건물로 계상	14	5	1	3
	②	선급비용 계상 누락	1	15	2	3
조달청	①	건물 재평가 누락	367	9	1	3
중소벤처기업부	①	건물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1	2	2	2
	②	토지 재평가 오류	62	9	1	3
	③	융자금의 유동성 대체 누락	158	16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토지 재평가 누락	2	9	1	3
통일부	①	사용료수익 누락	0	15	1	3
	②	토지의 자산재평가 누락	30	9	1	3
	③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산 미인식	2	2	2	2
특허청	①	프로그램 수익 계정분류 오류	-	17	-	5
해양경찰청	①	본계정 대체 누락된 건설중인 자산 이관	438	4	1	3
	②	건설중인 선박및항공기의 본계정 대체 누락	107	4	2	4
해양수산부	①	출자증권 과소 계상	1,161	20	-	5
	②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자산 및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오류	26,828	6	1	3
행정안전부	①	구축물 자산의 인식 누락	10	2	2	2
	②	건물 취득원가의 비용 처리	29	20	-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①	재원의 이전 성격 지출의 비용 처리	-	20	-	5
환경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38	1	1	3
	②	건설중인토지의 본계정 대체 누락	325	4	2	4
	③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오류	443	11	3	2

▣ 2019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토지 재평가 누락	59	9	1	3
	②	건설 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304	4	1	3
	③	기부채납 및 양여 관련 회계처리 오류	18	5	1	3
	④	비용 관련 선급금의 미정산	21	4	4	3
고용노동부	①	BTL 사업시행자에 대한 장기선급금 누락	47	6	-	5
	②	토지 재평가 누락	281	9	1	3
	③	비용 인식시기 오류	-	14	1	3
	④	융자대여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155	16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114	16	1	1
관세청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상 오류	89	1	4	3
교육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6,128	9	1	3
	②	사용 중인 건물 누락	134	5	1	3
	③	일반유형자산 처분 관련 회계처리 오류	-	19	-	5
	④	BTL 사업시행자에 대한 장기선급금 누락	4	20	-	5
	⑤	사용수익권 계상 오류	1,498	6	-	5
국가보훈처	①	취득중인 자산 관련 회계처리 오류	75	5	1	3
	②	자산의 계정 재분류 오류	3	8	2	3
국방부	①	금융리스 관련 회계처리 오류	-	8	-	5
	②	무상관리전환 자산의 인식 누락	792	7	1	5
	③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612	4	-	5
	④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상태평가 누락	1,784	20	-	5
	⑤	소송충당부채 계상 오류	1,452	12	1	2
국세청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160	1	1	3
	②	소송충당부채 계상 오류	133	12	2	3
국토교통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3,840	9	1	3
	②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98	1	3	3
	③	사회기반시설의 국유재산 중복 등재	22,696	6	-	1
	④	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25,239	8	-	5
	⑤	비용 성격 지출의 자산 인식	3,887	4	4	3
	⑥	선급금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366	6	1	3
	⑦	무상 취득자산 관련 회계처리 오류	-	8	-	5
	⑧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회계처리 오류	1,531	6	1	3
금융위원회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54	1	1	3
기상청	①	일반유형자산 취득원가 계상 오류	1,050	20	-	5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기획재정부	①	일반유형자산 취득원가 계상 오류	63	3	-	3
	②	자산재평가이익 상계 회계처리 누락	-	19	-	3
	③	토지 재평가 누락	7	9	1	3
	④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53	16	1	1
	⑤	자산의 계정 재분류 오류	4	8	2	3
	⑥	리스 관련 회계처리 오류	15	20	-	5
	⑦	구상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23	16	1	1
	⑧	출자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	7	2	3
농림축산식품부	①	일반유형자산 취득원가 누락	252	5	-	5
	②	토지 재평가 누락	469	9	1	3
농촌진흥청	①	자산 계정 재분류 오류	8	5	1	3
대통령경호처	①	토지 재평가 누락	164	9	1	3
문화재청	①	구축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	1	2	3
	②	사무용집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	1	3	3
문화체육관광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2,314	9	1	3
	②	프랑스한국문화원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 안분 누락	651	5	-	1
	③	건설 중인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78	8	2	3
	④	건설 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75	4	1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	토지 재평가 누락	53	9	1	3
방위사업청	①	무상 양여 관련 회계처리 오류	2,100	7	1	5
	②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187	11	2	2
	③	장기선급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66,500	16	-	5
법무부	①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0	2	2	2
보건복지부	①	수익적 지출의 자산 인식	19	3	3	2
산림청	①	토지 재평가 누락	13	9	1	3
	②	건설 중인 자산 본계정 대체 누락	33	4	1	3
	③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42	1	1	3
	④	선급금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	1	1	3
새만금개발청	①	일반유형자산 인식시기 오류	1	18	-	5
	②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	8	2	3
소방청	①	인건비 관련 예수금의 회계처리 오류	2	20	-	5
여성가족부	①	토지재평가 누락	15	9	1	3
외교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2,951	9	1	3
중소벤처기업부	①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5	11	3	2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통일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116	9	1	3
	②	프로그램수익 및 프로그램총원가 과소 계상	-	17	2	3
	③	반환이 예정된 보조금 관련 기타자산 누락	4	20	-	5
해양경찰청	①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57	11	2	2
	②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34	4	2	4
	③	토지 재평가 누락	10	9	1	3
	④	건설 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976	4	1	3
해양수산부	①	비용 관련 선급금의 미정산	1,470	3	1	3
	②	토지 재평가 누락	586	9	1	3
	③	건설 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2,908	4	1	3
	④	비용 성격 지출의 자산 인식	3,113	3	3	2
	⑤	출자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2,000	7	2	3
행정안전부	①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무상양수 소프트웨어 자산 누락	84	5	1	3
	②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7	4	3	3
헌법재판소	①	비용 성격 지출의 자산 인식	2	3	2	3
환경부	①	지분증권 제거 회계처리 누락	11	19	-	5
	②	비용 관련 선급금의 미정산	204	3	1	3
	③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467	11	3	2
	④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1	1	1	3
	⑤	비용의 계정 재분류 오류	-	8	1	3
	⑥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57	2	4	3
	⑦	토지 재평가 누락	248	9	1	3

▣ 2020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①	미수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	5	11	3	2
경찰청	①	비용 관련 선급금의 미정산	12	4	4	3
고용노동부	①	지급의무가 발생한 미지급금 누락	7	14	-	1
	②	미수채권(미수기타수익)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6	11	3	2
	③	순현금유입액 잘못 적용으로 인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과소 계상	48	11	-	3
	④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은 기금에서 발생한 법인세비용 인식 누락	56	20	-	1
	⑤	책임준비금 관련 기타부채 과소 계상	10	14	-	1
	⑥	사회보험비용 계정과목 적용 오류	-	8	1	3
공정거래 위원회	①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87	11	-	2
	②	미수채권 유동성 분류 오류	1	16	1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①	건설중인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선급금 처리	6	8	2	3
	②	발생주의 비용 처리 오류	-	14	1	3
교육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71	9	1	3
	②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처리 오류	-	20	-	3
	③	강원대학교 부설학교 자산 과대계상	24	5	-	5
국가보훈처	①	장기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509	16	1	1
국방부	①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53	18	-	5
	②	건설중인건물 본계정 대체 과정 등 오류	296	1	-	5
	③	무상관리전환 자산의 누락	3,436	7	1	5
	④	자산등재시 취득가액 입력 등 오류	38,405	5	-	5
	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간 연계오류 수정	53,206	20	-	5
국세청	①	소송충당부채 계상 누락	60	12	1	2
국토교통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233	9	1	3
	②	사회기반시설 취득 회계처리 누락 등	18,335	6	1	3
	③	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3,756	5	2	4
	④	무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1,952	1	1	3
	⑤	사회기반시설 중복 계상 등 오류	771	5	-	1
	⑥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1,058	4	1	3
	⑦	건설중인자산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7,397	4	2	4
금융위원회	①	무형자산 인식 누락	19	5	1	3
	②	보조금 반납 회계처리 누락	2	15	-	4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기상청	①	토지 재평가 누락	7	9	1	3
	②	과오지급 및 지출금반납 거래의 회계처리 오류	-	8	3	4
기획재정부	①	미수채권 구분 오류	11,736	8	-	3
	②	주식 감액손실 미인식	7	10	1	2
	③	출자금 감액손실 미인식	223	10	1	2
	④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9	11	3	2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자금에 관한 사항	155	20	-	3
	⑥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실 재분류 오류	-	20	-	3
	⑦	일반유형자산 중 건물 폐기자산 회계처리 오류	32	19	-	3
	⑧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4	2	4
	⑨	건설중인자산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645	20	-	5
농림축산식품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189	9	1	3
	②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4,085	4	4	3
농촌진흥청	①	토지 재평가 누락	5	9	1	3
문화재청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64	4	1	3
	②	임차보증금의 제거 미수행	2	19	-	3
문화체육관광부	①	선급금 회계처리 오류	11	4	-	3
	②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 안분 누락	53	5	-	3
	③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계정 분류에 관한 사항	-	8	1	3
	④	임차보증금 오류 사항	11	8	1	3
	⑤	건설중인건물의 본계정 대체 누락	52	4	1	3
	⑥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본계정 대체 누락	22	4	1	3
방위사업청	①	무상관리전환 회계처리 오류	7,511	7	1	5
	②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1,012	11	3	2
	③	환수대상 계약금 관련 선급금 미제거	349	4	-	5
	④	감가상각비 결산조정 오류	-	18	-	5
법무부	①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1,155	4	1	3
병무청	①	비용 기간귀속 오류	4	14	1	3
보건복지부	①	전기오류 사항을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	-	8	-	3
	②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누락	1,711	5	1	3
산림청	①	자산 성격 금액의 비용 처리	19	2	3	3
	②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22	4	1	3
새만금개발청	①	사용료수익 관련 회계처리 오류	5	8	1	3
	②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 분류 오류	240	8	2	3
	③	사회기반시설 본계정 대체 관련 오류	5,868	5	-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여성가족부	①	반납이 확정된 보조금의 자산인식 누락	235	15	-	4
외교부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16	4	1	3
	②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110	4	1	3
중소벤처기업부	①	비용 성격 지출의 자산 인식	113	4	4	3
통계청	①	취득 중인 소프트웨어 계정분류 오류	76	8	2	3
통일부	①	일반유형자산 미인식 오류	1,304	5	1	3
	②	일반유형자산 감액손실 미인식	358	19	-	2
해양경찰청	①	항공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00	1	4	3
	②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7	1	3	3
해양수산부	①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사용수익권 상각 누락 오류	37	6	2	3
	②	사회기반시설 일괄취득 안분 오류	8,541	5	-	3
	③	사업보조비 기간귀속 오류	53	14	1	3
	④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오류	910	1	3	3
환경부	①	토지 재평가 누락	16	9	1	3
	②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누락	237	4	2	4
	③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4	2	3	3

▣ 2021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토지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265	9	2	1
고용노동부	①	미수채권의 유동성 대체	47	16	1	1
	②	토지 재평가 누락	21	9	1	3
공정거래위원회	①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498	11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소송충당부채 미인식 오류	15	12	1	2
	②	발생주의 비용 처리 오류	1	14	1	3
교육부	①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누락	3	18	2	2
	②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12	4	1	3
	③	일반유형자산 재평가 누락	60	9	1	3
국가보훈처	①	국유재산 재평가 오류	33	9	1	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①	건물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6	9	2	1
국방부	①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2,496	18	-	5
	②	군수품 단가 적용 등 오류	2,147	20	-	5
	③	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63	8	-	5
	④	자산등재시 취득가액 입력 오류	5,714	20	-	5
국토교통부	①	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1,039	5	2	4
	②	사회기반시설 취득 회계처리 누락 등	1,631	1	-	3
	③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4,033	4	2	4
	④	무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3,018	1	1	3
	⑤	구축물(고속도로)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275,753	9	4	3
금융위원회	①	소송충당부채환입 회계처리 오류	-	12	3	3
기상청	①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1	2	3	3
기획재정부	①	매각대금 관련 선수금 미제거 오류	4,599	20	-	1
	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괄 취득금액 안분 누락	21	5	-	3
	③	보상비 계정분류 오류	-	20	-	3
	④	금융자산의 제거 오류	54	19	-	3
	⑤	토지 재평가 오류	43	9	3	3
	⑥	일반유형자산 중복 등재 오류	8	5	-	1
	⑦	토지 매각 회계처리 오류	-	19	-	3
	⑧	교환으로 인한 자산취득 회계처리 오류	-	19	-	3
농림축산식품부	①	건물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554	9	4	3
문화재청	①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3	3	2
	②	일반유형자산(구축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79	9	1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문화체육 관광부	①	비용 계정 분류에 관한 사항	-	8	1	3
	②	취득 중인 소프트웨어 계정분류 오류	8	1	1	3
	③	건물재평가 오류에 관한 사항	394	9	3	3
			445	9	3	3
			632	9	3	3
			671	9	3	3
법무부	①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등	-	2	2	2
	②	보증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2	19	2	4
	③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53	1	2	3
보건복지부	①	정부외자산수증이익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17	8	-	3
	②	사용수익권 상각 회계처리 누락	19	6	2	3
	③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2	4	1	3
			9	4	1	3
산림청	①	토지 재평가 누락	67	9	1	3
소방청	①	일반유형자산 재평가 금액 오류	9,402	9	2	1
외교부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누락	0	4	4	3
중소벤처 기업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계상 오류	3	13	2	1
	②	건설중인자산 과소 계상 오류	1,701	8	2	3
통일부	①	취득 중인 내부개발시스템 계정분류 오류	131	8	2	3
해양경찰청	①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1,483	4	2	4
해양수산부	①	사회기반시설 계정분류 오류	1,250	8	2	3
	②	일반회계 구축물 재평가 누락	599	9	1	3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구축물 재평가 누락	331	9	1	3
	④	토지 재평가 누락	305	9	1	3
	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무상취득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	8	-	4
	⑥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등	117	2	2	2
	⑦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무상취득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	8	-	4
행정안전부	①	일반유형자산 취득 회계처리 누락 등	117	1	-	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①	내부거래 회계처리 오류 등	-	8	-	3
환경부	①	비용 관련 선급금의 미정산	109	4	4	3
	②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등	216	4	1	3

▣ 2022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637	4	1	3
고용노동부	①	발생주의 부채 미인식 오류	4	14	1	3
	②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5	2	3	3
	③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119	11	3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①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1	2	3	3
	②	계약금액 반환금 회계처리 오류	1	20	-	3
교육부	①	토지 재평가 오류	277	9	1	3
	②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48	4	1	3
	③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4	4	4	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①	자본적 지출(정보시스템 개선)의 비용 처리	11	18	1	2
국방부	①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13,452	7	1	5
	②	정부내자산기부 회계처리 오류	-	7	-	5
	③	군수품 표준단가 적용 오류	20,204	20	-	5
	④	전비품수선유지비 과대 계상 오류	-	20	-	5
	⑤	토지 재평가 오류 등	7	5	1	5
	⑥	감가상각비 등 프로그램 분류 오류	-	17	-	5
국세청	①	소송충당부채 계상 누락	2	12	1	2
	②	임차개량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	1	-	3
국토교통부	①	경상적 비용(위탁사업비)의 자산 처리 등	707	1	1	3
	②	사회기반시설(공항)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34	1	3	3
	③	사회기반시설(도로)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7,305	5	2	4
	④	사회기반시설(철도)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4,945	1	-	3
	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2,491	1	-	3
국회	①	구축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	1	4	3
기상청	①	자본적 지출(정보시스템 개선)의 비용 처리	23	18	1	2
기획재정부	①	사용료수익 계정분류 오류	-	8	-	2
	②	지분증권 계정분류 오류	2,000	8	2	3
	③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58	11	3	2
	④	선수금 상계 누락	2,812	20	-	1
	⑤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익 회계처리 오류	-	19	-	3
	⑥	토지 재평가 오류	148	9	1	3
	⑦	정부내자산 관리전환 회계처리 오류	-	7	-	3
	⑧	정부외자산수증 계정분류 오류	-	20	-	1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⑨	변상금수익 중복 계상 오류	19	15	1	3
	⑩	미수제재금수익 중복 계상 오류	310	15	1	3
	⑪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반영 오류	22	20	-	1
	⑫	금융상품 유동성 대체 오류	58	16	1	1
	⑬	일반유형자산 중복 계상 오류	216	5	-	1
농림축산식품부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165	4	1	3
	②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4	4	4	3
대법원	①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	2	1	3
대통령경호처	①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7	-	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①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7	-	3
문화재청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232	4	1	3
문화체육관광부	①	토지 교환거래 회계처리 오류	71	5	1	3
	②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5	2	3	3
	③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30	1	1	3
	④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93	5	1	3
방위사업청	①	정부내자산기부 회계처리 오류	-	7	1	5
	②	전비품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113	1	-	5
	③	대손확정채권 회계처리 오류	-	11	-	5
	④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748	20	-	5
법무부	①	토지 재평가 오류	154	9	1	3
보건복지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92	1	1	3
	②	사용수익권 상각 회계처리 누락	19	6	2	3
	③	정부외자산수증 계정분류 오류	-	8	-	4
산림청	①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97	1	1	3
	②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	2	3	3
	③	감가상각비 프로그램 분류 오류	-	17	-	3
소방청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92	4	1	3
외교부	①	내부개발 중인 정보시스템 계정분류 오류	250	8	2	3
인사혁신처	①	발생주의 부채 미인식 오류	4	14	1	3
질병관리청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	1	1	3
통일부	①	토지 재평가 오류	7	9	1	3
해양경찰청	①	건설중인자산 계정분류 오류	469	8	2	3
해양수산부	①	건설중인자산 계정분류 오류	3,209	8	2	3
	②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53	1	3	3
	③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	3	18	-	3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④	수익적 지출(수선유지비)의 자산 처리	10	3	3	2
	⑤	지출금반납금 프로그램 분류 오류	-	8	3	4
	⑥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829	4	1	3
	⑦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6	11	3	2
	⑧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7	-	3
행정안전부	①	발생주의 부채 미인식 오류	125	14	1	3
환경부	①	수익적 지출(위탁사업비)의 자산 처리	34	3	2	3
	②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98	4	4	3

▣ 2023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경찰청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83	4	1	3
고용노동부	①	미수채권 대손 설정 오류	242	11	2	2
공정거래위원회	①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오류	215	11	2	2
	②	미수채권 중복인식 오류	71	20	-	5
	③	재정상태표일 이후 소송충당부채 회계처리 오류	279	12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일반유형자산(민간투자사업)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919	20	-	5
	②	일반유형자산(폐기자산)의 회계처리 오류	55	19	-	5
	③	임차개량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1	1	-	5
	④	금융부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	4,578	16	1	1
	⑤	금융자산의 유동성 분류 오류	2,000	16	1	1
관세청	①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2	12	2	3
교육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114	1	1	3
	②	사용수익권 상각 회계처리 오류	47	6	2	3
	③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사용수익권 누락 등	114	6	1	3
국가인권위원회	①	무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7	1	1	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5	1	1	3
국민권익위원회	①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오류	25	16	1	1
	②	소송충당부채 계상 오류	0	12	1	2
국방부	①	종료된 계약 등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오류	658	20	-	5
	②	군수품 등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2,394	7	1	5
	③	토지 건물 등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7	-	5
	④	장병 지원금 등 기타충당부채 미계상 오류	2,130	14	1	3
	⑤	소송충당부채 과대 계상 오류	770	12	1	2
	⑥	비용처리 항목 등 계정과목 선택 오류	2,360	3	-	5
국세청	①	무형자산 과대 계상	9	3	2	3
국토교통부	①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 사용수익권 인식 및 후속측정 관련 회계처리 오류	2,945	6	2	3
	②	투자자산(출자금) 제거 관련 회계처리 오류	866	19	1	1
	③	무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302	1	1	3
	④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7,854	1	3	3
	⑤	사회기반시설(도로)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425	5	2	4
	⑥	사회기반시설(철도)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1,729	8	2	3
	⑦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720	4	1	3
기상청	①	자본적지출의 비용 처리	6	2	2	2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기획재정부	①	금융상품 미수이자수익 미인식 오류	2	15	2	3
	②	토지 재평가 오류	267	9	1	3
	③	일반유형자산 중복 계상 오류	827	5	-	1
	④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7	-	5
	⑤	건설중인자산 인식 오류	1	3	2	3
	⑥	미수기타수익 회계처리 오류	-	20	-	5
	⑦	정부 내 자산 무상관리전환 시 자산재평가이익 미차감 오류	-	7	-	5
	⑧	장기미지급금 과대계상 오류	12	20	-	5
농림축산식품부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54	8	2	3
	②	선급금의 비용 미계상 오류	1	4	4	3
	③	토지 재평가 오류	8	20	-	5
	④	프로그램원가 재분류 오류	-	17	3	3
	⑤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누락	27	4	1	3
	⑥	선급금의 본계정 미대체 오류	6	4	1	3
농촌진흥청	①	토지 재평가 오류	5	9	3	3
대법원	①	토지 구입 관련 선급금 분류 및 재평가 오류	232	5	1	3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회계처리 미수행	2	20	-	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①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7	-	5
문화재청	①	무형자산 비용처리 오류	2	2	2	2
문화체육관광부	①	토지 재평가 오류	45	9	1	3
	②	일반유형자산 등재 오류	39	3	2	3
	③	투자자산 계정분류 오류	295	8	-	5
방송통신위원회	①	과태료 채권의 효력상실 미반영	5	20	-	5
방위사업청	①	감가상각비 미인식 등 전비품 회계처리 오류	5,946	18	-	5
	②	종료된 계약 등 선급금 과대 계상 오류	47,478	7	1	5
	③	완료된 공사 등 건설중인건물 회계처리 오류	907	7	1	5
	④	발생주의 부채 미인식 오류	41	14	1	3
법무부	①	비용 성격 금액의 자산처리 등	9	3	-	5
	②	발생주의 회계처리 오류	553	15	2	3
법제처	①	무형자산 인식 및 감가상각 오류	5	5	1	3
병무청	①	사회복무요원 지원금 등 기타충당부채 미계상 오류	317	14	1	3
보건복지부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64	4	1	3
	②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1	1	1	3
	③	임차보증금 지급액의 비용 처리 오류	52	1	-	5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산림청	①	토지 구입 관련 선급금 분류 및 재평가 오류	142	5	-	5
	②	토지 장부가액 과다 인식에 관한 사항	42	5	-	5
	③	토지 매각 회계처리 미수행	40	19	-	5
	④	소송결과에 따른 토지처분 회계처리 미수행	1	19	-	5
새만금개발청	①	입목 취득가액을 구축물로 회계처리	51	8	2	3
	②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을 정부미술품 정부미화물품 등으로 회계처리	35	8	2	3
소방청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119	4	-	5
여성가족부	①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39	5	1	3
외교부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7	1	2	3
원자력안전 위원회	①	임차보증금 계정과목 분류 오류	28	5	2	4
재외동포청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3	1	1	3
	②	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의 비용 처리	4	1	2	3
조달청	①	건물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8	2	3	3
통일부	①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액손실 오류	415	10	-	5
해양경찰청	①	금융리스부채 회계처리 오류	1	20	-	5
해양수산부	①	잡이익의 지출금반납금 계정분류 오류 및 중복 계상 오류	-	8	3	4
	②	비배분비용에 대한 프로그램총원가 재분류 오류	-	17	1	4
	③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오류	31	12	1	2
	④	선급금 및 미지급금 과대계상 오류	27	4	4	3
	⑤	국유재산(토지) 처분 회계처리 미수행	6,566	19	-	5
행정안전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153	1	1	3
환경부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43	4	4	3
	②	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69	2	3	3
	③	일반유형자산 취득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43	1	2	3
	④	소송충당부채 계상 누락	47	12	1	`2

▣ 2024 회계연도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①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과소인식	1	11	2	2
경찰청	①	선급금의 비용 미계상 오류	92	4	4	3
고용노동부	①	임차보증금 유동성분류 오류	73	16	1	1
	②	발생주의 부채 미인식 오류	125	14	1	3
공정거래 위원회	①	금융자산의 유동성 분류오류	1,749	16	1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①	장기임차보증금 과대계상	63	20	-	5
관세청	①	임차개량자산 상각 회계처리 오류	5	18	-	5
교육부	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사용수익권 누락	1,209	6	1	3
	②	일반유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401	4	2	4
국민권익 위원회	①	임차보증금 환급금의 미수채권 계상 오류	4	20	-	5
	②	소송충당부채 계상 오류	0	12	1	2
국방부	①	종료된 외주정비 등 선급금 본계정 대체 오류	44,319	4	-	5
	②	회수된 임차보증금 미제거 회계처리 오류	7	19	-	5
	③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에 대한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7	1	5
국세청	①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오류	147	12	1	2
	②	냉난방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	1	2	3
	③	국세수익 및 물납이전의 과대계상 오류	104	20	-	5
국토교통부	①	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8,002	6	1	3
	②	소송충당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49	12	1	2
	③	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140	3	2	3
	④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수익권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42,788	6	1	3
	⑤	건설중인자산 관련 회계처리 오류	3,224	5	2	4
	⑥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 처리 오류	2,815	11	1	3
금융위원회	①	보증충당부채의 과소계상 오류	372	20	-	5
기획재정부	①	정부내자산 관리전환 회계처리 오류	-	19	-	5
	②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누락	1,002	4	-	3
	③	금융자산의 미제거 오류	0	10	1	2
	④	일반유형자산 중복 계상 오류	52	5	-	1
	⑤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1	4	1	3
	⑥	임차개량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1	1	-	5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농림축산식품부	①	토지 재평가 오류	71	9	1	3
	②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을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	227	1	1	3
	③	발생주의 회계처리 오류	117	15	1	3
농촌진흥청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6	2	2	2
문화체육관광부	①	자산 취득 미지급금 미인식 오류	3	20	-	5
	②	자산 취득 회계처리 오류	20	2	3	3
	③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1,139	4	1	3
	④	토지 재평가 오류	237	9	2	1
	⑤	기타국고금 집행처리 미반영 오류	109	20	-	5
방송통신위원회	①	과징금 채권의 효력상실 미반영	1	20	-	5
	②	과태료 채권 미계상	256	20	-	5
방위사업청	①	자산 인식누락 등 전비품 회계처리 오류	2,837	20	-	5
	②	이차보전비 등 기타의 미지급금 과대계상 오류	41	14	2	3
	③	소송충당부채 미인식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오류	416	12	1	2
	④	종료된 계약등 선급금 과대계상 오류	8,167	7	1	5
	⑤	장기미지급금 과대계상 오류	1,636	20	-	5
법무부	①	무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80	5	1	3
보건복지부	①	투자자산의 유동성 분류 오류	420	16	1	1
산림청	①	국유재산 분류변경 시 전기오류수정손익 및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오류	6	8	-	5
새만금개발청	①	사회기반시설 계정 분류 오류	2,602	8	2	3
	②	공유수면매립면허권 관련 회계처리 오류	441	20	-	5
	③	장기임대용지 토지 대여료와 미수채권 회계 처리 오류	31	20	-	5
	④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7	15	1	3
	⑤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17	4	1	3
	⑥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오류	3	4	1	3
여성가족부	①	선급금 기간 비용 대체 오류	16	4	4	3
외교부	①	토지 재평가 오류	330	9	1	3
재외동포청	①	무형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 오류	96	4	1	3
질병관리청	①	자산평가 회계처리 오류	565	20	-	5
통계청	①	프로그램수익 계정과목 분류 오류	-	17	2	3
특허청	①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30	1	1	3
	②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오류	0	12	1	2
해양경찰청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200	4	2	4

중앙관서	번호	감사원확인서 제목	지적 금액	유형 번호	Case 번호	발생 원인
해양수산부	①	선급금 및 미지급금 과대계상 오류	232	4	5	3
	②	잡이익의 지출금반납금 계정재분류 오류 및 중복계상오류	-	8	3	4
	③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오류	141	12	2	3
	④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752	4	1	3
	⑤	국유재산(토지) 처분 회계처리 누락	800	19	3	4
	⑥	사회기반시설 취득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오류	520	8	2	3
행정안전부	①	소프트웨어 취득, 구축 관련 지출 회계처리 오류	61	4	1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①	사회기반시설 재평가 오류	43	20	-	5
	②	선급금의 비용 미계상 오류	15	4	4	3
	③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 오류	1	18	-	5
환경부	①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612	4	1	3
	②	비용 성격 금액의 자산처리 오류	65	3	3	2
	③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 오류	-	8	-	5
국가교육위원회	①	무형자산 계정과목 분류 오류	6	8	2	3
우주항공청	①	발생주의 회계처리 오류	6	20	-	5
	②	정부내자산수증 회계처리 오류	-	20	-	5
	③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누락	0	20	-	5
	④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오류	139	4	1	3

집 필 진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과 장　이 기 훈
회계결산과　사무관　정 희 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팀 장　윤 성 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한 은 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임 종 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오 가 영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결산담당자용)

2025년　10월　　일　　인 쇄
2025년　10월　　일　　발 행

발간등록번호 :

발　　행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전화 : (044)215-5433
　　팩스 : (044)215-803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홈 페 이 지 : http://www.moef.go.kr

인　　쇄 :